목 차

제1장 의회 현황

제1절 의회연혁 27

제2절 의회조직 31

1. 의원정수 31
2. 조 직 32

제3절 의회에서 하는 일 38

1. 의회의 지위 38
2. 의회의 권한 39
3. 의 사 43

제4절 의회사무과 48

1. 연혁 48
2. 기능 49

제2장 의정활동

제1절 회기운영 53

1. 회기운영 53
2. 정기회 운영 53
3. 임시회 운영 54

제2절 의사일정표 56

제3절 의안처리상황 140

1. 총 괄 140
2. 주요안건 처리결과 141

제4절 군정질문 · 답변 153

1. 총 괄 153
2. 군정질문 · 답변 153

제3장 행정사무감사

제1절 감사총괄 215

1. 감사목적 215
2. 근　　거 215
3. 감사기관 215
4. 대상기관 215
5. 감사반 편성 216

제2절 감사현황 217

1. 감사개요 217
2. 실과소별 중점감사 내용 219

제3절 감사결과 지적사항 총괄 223

제4절 감사결과 총평 및 지적사항 223

제4장 세입 · 세출 결산검사

제1절 1997회계년도 세입 · 세출결산검사의견서 267

제2절 1998회계년도 세입 · 세출결산검사의견서 289

제3절 1999회계년도 세입 · 세출결산검사의견서 309

제4절 2000회계년도 세입 · 세출결산검사의견서 327

제5장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제1절 대정부 건의문 등 채택 343

1. 위천국가산업단지조기지정및구지지방산업단지개발촉구건의문 343
2. 대구지하철1호선연장건설건의문 345
3. 쌍용자동차구지지방산업단지조기개발촉구결의문 347
4. 대구교도소이전촉구건의문 349

제2절 현안 협의를 위한 관계기관 방문 ····· 351
1. 대구도시계획정비 ····· 351
2. 위천국가공단지정 조기지정 촉구 ····· 352
3. 낙동강·금호강 연안개발추진 ····· 352
4. 쌍용자동차 구지산업단지 조성추진 ····· 353
5.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 354

제6장 부 록

제1절 제3대 군의원 선거 ····· 357
1. 인구수 및 선거인수 ····· 357
2. 입후보자 등록상황 ····· 358
3. 당선자 상황 ····· 358
제2절 의장, 부의장 당선인사 ····· 364
제3절 개회사, 축사, 폐원인사 ····· 366
1. 제3대 의회 전반기 개회사(제76회 임시회) ····· 366
2. 제3대 의회 축사(군수) ····· 368
3. 제3대 의회 후반기 개회사(제92회 임시회) ····· 370
4. 제3대 의회 폐원인사(제111회 임시회) ····· 373
제4절 의회 운영일지 ····· 376
제5절 의정활동 보도자료 ····· 431
제6절 의사당 및 사무과 직원현황 ····· 451
제7절 달성군 일반현황 ····· 452

제 1 장 의 회 현 황

제1절 의회연혁

제2절 의회조직

1. 의원정수
2. 조　　직

제3절 의회에서 하는 일

1. 의회의 지위
2. 의회의 권한
3. 의　　사

제4절 의회사무과

1. 연　　혁
2. 기　　능

제 1 장 의 회 현 황

제1절 의 회 연 혁

제헌헌법(1948. 7. 17)이래 제9차 개헌(1987. 10. 29)에 이르기까지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와 방법을 법률로 정하도록 유보하였다.

그러나 1949년 7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 구성은 1950년 6·25사변으로 인하여 지연되었다.

그러다가 1952년 4월 25일 첫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1961년까지 3대에 걸쳐 지방의회가 구성 운영되었다.

1. 초대(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회 구성

첫 선거에서 인구 5천미만일때는 10인을 정원으로 하고 5천이상 1만 미만일때는 5천을 초과하는 매2천에 1인씩 증가하며 1만이상 일때에는 초과 5천마다 1인씩 증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의원수 규정과 선거구수와 선거구에서 뽑을 의원수를 인구비례에 따라 도규칙으로 정하게 한 규정에 따라 면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로 달성군에서는 13개면별로 가창면 13인, 성서면 12인, 동촌면 13인, 공산면 13인, 월배면 11인, 다사면 11인, 하빈면 12인, 화원면 12인, 옥포면 14인, 논공면 13인, 현풍면 13인, 구지면 13인, 유가면 13인 총164명의 면의원을 선출하였으며, 그해 5월5일 제1대 지방의회 면의회에서 간선으로 면장을 선출하였다.

2. 2대(1956년 8월 8일) 시·읍·면의회 구성

제2대 지방의회는 1956년 2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그해 7월8일 지방자치법 제3차 개정법에 의하여 8월 8일 제2대 시·읍·면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로 달성군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의원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인구 1만까지는 11명으로 하고 인구 1만명 이상 시·읍·면은 증가된 매 1만명

에다 1명씩 추가로 선출하게 한 개정법에 따라 10% 정도가 줄어든 150인의 면의원을 선출하게 되었다.

시·읍·면장선거는 성서, 동촌, 다사, 화원, 논공, 현풍, 구지면장 이상 7개 면장은 기득권을 인정하였고 기득권에서 제외된 가창, 공산, 월배, 하빈, 옥포, 유가면장 이상 6개면의 면장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선으로 선출하였다.

지방의회 선거후 1955년 7월에 달성군의 동촌, 성서, 월배, 공산, 다사, 화원면 이상 6개 면의회가 대구시 편입을 가결하고, 대구시의회도 7월 21일 이들 면의 편입을 받아들이기로 가결되어 1957년 10월 23일 국회에서의 표결결과 105명의 출석의원 중 77대0으로 가결되어 동년 11월6일 법률 제452호로 공포된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에 의해 다사면을 제외한 5개면은 대구시로 이전되어 달성군의 영역이 축소되었다.

시·읍·면장의 임명제와 시·읍·면장 및 지방의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제4차 개정안이 1959.2.4파동때 신국가보안법과 함께 자유당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되어 제2대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1960년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

3. 3대(1960년12월19일) 시·읍·면의회 구성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공포후 60일이내 선거를 실시토록한 개정법에 따라 12월12일 서울시·도의원 선거가, 12월 19일 시·읍·면 의회의원선거가, 12월 26일에 시·읍·면장 선거가 그리고 12월 29일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12월 19일 실시된 달성군 면의원선거에는 83.7%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선거에서 달성군에서는 8개면(공산, 가창, 성서, 월배, 동촌면은 대구시 편입으로 제외)에서 면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다사면 11인, 하빈면 11인, 화원면 11인, 옥포면 10인, 논공면 11인, 현풍면 12인, 구지면 11인, 유가면 12인 이상 89인의 면의원이 선출되었다.

동년 12월 26일에는 시·읍·면장 선거가 실시되어 달성군 면장선거에는 81.6%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8개면의 면장을 직접 선출 하였다.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전면 해산되고 여러법령에 의해 상급행정관청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4. 지방자치의 부활과 달성군의회의 구성

1) 초대 달성군의회

제12대 국회 말에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지방자치의 기초단위는 시·군·구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로 선출하되 법률로 정할 때까지는 정부에서 임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칙에서 동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시·군 및 자치구부터 구성하되 지방의회의원선거는 동법 시행일인 1988년5월1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며, 시·도의회는 시·군·구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성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나 6공화국의 정치상황 변화로 또다시 지방자치법을 1989년 12월 30일 개정하였다. 8차 개정에 해당하는 개정 지방자치법은 그 부칙에서 동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원 선거는 1990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선거는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3당통합후 의원선거법 및 단체장선거법의 개정을 미루게 되었고, 1990년 12월 14일 새로운 지방의회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을 개정하여 통과시켜 지방의원 선거는 1991년 상반기 중으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1992년 상반기까지 실시토록 규정하였다.

1991년 지방의회의 기초와 광역을 분리 실시토록 여·야가 합의하여 1961년 이후 30년만에 부활된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선거는 1991년 3월 26일 시·군·구 기초의원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선거에서 달성군에서는 인구 2만 이상의 읍·면은 매2만마다 1명씩을 추가로 선출하게 한 자치단체의원 선거법에 따라 9개 선거구, 39개 투표구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총유권자 66,774명중에서 67.1%가 투표에 참가하여 화원면에서는 2명의 군의원을 선출하여 달성군의회의 의원은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의원구성은 (면순서에 의거 기재) 서칠수(가창면), 윤도현(다사면), 송태환(하빈면), 이경식

(화원면), 이철웅(화원면), 석진후(옥포면), 이수환(논공면), 김수영(현풍면), 고용덕(유가면), 이팔호(구지면)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초대 달성군의회에서는 1991년 4월 15일 제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995년6월30일까지 4년 3개월여 임기동안 46회의 정기회, 임시회를 통하여 290건의 안건을 처리하여 지방자치 부활후 지방기초의회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2) 제2대 달성군의회

그 후 1994년 3월 16일 법률제4739호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어 명실상부한 지방시대의 개막을 여는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4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1995년 4월 1일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 1995년 6월 27일 선거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1998년 6월 30일로 하여 임기 3년의 제2대 달성군의회 의원구성을 하게 되었다.

6.27 선거에서는 전국의 시·도지사 선거, 자치구, 시·군의 장 선거, 시·도의회의원 선거, 그리고 자치구, 시·군의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여 달성군 총 유권자 79,892명 중 58,532명이 투표하여 73.3%의 투표율로 9개선거구에 10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었다.

의원 구성은(읍·면 순서에 의거 표기) 표명찬(화원읍), 김용주(화원읍), 김영식(논공읍), 이정재(가창면), 유진환(다사면), 박노설(하빈면), 서병호(옥포면), 정경이(현풍면), 현삼조(유가면), 제갈재봉(구지면) 의원의 10명으로 구성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의 임기동안 1995년 7월 14일 제47회 임시회부터 29회의 정기회, 임시회를 통하여 16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3) 제3대 달성군의회

1998년 4월 30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자치구, 시·군 의회의 의원정수를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마다 1인씩으로 하되, 인구 5천미만의 동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토록 개정하여 달성군의회의 의원정수를 9개선거구에 9인으로 하여 1998년 6월 4일 실시된 4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53개 투표구에 총 유권자 94,534명 중에 논공읍, 옥포면, 현풍면 선거구는 무투

표 당선되고 그 외 6개선거구에 34,801명이 투표하여 이경식(화원읍), 김판조(논공읍), 도기태(다사읍), 이정재(가창면), 박노설(하빈면), 서병호(옥포면), 이현근(현풍면), 이선용(유가면), 이팔호(구지면)의원의 9인으로 제3대 달성군의회를 출범하여 1998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4년간의 임기동안 1998년 7월 10일 제76회 임시회부터 37회의 정례회, 임시회를 통하여 270건의 안건을 처리하여 지방자치의 정착에 기여를 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2절 의회조직

1. 의원정수

군의원은 20세 이상인 주민(유권자)의 투표에 의해 선거구별로 선출되며 그 정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한선을 7명으로 하여 관할구역안의 읍·면·동 마다 1인을 선출토록한 규정에 의거 9개선거구에 각 1명씩 9명의 군의원을 선출하여 제3대 달성군의회가 구성되었다.

2002년 3월 7일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법에 의하면 "자치구,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현행과 같이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1천미만의 면과 6천미만의 동은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고, 인구 2만이상의 읍과 5만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하도록 하였고, 다만 통합하여 인구 3만이상의 읍, 5만이상의 동이 있는 경우는 통합하기 전의 읍·면·동을 각각의 선거구로 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어 2002년 6월 13일 선출하게 되는 제4대 지방기초의회 의원의 정수가 변동이 있게 되어 우리군의 경우는 2002년 4월 14일자 대구광역시조례 제3540호 대구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의하여 인구3만이상의 화원읍, 다사읍의 선거구가 각각 2개선거구로 조정되었다. 화원읍 제1선거구는 천내리, 구라리, 본리리 일원을 제2선거구는 성산리, 설화리, 명곡리 일원으로 하여 각1인씩 선출하고, 다사읍은 제1선거구는 이천리, 달천리, 박곡리, 죽곡리, 매곡리, 부곡리, 문양리, 문산리 일원을 제2선거구는 방천리, 서재리, 세천리 일원을 선거구로하여 각1인씩 선출하게 되어 제1대 달성군의회 의원정수 10인, 제2대 달성군의회 의원정수 10인, 제3대 달성군의회 의원정수 9인에 이어 제4대 달성군의회 의원정수는 11인으로 늘어나게 된다.

2. 조 직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 조직은 의장과 부의장(의장단), 본회의와 위원회로 되어 있다.

가. 의장단

지방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군의회는 의원 중에서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선출한다.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각 선출한다.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는 득표수가 많은 두사람을 결선투표에 부쳐 당선자를 결정한다.

총선거후 의장·부의장 선출은 최초로 집회되는 본회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나 '94년 12월 2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에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제2대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년 6월이었다.

(1) 의장

의장은 외부에 대하여 지방의회를 대표하고(의회대표권),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광범위한 의사정리권을 갖는다.

또한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제1대 달성군의회는 1991년 4월 15일 제1회 임시회에서 의장선거를 실시하여 석진후의원(옥포면)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투표결과는 총 투표수 10표 중 석진후의원 10표로 달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석진후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다.

제1대 전반기 의장 선거결과

구 분	투표자수	석 진 후	무 효
1차 투표	10	10	—

제1대 후반기 의장은 1993년 4월 1일 제23회 임시회에서 석진후 의원(옥포면)이 당선되었다.

제1대 후반기 의장 선거결과

구 분	투표자수	석 진 후	무 효
1차 투표	10	10	—

제2대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는 1995년 7월 14일 제47회 임시회에서 정경이 의원(현풍면)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제2대 전반기 의장 선거결과

구 분	투표자수	정 경 이	무 효
1차 투표	10	10	—

제2대 후반기 의장은 1997년 1월 10일 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갈재봉 의원(구지면)을 선출했다.

제2대 후반기 의장 선거결과

구 분	계	정경이	표명찬	서병호	제갈재봉	무 효
1차 투표	9	2	2	3	1	1
2차 투표	9	1	2	3	2	1
결 선			3	3	3(연장자)	

제3대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는 1998년 7월 10일 제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노설 의원(하빈면)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제3대 전반기 의장 선거결과

구 분	계	이경식	이정재	박노설	서병호
1차 투표	9	2	2	3	2
2차 투표	9		3	5	1

제3대 후반기 의장은 2000년 7월 1일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병호 의원(옥포면)을 선출했다.

제3대 후반기 의장 선거결과

구 분	계	서 병 호
1차 투표	9	9

(2) 부의장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의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제1대 전반기 부의장선거는 의장선거가 끝난후 연이어 투표를 실시하여 고용덕 의원(유가면)이 피선되었다.

투표결과는 재적의원 10인에 출석의원 10인 전원이 투표하여 고용덕 의원이 10표로 피선되었다.

제1대 후반기 부의장은 1993년 4월 1일 제23회 임시회에서 고용덕의원(유가면)이 전반기에 이어 부의장에 피선되었다.

제1대 전반기 부의장 선거결과

구 분	계	고 용 덕
1차 투표	10	10

제1대 후반기 부의장 선거결과

구 분	계	고용덕	서칠수	이경식	이수환
1차 투표	10	4	1	4	1
2차 투표	10	6		3	

제2대 전반기 부의장 선거는 1995년 7월 14일 의장선거 후 곧바로 실시하여 표명찬 의원(화원읍)이 피선되었다.

제2대 후반기 부의장은 1997년 1월 10일 제64회 임시회에서 김용주의원(화원읍)이 피선되었다.

제2대 전반기 부의장 선거결과

구 분	계	표 명 찬
1차 투표	10	10

제2대 후반기 부의장 선거결과

구 분	계	김 용 주	김 영 식
1차 투표	9	6	3

제3대 전반기 부의장 선거는 1998년 7월 10일 제76회 임시회에서 의장선거 후 곧바로 실시하여 이팔호 의원(구지면)이 피선되었다.

제3대 후반기 부의장은 2000년 7월 1일 제92회 임시회에서 이정재의원(가창면)이 피선되었다.

제3대 전반기 부의장 선거결과

구 분	계	이 팔 호
1차 투표	9	9

제3대 후반기 부의장 선거결과

구 분	계	이 정 재
1차 투표	9	9

나. 본회의

본회의는 그 자치단체의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본회의는 지방의회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최종결정 단계이며,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의결·선임·동의·결정한다고 할 때 이「지방의회」는 본회의를 의미하게 된다.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이 본회의 심의 전에 예비적 심사기관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토록 한다. 그러나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심사를 거치거나 또는 바로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처리 한다.

달성군의회는 제1대에 각회기를 통하여 119차례의 본회의로 29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제2대에는 168차례의 본회의로 16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제3대에서는 253차례의 본회의로 26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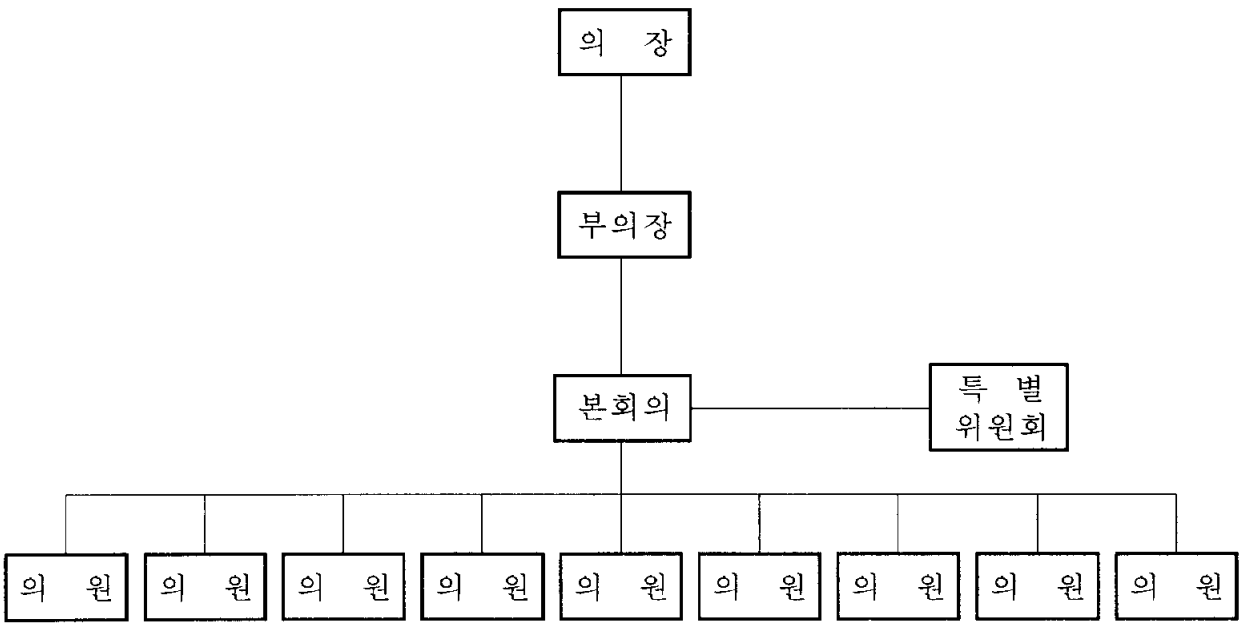
다.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서 설치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다.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예산안 심의는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심의처리 하였다.

그 동안 구성한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명	구성일	기 간	위원장	간 사	위 원
행정사무 감사특별 위원회	제80회 정기회	1998.11.30~ 12.14(15일간)	이정재	이현근	이경식, 김판조 도기태, 서병호 이선용, 이팔호
	제87회 정기회	1999.11.30~ 12.18(19일간)	이정재	김판조	이경식, 도기태 서병호, 이현근 이선용, 이팔호
	제93회 정례회	2000. 7.12~ 7.22(11일간)	이경식	이선용	김판조, 도기태 이정재, 박노설 이현근, 이팔호
	제103회 정례회	2001. 7.12~ 7.23(12일간)	이팔호	이현근	이경식, 김판조 도기태, 이정재 박노설, 이선용

제3대 달성군의회 조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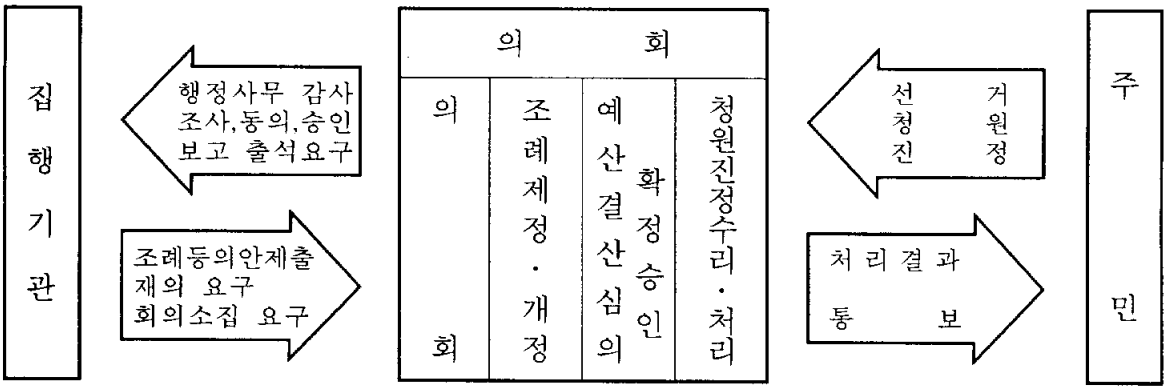
제3절 의회에서 하는일

1. 의회의 지위

헌법 제1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이며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지방의회의 지위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다.



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대표권의 성질은 기속적 위임이 아니라 비기속적 위임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의원의 대표권은 지역구 주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전체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말하며, 자치단체 주민의 부담,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자문기관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확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사기관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결정된 사항을 직접 집행할 권한은 없다.

다. 입법기관으로서 지위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 등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규칙」 제정권이 부여되지만 이는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다.

라.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가 이 기능을 담당하는것은 본질적인 기능이 아니고 입법기능의 역할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이라는 주장과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부수적인 기능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2. 의회의 권한

지방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진다.

지방의회는 의결권, 감사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견표명권, 보고 및 자료요구권 등의 권한이 있다.

가. 의결권

의결권은 자치단체 또는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개·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지방자치법 기타 관련법에 규정된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상의 필요적 의결사항

필요적 의결사항	관 련 근 거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제35조제1항
• 예산의 심의·확정	〃
• 결산의 승인	〃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 기금의 설치·운영	〃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 지방채 발행 등 채무부담행위	제115조
• 계속비 의결·예비비 지출승인	제119조 제120조
•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규약제정	제142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의 규약변경, 행정협의회 폐지	제148조
•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설립과 규약제정	제149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규약변경과 조합 해산	제154조제1항

기타 관련법상의 필요적 의결사항

필요적 의결사항	관련근거
• 지방세의 부과징수,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 지방세법 제3조·제9조 •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나. 행정감시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집행 사항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지방의회는 단체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답변 요구, 자료 요구, 보고 요구 등을 통해서도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특정사안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케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사·조사결과 처리의견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한다.

의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단체장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구 분	행 정 사 무 감 사	특 정 사 안 조 사
• 법위	• 군정업무 전반	• 특정사안
• 시기	• 매년 2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	• 수시(기간은 본회의에서 정함)
• 발동요건	• 법정감사	•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결정

2)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답변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다. 자율권

지방의회는 조직과 운영을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구 분	내 용
• 내부조직권	• 의장단 구성, 위원회 설치
• 의사자율권	• 회의규칙 제정, 회의개·폐의 자주적 결정
• 의원신분사정권	• 의원의 징계, 자격에 관한 심사, 불신임 의결

라. 선거권

지방의회의 선거권은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 이외의 법령에 의한다.

마. 청원처리권

청원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사항에 관한 희망을 질문하여 그 시정

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한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1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한다.

단,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거나 동일기관에 2회 이상 또는 1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될 때는 수리하지 않는다.

바. 의견표명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나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와 조사,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를 단체장에게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 의 사

가. 집회 및 회기

○ 집회란 의회 고유의 권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일정한 장소에 모이도록 요구하고 의원은 이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를 말한다.

지방의회의 집회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0일에 집회하며, 단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차정례회는 매년 11월25일에 집회한다.

임시회는 군수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를 소집한다.

임시회의 집회공고는 시·군·구의회는 집회일 5일전에 한다.

따라서 집회일과 공고하는 날을 제외하고 5일이 확보되도록 공고해야 한다.

○ 회기는 제1대 의회에서는 1991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

거 회기를 임시회 10일, 정기회 30일 이내로 제한했다.
연간 총 회의일수도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도(광역)의회는 100일, 시·군·구(기초)의회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법이 1994년 3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한 회기의 임시회를 15일 이내의 범위로 정하고 정기회는 시·도의회의 경우는 40일, 시·군·구의회의 경우는 35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총 회의 연간일수도 시·도의회는 120일, 시·군·구의회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나. 의사운영

○ 의사일정

의사일정은 회의 당일 의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다.
의사일정에는 개의일시와 부의안건의 순서를 기재한다.
의장은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의사일정의 변경은 재적의원 1/5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의안의 발의 및 제출

발의는 의원이 의회에 의안을 내는 행위이며 제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에 의안을 내는 행위이다. 의안은 군수와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1/5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동 의

동의란 심의안건의 의제와는 다른 사항을 의제로 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것이다. 동의가 성립되면 의장은 이를 의제로 삼아야 하며 독립적인 의결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 발 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제 외의 발언이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고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은 10분 이내이며,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 표 결

표결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안건의 심의(심사)를 마친 후 안건의 가결·부결을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찬성·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최종단계다.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거나,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 회의록

회의록은 회의에 있어서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회의경과 및 결과 등을 적은 기록이다.
지방의회의 회의록은 발언자의 발언을 한 마디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동시에 의사일정, 개의·산회 일시, 보고사항, 참고자료 등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망라하여 게재한 것이다.
지방의회는 회의내용을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보존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정족수

○ 의사정족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의안의 발의 및 의결정족수

의안별	발의정족수		의결정족수	
• 일반안건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 찬성 • 지방자치단체장	법 제58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법 제56조
• 의장·부의장 선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 의장단 불신임	• 재적의원 1/4이상	법 제49조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법 제49조
• 조례안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장	법 제19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법 제19조
• 행정사무조사	• 재적의원 1/3이상	법 제36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법 제56조
• 의원자격심사	• 재적의원 1/4이상	법 제71조	•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법 제72조
• 의원의 징계	• 재적의원 1/5이상	회의규칙 제89조	•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법 제80조
• 임시회 요구	• 재적의원 1/3이상 • 지방자치단체장	법 제39조	• 요구가 있으면 15일 이내 의장이 소집	법 제39조
• 회의 비공개	• 의원 3인이상	법 제57조	• 출석의원 2/3이상	법 제57조
• 휴회중 회의재개	• 재적의원 1/3이상 • 군수가 요구 • 의장 긴급필요시	회의규칙 제16조	• 요구가 있으면 회의 재개	
• 위원회의 개최	• 위원장 필요시 • 재적의원 1/3이상 • 폐회 중 – 본회의 의결이나 군수요구	법 제53조	•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 개회	

4. 본회의장 방청 및 참관

군민은 누구나 방청권을 교부받아 의회에서 방청이나 참관을 할 수 있다.

의회방청은 일반방청, 단체방청, 장기방청으로 구분되며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교부한다.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본회의 방청

본회의장의 방청석은 약 20석 규모이며, 장기방청석을 제외하면 일반 방청인은 약 10석 정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참 관

의회참관이란 의회의 방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의회내의 기구와 시설을 시찰함을 말한다.

의회참관은 의원, 사무처 공무원의 소개 또는 참관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사무과장이 허가한다.

참관시간은 일과시간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회의 개회중에는 참관할 수 없다.

제4절 의회사무과

1. 연 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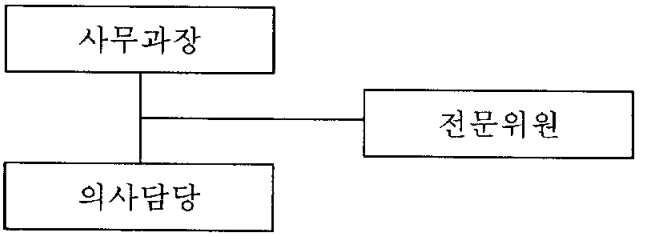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1991년 4월 2일 조례 제1406호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사무과를 설치하였다.

의회사무기구로는 사무과를 두고 사무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1전문위원과 의사계를 두고 1991년 4월 15일 의회구성일로부터 직원정수 10명으로 출발하였다.

1993년 2월 18일 의사업무의 증가에 따라 사무원 1명을 증원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정수가 10명에서 11명이 되었다.

1997년 11월 21일 (조례제1617호)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사무과설치등에관한조례로 전문개정하였고

1998년 8월 31일(조례제1632호) 정부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행정기구의 최소단위를 과체계로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9월 20일자로 의사계가 의사팀으로 조정하여 사무직원의 정수를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정원11명에서 10명으로 기능10급 1명을 감축하였다.



【사무직원의 정수】

구 분	계	5급	행정6급	행정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정 원	10	2	1	2	2 (운전 1 통신 1)	2 (속기 1 운전 1)	1 (사무 1)

2. 기 능

부서명		분 장 사 무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 문서, 보안, 관인관리 · 의회소관예산의 편성, 세출예산의 경리·결산에 관한 사항 · 의회청사, 시설장비, 물품·비품의 수급관리 ·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 및 보관관리 · 의회사 편찬 및 의회공보, 각종간행물 발간 · 자료실 운영 · 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 및 보도자료의 제공 관리 · 의회활동관련 방송청취.기록 보고 · 의정활동관련 각종 신문 보도사항 스크랩 및 보고 · 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운영에 관한 사항 ·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회부처리 및 보존관리 · 청원 및 진정서의 접수, 회부 및 처리 · 회의록 녹음 및 속기, 작성 발간, 보존, 열람, 배부 보존관리
	전문위원	·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 위원회의 의안심사, 의사진행 보좌

제 2 장 의 정 활 동

제1절 회기운영

1. 회기운영 총괄
2. 정기회 운영
3. 임시회 운영

제2절 의사일정표

제3절 의안처리상황

1. 총 괄
2. 주요안건 처리결과

제4절 군정질문 및 답변

1. 총 괄
2. 군정질문 · 답변

제 2 장 의정활동

제1절 회기운영

회기운영은 기초의회는 법정기일이 연간 80일로서 두차례의 정례회를 통하여 35일 이내로 운영하였으며, 1998년, 1999년에는 년1회 11월 25일 개회하였고 2000년부터는 년2회 개회하여 1차는 7월 10일 개회하여 15일간, 제2차는 12월 1일부터 20일간 개회하였다. 임시회는 매월 1회 평균 5~6일간 회기로 개회하였다.

1. 회기운영 총괄

구 분	회 수	회 기 일	본회의 일 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총 계	36	328	253	28
정 기 회	6	140	98	28
임 시 회	30	188	155	

2. 정기회 운영

구 분		구 기 분 간	회기일	본회의 일 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총 계			140	98	28
1998년	제80회	11. 25~12. 29	35	20	7
1999년	제87회	11. 25~12. 29	35	20	7
2000년	제93회	7. 10~ 7. 24	15	12	7
2000년	제97회	12. 1~12. 20	20	17	
2001년	제103회	7. 10~ 7. 24	15	12	7
2001년	제107회	12. 1~12. 20	20	17	

3. 임시회 운영

구 분		기 간	회 기 일	본회의 일 수
총 계			188	155
1998년	소 계		28	23
	제76회	7. 10 ~ 7. 15	6	5
	제77회	8. 10 ~ 8. 17	8	6
	제78회	9. 15 ~ 9. 16	2	2
	제79회	10. 30 ~ 11. 10	12	10
1999년	소 계		45	40
	제81회	1. 21 ~ 1. 27	7	6
	제82회	4. 20 ~ 4. 26	7	6
	제83회	6. 18 ~ 6. 26	9	8
	제84회	7. 19 ~ 7. 24	6	6
	제85회	9. 13 ~ 9. 20	8	7
	제86회	10. 28 ~ 11. 4	8	7
2000년	소 계		45	38
	제88회	1. 14 ~ 1. 21	8	7
	제89회	2. 23 ~ 2. 28	6	5
	제90회	5. 19	1	1
	제91회	6. 1 ~ 6. 5	5	4
	제92회	6. 24 ~ 7. 1	8	7
	제94회	9. 1 ~ 9. 5	5	4
	제95회	10. 26 ~ 10. 30	5	4
	제96회	11. 16 ~ 11. 22	7	6

구 분		기 간	회 기 일	본회의 일 수
2001년	소 계		45	34
	제98회	1.11 ~ 1.17	7	6
	제99회	3. 9 ~ 3.14	6	5
	제100회	4.20 ~ 4.24	5	4
	제101회	5.18	1	1
	제102회	6.22 ~ 6.28	7	4
	제104회	9.14 ~ 9.20	7	6
	제105회	10.12 ~ 10.16	5	4
	제106회	11.22 ~ 11.28	7	4
2002년	소 계		25	20
	제108회	1.11 ~ 1.18	8	7
	제109회	3.12 ~ 3.18	7	6
	제110회	4.26 ~ 5. 2	7	4
	제111회	6.25 ~ 6.27	3	3

제 2 절 의 사 일 정 표

1. 제76회 임시회 (1998. 7. 10 ~ 7. 15)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7. 10(금) **11 : 00**	**제1차 본회의** 1. 의장·부의장선거의 건 2. 제76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 결 의 결
7. 11(토) **10: 00**	**개원식** — 의원선서 — 개회사 — 축사 **제2차 본회의** 1. 199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선 임
7. 12(일)	**공휴일**	
7. 13(월) **10: 00**	**제3차 본회의** 1.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7개실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보고청취
7. 14(화) **10: 00**	**제4차 본회의** 1.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7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관광과, 농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보고청취
7. 15(수) **10: 00**	**제5차 본회의** 1.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6개과소) (도시과, 건축과, 지적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보고청취

2. 제77회 임시회 (1998. 8. 10~8. 17)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8. 10(월) 11 : 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77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 결 〃 제안설명 〃 〃 〃 〃
8. 11(화) 10:00	**제2차 본회의**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자체심의 〃 〃 〃 〃
8. 12(수) 10:00	**제3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질문·답변
8. 13(목) 10: 00	**제4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8. 14(금) **10:00**	**제5차 본회의**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질의·답변 〃 〃 〃 〃
8. 15(토)	공휴일	
8. 16(일)	공휴일	
8. 17(월) **11:00**	**제6차 본회의**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 결 〃 〃 〃 〃

3. 제78회 임시회 (1998. 9. 15~9. 16)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9. 15(화) 11 : 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78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	 의 결 제안설명 〃 〃 〃 〃
9. 16(화) 11:00	**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	 질문·답변 의 결 〃 〃 〃 〃

4. 제79회 임시회 (1998. 10. 30~11. 10)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0. 30(금) **11 : 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79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읍면방문및사업장점검의건 3.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 결 〃 제안설명
10. 31(토) **11:00**	**제2차 본회의** 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자체심의
11. 1(일)	**공 휴 일**	
11. 2(월) **11:00**	**제3차 본회의**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안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안설명 〃 〃 〃 〃 〃 〃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위 원 장 간사선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1. 3(화) 10:00	**제4차 본회의** 1. 읍면방문및사업장점검의건 (다사, 하빈지역)	방문및 점검
11. 4(수) 10:00	**제5차 본회의** 1. 읍면방문및사업장점검의건 (화원, 옥포, 논공지역)	〃
11. 5(목) 10:00	**제6차 본회의** 1. 읍면방문및사업장점검의건 (현풍, 유가, 구지지역)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에관한건 2) 주요업무보고, 자료제출, 관계인출석 요구의건	감사계획작성 의 결
11. 6(금) 11:00	**제7차 본회의** 1. 읍면방문및사업장점검의건 (가창면)	방문및 점검
11. 7(토) 11:00	**제8차 본회의**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안	자체심의 〃 〃 〃 〃 〃 〃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1. 8(일)	**공 휴 일**	
11. 9(월) 11:00	**제9차 본회의**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안	 질의·답변 〃 〃 〃 〃 〃 〃 〃
11. 10(화) 11:00	**제10차 본회의**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안 9.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 결 승 인 의 결 〃 〃 〃 〃 〃 승 인

5. 제80회 임시회 (1998. 11. 25~12. 29)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1. 25(수) 11: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80회달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예산안 3. 1998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1999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 5.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 결 제안설명 보고청취 제안설명 〃
11. 26(목) 11:00	**제2차 본회의** 1.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보고청취
11. 27(금) 11:00	**제3차 본회의** 1.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농축산과, 건설과, 도시녹지과)	〃
11. 28(토) 11:00	**제4차 본회의** 1.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건축과, 민원봉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
11. 29(일)	**일요일**	
11. 30(월) 11:0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	행정사무 감사특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2. 1(화) 11:0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	행정사무 감사특위
12. 2(수) 11:0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	〃
12. 3(목) 10:00	**행정사무감사실시** (담당업무별 개별감사)	〃
12. 4(금) 10:00	**행정사무감사실시** (담당업무별 개별감사)	〃
12. 5(토) 10:00	**행정사무감사실시** (담당업무별 개별감사)	〃
12. 6(일)	**일요일**	
12. 7(월) 10:00	**행정사무감사실시** (질의 · 답변)	〃
12. 8(화) 10:00	**행정사무감사실시** (질의 · 답변)	〃
12. 9(수) 10:00	**행정사무감사실시** (질의 · 답변)	〃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2. 10(목) 11:00	**제5차 본회의** 1. 1999년도예산안	예산심의 (실과소별)
12. 11(금) 11:00	**제6차 본회의** 1. 1999년도예산안	〃
12. 12(토) 11:00	**제7차 본회의** 1. 1999년도예산안	〃
12. 13(일)	**일요일**	
12. 14(월) 11:00	**제8차 본회의** 1. 1999년도예산안	예산심의 (총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 15(화) 11:00	**제9차 본회의** 1. 1999년도예산안	질의·답변
12. 16(수) 11:00	**제10차 본회의** 1. 1999년도예산안 2. 1999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 3.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 〃 〃
12. 17(목) 11:00	**제11차 본회의** 1. 1999년도예산안	계수조정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2. 18(금) 11:00	**제12차 본회의** 1. 1999년도예산안	계수조정
12. 19(토) 11:00	**제13차 본회의** 1. 1999년도예산안 2. 1999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 3.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4.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 결 〃 〃 〃
12. 20(일)	**일요일**	
12. 21(월) 11:00	**제14차 본회의**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2. 22(화) 11:00	**제15차 본회의**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자체심의
12. 23(수) 11:00	**제16차 본회의**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
12. 24(목) 11:00	**제17차 본회의**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조례안 등	의 결 제안설명
12. 25(금)	**공휴일**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2. 26(토) **11:00**	**제18차 본회의** 1. 조례안 등	자체심의
12. 27(일)	**일요일**	
12. 28(월) **11:00**	**제19차 본회의** 1. 조례안 등	질의·답변
12. 29(화) **11:00**	**제20차 본회의** 1. 조례안 등	의 결

6.제81회 임시회 (1999. 1. 21~1. 27)

월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 21(목) **11 : 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81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1999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의 결 제안설명 〃 의 결 보고청취
1. 22(금) **11:00**	**제2차 본회의**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환경청소과, 지역교통과, 농축산과, 건설과, 도시녹지과, 건축과, 민원봉사과)	 보고청취
1. 23(토) **11:00**	**제3차 본회의**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자료검토
1. 24(일)	**공휴일**	
1. 25(월) **11:00**	**제4차 본회의**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보고청취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 26(화) 11:00	**제5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군정질문의건	질 의 〃 질 문
1. 27(수) 11:00	**제6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군정질문의건	의 결 〃 질 문

7. 제82회 임시회 (1999. 4. 20~4. 26)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4. 20(화) 10: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82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 결 제안설명
4. 21(수) 10:00	**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 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 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9.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 〃 〃 〃 〃 〃 〃 〃 〃
4. 22(목) 11:00	**제3차 본회의**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자체심의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4. 23(금) 11:00	**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 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9.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자체심의 〃 〃 〃 〃 〃 〃 〃 〃
4. 24(토) 11:00	**제5차 본회의**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 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10.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질의·답변 〃 〃 〃 〃 〃 〃 〃 〃 〃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4. 25(일)	**공휴일**	
4. 26(월) **11:00**	**제6차 본회의**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 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10.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 결 〃 〃 〃 〃 〃 〃 〃 〃 〃

8. 제83회 임시회 (1999. 6. 18 ~ 6. 26)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6. 18(금) 11 : 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83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 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계및농기구대여관리 조례폐지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	 의 결 제안설명 〃 〃 〃 〃 〃 〃 〃 〃 〃 〃 〃 〃 〃 〃 의 결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6. 19(토) 11 : 00	**제2차 본회의** 1. 19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계및농기구대여관리조례폐지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선 임 자체심의 〃 〃 〃 〃 〃 〃 〃 〃
6. 20(일)	**공휴일**	
6. 21(월) 11 : 00	**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자체심의 〃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3.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자체심의
	4.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6.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7.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
	8.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계및농기구대여관리조례폐지조례안	〃
	10.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22 (화) **10 : 00**	**제4차 본회의** 1. 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 (가창, 하빈)	현지점검
6. 23(수) **10 : 00**	**제5차 본회의** 1. 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 (화원, 논공)	현지검점
6. 24(목) **10 : 00**	**제6차 본회의** 1. 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 (현풍, 구지)	현지점검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6. 25(금) 10 : 00	**제7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계및농기구대여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 · 답변 〃 〃 〃 〃 〃 〃 〃 〃 〃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6. 26(토)	**제8차 본회의**	
19 : 30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 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결
	2.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안	〃
	3.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6.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중개정조례안	〃
	7. 대구광역시달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
	8.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9.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계및농기구대여관리 조례폐지조례안	〃
	10.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 제84회 임시회 (1999. 7. 19 ~ 7. 24)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7. 19(월) **10 : 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84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의 결 제안설명 의 결 보고청취
7. 20(화) **11 : 00**	**제2차 본회의** 1.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농축산과, 건설과, 도시녹지과)	 보고청취
7. 21(수) **11 : 00**	**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건축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제안설명 보고청취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7. 22(목) 11 : 00	**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자체심의 〃 〃 〃
7. 23(금) 10 : 00	**제5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군정질문의건	 질의 · 답변 〃 〃
7. 24(토) 10 : 00	**제6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군정질문의건 5. 위천국가산업단지조기지정및구지방산업단지개발촉구건의안	 의 결 〃 〃 질문 · 답변 채 택

10. 제85회 임시회 (1999. 9. 13 ~ 9. 20)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9. 13(월) **11 : 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85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 결 제안설명 〃
9. 14(화) **11 : 00**	**제2차 본회의** 1.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자체심의
9. 15(수) **11 : 00**	**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장학회육성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 수거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 임차료 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민간위탁사무동의안 7.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 시설(도로)변경결정 및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제안설명 〃 〃 〃 〃 〃 〃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9. 16(목) 11 : 00	**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장학회육성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민간위탁사무동의안 7.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 시설(도로)변경결정및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자체심의 〃 〃 〃 〃 〃 〃
9. 17(금) 10 : 00	**제5차 본회의**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자체심의
9. 18(토) 10 : 00	**제6차 본회의** 1.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장학회육성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민간위탁사무동의안 9.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 시설(도로)변경결정및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질의·답변 〃 〃 〃 〃 〃 〃 〃 〃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9. 19(일)	**공휴일**	
9. 20(월) **11 : 00**	1.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장학회육성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 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 임차료 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민간위탁사무동의안 9.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 시설(도로)변경결정 및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승 인 의 결 〃 〃 〃 〃 〃 동 의 의견채택

11. 제86회 임시회 (1999. 10. 28 ~ 11. 4)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10. 28(목) 10: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86회 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2. 읍면방문 및 주요사업장점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폐지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 결 〃 제안설명 〃 〃 〃 〃 〃 〃 〃
10. 29(금) 10:00	**제2차 본회의** 1. 읍면방문 및 주요사업장점검 (가창, 다사, 하빈)	방문점검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10. 30(토) **10 : 00**	**제3차 본회의**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폐지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의 결 자체심의 〃 〃 〃 〃 〃 〃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행감특위
10. 31(일)	**공휴일**	
11. 1(월) **10 : 00**	**제4차 본회의** 1. 읍면방문 및 주요사업장점검(화원, 옥포, 논공)	방문·점검
11. 2(화) **10 : 00**	**제5차 본회의** 1. 읍면방문 및 주요사업장점검(현풍, 유가, 구지)	방문·점검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11. 3(수) 10 : 00	**제6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질의·답변
	2.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5.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7.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폐지조례안	〃
	8.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주요업무보고, 자료제출, 관계인출석요구 등)	행감특위
11. 4(목) 11 : 00	**제7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의 결
	2.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7.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폐지조례안	〃
	8.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
	9.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승 인

12. 제87회 정기회 (1999. 11. 25 ~ 12. 29)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11. 25(목) **11 : 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87회 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2. 2000년도예산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9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5.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6.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결 제안설명 〃 보 고 제안설명 〃
11. 26(금) **11 : 00**	**제2차 본회의** 1.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보고청취
11. 27(토) **11 : 00**	**제3차 본회의** 1.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지역경제과, 농축산과, 건설과, 도시녹지과, 건축과)	 〃
11. 28(일)	**공휴일**	
11. 29(월) **11 : 00**	**제4차 본회의** 1.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지역교통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보고청취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11. 30(화) 11 : 0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	행감특위
12. 1(수) 11 : 0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	〃
12. 2(목) 11 : 0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	〃
12. 3(금) 10 : 00	**행정사무감사실시** (담당업무별 개별감사)	〃
12. 4(토) 10 : 00	**행정사무감사실시** (담당업무별 개별감사)	〃
12. 5(일)	**공휴일**	
12. 6(월) 10 : 00	**행정사무감사실시** (담당업무별 개별감사)	〃
12. 7(화) 10 : 00	**행정사무감사실시** (질의 · 답변)	〃
12. 8(수) 10 : 00	**행정사무감사실시** (질의 · 답변)	〃
12. 9(목) 10 : 00	**행정사무감사실시** (질의 · 답변)	〃
12. 10(금) 11 : 00	**제5차 본회의** 1. 2000년도예산안	예산심의 (실과소별)
12. 11(토) 10 : 00	**제6차 본회의** 1. 2000년도예산안	〃
12. 12(일)	**공휴일**	
12. 13(월) 10: 00	**제7차 본회의** 1. 2000년도예산안	예산심의 (실과소별)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12. 14(화) 11 : 00	**제8차 본회의** 1. 2000년도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심의 (총괄) 〃 〃
12. 15(수) 11 : 00	**제9차 본회의** 1. 2000년도예산안	 질의·답변
12. 16(목) 11 : 00	**제10차 본회의** 1. 2000년도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답변 〃 〃 〃
12. 17(금) 11 : 00	**제11차 본회의** 1. 2000년도예산안	 계수조정
12. 18(토) 11 : 00	**제12차 본회의** 1. 2000년도예산안	 계수조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행감특위
12. 19(일)	**공휴일**	
12. 20(월) 11 : 00	**제13차 본회의**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00년도예산안	 의 결 〃 〃 〃 〃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12. 21(화) 11 : 00	**제14차 본회의** 1. 19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2. 22(수) 11 : 00	**제15차 본회의** 1. 19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자체심의
12. 23(목) 11 : 00	**제16차 본회의** 1. 19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
12. 24(금) 11 : 00	**제17차 본회의** 1. 19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 결 제안설명 〃
12. 25(토)	**공휴일**	
12. 26(일)	〃	
12. 27(월) 11 : 00	**제18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자체심의 〃
12. 28(화) 11 : 00	**제19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질의·답변 〃
12. 29(수) 11 : 00	**제20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 결 〃

13. 제88회 임시회 (2000. 1. 14 ~ 1. 21)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 14(금) **11 : 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88회 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회계과)	의 결 〃 보고청취
1. 15(토) **11 : 00**	**제2차 본회의**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보고청취
1. 16(일)	**공휴일**	
1. 17(월) **11 : 00**	**제3차 본회의**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농축산과, 건설과, 도시녹지과, 건축과, 민원봉사과)	보고청취
1. 18(화) **11 : 00**	**제4차 본회의**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보고청취
1. 19(수) **11 : 00**	**제5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회계과)	질 문
1. 20(목) **11 : 00**	**제6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농축산과, 건설과)	질 문
1. 21(금) **10 : 00**	**제7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도시녹지과, 건축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질 문

14. 제89회 정기회 (2000. 2. 23 ~ 2. 28)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 23(수) 11 : 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89회 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 결 제안설명 〃 〃 〃 〃 〃 〃 〃 〃
2. 24(목) 11 : 00	**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자체심의 〃 〃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4.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자체심의
	5.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8.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0.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2. 25(금) **11 : 00**	**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자체심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8.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0.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2. 26(토) **11 : 00**	**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질의 · 답변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답변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8.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10.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2. 27(일)	**공휴일**	
2. 28(월) **11 : 00**	**제5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 결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 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8.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10.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15. 제90회 임시회 (2000. 5. 19)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5. 19(금) **11 : 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90회 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2. 쌍용자동차구지지방산업단지조기개발촉구결의안 3.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 결 제안설명(채택) 의 결

16. 제91회 임시회 (2000. 6. 1~ 6. 5)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6. 1(목) **11 : 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91회 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달성군위생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	 의 결 제안설명 〃 〃 〃 〃 〃 〃 〃
6. 2(금) **11 : 00**	**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달성군위생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	 자체심의 〃 〃 〃 〃 〃 〃 〃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6. 3(토) 11 : 00	**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 ·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달성군위생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	질의 · 답변 〃 〃 〃 〃 〃 〃 〃
6. 4(일)	**공휴일**	
6. 5(월) 11 : 00	**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 ·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달성군위생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	의 결 〃 〃 〃 〃 〃 〃 〃

17. 제92회 임시회 (2000. 6. 24~7. 1)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6. 24(토) 11 : 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92회 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2. 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 결 〃 제안설명 〃 〃 〃 〃 의 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행감특위
6. 25(일)	**공휴일**	
6. 26(월) 10 : 00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가창, 다사, 화원, 옥포)	현지점검
6. 27(화) 10 : 00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논공, 현풍, 유가, 구지)	현지점검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6. 28(수) 11 : 00	**제2차 본회의**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자체심의 〃 〃 〃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주요업무보고, 자료제출, 관계인출석요구등)	행감특위
6. 29(목) 11 : 00	**제3차 본회의**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질의·답변 〃 〃 〃 〃
6. 30(금) 11 : 00	**제4차 본회의**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 결 〃 〃 〃 〃 〃
7. 1(토) 11 : 00	**제5차 본회의** 1. 의장·부의장선거의건	

18. 제93회 정례회 (2000. 7. 10~ 7. 24)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7. 10(월) **11 : 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93회 달성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변경구성의건 3.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4.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의 결 〃 제안설명 보고청취
7. 11(화) **11 : 00**	**제2차 본회의**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지역교통과, 농축산과, 건설과, 도시녹지과, 건축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보고청취
7. 12(수) **11 : 0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	 행감특위
7. 13(목) **10 : 00** **~** **7. 15(토)** **10 : 00**	**행정사무감사실시**(담당업무별 개별감사)	행감특위
7. 16(일)	**공휴일**	
7. 17(월)	**공휴일**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7. 18(화) 10 : 00	**행정사무감사실시**(질의 · 답변)	행감특위
7. 19(수) 10 : 00	**행정사무감사실시**(질의 · 답변)	행감특위
7. 20(목) 11 : 00	**제3차 본회의** 1. 1999회계년도세입 · 세출결산안	자체심의
7. 21(금) 11 : 00	**제4차 본회의** 1. 1999회계년도세입 · 세출결산안	자체심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행감특위
7. 22(토) 11 : 00	**제5차 본회의** 1. 1999회계년도세입 · 세출결산안	질의 · 답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행감특위
7. 23(일)	**공휴일**	
7. 24(월) 11 : 00	**제6차 본회의**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1999회계년도세입 · 세출결산안	의 결 〃

19. 제94회 임시회 (2000. 9. 1 ~ 9. 5)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9. 1(금) 11 : 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94회 달성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의 결 제안설명 〃 〃 〃 〃 〃
9. 2(토) 11 : 00	**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자체심의 〃 〃 〃 〃 〃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9. 3(일)	**공휴일**	
9. 4(월) **11 : 00**	**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답변 〃 〃 〃 〃 〃
9. 5(화) **11 : 00**	**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 결 〃 〃 〃 〃 〃

20. 제95회 임시회 (2000. 10. 26 ~ 10. 30)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0. 26(목) 11 : 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95회 달성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달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3.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 결 제안설명 〃 〃 〃 〃 〃 〃 〃 〃 〃 〃 〃 〃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10. 27(금) 11 : 00	**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2.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자체심의 〃 〃 〃 〃 〃 〃 〃 〃 〃 〃 〃 〃
10. 28(토) 11 : 00	**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답변 〃 〃 〃 〃 〃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7.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 · 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 · 답변
	8. 대구광역시달성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9.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
	10.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
	11. 대구광역시달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
	12.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13.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	〃
10. 29(일)	**공휴일**	
10. 30(월) 11 : 00	**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결
	2.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구광역시달성군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
	6.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7.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 · 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
	8. 대구광역시달성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9.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
	10.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
	11. 대구광역시달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
	12.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3.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21. 제96회 임시회 (2000. 11. 16 ~ 11. 22)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1. 16(목) **11 : 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96회 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2. 주요사업장점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2000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주요사업장점검**(다사, 하빈)	 의 결 〃 제안설명 〃 〃 〃 〃 〃 〃 〃 〃 〃 〃 보 고 현지점검
11. 17(금) **13 : 30**	**주요사업장점검**(화원, 가창, 옥포)	현지점검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11. 18(토) 11 : 00	**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자체심의 〃 〃 〃 〃 〃 〃 〃 〃 〃 〃
11. 19(일)	**공휴일**	
11. 20(월) 11 : 00	**주요사업장점검**(논공, 현풍, 유가, 구지)	현지점검
11. 21(화) 11 : 00	**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답변 〃 〃 〃 〃 〃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7. 대구광역시달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답변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
	9.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
	10.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11.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
	12.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3. 2000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
11. 22(수) **11 : 00**	**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 결
	2.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6.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
	7. 대구광역시달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
	9.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
	10.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11.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
	12.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2. 제97회 정례회 (2000. 12. 1 ~ 12. 20)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2. 1(금) **11 : 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97회 달성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 회의록서명의원선출 2. 2001년도예산안 3.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 결 제안설명 〃
12. 2(토) **11 : 00**	**제2차 본회의**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보고청취
12. 3(일)	**공휴일**	
12. 4(월) **11 : 00**	**제3차 본회의**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농축산과, 건설과)	 보고청취
12. 5(화) **11 : 00**	**제4차 본회의**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도시녹지과, 건축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보고청취
12. 6(수) **11 : 00**	**제5차 본회의** 1. 2001년도예산안	 예산심의 (실과소별)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12. 7(목) 11 : 00	**제6차 본회의** 1. 2001년도예산안	예산심의 (실과소별)
12. 8(금) 11 : 00	**제7차 본회의** 1. 2001년도예산안	자체심의
12. 9(토) 11 : 00	**제8차 본회의** 1. 2001년도예산안	자체심의
12. 10(일)	**공휴일**	
12. 11(월) 11 : 00	**제9차 본회의** 1. 2001년도예산안	자체심의 (총 괄)
12. 12(화) 11 : 00	**제10차 본회의** 1. 2001년도예산안 2.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질의·답변 〃
12. 13(수) 11 : 00	**제11차 본회의** 1. 2001년도예산안	계수조정
12. 14(목) 11 : 00	**제12차 본회의** 1. 2001년도예산안	계수조정
12. 15(금) 11 : 00	**제13차 본회의** 1. 2001년도예산안 2.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 결 〃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12. 16(토) **11 : 00**	**제14차 본회의**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조례안	 제안설명 〃
12. 17(일)	**공휴일**	
12. 18(월) **11 : 00**	**제15차 본회의**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조례안	 자체심의 〃
12. 19(화) **11 : 00**	**제16차 본회의**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조례안	 질의·답변 〃
12. 20(수) **11 : 00**	**제17차 본회의**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조례안	 의 결 〃

23. 제98회 임시회 (2001. 1. 11 ~ 1. 17)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 11(목) **11 : 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98회 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의 결 〃 보고청취
1. 12(금) **11 : 00**	**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농축산과, 건설과, 도시과)	보고청취
1. 13(토) **11 : 00**	**제3차 본회의**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건축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보고청취
1. 14(일)	**공휴일**	
1. 15(월) **11 : 00**	**제4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자료검토
1. 16(화) **11 : 00**	**제5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질 문
1. 17(수) **11 : 00**	**제6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질 문

24. 제99회 임시회 (2001. 3. 9 ~ 3. 14)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3. 9(금) 11 : 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99회 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결 제안설명 〃 〃 〃 〃 〃 〃 〃
3. 10(토) 11 : 00	**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심의 〃 〃 〃 〃 〃 〃 〃
3. 11(일)	**공휴일**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3. 12(월) **11 : 00**	**제3차 본회의**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심의 〃 〃 〃 〃 〃 〃 〃
3. 13(화) **11 : 00**	**제4차 본회의**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답변 〃 〃 〃 〃 〃 〃 〃
3. 14(수) **11 : 00**	**제5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 결 〃 〃 〃 〃 〃 〃 〃

25. 제100회 임시회 (2001. 4. 20 ~ 4. 24)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4. 20(금) 10 : 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100회 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5. 의원사직서의결의건	 의 결 제안설명 〃 〃 의 결
4. 21(토) 11 : 00	**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자체심의 〃 〃 〃
4. 22(일)	**공휴일**	
4. 23(월) 11 : 00	**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질의·답변 〃 〃
4. 24(화) 11 : 00	**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의 결 〃 〃 〃

26. 제101회 임시회 (2001. 5. 18)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5. 18(금) 10:3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101회 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2.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 결 〃

27. 제102회 임시회 (2001. 6. 22~6. 28)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6. 22(금) 11 : 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102회 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2. 읍면방문및주요사업장점검의건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읍면방문 및 주요사업장 점검**(다사, 하빈)	 의 결 〃 제안설명 의 결 현지점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행감특위
6. 23(토) 10 : 00	**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읍면방문 및 주요사업장 점검**(가창)	 자체심의 현지점검
6. 24(일)	**공휴일**	
6. 25(월) 10 : 00	**읍면방문 및 주요사업장 점검** (화원, 옥포, 논공)	현지점검
6. 26(화) 10 : 00	**읍면방문 및 주요사업장 점검** (현풍, 유가, 구지)	현지점검
6. 27(수) 11 : 00	**제3차 본회의**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질의·답변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6. 27(수) **11 : 0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주요업무보고, 자료제출, 관계인출석요구 등)	행감특위
6. 28(목) **11 : 00**	**제4차 본회의**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 결 〃

28. 제103회 정례회 (2001. 7. 10~7. 24)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7. 10(화) 10: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103회 달성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2.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결 제안설명 〃 〃 〃 〃 〃 〃 〃 〃
7. 11(수) 10:00	**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보고청취
7. 12(목) 10:0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	 행감특위
7. 13(금) 10:00	**행정사무감사실시**(담당업무별 개별감사)	행감특위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7. 14(토) 10:00	**행정사무감사실시**(담당업무별 개별감사)	행감특위
7. 15(일)	**공휴일**	
7. 16(월) 10:00	**행정사무감사실시**(담당업무별 개별감사)	행감특위
7. 17(화)	**공휴일**	
7. 18(수) 10:00	**행정사무감사실시**(질의 · 답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복지위생과, 농축산과, 건설과, 도시과)	행감특위
7. 19(목) 10:00	**행정사무감사실시**(질의 · 답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행감특위
7. 20(금) 10:00	**제3차 본회의** 1. 2000회계년도세입 · 세출결산안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자체심의 〃 〃 〃 〃 〃 〃 〃 〃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7. 21(토) 11 : 00	**제4차 본회의**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자체심의 〃 〃 〃 〃 〃 〃 〃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행감특위
7. 22(일)	**공휴일**	
7. 23(월) 11 : 00	**제5차 본회의**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답변 〃 〃 〃 〃 〃 〃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8.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답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행감특위
7. 24(화) **10 : 00**	**제6차 본회의**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결 〃 〃 〃 〃 〃 〃 〃 〃 〃

29. 제104회 임시회 (2001. 9. 14~9. 20)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9. 14(금) 11 : 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104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9. 공동주택재활용품수집 · 운반민간위탁동의안 10.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등)입안에따른의견청취안	의 결 제안설명 〃 〃 〃 〃 〃 〃 〃 〃
9. 15(토) 11 : 00	**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자체심의 〃 〃 〃 〃 〃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7.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8. 공동주택재활용품수집 · 운반민간위탁동의안 9.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등)입안에따른의견청취안	자체심의 〃 〃 〃
9. 16(일)	**공휴일**	
9. 17(월) **11 : 00**	**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8. 공동주택재활용품수집 · 운반민간위탁동의안 9.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등)입안에따른의견청취안	자체심의 〃 〃 〃 〃 〃 〃 〃 〃 〃
9. 18(화) **11 : 00**	**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자체심의 〃 〃 〃 〃 〃 〃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8. 공동주택재활용품수집 · 운반민간위탁동의안	자체심의
	9.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0.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등)입안에따른의견청취안	〃
9. 19(수) 11 : 00	**제5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 · 답변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5.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7.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8. 공동주택재활용품수집 · 운반민간위탁동의안	〃
	9.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0.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등)입안에따른의견청취안	〃
9. 20(목) 11 : 00	**제6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 결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5.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7.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8. 공동주택재활용품수집 · 운반민간위탁동의안	〃
	9.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0.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등)입안에따른의견청취안	〃

30. 제105회 임시회 (2001. 10. 12~10. 16)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0. 12(금) **11 : 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105회 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 결 제안설명
10. 13(토) **11 : 00**	**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자체심의
10. 14(일)	**공휴일**	
10. 15(월) **11 : 00**	**제3차 본회의**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
10. 16(화) **11 : 00**	**제4차 본회의**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 결

31. 제106회 임시회 (2001. 11. 22~11. 28)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1. 22(목) **11 : 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106회 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의록서명의원선출 2. 주요사업장점검의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포상규정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9. 2001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주요사업장점검**(화원, 옥포)	 의 결 제안설명(의결) 〃 제안설명 〃 〃 〃 〃 보 고 현지점검
11. 23(금) **11 : 00**	**주요사업장점검**(가창, 다사)	현지점검
11. 24(토) **11 : 00**	**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자체심의 〃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3. 대구광역시달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	자체심의
	4.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
11. 25(일)	**공휴일**	
11. 26(월) **11 : 00**	**주요사업장점검**(현풍, 유가, 구지)	현지점검
11. 27(화) **11 : 00**	**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 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답변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구광역시달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	〃
	4.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
	6. 2001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
11. 28(수) **11 : 00**	**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 조례중개정조례안	의 결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구광역시달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	〃
	4.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

32. 제107회 정례회 (2001. 12. 1~12. 20)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2. 1(토) 11 : 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107회 달성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2. 20002년도예산안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 결 제안설명 〃
12. 2(일)	**공휴일**	
12. 3(월) 11 : 00	**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복지위생과)	보고청취
12. 4(화) 11 : 00	**제3차 본회의** 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농축산과, 건설과, 도시과)	보고청취
12. 5(수) 11 : 00	**제4차 본회의** 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공원녹지과, 건축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보고청취
12. 6(목) 11 : 00	**제5차 본회의** 1. 2002년도예산안	예산심의 (실과소별)
12. 7(금) 11 : 00	**제6차 본회의** 1. 2002년도 예산안	예산심의 (실과소별)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12. 8(토) 11 : 00	**제7차 본회의** 1. 2002년도예산안	자체심의
12. 9(일)	**공휴일**	
12. 10(월) 11 : 00	**제8차 본회의** 1. 2002년도예산안	자체심의
12. 11(화) 11 : 00	**제9차 본회의** 1.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2. 2002년도예산안	자체심의 (총괄)
12. 12(수) 11 : 00	**제10차 본회의** 1.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2. 2002년도예산안	질의·답변 〃
12. 13(목) 11 : 00	**제11차 본회의** 1. 2002년도예산안	계수조정
12. 14(금) 11 : 00	**제12차 본회의** 1. 2002년도예산안	계수조정
12. 15(토) 11 : 00	**제13차 본회의** 1.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2. 2002년도예산안	의 결 〃
12. 16(일)	**공휴일**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12. 17(월) **11 : 00**	**제14차 본회의** 1.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 조례안	 제안설명 〃
12. 18(화) **11 : 00**	**제15차 본회의** 1.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 조례안	 자체심의 〃
12. 19(수) **11 : 00**	**제16차 본회의** 1.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 조례안	 질의·답변 〃
12. 20(목) **11 : 00**	**제17차 본회의** 1.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 조례안	 의 결 〃

33. 제108회 임시회 (2002. 1. 11 ~ 1. 18)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 11(금) **11 : 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108회 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 결 〃 제안설명
1. 12(토) **11 : 00**	**제2차 본회의**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농업기술센터)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보고청취 자체심의
1. 13(일)	**공휴일**	
1. 14(월) **11 : 00**	**제3차 본회의**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회계과, 복지위생과,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농축산과, 건설과, 도시과)	 보고청취
1. 15(화) **11 : 00**	**제4차 본회의**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공원녹지과, 건축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보고청취 질의·답변 의 결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1. 16(수) **11 : 00**	**제5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자체심의
1. 17(목) **11 : 00**	**제6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자체심의
1. 18(금) **10 : 00**	**제7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질문·답변

34. 제109회 임시회 (2002. 3. 12~ 3. 18)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3. 12(화) **11 : 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109회 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 결 제안설명 〃 〃 〃 〃 〃 〃 〃
3. 13(수) **11 : 00**	**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자체심의 〃 〃 〃 〃 〃 〃 〃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3. 14(목) 11 : 00	**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8.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자체심의 〃 〃 〃 〃 〃 〃 〃
3. 15(금) 11 : 00	**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8.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질의·답변 〃 〃 〃 〃 〃 〃 〃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3. 16(토) **11 : 00**	**제5차 본회의**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3. 17(일)	**공휴일**	
3. 18(월) **11 : 00**	**제6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7.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 결 〃 〃 〃 〃 〃 〃 〃

35. 제110회 임시회 (2002. 4. 26~5. 1)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4. 26(금) 10: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110회 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 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읍면방문및주요사업장점검의건 **읍면방문 및 주요사업장점검**(가창, 다사, 하빈)	 의 결 제안설명 제안설명 (의결) 현지점검
4. 27(토) 10:00	**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 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자체심의
4. 28(일)	**공휴일**	
4. 29(월) 11:00	**읍면방문 및 주요사업장점검**(화원, 옥포, 논공)	현지점검
4. 30(화) 11:00	**읍면방문 및 주요사업장점검**(현풍, 유가, 구지)	현지점검
5. 1(수) 11:00	**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 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답변 의 결

36. 제110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 (2002. 4. 26~ 5. 2)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5. 1(수) **11 : 00**	**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110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의 결 제안설명 자체심의 〃 〃 의 결
5. 2(목) **11 : 00**	**제4차 본회의**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선 임 질의·답변 의 결 〃 〃 〃

37. 제111회 임시회 (2002. 6. 25~ 6. 27)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6. 25(화) **11 : 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111회 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의 결 제안설명
6. 26(수) **11 : 00**	**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자체심의
6. 27(목) **11 : 00**	**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 폐원식	의 결

제3절 의안처리상황

1. 총 괄

구분 / 회기별		처리안건 계	예산·결산	조례안 제정	조례안 개정	조례안 폐지	동의안	건의안	군정질문	보고청취	도시계획의견	감사조사	일반안기타	청원	부결안건	유보안건
합 계		266	21	22	135	8	3	4	6	12	3	4	48		1	3
1998	76회 임시회	3								1			2			
	77회 임시회	6	1		3				1				1			
	78회 임시회	5		2	3											
	79회 임시회	10	2	2	3								3			
	80회 정기회	20	2	3	7	1				1		1	5			1
1999	81회 임시회	5	1	1	1				1	1						
	82회 임시회	9		1	5	2							1			
	83회 임시회	11		1	7	2							1			
	84회 임시회	6		1	2			1	1	1						
	85회 임시회	8	2	2	3		1									
	86회 임시회	11		1	6	1					1		2			
	87회 정기회	13	2		5	1				1		1	3			
2000	88회 임시회	2							1	1						
	89회 임시회	11		1	8			1					1			
	90호 임시회	2						1					1			
	91호 임시회	8		1	5		1						1			
	92회 임시회	7	1		3								3			1
	93회 정례회	3	1							1		1				
	94회 임시회	7		1	5								1			
	95회 임시회	13			12	1										
	96회 임시회	14			12								2			
	97회 정례회	13	2		9						1		1		1	
2001	98회 임시회	3							1	1			1			
	99회 임시회	7	1		6											1
	100회 임시회	4			2								2			
	101회 임시회	1											1			
	102회 임시회	3											3			
	103회 정례회	13	2		8			1		1		1				
	104회 임시회	10		1	6		1				1		1			
	105회 임시회	1	1													
	106회 임시회	8		1	3					1			3			
	107회 정례회	8	2	2	2					1			1			
2002	108회 임시회	4			1				1	1			1			
	109회 임시회	8	1	1	4								2			
	110회 임시회	8			4								4			
	111회 임시회	1											1			

2. 주요안건 처리결과

회기별	안 건 명	처리결과
제76회 임시회	○ 의장부의장선거의건	선 거
	○ 199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선 임
	○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보고청취
제77회 임시회	○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가 결
	○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원안가결
	○ 19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제78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수정의결
	○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79회 임시회	○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승 인
	○ 읍면방문및사업장점검의건	방문및점검
	○ 대구광역시달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1998년제2회추가경정예산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안	〃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승 인

회기별	안 건 명	처리결과
제80회 정기회	○ 1999년도당초예산안	수정가결
	○ 1999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달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제2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지역정보화추진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폐지 조례안	가 결
	○ 제2기 달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 인
	○ 1998중기지방재정계획	〃
	○ 1998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보고청취
	○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 인
	○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	〃
	○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81회 임시회	○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가 결
	○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대구광역시달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	원안가결
	○ 1999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보고청취
	○ 군정질문의건	질 문

회기별	안 건 명	처리결과
제82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 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대구광역시달성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 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달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
	○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가 결
제83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수정가결
	○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대구광역시달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계및농기구대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	현지점검
	○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 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회기별	안 건 명	처리결과
제84회 임시회	○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군정질문의건 ○ 위천국가산업단지조기지정및구지지방산업단지개발촉구건의안	보고청취 수정가결 가 결 원안가결 가 결 채 택
제85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민간위탁사무동의안 ○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도로)변경결정및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대구광역시달성군장학회육성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원안가결 동 의 의결채택 승 인 원안가결 원안가결 〃
제86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 〃 〃 〃

회기별	안 건 명	처리결과
제86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읍면방문및주요사업장점검안	방문및점검
	○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승 인
제87회 임시회	○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가결
	○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원안가결
	○ 1999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보고청취
	○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수정가결
	○ 대구광역시달성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1999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보고청취
	○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채 택
	○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제88회 임시회	○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가 결
	○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보고청취
	○ 군정질문의건	질 문
제89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가 결
	○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회기별	안 건 명	처리결과
제89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가 결
	○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
	○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 대구지하철1호선연장건설건의안	〃
제90회 임시회	○ 쌍용자동차구지산업단지조기개발촉구건의안	가 결
	○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선 임
제91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 달성군위생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	〃
제92회 임시회	○ 주요사업장현지점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원안가결
	○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

회기별	안 건 명	처리결과
제93회 임시회	○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원안가결 보고청취 채 택
제94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 〃 〃
제95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종자피해처리센터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 〃 〃 〃 〃 〃 〃 〃 〃 〃

회기별	안 건 명	처리결과
제96회 임시회	○ 주요사업장점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2000년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
제97회 정례회	○ 2001년세입세출예산안	수정가결
	○ 2001년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 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구수거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

회기별	안 건 명	처리결과
제97회 정례회	○ 2001년도예산안수정안(1) ○ 2001년도예산안수정안(2) ○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 결 가 결 원안가결 〃 〃 〃 〃
제98회 임시회	○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군정질문의건	원안가결 보고청취 질 문
제99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 〃 〃 〃 수정가결 원안가결
제100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 의원사직서의결의건 ○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	원안가결 〃 〃 부 결 원안가결
제101회 임시회	○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선 임

회기별	안 건 명	처리결과
제102회 임시회	○ 읍면방문및주요사업장점검안	원안가결
	○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승 인
제103회 정례회	○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원안가결
	○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보고청취
	○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교도소이전촉구건의안	채 택
	○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제104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 공동주택재활용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	동 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등)입안에따른의견청취안	보고청취
	○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원안가결

회기별	안 건 명	처리결과
제105회 임시회	○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제106회 임시회	○ 주요사업장점검의건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포상규정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승 인
	○ 2001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보고청취
제107회 정례회	○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가결
	○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보고청취
	○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달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제108회 임시회	○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원안가결
	○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보고청취
	○ 군정질문의건	질 문
	○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회기별	안 건 명	처리결과
제109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
	○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 인
제110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읍면방문및주요사업장점검안	〃
	○ 의사일정변경의건	〃
	○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
	○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 제110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
	○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제111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제4절 군정질문 및 답변

1. 총괄

○ 질문 의원수 : 36명
○ 질 문 건 수 : 170건

2.군정질문 및 답변

[제77회 임시회]


이경식 의원

○ 계속되는 강우로 인한 전염병 발생우려가 높은바 우리군의 넓은 면적에 상응한 방역활동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 답변(보건소장) : 방역장비는 방역차, 분무기 등 154대가 있으며 군보건소에서 1회 3개 읍면씩, 주 6회에 걸쳐 9개 읍면을 순회 방역하고, 읍면에서는 차량방역이 어려운 뒷골목 등 주 2회 이상 연막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음.

○ 현재 출장시 업무용으로 직원 개인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유류 및 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필요이상의 관용차를 대폭 줄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관용차 운영 방법은?

▶ 답변(재무과장) : 차량 74대, 운전기사 55명으로 19대의 잉여차량이 있으나 산불진화 등 특수업무용이며 직원 자가용 차량에 대한 지원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재는 출장여비로 활용하고 있음.

○ 현재 대구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바, 내용 중 화원 설화, 성산지구를 대구시공산품유통센타 시설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지주조합을 구성, 구획정리사업으로 실시할 의향은?

▶ 답변(도시과장) : 본지역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수차례 건의한 바있으나 대구 남부지역내 공업단지 유치시 공산품유통센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청회를 거쳐 기본계획 승인 고시된 상태이므로 용도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약산온천입구에 마을주민 자력으로 설치한 버스승강장이 진입로 확장공사로 철거되어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바 민원을 해결할 대책은?

▶ 답변(도시과장) : 온천진입도로는 농로 6M를 30M로 확장 개체시 기존 버스승강장을 철거하였으나, 이 지역은 사고다발지역으로 시야 확보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승강장을 설치 검토중에 있음.

○ 각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등은 범죄예방 등 주민생활에 많은 편리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장이 나서 방치되고 있는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 답변(도시과장) : 방범등은 전체 3,589등으로 년간 신설 및 보수비가 8천만원 정도 투입되고 있으며, 유지관리를 위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있으나 예산부족 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군차원에서 특별대책을 세워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겠음.



김판조 의원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행정의 수반으로서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당연히 노력해야 하며, 행정편의 위주의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취임사에서 밝힌 「행정실명제」와 관련한 구상은?

▶ 답변(군수) : 행정실명제는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정책의 입안부터 종료시까지 관련공무원의 실명제를 도입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풍토를 조성코자 하는것으로 공문서, 고지서, 공사감독 등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음.

○ 자치행정의 감사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의회의 본래적 임무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집행기관에 있는 감사기능을 의회산하로 옮기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용의는?

▶ 답변(군수) :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사기능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어,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함.

○ 각 실과소의 업무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획기적인 기획감사실 운영구상에 대해 의지와 결단성 있는 견해는?

▶ 답변(군수) : 실과소·읍면에 대한 확인 풍토와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전 공직자가 군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공직풍토 쇄신에 최선을 다해 전 공직자가 일사불란하게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음.

○ 최근 하천점용허가로 인한 행정행위의 잘못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700여 공무원의 행정실무 교육이 시급한 바 최근에 총괄적으로 실시한 교육사례는?

▶ 답변(군수) : 중앙단위교육에 44개과정 47명, 시교육원에 27개과정 75명, 그리고 자체교육으로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구분 실시하였으며 직원 스스로 연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능률 향상은 물론 군민의 편의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음.

○ 지난 업무보고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철거방침의 건축과와 달리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의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 양성화하겠다는 것은 관련부서와 협조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앞으로의 군정 조정에 대한 방안은?

▶ 답변(부군수) : 건축과의 불법건축물 단속 및 철거는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것이며, 지역경제과에서 양성화 하겠다는 것은 허가를 득하였으나 건축물의 용도위반 등으로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시행하는 것으로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아님

○ 직할하천내 이중 점용허가에 있어 행정착오로 인한 허가 취소를 하였는바 이에 따른 수허가자의 배상요구시 대처방안과 하천점용허가권을 읍면에 재위임한 것을 철회하여 군에서 관리할 용의는?

▶ 답변(부군수) :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현재 청문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앞으로의 법적 소송에 따른 결과에 따라 배상에 대한 조치를 하겠음. 그리고 허가권에 대한 철회는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후 위임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규정을 즉시 폐지 하겠음.

○ 논공 결핵요양원 건립에 따른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었음에도 건축허가시 관련 부서의 협의 없이 처리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지역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이는 부서간 조정 및 총괄관리 등이 잘되지 않은 것으로 기인되는바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대책은?

▶ 답변(부군수) : 본 대지는 준공업지역으로 입주계약체결과 기본재산처분 허가 등을 득하였으므로 건축허가시 협의없이 처리하였으나 앞으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민원발생 예상시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음.

○ 그린벨트 내 무단 형질변경과 무허가 건축물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의법조치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공신력을 잃는 것으로써 불법 행위 중 고발된것으로 원상회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 대집행계획과 대책은?

▶ 답변(부군수) : 군전체 면적의 45.5%가 그린벨트로 '97년 이후 31건 적발하여 30건 원상복구하였으며 1건은 대집행 중에 있음.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은 1,276건으로 급속한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담당구역별로 매일 순찰 지도단속하고 있음.

○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복합 민원처리제도 및 방법에 대한 설명과 금년도 2월부터 시행한 민원절차법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방안은?

▶ 답변(부군수) : 민원인이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기관이나 부서로부터 처리해야 하는 복수의 인허가 민원서류를 접수받아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써, 방법으로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음. 민원절차에 대하여는 지난 4월 10일 법률개정에 따라 직무교육책자 발간 등으로 홍보하고 있음.

○ 관내 구획정리사업과 아파트 건립업체 부도에 따라 건물이 흉물처럼 되어 있을 뿐아니라 입주계약자는 자신도 모르게 건설회사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은행부채를 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답변(부군수) : 건설업체의 부도로 민원이 발생된 옥포 본리와 논공 금포지구의 구획정리사업, 그리고 다사 삼산 3·4차, 보성2차·강창하이츠, 화원한샘·삼주, 옥포 한마음·제림·청구푸른마을, 논공 성원임대아파트 10개 단지 5,400세대로써 경기침체로 인한 대행업체가 없어 애로를 겪고 있으나 조속 재개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기획감사실은 실과소별 업무에 대하여 상호보조를 맞추어 적기에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연결 조정하여 공동목표인 달성군의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도록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의회가 요구하는 강도 높은 조정 및 통제기능을 수행할 수단과 의지는?

▶ 답변(기획감사실장) : 행정조직은 현지사정과 주민의 성향 등 변화하는 다양한 욕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획일적인 조정통제는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측면에서 다소 고려되어야 하며 자율성을 보장해 나가면서 조정 통제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축산경쟁력 사업에 있어 축산농가 현황과 수혜대상자의 비율은?

▶ 답변(농축산과장) : 총 농가수 7,259호 중 35%인 2,529호가 축산농가로 '94 년부터 시행된 수혜자는 한우 62호, 젖소 72호, 돼지 9호, 닭 9호 이며, 기업농 육성방안에 따라 전업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있음.

○ 식량의 증산도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한가지 방법으로 보는데, 농작물 경작이 가능한 농지를 휴경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현장위주의 농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통합농지법에 의한 휴경농지에 대한 영농계획과 대책은?

▶ 답변(농축산과장) : 취득한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17건 21필지 29,598㎡로써 이미 가처분 했으며 휴경논의 생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1996년도 조사된 휴경논 면적은 105.4ha 로 벼재배추진을 위하여 영농대책을 적극 권장하여 식량생산으로 연결 추진하고 있음.

○ 농토개량을 위하여 퇴비증산에 온 농민이 힘을 쏟았으나 요즈음은 금비만 사용하고 있어 이는 행정지도가 미흡한데 기인한다고 보는데 퇴비생산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답변(농축산과장) : 매년 농경지 지력 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공급, 깊이갈이, 유기물시용 등 농토배양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퇴비생산분야에 공공근로 사업의 연계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시행토록 검토하겠음.,



도기태 의원

○ 선조의 얼을 받아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발굴과 연구 보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바 주요 문화재 현황과, 최근 옛문화재가 도굴꾼에 의해 훼손 · 도굴된 사례 그리고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 답변(문화공보실장) : 우리군의 주요문화재 및 유적지는 보물 4점, 중요민속자료 2점, 지정문화재 26점을 소재하고 있으며, 도난사례는 용연사 사천왕상 1기, 도동서원의 용머리상 3개를 도난당하였으나 회수한 사실이 있음. 또한 도난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순찰과 문화재 소유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등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 보조금 지원단체에 있어 자유총연맹 군지부의 경우 타구청보다 적게 지원이 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바 보조금을 증액지원할 용의는?

▶ 답변(문화공보실장) : 타구청보다 연간 3백만원 정도 적은 9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증액문제는 군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적극 검토하겠음.

○ 다사 쓰레기매립장의 오폐수와 악취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바 매립장 확장계획과 인근주민의 주거환경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은?

▶ 답변(청소과장) : 다사 쓰레기매립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2005년 5월까지 반입한계이며 현 부지에서 24만평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으며,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성서 택지 지구에 3,112평의 집단이주 부지를 마련해 놓고 있음.

○ 지구환경 변화로 기상이변이 전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듯 폭우로 인한 재산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바 자연재해예방에 따른 피해방지 대책은?

▶ 답변(건설과장) : 재해예방 시설물은 배수문 66개소와 배수장 21개소, 저수지 12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시점검과 132개 수방단을 조직 운영함으로써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음.

○ 기존의 세천 잠수교는 강우시 범람으로 통행 불편 뿐만 아니라 교량이 협소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금년도 예산에 세천교 가설공사에 1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대한 앞으로의 추진일정과 조기 발주할 용의는?

▶ 답변(건설과장) : 세천교 가설공사는 군도 정비사업에 따른 위험교량 재가설사업으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나 대구도시계획 재정비계획상 주변여건에 따라 신설도로 노선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용역 중지중에 있으며 재정비 입안이 공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99년에 시공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이정재 의원

○ 현재 대기업의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아 중앙정부의 당초계획이 많이 수정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의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의 수령현황과 교부 전망은?

▶ 답변(부군수) : 7월말 현재 지방교부세 52%, 지방양여금 26%, 국고보조금 49%, 시비보조금 9% 교부되었음.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은 지난 4월까지 추가로 이미 삭감 조정되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조정 반영하였으므로 7월 말 현재 교부실적은 다소 낮은 편이나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말까지는 전액 교부될 것으로 판단됨.

○ 매년 주요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에 보조금신청을 함에 있어 의회와 협의를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하며 '99년도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면 그 현황은?

▶ 답변(부군수) : 보조금신청 현황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8억8천8백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에 7천8백만원, 토양개량사업에 8천 5백만원, 저소득지원 및 의료보호 지원사업, 보건사회분야 등에 66억6천4백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억5천만원, 농촌지도사업 1억9천3백만원, 산림분야 3억2천6백만원, 달성도서관 시설확충 및 도서구입비 1천2백만원 등임.

○ 현재 추진중에 있는 가창교에서 용계삼거리까지의 도로포장 사업이 준공된다 하더라도 삼거리에서의 병목현상으로 도로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준공예정일과 교통소통 대책은? 또한 용계교 확장공사가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않은 사유와 추진일정은?

▶ 답변(부군수) : 가창교~용계삼거리 도로는 편입토지 보상 및 지장물철거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99년 1월 준공예정으로 공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교통의 완전소통을 위해서는 팔조령까지 건설되어야 할 것이며 본사업도 건설교통부에서 설계용역 중이므로 '99년부터 추진할 것으로 판단됨.

○ 가창면 정대리의 국가중요민속자료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조길방 가옥의 관리사 건축이 되지 않아 주거의 불편을 겪고 있는바 민원을 해결할 방안은?

▶ 답변(부군수) : 민원해결을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건의, 지정문화재 해제신청 등을 하였으나 불가통보를 받았으며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신축이 제한되어 법

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동일 읍면동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음.


이현근 의원

○ 군수께서 취임 전후 지역의 언론과 중앙지 인터뷰를 통해서 임기내 군청사의 관내 이전을 실현하겠다는 소신을 피력하셨는데, 군청이전 문제는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조사와 연구검토 없이는 오히려 지역간 분열을 조장하고 군민화합을 저해할 요인이 많다고 사료되는바 이에대한 진솔한 의견은?

▶ 답변(군수) : 군청이전 문제의 공론화는 이미 공약한 바 있기 때문에 공론화의 첫 발을 내디뎠다고 보고 군청이전 대상지역을 선정한 후 토지매입과 건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공신력있는 연구기관의 용역과 주민공청회, 의회와의 협조로 대상지를 선정하겠으며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부지매입이나 건축문제를 경제난과 연계하여 시기의 결정을 탄력적으로 정해나갈 계획임.

○ 다가오는 21C는 문화의 세기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군정방침 중 향토문화 진흥은 참으로 21C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방침이라 할 수 있겠으며, 정신적 윤리적인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 매년 많은 문화행사와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만 연례적인 지원행사 이외에 향토문화진흥을 위한 방안은?

▶ 답변(군수) : 군민의 날 문화예술행사, 참꽃제 행사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검소하면서도 알차고 내실있는 문화축제가 되도록 할 계획이며, 8월말경부터 희망자 200명에 대한 문화유적지 순례 등 향토문화 진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임.

○ 현재 우리 지방재정은 세입면에서 국가재정의 의존도가 높아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바 우리군에서도 예산을 안전성과 유동성 위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자금흐름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이자수익으로 보완하는 등 자금운용에 대한 구상과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접목할 방안은?

▶ 답변(세무과장) : 본군의 재정자립도는 54%로 인근 자치단체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현재 공금예금액은 239억 8천 7백만원으로 집행잔액 215억원은 금고우대, 정기예금 등으로 융통성있게 신축적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목표대138%인 12억3천3백만원을 올려 경영행정 차원에서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음.

○ 경기침체와 금융, 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로 대구의 실업률이 8.1%로 전국광역자치단체 중에서 4번째이고, 6월 전국의 실업률은 20년만에 최고치인 7%로 실업자가 153만여명에 이르고 있는바 현재 우리군의 실업자 현황과 향후 실업자 고용증대를 위한 계획과 IMF 이후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군의 물가안정 대책과 건전소비풍토 조성을 위한 방안은?

▶ 답변(지역경제과장) : 우리군의 실업자는 약 4천명으로 4.9%의 실업률로 전국 7%, 대구광역시 8.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조건이며, 실업자 고용증대를 위하여 공공근로참여 봉사사업, 우수기능기술인 양성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사업확대 실시 등을 활성화하여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가격파괴 시범지역 운영 등으로 내수경기의 활성화와 민간단체를 통한 경제살리기 통장갖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건전한 소비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이선용 의원

○ 도농복합형의 우리 달성군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살기좋은 복지농촌을 이룩해 내겠다는 의지를 군수의 공약으로 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현재 농촌지도소를 대구시 농촌지도소와 합병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도농복합형의 달성군을 균형있는 복지농촌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농정계획과 구상은?

▶ 답변(군수) : 도시근교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 도시근교농업 형태로 발전시켜 생산 유통 및 서비스 부분까지 확대 진출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노력하고, 특히 시설

채소 작목인 과채류와 신선채소위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첨단 유기농법으로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농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현 농촌지도소 부지에 200평 규모의 판매장을 신축 달성군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하여 판로개척에 적극 대처할 계획임.

○ 정부가 UR협상 타결 후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농법인 등에 지원한 42조원에 달하는 저리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중 상당액이 타용도로 불법전용된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는바 우리군의 영농법인 지원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대한 대책은?

▶ 답변(군수) : '93년부터 금년까지 10개 영농법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분야별로 분류하면 현재 채소분야 7개, 농산물가공분야 1개, 축산물 판매분야 2개소로 현대화 비닐하우스용 채소작물재배, 맥류 가공제품인 보리건빵 시판, 한우전문판매점이 지역에서 알차게 운영되고 있어, 운영상 문제점은 없으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음.

○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된지 3년5개월이 지났으나 도시개발은 전무한 상태로, 구획정리사업 미승인, 도시계획시설 미승인, 건축제한 등 오히려 인근지역보다 개발이 둔화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이것은 도시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구역내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소방도로 6~8M 도로의 지정현황과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된 실적은? 또한 최근 도로가 개설되어 소방도로가 필요없는 부분과 조정이 되어야 할 현황은?

▶ 답변(도시과장) : 관내 소방도로 6~8M도로 지정은 총 15,105개 노선 약 229㎞로써 추진실적은 13%정도인 31.8㎞로 저조하며, 도로개설로 인한 소방도로가 필요없게 된 경우는 현재까지 없으며 폐쇄결정 신청은 아직 없으나 군 전역의 소방도로에 대하여 재정비시 계획도로 결정고시되면 대로와 소방도로 연결점의 주변 소방도로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군 전역의 6M소방도로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하빈 동곡의 국도 30호선 확장시 국토관리청의 협의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지 않은 사유지 매입부분에 대한 지금의 토지형태와 '95년도에 계획성 없는 토지매입으로 인한 지방재정에 있어 성과 분석은?
그리고 약 4년간 획기적으로 실천한 도시계획사업이 있다면?

▶ 답변(도시과장) :
- 사유지 매입부분의 토지형태는 주변지역의 성토에 따라 저지대로 되어 있으며, 하빈 동곡도로와 국도와의 연결지점은 도시계획 고시에 T자형으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청에서 입체화 요구에 따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어, 도로편입지에 대한 보상만 하고 계속 추진치 못하고 있음.
- 4년동안의 실적은 다사 서재도로, 화원유원지 진입도로, 구지 쌍용자동차 진입도로 등에 약 500억원 투자되었음.

○ 관내 고속도로 인근 30M내 식당, 공장 인근 대로변 토지의 무단형질 변경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주민들에 대한 사전계도와 행정적으로 대응치 못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 방안은?

▶ 답변(도시과장) : 관내 대로변 토지의 무단형질 변경에 대하여 읍면장·실과소장 합동회의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조한 바 있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한차례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 촉구하겠음.

○ 유가사 집단시설지구 사업은 4년전부터 계획하여 현재 척진교를 가설 준공한지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유가사 집단시설지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계획성 없는 예산집행으로 자금을 사장시킨 것에 대한 책임과 앞으로의 조성계획은?

▶ 답변(도시과장) : 유가사 집단시설지구 토지 소유자들의 낮은 보상가라는 이유로 토지보상금 미수령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IMF로 인한 재정형편상 강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원확장 예정과 더불어 도립공원으로 승격시켜 시비투자를 촉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우리군이 '95년 대구광역시로 편입될 당시 군민의 기대와는 달리 3년이 지나는 동안 가슴에 부풀은 꿈과 희망은 모두 사라져 버리고 현재 아픈 상처만 남아있는 느낌으로, 그동안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대구도시기본계획 수립이라는 미명아래 전지역에 대한 건축 등 행위제한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개발자체가 정체상태에 있는 바 현재 진행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확정고시 전이라도 녹지 지역을 조속히 해제할 의향과 앞으로의 전망은?

▶ 답변(도시과장) : 도시계획재정비는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공청회의 절차를 거쳐 지금 시의회의 소위원회 및 본회의의 의결로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사안으로 녹지지구의 해제는 재정비 전에는 불가하며 본 재정비가 고시되어야 행위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판단됨.

○ 군정업무보고에 의하면 관내 각종 단체가 22개로 그중 9개 단체가 여성단체이며, 이러한 단체의 구성원을 보면 한사람이 여러단체에 중복가입되어 있어 지역안정에 역효과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며 사회전반의 구조조정에 맞춰 2~3개정도의 여성단체로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용의는?

▶ 답변(사회복지과장) : 달성군은 현재 9개 여성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무보수 자원봉사자로서 여성단체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중에는 1단체 이상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건전한 가정의 바탕위에서 여성의 사회봉사활동은 장려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여성단체 조직정비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토록 부녀사업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음.

[제81회 임시회]



이팔호 의원

○ 위생처리장 운영에 따른 우리군 위생처리장의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 4억여원을 포함 4년간의 예산이 16억 6천여만원이 군비로 충당되어 열악한 군재정을 더욱 어렵게하고 있는바 타구청은 시종합분뇨처리장에서 시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아직까지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 답변(군수) :

— '89년도에 1일 처리량 35㎘의 시설규모로 설치운영하여 오다가 전량 처리불가로 '94년도에 65㎘로 규모를 확장 하였으며, 이에따른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기존 반입량 35㎘를 제외한 30㎘는 '97년 1월에 달서천 환경사업소와 서부 수질환경사업소에 반입승인을 받아 처리비를 연간 1억원 정도 절약해오고 있음.

— 앞으로의 재정지원 요구문제에 대하여는 시와 협의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 '98년도 신생아 출생비율은 얼마며 임산부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보건진료소의 진료종목과 연간진료 실적은?

— 보건진료소의 폐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답변(보건소장) : 우리군의 '98년도 남녀출생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가 120.9명으로 '97년도 대구광역시 전체평균 111.7명, 전국평균치 108.4명보다 높습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읍면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산부 638명 전원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 화요일은 보건소에서 첫째와 셋째 화요일은 지소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여오고 있으며, 이동 산전검사와 편안한 분만을 위한 라마즈 분만법 실습, 그리고 태교방법, 태아 성감별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의원

○ 비슬산 자연휴양림은 비수기인 동절기에 얼음동산을 만들어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바 계절별로 특색있는 시책으로 자연을 만끽할수 있는 종합 휴식처로 만들 구상은?

▶ 답변(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 비슬산은 계절마다 특수한 얼굴로 시민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고 있으며, 특히 봄에는 수많은 야생화가 피고 여름에는 울창한 숲, 맑은 공기, 그리고 가을과 겨울 사계절이 모두 적합하므로 우리 농촌의 풍경과 어울려 고향의 정취를 느낄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음.

○ 주차장 부족으로 많은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는바 신설주차장이 완공되기까지 농지를 일시전용하여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편의를 제공할 의향은?

▶ 답변(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 임시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자연휴양림은 모든 시민의 휴식처로 자리매김 되었다고 생각하며 휴양림 소재 유가면 주민과 행정의 최말단 조직인 리 · 반장에게 보상 및 사기앙양 차원에서 휴양림 무료개방할 용의는?

▶ 답변(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 리 · 반장의 무료입장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운영지침에 의거 불가하나 리 · 반장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당일 무료 입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화원읍사무소 전정에 옛 성현들의 공덕비가 방치되고 있어 보존관리가 시급한바 화원유원지나 명곡택지개발 지구내 소공원에 이전설치 한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전시기 및 방법에 대한 견해는?

▶ 답변(문화공보실장) : 화원읍사무소내 선정비 등이 4기가 유존 하고 있으며, 금년 1월에 향토문화유적 일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문헌을 통한 학술조사 및 현지조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군전체에 소재하고 있는 공덕비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임.

○ 자동차 10부제 운행에 따른 혜택이나 행정지도 및 홍보가 없어 실효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방적 시행에 따른 행정불신만 초래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시행중지할 용의는?

▶ 답변(지역교통과장) : 교통지도단속이라든지 각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10부제운행에 대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나 자율실천 관계로 참여도가 낮은 것이 사실인바 중앙정부의 지시와 일부 주민의 호응을 뒷받침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10부제 운행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금년도에 교통시설물이 경찰관서에서 행정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른 관리에 대한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답변(지역교통과장) : 교통시설물 관리에 대한 업무가 생소하여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걱정이 앞서지만 조직관리 부서에 인원 증원 요청과 함께 전직원이 심사숙고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음.

○ 각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이 잦은 고장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할뿐 아니라 계절에 따른 자동점멸기의 시간을 조절치 않아 초저녁이나 아침에도 계속 켜져있어 관리대책이 시급한바 부품재료와 전기수리기술자를 고용하여 9개읍면 전체를 총괄 군에서 운영할 용의는?

▶ 답변(도시녹지과장) : 우리군에 설치된 보안등은 3,731등으로 각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에 문제점이 많아 금년 3월부터는 군에서 일괄 단가입찰을 하여 규격자재 사용과 수시점검을 하여 소등과 고장 방치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옥연지 보수공사에 대한 향후계획과 금년도 재해예방의 구체적 대책은?

▶ 답변(건설과장) : 옥연지 보수공사는 우선 낙동강변 우암양수장부근에 임시양수장을 설치할 계획인 바 금년에는 현재 시행중인 공공시설부문 수해 복구사업을 우수기 전인 5월말까지 완료하여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낙동강 및 금호강으로 유입되는 현풍천, 화원 천내천, 하빈천, 가창 신천 등 4개 주요하천에 대하여도 사업비 12억을 투자하여 제방신설 또는 보강하고 기타 재해에 취약한 소하천정비와 하천 유지관리 등에도 18억원의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음.



김판조 의원

○ 불법건축물 단속 현황을 보면 '98년 말 현재 총 1,664건으로 1,107건은 정비하였으나 557건의 무허가 건축물이 잔존하여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과 이행강제금 115건의 1억 3,035만4천원 중 60건 3,879만5천원 징수로 35%로써 실적이 저조한 사유 및 징수대책은?

▶ 답변(건축과장)

- 무허가 건축물은 단속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최소한 되도로 지도하고, 철거시 충분한 계고로 오해가 없도록 하겠음.
- 이행강제금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징수실적이 낮으며 이를 위하여 재산압류 등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음.

○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인 정기이동 순회 건축상담제 운영에 있어 세부적인 실시 방법은?

▶ 답변(건축과장) : 이해하기 어려운 건축행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읍면 이동순회 상담하여 궁금증을 풀어주고 그 대상은 관내 건축담당자와 주민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격월 수요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 24건에 8,200만원을 부과 하였으나 6건에 7,700만원 징수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바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은?

▶ 답변(민원봉사과장) : 4건에 2억6,500만원은 납기미도래로 실제 체납액은 14건에 5억 4천만원으로써 체납된 납세자에 대하여 압류 등 조치를 취하여 놓았으나 IMF로 인한 경기불황과 압류순위 최하위 등 거의 부도가 난 상태로 징수가 불투명하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시범지역으로 논공읍을 대상으로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방향은 어떠하며 현 시행방법과 혼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답변(민원봉사과장) : 새주소 부여사업은 도로변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체계로 도시정보 효율적 체계적 관리로 행정능률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지적체제와의 혼동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시행의 필요성과 활용방법등을 홍보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도기태 의원

○ 해마다 새해가 되면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근 군에 비하면 모든 여건이 좋은데도 총소득과 가구당 소득이 낮은 것은 교육의 성과가 미흡하지 않았나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소장의 견해는?

▶ 답변(농업기술센터소장) : 영농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관의 자질을 함양코자 자체교육 실시로 새로운 교육에 힘쓰고, 본군은 도시권확장에 따른 영농규모의 축소와 지가상승에 따라 인근 군에 비해 농업기반이 취약함. 따라서 본군의 도시근교의 특수성을 살려 관광자원과 연계한 전문기술을 보급시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음.

○ 농업기술센터에서 단감, 배 등 농가소득원이 되는 유실수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꽃잎, 열매 등으로 술 또는 약용으로 다양하게 쓰이는 매실나무도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장의 견해는?

▶ 답변(농업기술센터소장) : 매실나무는 단경기 햇과류 과종으로 경제성이 낮고 최근에는 중국산 수입으로 가격등락이 크고 불안정하여 시장성이 빈약하나 시험연구기관과 주산지역 재배사례 등의 의견을 듣고 연구검토하여 농가에 확대보급토록 하겠음.

○ 1995년부터 시작된 오이수출단지 육성책은 매년 시비와 군비를 오이농가에 지원하면서 오이수출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왔으나 예산지원에 따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타품목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 될 수 있는바 오이수출 농가의 자생력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은?

▶ 답변(농업기술센터소장) : 수출작목 중 가장 수요가 크고 경제성이 높은 작물이 오이이며, 구지는 단지형성조건이나 재배기술의 오랜 경험에 의한 비법이 있고 수출농업에 참가하는 열의가 높아 지원을 중단했을 경우 자생력에 대해서는 그간의 경험으로 보아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경비의 가중에 따른 부담으로 계속 수출이 의문시 되므로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됨.


이정재 의원

○ 노인우대제도 및 노후생활보장책으로 시행하는 경로연금 지원대책 및 대상 선정 기준은?

▶ 답변(사회복지과장) : 노후생활보장책으로 65세이상 저소득노인은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이 월평균 1인 37만 8천원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은 4천만원이하의 저소득 노인이 해당되며 읍면에 신청하면 지급 받을 수 있음.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계획에 따른 모범음식점 현황 및 식품진흥기금 지원에 따른 지원계획 및 대상 업소 선정 방법은?

▶ 답변(사회복지과장) : 우리군의 모범음식점은 34개소로써 모범음식점 표시판설치, 쓰레기봉투 지원, 2년간 위생검사 면제, 그리고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자금 융자 지원하고, 관내유관기관에 홍보하여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를 이용토록 권장하는 등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언론사를 통하여 모금된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우리 군에 배정된 금액과 집행 내역은?

▶ 답변(사회복지과장) : 우리 군에 배정된것 없습니다.

○ 향토음식개발에 있어 특색있는 특별메뉴 개발과 대시민홍보 및 이벤트행사 개최 지원에 있어 군민의날 행사시 먹거리 축제 개최 계획에 따른 대책과 예산은?

▶ 답변(사회복지과장) : 향토음식개발과 먹거리골목 조성은 '98년에 가창면 우록리 일대에 흑염소골목 34개소를 지정하였고, 금년에는 다사읍 부곡리 일대에 논메기 매운탕 18개소를 추가지정하여 군민의날 행사시 먹거리축제 등 행사를 번영회 주관으로 개최토록 하고 홍보를 위한 책자 및 안내입간판에 대하여 지원하겠음.

○ 식량생산 종합대책인 퇴비생산 7만5천톤에 대한 대책과 예산지원 계획은?

▶ 답변(농축산과장) : 퇴비생산은 토양의 생산성 향상 및 환경 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생산지도하고 있으나 농업인 자율적인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없음.

○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책으로 전통식품인 현풍전통식품, 대원식품, 산지가공업체인 영농조합 법인인 달성산업, 특산단지 업체인 풍미산업사의 육성대책과 '98년도 업체별 운영실태는?

▶ 답변(농축산과장) : 우리군에서 육성하는 가공업체는 '84년부터 '97년까지 융자 5억 9천만원, 보조 2억2천만원 지원 되었으며, '98년 운영실적은 현풍전통식품 4,600만원, 대원식품이 2억4천만원, 달성산업이 5천7백만원, 풍미산업사가 19억7천5백만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

○ 내수면어업 활성화 육성지도 계획에 의한 양식어장 5개소, 유료낚시터 5개소, 어로 어업 15개소에 대한 육성대책과 지도관리 대책은?

▶ 답변(농축산과장) : 내수면 어업은 환경오염방지와 어족자원 보호육성을 위한 지도 강화를 위하여 건전한 어업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유료낚시터는 어업적 측면보다 심신수양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육성되고 있어 주변환경 및 수질보존에 역점을 두고 육성하여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특수시책사업인 군단위지역 특화작목 종류현황과 홍보행사의 계획에 의한 TV및 일간지에 대한 홍보방안은?

▶ 답변(농축산과장) : 특화작목은 화원에 화훼, 가창에 복숭아, 하빈에 참외, 옥포에 수박, 현풍에 단감, 유가에 양파, 구지에 마늘로써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홍보행사와 읍면별 자체행사, TV등 언론기관에 우수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이현근 의원

○ 민선2기를 맞으면서 우리군의 심벌, 엠블렘 등을 새로이 제정하고 CI표준화규정 집을 발간하는 등 군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우리군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특화상품, 전통산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한 문화예술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CI구축계획은?

▶ 답변(기획감사실장) : 우리군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는 비슬산참꽃제 종합 문화행사, 약산온천과 연계된 1일관광코스 개발, 자연휴양림 얼음동산 조성, 문화적 뿌리를 지니고 있는 충절의 고장을 알리고, 특화상품인 옥포참외 등 9개 작목과 4개 전통산업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지원해서 집중 육성하겠음. 또한 산재한 문화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홍보하여 지역이미지를 높여 가겠음.

○ 우리군의 경제발전 방안을 위한 중장기계획은 무엇이며, 특히 경영수익차원의 계획이 있다면 향후 운용방안은?

▶ 답변(기획감사실장) : 지역특산품 판매전시장 운영, 군직영 골재채취판매사업 등으로 자주 재원 확보와 세수증대에 노력해 나가겠음. 그리고 보건소에 건강검진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군청이전 추진문제, 정주권 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 등은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임.

○ 금년 1월 4일에 계약 체결한 화원 설화리 555번지 일대의 12,000여평 부지는 군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매입 동기가 지역 개발을 위한 경영수익 차원인지와 향후 구체적 활용계획은?

▶ 답변(기획감사실장) : 공유재산의 집단화 계획에 따라 잡종재산의 집단화를 위하고 불용잡종재산의 매각과 대체재산의 조성을 위하여 약정한 상태로서 매입이 완료되면 집단화된 본재산은 사용용도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 분분한 실정이므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군민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제7차 대구시 도시계획재정비안은 금년 2월에 확정발표가 될것이며, 특히 현풍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예정지역은 대구시에서 개발용역비 7억원을 확보하여 2000년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의 경우와 같이 사후 약방문이 되어서는 절대 안되겠으며 적극적인 사고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인 바 신도시개발계획에 관한 우리군의 입장과 견해는?

▶ 답변(도시녹지과장)

- 신도시는 현풍, 유가면 일원의 5.6㎢에 대하여 '97년 2월에 결정된 사항으로 제7차 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고시된 후 개발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 용역비 7억원을 시비로 확보하였고 금년 상반기중에 개발계획의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것으로 확인하였음.
- 금년에 실시하는 개발계획을 연차적 수립계획에 따라 정주인구 10만명의 기능을 가진 도시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하겠음.

○ 비슬산 국립공원 지정 가능성에 대하여 언론보도가 있고 각 읍면대표로 구성된 국립공원 승격 추진위원회가 국립공원 관리 공단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비슬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 지정될 경우 장 · 단점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그리고 우리군의 대처 방안은?

▶ 답변(도시녹지과장)

- 국립공원으로 승격될 시 장점은 전문인력의 집중관리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할수 있고 국비지원금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공원이 조성되고, 단점으로는 중앙부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므로 지역주민의 의견반영과 각종 규제 강화로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움.
- 비슬산을 전국의 명승지로 알릴수 있는 계기가 되어 우리군의 관광수요를 확충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인근 국립공원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균형있는 개발과 이익이 된다면 적극 추진하겠음.

○ 우리군은 그린벨트, 공원지구 등 도시계획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계획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 계획선만 그어놓고 있는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인바, 군민의 고통과 재산권 행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도시녹지과장) : 도시계획에 있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군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이나 도시계획 특성상 도로시설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은 도시계획으로 인한 재산평가가 형성된 상태이므로 지형변경에 따른 대폭적인 변경시 지역민의 혼란만 증폭될 것으로, 기존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 불합리한 시설이 있을 경우 금번 제 7차 도시계획재정비가 결정고시된 후 검토 조정하겠음.

○ 컴퓨터 교육은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관에서의 컴퓨터 교육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운용계획은?

▶ 답변(종합사회복지관장) : 복지관의 컴퓨터는 386기종 21대로 교육하고 있어 저기능 및 용량부족으로 정보화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설치 운영이 어려워 기초과정만 운영하고 있어 신기종을 구입하여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음.


이선용 의원

○ 공직사회 내부결속과 의식개혁 추진에 입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삼진아웃제 시행에 있어 시행방법은 어떠하며, 만약 시행을 한다면 공무원의 사기가 위축되는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 답변(총무과장) : 우수공무원 및 삼진아웃제 인사관리 기준은 공무를 추진함에 있어 잘한 점과 못한 점에 대하여 가·감점을 부여하여 체계적인 통제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 특히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수여등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평정시 적극 반영하여 열심히 일하고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음.

○ 우리사회는 컴퓨터 없이는 더 이상 움직일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바 컴퓨터 Y2K문제의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반 운영방안은?

▶ 답변(총무과장) : 현재 문제예상 및 점검시스템으로는 PC기 397대, 교환기 11식, 골재정보화 및 예산회계 프로그램 등 5종, 상급기관에서 보급한 32종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에대한 Y2K 종합대책반을 구성하여 수시 점검하여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Y2K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을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 특별성과급 지급에 있어 공직사회 내부 구성원간의 위화감을 유발시켜 불화를 조장시킬 우려가 있는바 성과측정에 대한 운영방안은?

▶ 답변(총무과장) : 개인별 성과측정 방법은 성과급 기준에 의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해당 부서로부터 추천받아 지급범위와 지급기준, 지급률, 대상인원 등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본 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의와 투명한 심사를 거쳐 정말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누구나가 공감하는 대상자를 결정토록 하였으며 본 제도를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통한 참여의식을 확대하여 공무원 모두가 참여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음.

○ 수의계약 사무개선책으로 경쟁계약의 원리를 도입하여 지방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계약대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약식지명 경쟁계약으로 특정업체 5인 이상 지명하여 경쟁입찰에 의거 낙찰자와 계약토록 하는데, 특정업체 5인을 어떤 방법으로 지명하며 '98년대비 낙찰률과 예산 절감 기대효과는?

▶ 답변(세무회계과장) : 입찰 참가자 지명의 원칙은 시공능력이 우수한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자본과 신용이 있는 우량업체, 시공경험 등을 고려하겠으나, 낙찰률에 있어서는 현재 일반 경쟁입찰은 90%선이고 작년 수의계약은 96~97%선 수준으로써 약식지명 경쟁입찰은 예정가격 94% 수준으로 낙찰률을 결정토록하여 지난해 대비 3%를 낮추면 3~4억원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경영행정 확대와 공개행정을 통한 군민 신뢰회복 및 재정의 자구노력 강화를 위해 지방세정의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한 추진방향으로 세무조사, 은닉 세원 발굴, 체납세 발생 사전예방 등으로 '99년도 목표액을 474억 6,300만원 설정하였는데 징수실적에 대한 추계는?

▶ 답변(세무회계과장) :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474억원으로 '98년대비 83.6%수준으로 낮게 잡고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283억, 102.8%와 군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세율은 24%로 상향조정하고 아파트 1,500세대 입주로 자동차 증가가 예상되어 자동차세를 9%정도 늘려 잡았으므로 전체 목표액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음식업조합 및 다방조합 운영에 있어 회비징수 등 조합의 횡포에 조합원들이 불만이 높은바 이에대한 지도감독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 답변(사회복지과장)

- 두단체 조합은 군에서 직접 관장않고 행정지도관계에 있으며, 현재 월 6천원~1만원까지 회비를 받아 영업주에 대한 위생교육과 방역소독사업, 민원대행 등을 하고 있음.
- 금후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합원의 불만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건전한 영업풍토 정착을 위하여 불법 변·퇴폐영업을 지도단속하고 있으나 최근 다시 성행하고 있는 퇴폐업소 현황과 지도 단속 실적은 어떠하며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 답변(사회복지과장)

- 우리군에서는 127개소의 다방이 있으며 이에대한 주 1~2회 단속으로 지난해에는 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음.
- 계속 지도와 단속을 병행함은 물론 조합을 통한 의식교육을 통하여 변·퇴폐영업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벼병충해 방제에 해마다 항공방제를 실시하여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바 항공방제 대상 면적을 확대 시행할 의향은?

▶ 답변(농축산과장) : 항공방제 계획 면적은 689ha, 예산 3천만원으로 효과적인 방제를 위하여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가의 추가신청이 있을 경우 항공 방제를 점차 확대 실시토록 방안을 검토하겠음.

[제84회 임시회]


이팔호 의원

○ '99년도 상반기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건설 도시부분에 총 100건 중 미착공이 26건이나 되고 50%미만이 30건으로, 특히 수해복구사업과 양배수장 설치사업 등 우수기 전에 완료하여 수해예방 등 투자사업 효과를 최대한 높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진도가 늦고 사업추진 의지가 현격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부군수) : 수해복구와 양배수장 사업의 진도가 부진한 사유는 '99년도 재해대책 및 치수사업 총 19건 중 15건은 상반기에 집행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미착공한 4건도 설계심의 용역 완료 예정으로 곧 발주하도록 하겠음. 또한 도로정비망 확충은 18건중 8건이 미착공 되었으나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실시설계하여 발주하겠음. 총체적으로 보면 보상금의 협의지연, 보조금의 영달지연 개발에 따른 주민의 비협조, 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앞으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음.

○ 관내 6개지구의 골재채취장이 있는데 판매실태와 상반기 경영 수익 현황과 고령군과 성주군의 각 1개업체가 관내 지역내 골재야적 및 반출로 이용으로 도로파손, 농작물피해, 비산먼지 및 교통사고 유발 등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또한 골재채취지역이 관내지역으로 생각되는데, 경계지점에 대한 점검확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군세수에 보탬이 되지 않고 본군에 피해만 입히고 있는 타지역 업체에 대한 처리대책은?

▶ 답변(부군수) : 금년도 하천골재채취장 허가는 6개지구 166만㎥로 14억 7천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은 30만㎥에 4억6천5백만원으로 건설경기불황으로 다소 부진함. 고령군과 성주군의 골재채취장은 '95년 이전 당초 달성군이 경

북도에 속해 있을 때에 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근지역 피해발생에 대해서는 해당군과 협의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 골재채취장 경계 확인여부는 전문적인 측량이 요구되나 예산 및 기술적인 제약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반출로 등의 사용불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평촌~음리간 군도 1호선의 확포장사업이 '93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수년간 걸쳐 투자가 추진되고 있으나 진척이 매우 부진한 실정으로 이는 편입부지에 대한 적정한 보상문제로 알고 있는바, 구지 징리마을 구간 임야 도로부지의 편입가격이 1㎡당 1천원인데 이는 너무 낮은 금액으로 지주의 승낙이 어렵다고 봄. 앞으로 도로공사 편입부지 중 임야면적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적정한 보상가격 산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 답변(부군수) : 평촌~음리간 도로는 시비와 양여금사업으로써 IMF영향에 따라 시비가 당해연도에 자금이 배정되지 않아 부득이 양여금만으로 연말에 늦게 발주. 또한, 공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가 문제는 감정가와 실거래가격의 차이로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으나, 주민대표와 관련공무원들의 대화로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토지평가시 이해관계인을 입회시켜 감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평가가 되도록 요구하여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불만과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음.


김판조 의원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비산먼지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기준은 어떠하며 대상이 77개소인데 전 사업장에 적정하게 시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의 피해발생 현황은?

▶ 답변(환경청소과장) : 공사면적 1,000㎡이상이거나 공사구간이 200m이상인 사업장에 살수시설, 방진막설치, 세륜·세차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77개소가 있으며 이들 사업장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다소 있으나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먹는물 공동시설관리는 2개소에 점검은 6회로 업무보고 하였는데, 이외에 약수터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보는데 현황 및 이에 대한 관리방안은?

▶ 답변(환경청소과장) : 비지정 약수터는 7개소로 이중 수질이 양호한 옥포 송촌, 현풍 성하, 유가 금리, 대견사지 약수터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해 오고 있으며, 지표수 유입 등 오염이 우려되는 곳은 유출구를 철거해서 폐쇄조치 하겠음.

○ 위생처리장 운영관리는 시에서 하여야할 업무로써 우리군의 위생처리장은 시비의 보조없이 군비로 충당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시에 협의토록 지난번 81회 임시회시 질문하였는바, 이에 대한 추진상황 및 대책은?

▶ 답변(환경청소과장) : 현재 시가 운영하는 서부 수질환경사업소에 1일 30~40톤이 반입되고 있어 연간 5천만원 정도 간접처리비를 받고 있다고 보고 실질적인 예산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2000년도에 약 1~2억정도 지원 해 줄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각종 과태료 부과건수 및 금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등 8종류 611건에 대한 1억 1,016만 4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따른 징수현황과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대한 대책은?

▶ 답변(환경청소과장) : 각종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순수체납은 97건에 1,455만원으로 자동차 64건을 압류 처분하고 지속적으로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음. 체납액 중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부를 다소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소액의 경우 압류조치가 어려우나 방문 독려 등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음.

○ 우리 관내에 약산온천과 휴양림, 유가사, 구지 일원의 마을버스를 도입할 용의는?

▶ 답변(지역교통과장) : 버스노선 승인은 시장의 권한으로 현재 오지노선 버스는 32개업체가 풀제로 현풍, 유가, 구지 지역에 61회, 하빈지역에 6회정도 운행하고 있음. 농어촌도로는 버스 적자노선으로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그 일부로서 마을 버스 도입보다는 기존 노선버스를 구지와 하빈 종점까지 연장 운행토록 추진하겠음.

○ 전세버스 업체의 과잉등록을 억제하기 위해서 등록업체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근거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제한할 것인지 또한 이를 해제할 용의는?

▶ 답변(지역교통과장) : 전세버스업이 등록제로 바뀌고부터 신규업체가 폭증하여 시전체 26개업체 700대로써 우리군은 등록요건 완화지역으로 11개업체 300대 정도로 시의 절반이나 차지함으로써 '99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제한한 사항은 해제할 뜻이 없음.


도기태 의원

○ 화훼수출 확대를 위한 생산기술지도를 화원 17호 4.3㏊, 다사 세천 15호 6.3㏊에 대하여 기술지도하고 있으나, 근간 화환전달을 금지하는 공직자 준수사항에 따라 꽃값이 폭락하여 화훼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 등 조치계획은?

▶ 답변(농업기술센터소장) : 정부시책에 따라 화훼농가의 어려움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양질의 화훼생산과 소비자 선호에 맞는 화종을 선택해서 좋은 품질이 재배되도록 지도하고 소비측면에서도 대중매체 등 홍보를 통해 촉진되도록 하겠으며 수출확대로 안정적인 소득보장으로 화훼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음.

○ 해마다 농민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농민들은 농산물 생산만 하면 판로가 막혀 홍수출하로 가격이 폭락해서 농가소득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출하조절, 생산조절 등에 관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답변(농업기술센터소장) : 지도사업은 새로운 기술을 권장하고 양질의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목적이 있으므로 앞으로 생산에 대한 기술교육과 병행해서 판매·경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교육에 임하겠으며, 작목별 파종시기, 수확시기에 맞추어서 전국 주산지역 재배면적이라든가 가격 동향 등을 수시 파악해서 적정면적, 적정생산이 되도록 대처 홍보하겠음.


이정재 의원

○ 예방접종 및 만성 전염병 관리에 있어 이에 필요한 약품은 충분히 비축하고 있는지 부족하다면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 답변(보건소장) : 예방접종은 정기와 임시 예방접종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으며, 접종약품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며 현재는 3개월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6,500명 분의 양을 충분히 비축하고 있음.

○ 결핵환자 관리에 있어 환자 발생추세와 여기에 필요한 약품수급 현황은?

▶ 답변(보건소장) : 최근 5년간 신규 결핵환자 발생추세를 보면 점차적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대한 약품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

○ 방문간호사업으로 호스피스제 운영을 680회 하였다고 보고를 한바, 방문실적과 그 내용은 무엇이며 운영한 결과 성과에 대한 평가는?

▶ 답변(보건소장) : 방문간호사업 전체가 680회로써 무의탁 독거노인 등 235명을 대상으로 하고 호스피스 사업은 임종 6개월 이내에 있는 말기 암환자로 방문 간호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관리하며 심리적인 상담을 하고 있음.

○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 강화할 용의는?

▶ 답변(세무회계과장) :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있어 금년도 상반기 중에 서면조사와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146개업체에 4억2천만원 추징하여 업체수로는 54%, 금액으로는 45%의 세수를 확충하였으며 세무서와 합동조사는 불가능한 실정임.

○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매년 그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

음에도 금년도 상반기 무단 점·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가 약 4천만원에 이르는 것은 국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 답변(세무회계과장) : 국유재산중 재경부와 국세청간의 인계인수 과정에서 누락된 재산에 대하여 재경부 소관 잡종재산 31필지에 7,302평을 국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서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를 하고 그중 대부계약 체결없이 사용한 변상금으로써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음.

○ 화원읍 설화리 지역에 군유재산 매입자금 약 87억4천9백만원 재원 조달계획으로, 공유잡종재산 매각대금 46억8천만원과 '98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41억5천만원을 군유재산 매입재원으로 하겠다고 보고되었는데, 매각실태와 순세계잉여금은 어떠하며 만약 매각재산이 처분되지 않을 경우 재원 조달 방법은?

▶ 답변(세무회계과장) :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7억2천여만원으로 세입조치 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7억 5천1백만원임. 화원 설화리 부지는 농림부로부터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사업에 국고보조비 지원계획이 확정 통보되어, 당초 예산에 계상된 군유재산 매입재원인 재산매각대금 세입보다 14억 3천 8백만원이 더 증가하였음.

○ 앞으로 장애인의 수는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증진시키고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할 용의는?

▶ 답변(사회복지과장) : 우리군 장애인 등록수는 1,676명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장애인지회 사무실 마련, 각종 대회 등에 금년도 예산 1천 7백여만원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음. 특히 중증 장애인 치료를 위해서 봉사용 승합차량을 1천 5백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하여 운행중에 있으며, 이들의 재활의지를 더욱더 증진시키고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를 해서 우선 내년에 용역비를 반영할 계획임.

○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에 있어 지급대상을 보면 재산이 3천3백만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이 가구당 월 28만원, 장애 1~3급 자녀 중고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기준이 까다로워서 지금까지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준을 완화할 의향은?

▶ 답변(사회복지과장) :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하여 국비 80%, 시비 20%로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대상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이므로 완화변경은 할 수 없으며, 중학생 의무교육 실시지역은 제외되고 대부분 이미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법에 의해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음.

○ 모범음식점 확대지정으로 관내에 당초 34개소에서 53개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업소에서는 일반업소와 다른점은 무엇이며 특혜를 주는 사항은 없는지?

▶ 답변(사회복지과장) :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위생적인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생시설과 종업원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업소를 선정하여 상반기에 업소당 쓰레기봉투 50 l 월 10매씩 배부하였으며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 1년간 위생검사 면제, 안내 홍보책자 발간 및 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우선적으로 융자 알선하는 등 지원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임.

○ 유통식품 안전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있어 점검업소 64개소에 위반업소 24개소로 38%에 달하는 바, 식품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불량식품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 답변(사회복지과장) : 식품제조업체의 영세성으로 자가품질관리가 미흡해서 식품업자 및 종사자 등의 식품위생의식 결여,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부정·불량식품 유통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대구광역시와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지속적인 수거검사와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음.


서병호 의원

○ 조직전체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집단적 노력을 질서정연하게 결합하고 배열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 통제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우리군의 조직기구는 행정수요변화와 지역의 특성, 문화등을 감안하여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구상은?

▶ 답변(군수) : 1단계 구조조정은 4개과 87명 감축 계획으로 구조중심의 혁신에서 자체역량 강화와 경쟁력 중심 그리고 일과 기능중심으로 혁신하고자 시행중에 있으며, 2차구조조정 대상은 기구감축은 하지 않고 인력만 57명 감축토록 하겠음. 이와 함께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기구보다 기능 중심에 중점을 두고 분야별로 축소 및 보강하겠으며, 민간위탁도 적극 검토하여 지역역량과 경쟁력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해 나가겠음.

○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 형편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과거 관료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공무원이나 지역주민 역시 강력한 행정권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지금까지 제도권에서 보호 육성되어 온 집행부가 의회를 호도해서는 안되겠으며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군수의 의지는?

▶ 답변(군수) :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고 의회는 진정한 대의기관임을 깊이 인식하여 의회의 기능을 존중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군에서 추진중인 각종 의안 및 군정현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며 우리군의 발전방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사업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군정발전에 관한 업무에 대해 심사, 분석, 확인, 평가를 통해 각 실과소의 업무를 조정, 통제하고 공동목표 달성을 조화롭게 성취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기능인바 총괄목표 관리를 위해 각 실과소별 목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업무의 크로스체크 시스템(Cross-check system)과 각 실과소의 업무 연결고리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기획감사실장) : 연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의회에 보고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심사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립된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의거 심사분석을 하고 있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과소에서 마련한 각종 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까지 단계적으로 점검하여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하는 환류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차질없는 목표달성을 도모하고 있음.

○ 직원의 공금유용관계와 하천부지 이중점용허가 관계는 부서간의 조정을 통해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었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고유업무 고유권한만을 고집하지 말고 유일한 군정목표를 위해 전 실과소가 협동과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 기능의 강화를 지적한 바 있음. 여기에 따른 조치결과가 각종 인허가 등의 개별적인 행정행위마다 조정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기획감사실장) : 군정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및 자치법규제정, 개정시에 법제의 사전심의 외 예산의 편성과 집행, 분석 및 확인평가 등의 기능을 통하여 조정통제를 실시함으로써 직제상의 기획감사실에 주어진 기능을 최대한 발휘, 원만한 결정을 도출하여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거나 주민전체의 이해관계가 예상되는 인허가 등의 행정행위에는 적극적인 조정통제기능을 발휘해서 주민 복리 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음.

○ 행정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사기진작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객관성을 잃은 근무평정으로 무사안일한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는 여론인 바 신상필벌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직내부의 의식개혁 추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삼진 아웃제, 인센티브지급 시상 등을 육성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실적은?

▶ 답변(총무과장)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근거하여 6개월 단위로 근무성적, 경력, 교육훈련 성적을 평정하고 있는데 기초자료에 의거 평정 단위별 서열을 기초하여 공정한 평정을 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조직활력화를 위한 우수공무원 118명과 업무추진 미흡 및 복무규정 위반자 164명에 대하여 각각 가산점을 부여하여 격려 또는 경고조치 하겠음.

○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민위주의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안정과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21세기 지역발전의 기반구축을 위해 지탄, 비난대상 공무원을 공직사회에서 격리하고 행정경쟁력을 도모하겠다는 과장의 의지는 어떠하며, 지탄, 비난대상 공무원은 우리 군내에 전혀 없는지? 그리고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공무원도 대상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답변(총무과장) : 주민위주의 행정을 구현함에 있어 지탄이나 비난대상 공무원은 없으며 차후 지역주민으로부터 지탄이나 비난대상 공무원, 근무능력이 떨어지고 지역안정을 저해하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의식개혁교육과 함께 인사상의 불이익처분 등으로 행정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이현근 의원

○ 종전 34%에서 중단된 82만평 규모의 구지 쌍용자동차공단부지에 54홀 규모의 골프장과 호텔 등 위락시설 설치 내용의 언론보도에 있어, 이는 원래의 공단지정 취지와는 상당히 배치되는 것으로써 현재 토지수용법 제71조 및 공공용지의 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환매권 조항은 사업 승인을 받은 부지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 취득 당시의 지주가 환매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있어서 법집행상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관내 골프장 건립과 관련한 군수의 입장은?

▶ 답변(군수) : '95년도에 산업용지 수요충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구지면 일원 82만평 규모의 쌍용자동차공장 부지조성 사업을 승인받아 '95년

착공하여 부지조성 중 34%의 공정에서 '98년 1월 대우에서 인수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음. 언론에 보도된 쌍용자동차공단 부지에 골프장 건설 유치 계획은 대우가 구조조정 등 자금난으로 공단조성이 지연될 경우가 있다면 군민들의 조속한 개발기대에 부응한다는 면에서 단순 언급된 것 뿐이며, 더불어 우리군에서 골프장 시설을 본 공단부지에 유치하고자 검토된 바는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맡겨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서 낮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경영적인 시각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나,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를 구조조정 차원에서 우선 감축하고자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에 무조건 의존 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이 대구시의 타 구와는 달리 도농복합형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위탁대상 사무는 무엇이며 연차별 위탁 계획 및 방법은?

▶ 답변(군수) : '99년 3월 간부회의와 5월에 검토보고회를 거쳐 토론을 가진바 5월 24일 최종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재활용 선별장 운영, 단독주택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등은 민간 위탁 대상사무로 검토하고 있음. 위탁계획 및 방법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입찰, 대상자 선정 및 협약서 등 관련사무를 연말까지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대구시의 경우 사회복지관은 복지법인이나 종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재활용 선별장 운영은 용역을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추진코자 함. 그리고 단독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는 2000년부터 3개년에 걸쳐 3개 읍면씩 분할하여 위탁추진코자 함.

○ 정부는 지난 5월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지는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시설을 해제하고, 둘째, 가설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특히 20년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시설부지중 3년이내에 사업시행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자치단체장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셋째, 매수 청구 후 3년 이내에 매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도 허가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2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어떠하며 이에 대한 대책과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또는 폐지 절차는?

▶ 답변(도시녹지과장) : 첫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은 면밀히 분석하여 폐지 등 적극 검토하겠으며, 둘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3년 이내 개발계획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현재에도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 있으며, 더 완화되면 홍보로 전군민이 이용되도록 하겠음. 셋째, 장기미집행에 따른 보상 청구시 보상토록 조치할 계획임. 우리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912개 노선의 281.2㎞에 면적 4.4㎢, 공원 13개소에 0.5㎢, 유원지 2개소 2.4㎢ 착공시설 1개소 등이 있음. 한편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하는 절차는 계획 수립, 공람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군의회의 의견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본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공고 후 효력이 발생됨.

○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서 청원경찰이 상반기 이전에는 19명이 위법행위를 단속하였지만, 구조조정으로 13명이 줄어 6명이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지역이 방대하여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답변(건축과장) :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6개읍면에 194.26㎢에 군의 45.4%, 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46.4%로써 방대하나 각 읍면별로 한명씩 배치하고 정규공무원과 합동단속, 주 2회 읍면장 순찰, 군본청에서 월 2회 이상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건축행위를 단속하겠음.

○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시공된 아파트 현황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수도파이프 파열, 건물 붕괴위험, 지반침하 등 주민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은 없는지? 그리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향후 예방대책은?

▶ 답변(건축과장) : 공동주택은 45개단지에 194동 15,761세대로써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주민신고도 없었음. 그리고 논공 성원아파트 뒤편 비탈면에 있어서는 옹벽 설치와 산마루 측구 설치로 보수를 완료하였음.

○ 행정정보 공개현황과 청구내용 중 비공개건수가 있다면 그 사유는?

▶ 답변(민원봉사과장) : '98년 147건을 접수해서 모두 공개하였고 '99년 7월 23일 현재 96건을 접수하여 공개는 92건이며 처리중 1건, 비공개가 3건인데 1건은 재판관련이고 1건은 영업상 비밀침해 1건은 폐기된 문서임.


이선용 의원

○ IMF체제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원감소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이 줄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립계획이 구상되어 하루 6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연간 25억원의 군세수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군민의 기대가 크고 군정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음. 이와 관련 향후 전망과 군수의 구상은?

- 1일 600여명의 고용효과와 연간 25억원의 세수증대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 사업비 315억4천8백만원의 조달방안은?

▶ 답변(군수) : 달성농수산물 물류센터는 화원읍 설화리 일대에 부지 12,117평, 건평 6천평 규모로 2001년 12월 완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의 요충지이며 상주인구가 많아 전망이 밝다고 판단, 고용 및 세수증대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자문을 맡은 산업전력연구원에서 제시한 수치이며, 사업비 조달방안은 총사업비의 70%를 국비보조로 지원하고 나머지 30%인 94억6천5백만원을 군비로 충당함. 향후 물류센터 기본계획과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일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 지역특화사업으로 유가면 휴양림 공영주차장에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사업이 1억7천여만원이 책정되어 8월중에 건물을 착공할 예정인 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건물을 신축하면 이용의 편리는 물론 효과성 및 경영수익성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그러나 전시판매장이 건립될 위치선정에 있어 공영 주차장보다는

휴양림입구 도로변이 이용객의 편의와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위치를 변경할 의향은?

▶ 답변(부군수) : 전시판매장 장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예상부지 4개소를 검토하였으나 추가예산 소요, 경관훼손 등으로 불가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로 선정하였음. 향후에 공영주차장에서 굿밭골까지 새로운 도로개설이 계획되어 있어 유가사 쪽과 휴양림이 연결되면 이용객의 편의와 경영수익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한 현재의 공영주차장에 관리사무실과 화장실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두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잇점이 있음.

○ 새천년을 준비하는 군정기획에 대해서는 주민 여망의 시책화 및 밝은 미래 제시를 위해서 지금까지 실천해 오던 업무를 토대로 해서 장래에 뚜렷한 군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업무가 창출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큰데 이에 대한 장래 비전과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 답변(기획감사실장) :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비공개 첨단산업도시로 발전, 근교농업 중심의 특성을 개발한 고소득 상업농 발전, 향토문화의 계승발전, 도농복합 전원도시로 개발, 휴양 레포츠시설을 개발하여 휴양위락도시개발, 질높은 교육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것임.

○ 사업추진과 업무추진에 있어 자금수급계획이 차질없이 수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 바, 상반기에 월별로 자금수급계획 금액과 배정액과의 비율은 어떠하며, 자금수급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이유는?

▶ 답변(지역경제과장) : 자금수급계획 대비 배정액의 비율은 156%로 이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 352억원 중에서 임시여유자금을 활용해서 IMF체제하에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과 지역경기의 진작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투자사업이 상반기에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조기 배정 시행하였음.

○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 제1단계 사업비 15억3천여만원 중 집행이 10억1천여만원으로 66% 집행하였으며, 제2단계 사업으로 사업비 15억2천여만원 중 집행액이 13억2천여만원으로 87%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미집행 예산의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은?

▶ 답변(지역경제과장) :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98년 집행잔액이 포함되고 노임단가 또한 사업시행도중 인하되었고, 해빙기전 사업으로 옥외사업의 참여자의 참석률이 저조하였으며, 참여도중 취업 등으로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서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의 근본목적과 실업·실직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농업인후계자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17명에 대하여 육성자금 3억5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 그 중 사업을 포기하거나 임의로 사업을 변경하는 등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잘 되지 않는 후계자에 대한 관리 대책은?

▶ 답변(농축산과장) : 농업인 후계자 현황는 '98년말 477명이였으나 '99년 28명을 선정하여 전체 505명임. 부실후계자 일제정리 31명으로 현재 466명임. 지원계획에 현재 17명에 3억5천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을 통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음.

[제88회 임시회]


이팔호 의원

○ 군관내 골프장 후보지는 몇군데나 되며, 유치시 병행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떠하며, 지방세수증대, 농촌인력의 고용창출 등 골프장건설에 대한 단계적 계획은 어떠한지?

▶ 답변(군수) : 구체적인 후보지가 거론된 곳은 없으며 건립시에는 식당, 커피숍, 숙박시설 등이 부대시설과 함께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건립으로 인한 세수증대는 개장시 취득세, 등록세 등 약 100억원 정도 예상됨.

○ 한훤당 김굉필 선생님의 도동서원을 비롯한 작고 큰 문화유적을 관리 보존하고, 대니산과 비슬산 자연공원 부근에 지방작가들이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작가촌이나 작가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낙동강 수변을 정리하여 강물을 이용할 수상레포츠 시설을 만들고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기고 쉬고 갈 수 있는 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할 수 없는지?

▶ 답변(군수) : 대니산 도시자연공원조성기본계획에 9억원의 예산확보와 작가촌이나 테마공원은 기본계획에 확보하도록 조치하였음.


이경식 의원

○ 화원을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본리택지 개발과 동시에 30m 도로로 개통예정이며, 물류센터 건립과 함께 월성타운까지 추가 도로건설시 고속도로 진출입 문제와 고속도로 유료화 방침에 대한 대책 및 대구시에 지하철 1호선 연장건의 사실과 성산동 일대 생산녹지지역이 농수산물유통단지 예정지로 개발계획은?

▶ 답변(군수) : 옥포 기점에서 성서까지 도로와 화원명곡 순환도로, 농수산물물류센타에서 월성아파트까지 도로는 고속도로 요금을 징수하는 2004년 이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97년 12월 지하철 1호선은 화원까지 연장 건설토록 대구광역시장에서 요구한 바 있으며, 성산리 및 설화리 일대 40만㎡는 2016년 목표로 도시계획상에 서부물류센터로 계획되어 있고, 구라리 일대 71만㎡는 개발예정 용지로 계획되어 있음.

○ 축산여건 변화와 21세기 축산물 수입을 완전개발하는 무한 경쟁시대에 타지역과 같이 가축 집단화 사육지구를 정하여 높은 상품화로 축산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지방세수증대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은?

▶ 답변(농축산과장) : 기존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8개소와 옥포 김흥, 구지 화산, 수리 등 품질개선단지를 기반으로 지역축협, 영농조합법인과 협조하여 신기술 개발은 물론 집단 식당지구 조성으로 판매가 확대할 수 있도록 판로개척에 적극노력하겠음.

○ 화원 명곡택지개발지구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대한주택공사에 적게 부과한 사실과 그에 따른 공무원의 문책여부는?

▶ 답변(농축산과장)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단서 규정의 착오적용으로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관련 담당공무원을 문책조치하였으며, 대한주택공사에 부과결정 통보 조치하였으며, 빠른 시일내 납부토록 조치하겠음.

○ 골재판매 부진현상으로 자치단체간 판매가격 인하경쟁이 빚어질 경우 세수감소 및 채산성 약화로 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데, 골재 판매수입 증대방안은?

▶ 답변(건설과장) : 지역에 생산되는 골재는 지역에서 구매하도록 판매전략을 강화하고 골재채취업체와 레미콘업체와의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면 금년도 판매목표량인 80만㎥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측됨.

○ 농로 확포장 사업시의 농로의 기준과 교량이나 농로 포장사업에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하여 준공검사를 하는지 여부와 부실공사를 지적해서 재시공하거나 적발한 사례는?

▶ 답변(건설과장) : 경지지구내 농로의 기준폭은 간선농로 6m, 지선농로3~4m, 경지지구 외 농로는 2m이며,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공사구간 2~3군데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고 주요공정에 대한 검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 현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김판조 의원

○ 군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문제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영농계획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 재산가치의 손실, 재산권행사에 불이익 등의 피해에 따른 대처 방안은?

▶ 답변(군수) : 대구시에서 낙동강수질개선특별법 제정 이전에 당초 대통령 공약사항대로 우선 지정하고, 향후 물관리 종합대책과 낙동강수질개선특별법 제정후 조성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시와 함께 위천국가산업단지가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청와대, 정치권, 관계부처 등 각계 요로를 통해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등 주류판매 및 사행성 게임기가 난립하여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법영업 근절대책 및 '99년도 단속실적은?

▶ 답변(문화공보실장) : 청소년보호와 건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불·탈법업소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철저한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단속실적은 총 60회 실시하여, 48건을 적발 조치하였음.

○ '99년도말 읍·면별 포상기준을 살펴보면, 체납세 징수실적, 환경정비사업, 푸른달성가꾸기 사업의 식수실적 등을 기준으로 포상대상을 선정하였는데, 읍·면별 등급과 포상금 지급내역은?

▶ 답변(총무과장) : 읍·면 평가시 공정한 평가를 위해 현지답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정견문정보보고제 1위 지역교통과 20만원, 2위 화원읍 15만원, 3위 현풍·유가면 10만원, 푸른달성가꾸기 사업 1위 가창면 100만원, 2위 하빈면 70만원, 3위 논공·다사읍·구지면 50만원, 그외 읍·면 25만원, 세수종합평가 1위 화원읍 200만원, 2위 다사읍 100만원, 3위 옥포·현풍·유가면 50만원, 환경관리업무평가 1위 다사읍 100만원, 2위 구지면 70만원, 3위 화원읍·유가면 50만원이 지급되었음.

○ 2000년도 세외수입 부과내역은 항목별로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재산매각수입은 작년도의 331% 증가되었는데 군유재산이 매각되지 않을 시 재정보전 대책은?

▶ 답변(세무회계과장) : 군유재산매각시 재감정을 의뢰하여 용이한 가격으로 조정하고, 농업기술센터 부지는 분할매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매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약 미매각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였음.


도기태 의원

○ 서민물가를 하나 하나 확인 점검하는 등 매일 상거래장에 뛰어들어 서민가계를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물가 안정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 답변(지역경제과장) :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개인서비스요금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분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강화로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화원, 현풍공설시장에 대하여는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 외 여타 읍 · 면 공설시장에 대하여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은?

▶ 답변(지역경제과장) : 도시계획시설은 시장에서 제외된 구지시장과 시장기능이 상실된 하빈 동곡시장은 용도폐기하여 사유건물 점유자에게 매각토록 하고, 그 외 공설시장에 대하여는 2001년 사업비 투자하여 낙후된 재래시장을 현대화하여 상권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음.


이정재 의원

○ 민선자치 2기 출범 2년이 가까워 오고 있는 시점에 15만 군민과 약속한 군수의 선거공약사항과 추진 실적 및 향후대책은?

▶ 답변(기획감사실장) : 공약사항의 주된 내용은 경영행정구현, 사회복지증진, 지역개발추진, 향토문화 진흥분야 등 총 92건으로 이중 완료된 사업은 24건이며, 추진중인 사업은 위천 국가공단지정 등 68건이며, 미진사업에 대하여는 조속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지역주민에게 한차원 높은 건강증진을 위한 방문 간호 및 호스피스사업이 300만원 예산으로 실질적인 치료수혜가 될 것인지 앞으로의 진료계획과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보건소 대처방안은?

▶ 답변(보건소장) : 읍면별 방문간호팀을 구성하여 혈압측정, 당뇨검사, 질병유증상자에 대한 진료의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 증가시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 등을 더욱 활성화하고,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의약분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의약분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의약품리스트 작성 및 약국의 처방약 준비 등 제반 준비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음.


서병호 의원

○ 4월 13일 치뤄질 총선에 대비하여 공직자는 엄정한 선거중립자세를 견지해야 하는데 이의 확행을 위한 군수의 복안과 도덕성 회복 및 지역정서 함양을 위한 견해는?

▶ 답변(군수) : 군 산하 전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확행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없도록 전공직자에게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한점의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도덕성 회복과 지역정서 함양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음.

○ 공명선거를 위한 실과소장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공조체제에 대한 견해와 의정활동 지원 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 등의 실행현황은?

▶ 답변(기획감사실장) : 각 부서에 부여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거중립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집행부와 의회가 지역발전을 위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의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충실한 자료제공은 물론, 의회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타업무에 우선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음.

○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및 비정규직원 감축으로 업무량이 폭증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보조인력으로의 활용방안과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의 수가 많아 일·숙직 및 읍면 대민지원업무 차질에 따른 대책은?

▶ 답변(총무과장) :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및 비정규직원이 감축된 부서에는 공익근무요원 1~2명씩을 배치토록 하겠으며, 최근 3년간 신규임용자 54명 중 37%인 20명이 여성공무원으로 여성공무원도 각종 동원 업무 및 대민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희망보직제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으로 일·숙직 및 대민행정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음.


이현근 의원

○ 21C지식과 정보의 시대에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부가가치창출을 위하여 문화의 상품화, 관광의 상품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군의 향토문화 진흥방안과 문화정책 방향은?

▶ 답변(문화공보실장) : 유·무형 문화재 발굴 및 계승보전과 충효예술제, 합창제 등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비슬산 참꽃제 등과 같은 관광성 문화사업을 발굴하고 민간주도의 문화예술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생활속에 숨쉬는 문화공간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문화정책을 추진하겠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인구하한선 폐지와 인구 및 가구비율의 개정에 따른 읍승격 절차와 현풍면의 읍승격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 답변(총무과장) : 지방지차법 시행령의 인구 하한선 삭제 및 개정은 상위 법률인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의 중복으로 개정되었으며, 앞으로 읍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면 법령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신속히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는 등 제반사항을 충족시켜 조속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음.

○ 우리군의 아젠다21 계획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견해와 공장매연의 측정 방법 및 함유된 오염물질의 성분과 점검실적, 지역의 환경단체 지원계획은 어떠하며,

관내 골프장 건립과 관련해서 환경보전적인 측면의 견해와 생활하수 및 오폐수처리, 쓰레기 문제, 공장매연, 대기오염 등 향후 군 종합적 환경정책에 대한 방향은?

▶ 답변(환경청소과장) : 아젠다21 계획은 3월 중 분야별 추진방향과 계획수립, 4~5월 추진협의회 발족, 6~8월 명칭제정과 실천과제 확정, 8~10월 간담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12월 최종 추진계획을 완료하겠으며, 대기오염측정은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으며 오염물질로는 매연, 다이옥신 등 52가지를 지정하여 적정 처리하는지 감시하고있고, 달성군 자연보호협의회에 행락질서 계도활동비 등 2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활동성과에 따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골프장 건설시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환경에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여건과 잘 조화된 친환경적인 사업이 되도록 관리하고, 대기·오폐수배출업소와 농가에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쓰레기 감량, 재활용 등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음.



이선용 의원

○ 각종 공사가 조기 발주되지 않아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동절기 부실공사 및 이월공사가 과다 발생하고 있는데, 금년도 공사 조기 발주 계획은?

▶ 답변(기획감사실장) : 각종 공사 시행시 상반기 조기발주토록 하고 있으나 토지편입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사례와 수해복구사업 등의 추경사업에 대하여는 혹한기 공사를 중지함으로써 이월되는 경우가 있지만 금년에는 모든 사업이 상반기에 조기발주될 수 있도록 보조금 조기 교부결정. 합동설계팀 구성 등 전행정력을 집중하겠음.

○ 군관내 오지마을 및 야산 임도주변에 산업폐기물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치에 따른 수거 대책은?

▶ 답변(환경청소과장) :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 연간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불법투기 우려지역에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 모범 경로당 지정운영 기준 및 지원현황과 군청 및 읍·면 등의 관공서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내역과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시 근로 가능한 장애인 임금지급 등으로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수지분석 등의 구체적 사업계획은?

▶ 답변(사회복지과장) : 매년 모범경로당 1개소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한 후 지정하며, 지정되는 경로당에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없으며, 군청 및 읍·면에 장애인 화장실, 점자블럭, 전용 주차공간 등과 민원실에 휠체어 등이 확보되어 있으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수익료 일부를 근로 장애인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고 자립기금을 적립토록 할 것이며 납품업체, 작업장 설치장소 등 자체사업계획 수립이 완료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지분석 등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 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우리관내 지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사용본거지 이전 대책 방안은?

▶ 답변(지역교통과장) : 현실적으로 관내로 사용 본거지를 옮기고 차량을 관내로 등록토록 권유함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 불가하다고 판단됨.

○ 유가사와 비슬산자연휴양림을 균형개발 하면 많은 관광객의 쉼터 조성은 물론 세수증대 및 주민 간접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는데 유가사 집단 시설지구에 대한 향후 투자계획은?

▶ 답변(도시녹지과장) : 유가사와 비슬산 자연휴양림을 연결하는 굿밭골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7억을 확보하여 보상 지급중에 있으며, 군립공원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를 확보하여 유가사 지구를 비슬산자연휴양림과 연계하고, 용연사 지구는 사찰부지내 상가 이축 등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제98회 임시회]


이정재 의원

○ 국가사업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의 철거민 이주대책 및 환경보존과 난개발방지차원의 특별조치법이 제정·공포되고, 개발제한 구역내 20호 이상 자연부락 주변의 취락지 지정작업 추진내용과 실태, 확정공고시기와 지난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의 연구 용역 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 주관으로 대구, 경북, 울산 광역도시화 개발제한구역 설정기준안에 대한 설명회와 현지조사에 대하여 우리 군의 설정기준안은?

▶ 답변(건축과장) :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의 수가 20호 이상인 취락안으로 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잔여부지에 건축이 가능하면 재건축도 할 수 있으며, 취락지구안이 아닌 개발제한구역내로 이축을 원하는 주택소유자의 설문 불응자 등에 대해서는 취락안으로 이축권장, 현재 취락지구 지정은 2000년 10월부터 12월 15일까지 예비조사, 2001년 3월 전문업체 용역의뢰, 4월중에 도시계획안을 공고하고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후 개발제한구역 설정기준안에 대하여 2001년도 6월에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8월에 개발제한구역조정 확정으로추진

○ 금년 1월부터 주민등록 등 8개 민원업무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402종의 인가, 허가, 건의, 진정등에 대하여 처리과정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며, 향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제도 시행후 현재까지 인터넷 민원신청 및 처리과정 공개실적, 군민 홍보방법과 무인발급기 설치계획은?

▶ 답변(민원봉사과장) : 금년 1월 15일까지 접수된 민원 126건에 대해서는 군홈페이지에 민원처리안내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처리상황을 열람토록하여 251회의 민원신청이 조회되었고, 군홈페이지, 달성소식지, 유선방송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추후 온라인 운영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의 행정자치부 운영지침이 확정되면 설치운영코자 함.


이경식 의원

○ 화원 물류센터 건립과 서부정류장 이전 문제는 12월말까지 계획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면 교통대란이 예상되어 대구지하철을 서부정류장 예정지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대구시와 협의 및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점은?

▶ 답변(부군수) : 군에서 수차례 걸쳐 대구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대구시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단시일내 연장은 어려우나 현재 지하철본부에 연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으며 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에 연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

○ 화원 성산리에 위치한 경북운전면서 시험장이 문경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는 경위와 이전으로 인한 우리지역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지역주민들의 교육상 혐오시설로 생각되는 대구교도소를 우리 관내 적당 장소로 이전할 용의와 이럴 경우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화원지역 국도 5호선의 1차선 확장으로 지역교통 해소에 도움은 되겠지만 태부족으로 판단되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대구시와 협의하여 6차선으로 확장할 의향은?

▶ 답변(부군수) : 경북운전면서시험장은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면허시험장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2년 하반기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전후의 토지이용문제는 경북지방경찰청 등에 건의를 해서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대구교도소가 건전한 도시공간 구조와 도시균형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법무부 등에 이전 협의 요청한 바 있으며 법무부에서는 이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검토할 계획임을 통보받았으며, 우리 관내 적당한 장소 이전은 군민의 또 다른 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도 5호선 확장은 국비지원없이 시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1차선 확장은 금년 5월에 착공해서 8월 준공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나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미흡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집행기관이 공동노력하여 국비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 주민복지문화보장과 읍면조직 인력의 효율적 운영 등으로 실시하는 읍면 기능 전환 추진에 있어 타 구 등에서는 2000년 1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읍면은 시내의 동과는 지역여건이 판이하게 다른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어떠하며, 질높은 행정서비스개선과 공무원 개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달성교양강좌의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당초 계획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한 공무원 해외연수 선발기준과 군 읍면직원의 안배와 연수 성과는?

▶ 답변(총무과장)

- 지난해부터 타구의 동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실시하였으나 이용 주민이 적고 민원처리에도 불편한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현재 34개 읍면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결과와 중앙지침에 따라 기능 전환토록 하겠음.
- 달성교양강좌는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향후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공무원 해외연수 선발기준은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과소장,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본청 50% 읍면 50%선발하고, 성과는 선진문화에 대한 국제적 안목을 배양하고 적극적인 마인드 함양으로 선진 지방자치 행정구현에 있음.

○ 오늘날 우리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된 새마을지도자에게 군민을 위한 봉사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용의는?

▶ 답변(총무과장) :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부 보조금, 하계수련대회, 새마을운동기념대회, 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도자 예우 부분은 금전적인 면보다 각종 행사초청 등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는 등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음.

○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관리에 대한 지도단속에만 의존하고 가격결정등의 권한이 없는 형식적인 물가관리 대책에 대한 견해와, 가스판매업소가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어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증가하여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대한 대책과 허가기준은?

▶ 답변(지역경제과장)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격통제의 한계를 느끼나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지역물가안정 대책회의, 물가동향 파악 등으로 행정지도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가스판매업소 허가기준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자가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불문하고 사무실 10㎡이상, 용기보관실 20㎡이상, 용기를 차에서 내리고 실을 수 있는 면적 20㎡이상 확보하여 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 후 허가하고 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허가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있음.



김판조 의원

○ 장기간 국가공단 지정이 불투명한 위천국가공단 지정에 따른 지역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와 지역개발사업 같은 간접적 지원 용의가 없는지와 국가공단 지정이 불가능하면 지방공단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가능성과 타당성, 군의 계획 및 공단지정이 어렵다면 공단지구에서 해제하여 주민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현재 대구시에서 추진중인 구지공단 인수 추진상황은?

▶ 답변(군수) :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지역간 이해 관계로 지정이 보류된 상태이며, 예정지내의 행위제한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행위제한을 해제하고 개발행위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공장 밀집지역은 개별법에 의거 대지, 공장용지, 잡종지에 대해서 개발행위는 허용하고, 기존 공장 밀집지역 외 전, 답 등은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는 개발면적에 제한은 없고 국가에서 조성완료후 분양하고 지방산업단지는 100만평 이내 개발토록 되어 있으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그 이상도 가능하고, 국가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 분양선수금으로 보상 및 조성함, 구지지방산업단지는 현재 대구시와 쌍용측과 계속해서 인수협상을 진행중에 있음.

○ 지하수자원보호 및 토양오염원 관리 측면에서 현재 우리 군의 폐공 개수와 향후 관리대책, 가로 청소 기계화의 일환으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진공청소차 2대 구입에 따른 운영방법 및 인력수급대책과,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분

리수거 확대실시로 수거전용차량 2대에 1억4,000만원을 투입 민간시설 및 축산농가 등과의 연계에 따른 추진방법과 추진시기는?

▶ 답변(환경청소과장) : 은닉 폐공된 불법 지하수로 신고된 관정 258개소는 양성화하겠으며, 방치된 폐공 42개소는 원상복구하고, 지하수개발 이용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용중지 또는 방치된 폐공도 조기에 원상복구 하겠음. 진공청소차 2대는 읍지역 간선도로와 주민밀집지역 등 효율성이 높은 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운행인력은 기존 가로환경미화원 중 운전면허소지자를 교육시켜 활용할 것이며,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실시는 환경시설공단과 침출수 문제를 협의하여 상반기에 화원 천내리 일대 3,700세대에 시범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화원, 논공, 다사읍 지역에 실시할 계획임.

○ 현풍공단 벼 피해 원인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5년 이상에 걸쳐 피해보상을 한 바 늦은감이 없지 않은데 용역업체 선정과 추진상황은?

▶ 답변(환경청소과장) : 현장실험이 원활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지역대학에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영남대학교에서는 화학농업분야의 교수로 팀을 구성하면 원인분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바, 용역을 영남대학교에 의뢰할 것을 검토중이며, 추진계획은 해당지역 농민과 관련 기업체를 참여시켜 각종 자료와 의견을 수렴하여 3월경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임.


도기태 의원

○ 노인복지증진시책의 일환으로 노인 지역봉사활동제도 실시에 따른 대상노인선정과 대상사업 선정은 어떠하며, 이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들이 위화감 또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에 대한 대책 및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상이군경복지회관 신축계획과 현 회관의 사후관리 대책은?

▶ 답변(사회복지과장) : 대상 노인 선정은 군 노인회 및 읍·면 노인회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을 읍면별로 4~5명씩 선정하여 교통질서계도, 환경정화사업을 실시하고, 미참여 노인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인지역봉사활동 사업을 확대실

시하고 있으며, 참여하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는 노인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시 군 및 읍·면 노인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상이군경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복지회관 위치, 사업규모가 결정된 바 없으며 앞으로 상이군경회와 긴밀한 협의후 추진하겠음.

○ 여성단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의 효과면이나 여성단체 반응은?

▶ 답변(사회복지과장) : 교육을 이수한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 실시결과 85%이상이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교육이수 후 근검절약 등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실천하고 있음.

○ 특수시책사업으로 30세대에 7백2십 만원으로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밑반찬을 지원코자 하는데 전체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현황과 밑반찬 지원대상 노인선정기준, 결손가정 결연사업 실적과 지원방법은?

▶ 답변(사회복지과장) : 저소득 독거노인은 87명이며, 밑반찬 지원대상 노인선정은 읍면별로 적정인원을 배분하여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며, 현재 우리 군의 결손가정은 소년소녀가장 32세대, 영세 부자가장 40세대, 영세 모자가정 115세대등 모두 187세대이며, 이중 결연을 맺은 가정은 124세대로써 결연방법은 한국복지재단에서 후원자를 통보해오고 있으며, 지원방법은 후원자들이 개인별 구좌로 후원금을 송금하고 있음.



박노설 의원

○ 하빈면에 운행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인 415번 버스가 배차간격 시간이 불규칙하고 자주 결행되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및 대책과 논공공단과 다사 소재지 지구내 불과 1㎞ 거리에 신호등 7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연동제가 되지 않아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은?

▶ 답변(지역교통과장)

— 하빈면 하산리에 운행되고 있는 415번 좌석버스의 운행간격이 12분 간격에서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은 금년 1월 5일자로 대구시 버스운행 변경인가로 인하여 조정되었으며, 조정사유는 문양, 동곡, 하산리 운행구간의 버스이용객이 저조하여 불가피하게 다사읍사무소 및 회차지와 분리 운행되고 있으며, 변경사실을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읍면에 문서로 홍보토록 조치하였으나 많은 주민들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아쉽게 생각하며 재차 통보토록 하겠음.

— 화원, 다사읍 소재지에 13개소와 현풍 우회도로 2개소중 현재 달성지방공단내 8개소와 화원 설화리 국도에 2개소를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제어기를 교체 연동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향후 연동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여론을 수렴한 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토록 하겠으며 다사읍 30번 국도의 신호등 7개소에는 연동제가 실시되고 있음.

○ 관내 전세버스 차고지는 현풍 구지등에 설치되어 있으나 관내에 주차하지 않고 시내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어 교통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세버스 차고지 허가기준과 차고지 시설에 대한 제재방법은?

▶ 답변(지역교통과장) : 관내 전세버스 차고지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안에 대당 면적기준 범위내에 허가하며, 현재 우리 관내에는 12개 업체 19개소가 있으나 차고지가 외곽지인 관계로 시내 주차장 또는 도로변에 밤샘주차하는 등 주차질서를 위반하고 있어 수시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정된 차고지를 사용토록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음.

○ 하빈면 봉촌리 하천내 축사가 해마다 수해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없이 매년 축산농가들이 우수기때에는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고, 대구광역시 상수도취수장 오염의 원인을 제공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예방차원과 축사 이주대책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은?

▶ 답변(건설과장)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수차에 걸쳐 이주 대책비를 건의하였

으나 보상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는 회시로 기존주택 및 축산농가 등의 이주계획이 사실은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금년 5월부터 지급예정인 하천 편입토지 추가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조속히 이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업체와 계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군직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와 2000년 보안등 유지보수에 소요된 예산과 군직영으로 시행하였을 때 예산절감 예상액, 소요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은 어떠하며, 하빈 동곡 도시계획도로 예정지가 '95년도 보상을 마친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되고있는데, 주민편익 차원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의향은?

▶ 답변(도시녹지과장)

- 보안등 유지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신속 보수,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군직영으로 운영코자 하며, 2000년도 보안등 유지보수에 소요된 예산은 자재비가 7,000만원 인건비가 1억 사용되었으며, 금년도 1개 지구를 군직영화하여 지난 연말 추경시 차량 1대와 장비를 포함하여 3,500만원 예산을 확보 구입중에 있으며, 소요인력은 전기기능직 1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으로 연간 절감액이 3,00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 관문도로 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 범죄 이용에 우려되는 폐가옥 10동에 대하여 지난 연말 철거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전기단전을 한 상태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가로공원 조성후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겠음.



이현근 의원

○ 정보공개법에 의거 주민이 청구한 군청이전 관련서류를 비공개로 결정한 사유와 최종보고서 납품후 검토과정과 관련 서류 제출지연으로 의회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사유는?

▶ 답변(지역교통과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은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타인에게 공개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고, 연구과정 중 보고회, 현지확인시 별다른 이의가 없었으며 사전 협의된 방법, 절차, 기준 및 과업지시 내용에 의거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별도의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았음.

-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최외출 교수의 의뢰방문 및 설명으로 의문점이 해소되었다고 판단, 연구과정 내내 군청이전 용역결과에 따라 차질없이 군청이전을 추진한다는 대전제가 있었으므로 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음

○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경비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침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각종사업 시행전에 투자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대책은?

▶ 답변(기획감사실장) :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및 과잉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투융자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립된 예산도 건전재정을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또는 시행단계에서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음.

○ 비슬산참꽃제의 원할한 교통대책과 효율적인 행사운영을 위하여 올해부터는 유가사쪽과 자연휴양림 쪽으로 분산 개최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바 이를 위하여 유가사 주차장 확장과 자연휴양림 순환도로의 현 공정은 어떠하며, 또한 대견사지 발굴 복원에 대한 대책은?

▶ 답변(문화공보실장) : 순환도로 공정은 토지매입과 현재 780m에 대하여 공사가 진행중으로 공정은 20%이고, 전체공사는 2002년도 완료 예정이며, 유가사 주차장은 금년 8월경 사업에 착수하여 2002년 완료할 계획이고, 비슬산 참꽃제 분산개최 계획은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유가사 주변에서 가능한 행사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대견사지에 대한 문헌으로는 신동국여지승람에 절터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 별다른 고증자료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의 시굴조사를 통해 보존대책을 수립하겠음.

○ 산간음악회는 연간 3회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는 심신의 피로를 씻고 자연에서 조용히 휴식할 분위기를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지역주민, 탐방객의 여론수렴 후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와 명곡, 서재지구 아파트단지 주민위안공연도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항으로 행사성, 소모성, 낭비성 사업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 답변(문화공보실장) : 산간음악회 시행전에 충분한 검토와 함께 탐방객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후 시행토록 하겠으며, 자연친화적이며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행사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시 찾는 자연 휴양림이 되도록 하겠으며,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주민위안공연의 경우 주민들 대다수가 토착민과는 달리 애향심이 적어 달성군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일깨워 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군청실업정구부에 대하여 군민 대다수가 알지 못하므로 각종 대회시 적극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성원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 답변(문화공보실장) : 군청실업정구부의 각종 대회 활약상을 각종 언론 매체는 물론 달성소식지 및 군정뉴스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이선용 의원

○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26억4,400만원이 감소한 57억원으로 68% 계상된 사유와 실제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2000년 11월말 체납세액 총 129억9,100만원 중 취득세 체납이 42억6,400만원으로 32.8%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동산 등은 취득한 경우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많은데 대한 원인과 징수대책은?

▶ 답변(세무회계과장) : 순세계잉여금은 대부분 예산성립후 사업취소나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하는 집행잔액으로서 정확한 금액은 이듬해 세입세출 결산이 이루어져야 알 수 있으며, 본예산의 세입판단은 전년도 10월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산출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 준하여 예산에 추정수치를 계상하고 있으며, 체납세액 중 취득세 체납이 과다한 사유는 지역의 건설업체가 토지 매입할 당시의 당초 취득세는 납부하였으나 매입후 업무용으로 사용치 않아 중과세 추징된 것으로 현재 부도 및 법정관리 상태로 조기 징수는 어려우나 부동산 압류, 공사대금 압류 등 조세 채권확보에 가능한 조치를 하였음.

○ 상설 기동체납반 상시 운영을 군과 읍면에 각각 운영하는 것보다는 군에 별도로 체납세 전담반을 편성하거나 기구 보강책 마련에 대한 견해와,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각대를 수년째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추경시 삭감하는 등의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매각을 유보할 의향은?

▶ 답변(세무회계과장) : 상설 기동체납반 운영은 현재 인력으로는 별도의 전담반을 편성하기는 곤란하나, 읍면 기능전환이 이루어져 세무업무가 군으로 통합되면 전담반을 편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구 농업기술센터의 부지는 외환위기나 부동산 지가 하락 등으로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각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건축경기가 활성화되면 매각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분석 결정하겠음.



이팔호 의원

○ 후계농업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원만 늘려 농작물가격의 대폭락과 농산물 전문수입 등 애로사항이 도사리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낭비만 하는 것은 아닌지,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은 아직 착공도 안된 시점에서 2002년 8월경에 준공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너무 임박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공사의 단계 및 일정은?

▶ 답변(농축산과장) : 후계농업인 사업의 목적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부녀화로 농업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농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신규 영농자금을 지원, 자력 영농 정착으로 미래 유능한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 있으며, 후계농업인의 사후 관리로는 매년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융자금 회수조치 및 사업을 취소하고 있으며, 농수산

물종합센터는 2001년 3,4월 착공, 5월 토목공사, 12월 골조공사, 2002년 4월 외벽공사, 2002년 7월 외부 마감공사, 전기설비공사, 조경공사를 하여 2002년 8월까지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음.

○ 인터넷 농업방송이 한 개 읍면에 2~3품목이 방송되는가 하면 하나도 홍보되지 않는 읍면이 있는 등 불균형이 발생하는데 시정할 의향은?

▶ 답변(농축산과장) : 개설 당초 읍면별 1개 품목 이상 추천을 받아 15개 작목반에 대하여 촬영 계획하였으나 다시 부추, 논공 찰토마토, 구지감자 등 일부 작목이 생산시기와 촬영여건이 맞지 않아 부득이 방송에서 제외되었음. 올해에는 미촬영분을 포함 읍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농산물 등 추가로 편집하되 지역간 안배를 고려하여 운영토록 하겠음.

○ 여성지도자 전문교육이 타부서에서 시행하는 여성 아카데미 교육,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 등 여성교육의 중복성이 있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소장의 견해와, 또한 농작물의 동해피해에 대하여는 남부지역의 단감나무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 기술적 예방책은?

▶ 답변(농업기술센터소장) : 여성아카데미,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 등 타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교육과 중복된다는 지적은 금후 교육대상자 선발에 신중을 기해 중복교육이 없도록 하겠으며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작목별 동해정도는 작물의 생육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단감작목반 전문교육을 조기에 실시하여 피해를 받은 나무는 전정시기를 늦추는 등 동해 예방대책에 지도를 다하겠음.

제 3 장 행정사무감사

제1절 감사총괄

1. 감사목적
2. 근 거
3. 감사기관
4. 대상기관
5. 감사반 편성

제2절 감사현황

1. 감사개요
2. 실과소별 중점감사 내용

제3절 감사결과 지적사항 총괄

제4절 감사결과 총평 및 지적사항

제3장 행정사무감사

제1절 감사총괄

1. 목 적

○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하고 잘못된 분야를 지적·시정요구함으로써 올바른 군정방향 제시는 물론, 군정을 보다 상세하고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 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3. 감사기간

구 분	기 간	일 시	비 고
1998년	1998. 12. 3. ~ 12. 9	7일간	
1999년	1999. 12. 3 ~ 12. 9	7일간	
2000년	2000. 7. 13 ~ 7. 19	7일간	
2001년	2001. 7. 13 ~ 7. 19	7일간	

4. 대상기관

대 상 기 관		대 상 기 관 수
군 본 청	각 실 과	2실 13과
	사 업 소	3
읍 면		9
의 회 사 무 과		1

5. 감사반 편성

구 분	감 사 위 원		감 사 부 서
	위원장	위 원	
1998	이정재	이경식	지역교통과, 건설과
		김판조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
		도기태	농축산과, 농촌지도소
		서병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이현근	도시녹지과, 건축과,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이선용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이팔호	사회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1999	이정재	이경식, 이현근	지역교통과, 건설과, 도시녹지과 건축과,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김판조, 이선용	세무회계과, 환경과, 지역경제과, 민원봉사과
		도기태, 이팔호	사회복지과, 농축산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서병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2000	이경식	김판조, 이정재	지역교통과, 건설과, 도시녹지과 건축과,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도기태, 이팔호	사회복지과, 농축산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박노설, 이선용	세무회계과,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민원봉사과
		이현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2001	이팔호	이정재, 이선용	지역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도기태, 이경식	복지위생과, 농축산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박노설, 김판조	세무과, 회계과,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민원봉사과
		이현근	기획감사실

제2절 감사현황

1. 감사개요

□ 대상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법 제9조)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대구광역시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나 광역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법 제36조 제3항)

□ 감사 제외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사항

○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이 미치는 사항

○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사항

□ 피감사기관 준비사항

○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업 보고서 작성 제출

○ 감사계획서에 의한 감사자료 작성 제출

□ 진행순서

○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인사(선서의 취지 및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림)

○ 피감사기관(부서)장 선서

○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현장확인, 출석, 증언, 의견 청취

○ 강평(감사 마지막날 종합 강평)

□ 감사자료 설명 및 답변

○ 본청 각 실·과 : 실, 과장

○ 사업소 : 사업소장

○ 읍　면 : 읍면장

□ 관계인의 출석

○ 관계인은 본 감사계획상의 감사일정에 따라 증언토록 함

○ 피감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이 적당한 사유로 응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이유서를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실시하는 날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 증인 및 관계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진출석 형식에 의함

□ 결과보고서 작성

○ 간사는 당일 감사부서의 감사결과 일일보고서를 감사종료 즉시 의장에게 제출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전문위원 보좌를 받아 목적, 기간, 경과등 일반사항과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특이사항 등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을 포함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

□ 기타사항

○ 감사계획서는 본회의의 승인 즉시 군수에게 통보

○ 감사중 유의사항

-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는 기밀 누설 금지
- 의원 또는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 누설 금지

2. 실과소별 중점감사 내용

실과소별	감 사 내 용	비 고
공 통 (8)	○ 세출예산 집행현황 ○ 위원회구성 및 운영실적 ○ 기금조성 실적 ○ 기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 ○ 일용인부 사역현황 ○ 공사설계 및 학술용역현황 ○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상황 ○ 2000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기획감사실 (9)	○ 소송사무 처리상황 ○ 행정규제개혁 추진실적 ○ 채무조서 ○ 예비비 집행현황 ○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 2000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 2001 미착공 사업조서(실과소, 읍면) ○ 공무원 징계처분현황 ○ 자체 및 상급기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상황	
문화공보실 (7)	○ 군정홍보물 및 관광안내책자 제작현황 ○ 관광홍보판 설치 및 보수현황 ○ 음반, 비디오물지도 ○ 문화재, 보수공사 현황 ○ 각종 행사 군비지원현황 ○ 동네체육시설 설치현황 ○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른 지도단속실적	
총 무 과 (7)	○ 공무원 정·현원현황 ○ 복수직렬의 공무원보직현황 ○ 새마을회관 신축·보수현황(증축포함) ○ 푸른달성가꾸기사업 추진실적 ○ 행정정보화사업 추진현황 ○ 민방위대 장비보유현황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현황	

실과소별	감 사 내 용	비 고
세 무 과 (6)	○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 지방세 고액체납자현황 ○ 과오납금 미반환현황 ○ 고액결손(감액) 처분현황 ○ 보조금·세외수입 징수현황 ○ 법인세무조사실적(현지실사)	
회 계 과 (11)	○ 채권조서 ○ 수의계약 집행상황 ○ 2000년 12월중 원인행위(계약) 공사현황 ○ 지체상금 부과현황 ○ 공사하자 및 조치결과 ○ 선급금 지급후 미완공사업 현황 ○ 정수물품 취득현황 ○ 물품폐기 및 처분현황 ○ 국·공유재산취득 및 매각현황 ○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대부료·변상금 징수현황 ○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내역	
복지위생과 (8)	○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 경로당 지원현황 ○ 보육시설 지원내역 ○ 모금액 및 모금품 집행현황 ○ 주택 개·보수비 지원현황 ○ 식품접객업 행정처분내역 ○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등 지도	
환경청소과 (9)	○ 공해배출시설(대기·수질·소음) 허가현황 ○ 배출부과금 부과징수현황 ○ 배출업소단속 및 행정처분실적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 음식물쓰레기 발효기지원 및 이용현황 ○ 쓰레기봉투제작 및 판매현황 ○ 불법폐기물 처리단속실적 ○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 ○ 생활쓰레기 수거업무 민원위탁 및 환경미화원 관리현황	

실과소별	감 사 내 용	비 고
지역경제과 (6)	○ 공설시장현황 ○ 시장현대화사업 추진현황 ○ 가스업체(판매소, 충전소, 제조업) 안전점검 현황 ○ 체불노임업체 현황 ○ 공공근로사업현황(1-1) 공공근로사업현황(1-2) ○ 지방고용심의실무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지역교통과 (6)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현황 ○ 운수업체 지도감독현황 ○ 차량과태료 부과·징수현황 ○ 법규위반자동차 행정처분현황 ○ 차량등록 및 개인면허현황 ○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실적	
농축산과 (10)	○ 후계농업인 및 지원현황 ○ 불법농지전용행위 단속실적 ○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징수현황 ○ 수해피해 및 지원현황 ○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현황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타 건설현황 ○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현황 ○ 농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현황 ○ 내수면 사용허가현황 ○ 축산물 불법유통단속현황	
건 설 과 (7)	○ 하천골재 채취현황 ○ 도로,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부과 징수현황 ○ 불법 하천 형질변경 행위단속 실적 ○ 건설공사 추진현황 ○ 공사설계 변경현황 ○ 시설부대비 집행내역 ○ 2000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항구, 복구)	
도 시 과 (8)	○ 불법토지형질변경행위 단속실적 ○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 도시계획사업(공사) 추진현황 ○ 공사설계 변경현황 ○ 시설부대비 집행내역	

실과소별	감 사 내 용	비 고
	○ 간이상수도 현황 ○ 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 보안등 관리현황(유지보수)	
공원녹지과 (5)	○ 보전임지전용허가 및 대체조림 전용부담금 징수현황 ○ 산림훼손행위 단속실적 ○ 산림훼손(토석채취)허가 및 복구현황 ○ 임도신설 및 보수공사현황 ○ 조림지 현황	
건 축 과 (7)	○ 건축허가 현황 ○ 건축신고 현황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현황 ○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 주택융자금 회수현황 ○ 주택개량 및 개보수사업 지원현황	
민원봉사과 (5)	○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현황 ○ 지적민원 처리현황 ○ 진정서 처리현황 ○ 민원사무 처리(반려) 현황 ○ 주민등록·호적과태로 부과·징수현황	
농업기술센터 (5)	○ 농산물 수출현황 ○ 꽃묘생산 및 씨감자 생산시설 설치 현황 ○ 농업인조직체 육성 및 예산지원현황 ○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현황	
보 건 소 (5)	○ 약품수급현황 ○ 진료수입현황 ○ 병·의원 등 의료시설현황 ○ 약국 및 한약업사 등록현황 ○ 학교예방 접종현황	
비슬산자연공원 관리사무소 (3)	○ 자연휴양림 이용현황 ○ 자연휴양림 행정재산 사용(임대)허가 현황 ○ 휴양림시설설치 및 보수현황	

제3절 감사결과 지적사항 총괄

1.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요 구	건 의	비 고
계	144	60	35	49	
1998년	33	14	6	13	
1999년	40	17	17	6	
2000년	37	14	9	14	
2001년	34	15	3	16	

제4절 감사결과 총평 및 지적사항

□총 평

1998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의회가 첫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한차원 높게 실시되었으며, 상부기관의 업무감사와는 시각을 달리하여 평소 폭넓게 수렴된 군민의 의견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사무를 상세히 파악하여 위법부당한 사항과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 처리토록 요구함으로써 보다 향상되고 발전된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평가되며, 합리성과 합목적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있고 폭넓게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큰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판단됨.

이번 감사는 행정 내부사항보다는 주민편의 위주로 현안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지적된 부분은 잘못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제도적인 모순점을 찾아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예방위주의 감사가 되도록 하였음.

또한 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158건의 감사자료를 감사기간 이전에 제출토록 하여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3일간에 걸쳐 세밀한 자료검토를 실시하여 위원과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지

는 한편,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도 3일간에 걸쳐 미리 보고 받음으로써 군정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상세히 감사되어 군정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그리고 짧은 감사기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의문되는 사업은 반드시 현지를 출장하여 정밀하게 확인함으로써 현장 감사에도 충실을 기하였음.

감사지적 현황을,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건 5건, 건의사항 13건, 그리고 구지 화산리 하천점용 이중허가에 따른 문책요구 1건으로 총 33건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실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업무감사와는 차원이 다르게 제도상의 문제점 또는 지방행정 여건상 불가피한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제도의 문제가 있는 사항은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점차 개선 보안시켜 나가고, 제도상 어려운 부분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음.

그동안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당초 목적대로 낭비없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된 각종 민원사항과 자료를 근거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거의 행정관행과 비하여 볼때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판단됨.

행정사무감사결과 주요문제점으로는 일부 업무는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었으며, 소관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감에 임하는 등 다소 불성실한 경우도 없지 않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

첫째,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여 관계자의 엄중문책 등으로 재발을 방지토록 하고,

둘째,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공직자들이 주민을 위한 민주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움직이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 수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아직도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자세를 탈피하지 못하고 형평성을 무시한 비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책임

을 회피하고 부서간에 서로 떠넘길려는 행정처리로 이러한 형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또한 7일간의 감사기간으로써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었으며, 위원 모두는 전문지식을 더욱 넓히고 주민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수시로 군정을 확인 감시하는 견제자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전반에 주요업무를 보다 세밀하고 깊이 있게 감사하였으며 해당부서 업무의 비중에 따라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됨.

□ 19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기획감사실	○ **부서간 업무조정과 유기적인 조화 미흡** 달성군청이 불법, 비리의 온상처럼 언론에 보도된 약산온천사건을 비롯한 구지면 하천부지 사용허가관계, 가창면직원의 공금유용관계 등의 사건은 집행기관의 부서간 조정과 협동으로 유기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 기능이 강화되여 업무의 Cross-Check가 이루어졌다면 예방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고유업무, 고유권한을 고집하지 말고 유일한 군정목표를 위해 17개 실과소가 협동과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 기능의 강화가 요망됨.	건의사항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기획감사실	○ **대의회 협력관계 재정립 요망** 한차원 높은 대의회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사항에 대해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 공무원의 입을 통해 의회무용론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기왕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정책 방향이라면 어차피 소요되는 예산이고, 군정질문 따로, 답변 따로라는 관념에서 탈피하여 중앙정부야 어떻던 시,도의 관행이 어떻던 우리 달성군만은 집행기관과 의회가 조화로운 협력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정립이 요망됨	건의사항
	○ **각종위원회 운영개선** 우리군의 각종 운영위원회가 39개 위원회가 있는데 사안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위원회는 존치하더라도 여타 위원회에서 수행사항을 의회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건의사항
문화공보실	○ **예산서 작성에 따른 자료검토 미흡** 1998년 예산서의 순세계잉여금과 1997년결산 순세계잉여금의 차액이 발생한 것은 면밀한 자료 검토없이 예산서를 작성한 결과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인 만큼,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함.	시정요구
	○ **달성군민상 선정 미흡** 달성군민상은 지역사회, 향토문화,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에게 수여토록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 활동은 다소 빈약하더라도 대부분의 토착주민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분들은 달성을 지켜왔고 달성의 문화를 창조해 온 분들로서 애정어린 관심으로 살펴본다면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이웃과 지역에 귀감이 될 인물을 선정하는 것도 의미있는 것이라고 사료됨.	건의사항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문화공보실	○ **문화재 보존관리 미흡** 사업비 7천3백만원으로 척진교 보수공사를 하였는데 문화재를 보수, 유지관리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훼손의 느낌을 받았으며, 원형은 간곳 없고 새로운 설계에 의해 지은 다리 모습이였고 "스텐"으로 난간대를 만든 것은 수치심마저 느낄 정도로서 정확한 문화재 자료수집 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음.	시정요구
	○ **사업예산집행 부적정** 박황, 조길방가옥 이엉잇기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인데 보조금지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사업을 착공·완료하였는바, 이는 행정편의 위주 사업집행으로 시정이 요구됨.	시정요구
총 무 과	○ **인간위주의 조직운영에 대한 대응조치 소홀** 우리는 인사제도의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여 가감점 적용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성공적인 인사관리를 기대하면서 한가지 주문을 한다면, 조직의 주체인 사람을 관리하는데 일정한 Model을 정해놓고 그 Model 속으로 들어가도록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 자체가 대단히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위주의 조직운영을 염두에 두고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어야 하고, 일하는데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만족감을 얻을수가 없고 의욕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금전적인 수입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수입을 연구 개발하여 의욕관리에 차원높은 대응조치가 요구됨.	시정요구
세무회계과	○ **정수물품 관리대장 미정리** 199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지적 하였는데도 '98년도 구입한 굴삭기와 진동로라 기계를 구입하고 정수물품 관리대장에 미정리 되었으며, 폐기 및 파손처리 된 것은 정리가 되지 않아 철저한 정기재물조사가 요구됨.	시정요구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세무회계과	○ **결손처리업무 소홀** 세금고액결손 처분 중 금년도에 부과한 주민세를 금년도에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5년간 계속 재산조회 및 예금계좌 추적 및 신용거래 제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미리 결손 처분한 것은 직무태만으로 차후 지속적인 재산조회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시정요구
	○ **사업예산집행 부적정** 설계용역 부분에 있어 특정 회사가 여러건의 사업에 대하여 계속 용역체결한 것은 의혹이 제기되는 바 적정하고 공평한 계약업무 처리가 요구됨.	건의사항
사회복지과	○ **경노우대 시행 따른 수혜공평성 미흡** 65세이상 노인에게 수년간 경노우대 시책을 시행하여 수혜를 받은 노인은 많으나, 특히 이미용소 이용 경노우대는 남자노인에게만 적용하여 왔으며 미용소 여자경노우대는 전혀 적용치 않아 남녀 성별차등과 수혜균등이 적합치 아니함으로 확대조정 요망.	시정요구
	○ **어린이집 운영수칙 점검 미흡**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지켜야 할 수칙에 있어 자체적으로 확인 실시하고 있으나 차량의 운전기사에 대한 건강체크, 어린이보호를 위한 노란색 차량도색, 종합보험가입 조치요망.	시정요구
	○ **생활안정자금 홍보부족** 생활보호 대상자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2세대에 총 2,000만원을 무이자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IMF 시대의 어려운 생활인데 아직까지 그 실적이 전무한 것은 적극성이 없는 행정으로 기인된 바 반회보등 적극 홍보하여 년초에 지원되도록 조치요망.	시정요구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환경관리과	○ **약수터 관리소홀** 관내 생수 사용하는 약수터가 50여곳에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하여 합격과 불합격을 게시하여 이용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실적이 저조함.	시정요구
	○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계획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형식적 점검으로 치우쳐, 상시 점검대장에 검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 유지하여 실질적인 낙동강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겠음.	시정요구
	○ **축산폐수 배출업소 점검 미흡** 축산폐수 배출업소 점검을 허가사항일 경우 년2회 신고사항일 경우 년1회 실시하여야 하는데 총대상 171개소 중 130개소만 점검을 하였는바 미실시 업소에 대한 점검을 하여 위반사실이 있다면 적법조치 요망.	처리요구
	○ **청소관리업무 민간이양 검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관리를 하고 있는바, 년간 직접비 35억원 간접비 15억원이 소요되고 있어 이를 민간이양 관리 한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청소관리를 민간이양 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건의사항
지역경제과	○ **가정용 LPG 가스판매업소 지도단속 소홀** 관내 현풍, 유가, 구지 지역의 가정용 LPG판매업소가 담합하여 판매가격 뿐만 아니라 일요일은 휴무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시정이 요구됨.	시정요구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지역경제과	○ **물가안전 지도관리 미흡** 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가격파괴 시범거리를 각 읍·면 9개소 선정 육성하고 있으나, 추진 현황을 보면 그 이행을 자율에 맡기고 있어 실적이 미흡한바,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IMF시대 저물가 관리에 적극적 행정지도 요망.	건의사항
	○ **가스취급업소 안전관리 미흡**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군민의 안전을 위해 관내 가스취급업소 74개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바, 선임된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법적 규정을 준수하여 가정용가스통을 저장 또는 보관토록하여 가스폭발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건의사항
	○ **재래시장의 현대화 시설요망** 우리군의 공설시장은 6개읍면에 46,259㎡의 면적에 76동의 장옥이 있는데, 이를 현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상업행위를 쾌적한 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 강구요망.	건의사항
지역교통과	○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실적 미흡** 화물 및 관광버스의 대형차량은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인근 공지에 주차하여 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바 이에 대한 지도단속이 미흡하고, 단속에 따른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됨.	시정요구
농축산과 농촌지도소	○ **농업인후계자 육성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 요망** 1998년도 농업인후계자 육성지원계획 42명 8억4천만원 중 '98.10.31현재 21명 4억2천만원이 지원되어 그 실적이 50%로 적기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총지원 인원 553명중 477명만 당초 지원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76명은 사업포기 등을 자금회수를 하였거나 회수대상인 바, 이들로 인하여 실제자금이 필요한 농업인후계자에게 자금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우려되며, 후계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기술지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농업인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건의사항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건 설 과	○ **하철골재채취장 관리소홀** 하천골재채취장이 전자시스템 시설 설치로 완벽을 기하고 있으나 기계시설의 고장등에 따른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근무요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 요망됨.	시정요구
	○ **민원처리 부적정에 대한 조치 미흡** 구지면 화산리 1088선에 대한 하천점용에 따른 민원에 있어 이중으로 허가 처리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이 부족할 뿐 아니라 군과 면의 행정이원화에 따른 행정누수현상으로 기인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각종 언론보도에 따른 군의 공신력 실추 측면에서 민원처리 부적정에 대한 문책을 요구함.	문책요구
도시녹지과	○ **사업시행 우선순위 판단착오로 예산낭비 또는 사장** 유가사 척진교, 하빈 동곡 도시계획도로, 자연 휴양림 주차장 개설사업 등은 사업시행 우선순위 판단착오로 예산의 낭비 또는 사장(유가사 척진교 2억7천1백만원, 집단시설지구 보상금 : 6천7백만원 동곡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 7억2천6백만원, 휴양림주차장 공사비 : 3억3천4백만원) 요인이 되고 있어 지적된 바 있으나, 필요한 조치가 수반되지 못하고 있음.	처리요구
건 축 과	○ **성원APT 비탈면 보강대책 및 복구비 환수조치 요구** 성원APT비탈면은 표토층 아래의 암질이 퇴적암인 회색의 혈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방향의 단층 파쇄대가 곳곳에 있어 안전상 중대한 재해가 예상되므로 근본적인 사면 보강대책 수립이 시급하며, '98. 8. 16 군비 400만원을 응급 복구비로 투입한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집행이 불가피하나, 구상권을 발동하여 사업자 또는 입주자로부터 환수조치가 따라야 하겠으며, 또한 비탈면 복구비로 편성된 7천만원도 귀책사유가 성립되므로 사업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것임.	처리요구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민원봉사과	○ **APT민원배달제 운영재고** 주민행정 서비스를 위한 APT 민원배달제는 100세대이상 36개소 15,038세대에 담당공무원 36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통신·교통이 편리하여 이용주민이 없어 실적이 저조한바 홍보 등을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실효성이 의문시되므로 운영에 대한 재고 요망.	건의사항
	○ **전공무원「민원해결사」시책추진 철저** 금년 8월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군관내 전공무원에게 민원해결사 책 발간과 교육 및 시험까지 치루어 우수공무원 시상과 인사에 반영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시책은 좋으나 추진이 미흡하므로 시책으로써 끝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요구
보 건 소	○ **검사시약 구입방법 부적정** 관공서에 필요한 물품 구매시는 예산회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매하여야 함에도, 검사시약 구입에 있어 타인의 견적이 없을 뿐 아니라 사전 시장조사가 미흡하여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구매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음.	시정요구
종합사회복지관	○ **도서구입 방법 부적정** 도서구입비 4백80만원 중 247만3천원 집행과정에서 철저한 시장조사나 타인견적서를 받아 비교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1개사의 견적을 받아 물품을 구매한 것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시정요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 **비슬산자연휴양림 운영제도 개선 미흡** • 비슬산휴양림이 금년도에 자연공원 관리사무소로 승격됐으나 자연휴양림만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구역 전체를 관장하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음.	처리요구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 휴양림 입구에서 산막, 야영장까지는 이동거리가 멀고, 이용객들이 과다한 물품(장비)을 휴대하고 있어 불편이 많으며, 입장료 수입의 감소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용객 편의를 위한 통행수단이 요망됨. • 휴양림 산막이 10개소 설치되어 있으나 동절기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동절기 대체 산막 건립이 필요함. • 근무일지 등 제반서류 비치 및 관리상태는 양호하나 근무일지 작성시(단체의 경우) 단체명, 단체대표자, 연락처 등 기재하여 별도 관리하므로써 홍보효과 거양 및 차년도 입장료 수입증대에 기여하여야 할 것임. • 휴양림 산막 이용자가 예약후 예약당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세입감소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선입금 확인후 예약처리 등 제도개선이 요망됨.	

□ 총 평(1999년도)

1999행정사무감사는, 제3대의회가 두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주민의 여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8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위원별로 감사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평소 폭넓게 수렴된 군민의 의견과 현장 확인을 토대로 얻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전반에 대하여 깊이있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사항과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 처리토록 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감사가 된 것으로 평가됨.

특히, 감사의 중점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과 군정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 내부사항 보다는 주민편의 위주의 현안사항에 중점을 두었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제도적인 모순점을 찾아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예방위주의 감사가 되도록 하였음.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 당초 목적대로 낭비없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된 각종 민원사항과 자료를 근거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에 있어서 경영기법 도입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그러나, 감사에 도출된 기본적인 문제는, 감사에 제출된 127건 자료 중 일부 사항은 계수의 부정확 등 불충분하였던 자료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며, 향후 충실하고 성의있는 자료제출이 요망되며, 또한 모든 실과소장들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미숙으로 앞으로 업무연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하겠음.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은, 주민이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적기에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과 예산의 운용상 부적정, 행정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사항 그리고 사업추진상 문제가 도출된 부분으로, 시정요구 17건, 처리요구 17건, 건의요구 6건으로 총 40건임.

이러한 감사지적은, 적발위주의 상부기관 업무감사와는 차원이 다르게, 제도상의 문제점 또는 지방행정 여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주민불편 초래사항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 하였으며, 앞으로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사항은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점차 개선 보완시켜 나가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됨.

향후, 집행기관의 모든 공직자는 군민의 공복으로서, 이러한 사항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와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집 살림을 한다는 자세로 군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또한, 7일간의 감사기간으로써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었으며, 위원 모두는 전문지식을 더욱 넓히고 주민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군정을 확인 감시하는 견제자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임.

대망의 2000년도에 우리군이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해로 삼아 우리 의원들과 집행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군민들로부터 박수와 갈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한단계 더 성숙된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될 것임.

□ 19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공 통	○ **예산집행 방법 개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의 과목은 불용액이 제로 Base로 집행된 사실은, 소급해서 예산편성시 1회계년도에 집행할 업무계획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 예산인데, 여타업무의 추진은 계획대로 집행한 것도 있지만 계획과 실적이 미진한 사업도 많은데 상술한 과목의 예산은 불용액이 없을 정도로 집행한 것은 예산의 낭비성이 우려됨.	시정요구
기획감사실	○ **순세계잉여금 계상 소홀** 1998년도 세입, 세출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 67억5,161만3천원인데, '99년 2회추경 세입예산서상 계상된 금액이 69억8,695만4천원으로 차액이 2억3,534만1천원(일반회계 85,860천원, 특별회계 149,481천원)이 발생한 것은 결산서상의 금액의 변동은 있을 수 없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순세계잉여금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하여 2회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것은 회계처리에 맞지 않을 뿐더러 건전 재정운영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사료되는 바, 이의 시정을 촉구함.	시정요구
	○ **공무원 징계처분의 객관성 미흡**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과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에 있어, 공무원 품위손상, 근무시간 중 음주, 농지소유 및 경작확인 협조공문서 방치 등 지적사유가 다양한데도 징계건수 10건 중 9건이 견책이고 1건이 감봉 처리된 것은, 고정되어 있어야 할 징계처분 기준이 그때그때 사정과 정실에 따라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바, 이의 시정을 요청함.	시정요구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기획감사실	○ **국시비 보조요청시 의회와 협의** 국시비 보조요청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후 보조 요청 대상사업을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이는 보조요청 자체가 바로 사업결정이고 동시에 예산편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촉구함.	건의요구
	○ **기획감사실 기능 확대강화** 군정기획 및 조정, 통제기능을 통한 중추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여망의 시책화 및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군수 결심자료를 제공하고 실과소별 및 각종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차질없는 군정수행을 위하여 기획감사실 기능을 확대강화하여 종합적인 업무 Flow-chart를 작성하여 군정을 관리하는 System이 요구되는데 이의 확행을 건의함.	건의요구
문화공보실	○ **군정뉴스 제작시 의회기능 홍보** 군정기획 방영 및 군정뉴스 제작 방영내용이 단체장 중심으로 편집 방영되는데, 의회의 기능 또한 군정의 중요한 보도자료인 만큼, 의회운영 및 활동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지방자치제를 이해시켜 의회 민주주의의 주인이 주민임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의 시정을 요구함.	시정요구
	○ **보조금 지급단체의 결산확인 미흡** 1억4천여만원의 보조금을 4개 기관단체에 집행후 단체별 보조금 관리실태를 확인해 본 사실이 전혀 없는 바, 보조금 지급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는지 확인요망.	처리요구
	○ **청소년보호법 적용 소홀** 청소년 보호법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현실과 실제 적용에 맞지 않는 각 부분을 개정요구 또는 관계부처에 확실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법운용을 행하여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사전에 예방토록 모색.	처리요구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문화공보실	○ **군민상 수상자 선발 객관성 미흡** 군민상은 군민에게 가장 큰 상으로써 그 품격을 고양하고 자랑스러운 상으로 유지 관리되기 위해서는 수상대상자가 엄선되어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부문별 수상대상자를 엄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건의요구
총 무 과	○ **합리적인 정·현원 관리 방안** 읍면별 정·현원의 관리 및 T/O 조정은 행정업무량 및 행정수요 유발 요인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행 운용하고 있는 T/O와 현원 관리를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으로 개선 요망.	시정요구
	○ **농업직공무원 직렬조정 방안 검토** 우리군 공무원 중 농업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직 희망에 따라 직렬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 현행 통합관리 대상인 기술직 공무원에 따른 관심도가 우리군에 비해 타구청에서는 낮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점차 도시행정으로 변화하는 군정을 감안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	건의요구
	○ **삼진아웃제의 가감점의 지속적 활용** 군산하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체계적인 통제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복무와 관련하여 삼진아웃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데, 그 평가의 효력이 1년 단위로 시행하는 것은 감점자에게는 향후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반성의 기회가 될 수 있으나, 가점 대상자에게는 열심히 일한 결실을 얻지 못하는 상대적 실망감을 주는 경우를 고려해 볼 때, 가점대상자의 평가는 지속적으로 그 효력이 보장되어 승진이나 전보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건의요구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총 무 과	○ **설계전담반 구성 및 재무업무 개선방안** 면사무소에 건축·토목기사 한 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신규임용자를 발령하기 때문에 업무처리 능력에서 문제가 있고 업무의 비능률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본청에 설계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관리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읍면의 재무계 또한 본청의 징수부 대장정리를 똑같이 읍면에서 중복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여 본청 징수계를 확대 보완하여 집중관리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거양할 수 있다고 사료됨.	건의요구
	○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미흡**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과 장부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지도 점검해야겠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과 특히, 채무현황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처리요구
세무회계과	○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이자 반환 소홀**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에 있어 부과착오 및 이중부과가 발생하여 환부이자율을 보면, 원금의 2/10,000의 이자는 7.35% 이자율이고, 군금고 예치율은 우대금리로 5.5%로 예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과오납이 발생되면 1.85%의 환부이자 손실을 보게되므로 과오납금이 발생시 본인에게 즉시 통보 지급토록 하여 개선요망.	시정요구
	○ **지방세 징수실적 미흡** 지방세 부과대 징수실적이 76%로, 금액으로는 120억이나 징수를 하지 못하였는 바, 징수에 따른 특별대책 강구.	처리요구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세무회계과	○ **잉여예산 금융기관 예치방안 강구** 군금고 여유자금을 대구은행 및 농협 달성군지부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자금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높은 금리로 예치하여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처리요구
사회복지과	○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부적정**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2천만원을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함에 있어 사업계획서 없이 융자하고 있어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임.	시정요구
	○ **신일양로원의 식단운영 미흡** 신일양로원의 노인들에 대한 균형적인 식단준비로 합리적인 운영이 요구되는 바, 이에 따른 영양사 채용방안 강구.	처리요구
	○ **어린이집의 어린이보호차량** 어린이집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노란색 안전도색이 요구됨.	처리요구
환경청소과	○ **낙동강 수질관리대책 미흡** 물은 생명의 원천으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낙동강 수질오염 발생시 방재를 위한 장비가 화원 사문진교에만 보관하고 있어 원거리 수질오염 발생시 긴급대책 요망.	처리요구
지역경제과	○ **국제박람회 참여 홍보 미흡** 지역내 국제박람회 참가업체를 보면, 과거 4년간 동종업종 5개업체 정도가 계속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므로 우량 중소기업이 다수 참가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시정요구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지역경제과	○ **가스 안전관리 소홀** 가스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시설점검 또는 사후관리에 있어, 전문자격이 없는 자가 관리하고 있어 대책 요망.	처리요구
	○ **재래시장(사용료 현실화) 관리 소홀** 재래시장의 사용료는 '98년도에 책정되어 현재까지 부과하고 있는 바, 이는 현실에 맞지 않아 현황실사를 통한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 요망.	시정요구
지역교통과	○ **차량 과태료 징수 소홀** 주소변경 및 계속검사미필 등에 따른 차량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실적에 있어 가산금 제도가 없고 납세자의 태만, 행불 등 사유로 30%에 불과한 바 특단의 대책 강구.	처리요구
	○ **운수업체 지도감독 소홀** 전세버스 및 일반 용달화물 차량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함에도 주택 인근 노상에 불법 주차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어 특단의 대책 요망.	처리요구
농축산과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수당지급방법 개선**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이 농지의 소유, 임대차 관계, 농지전용 확인 등으로 잘하고 있으나, 확인 회피, 금품요구 같은 사례가 없도록 교육실시 요망. 각읍면 농지관리위원의 정수가 19명에서 34명으로 차이가 남에도 수당을 각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60만원을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시정요구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농축산과	○ **항공방제 방법개선** 벼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항공방제를 실시함에 있어 농약선정을 행정기관에서 획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들녘별 사용농약 선정에 대하여 농민과 의견조율이 요망됨.	시정요구
건 설 과	○ **논공읍 성원아파트 절개지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논공읍 성원아파트 절개지는 산사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달성군 고시 1999~23호에 의거 재난위험시설물 지정(D급 판정)을 해제 고시함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재난 중점관리 대상물을 재지정하여 중점 관리하여야 할 것임.	시정요구
도시녹지과	○ **보안등 유지관리 소홀** 관내 보안등이 광전식 점멸방식이 74%로써 고장빈도가 높고, 주간 점등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낭비는 물론 행정에 대한 불신의 우려가 높으므로 전자식으로 개체가 요망되며, '99. 3월부터 단가계약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나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결여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전기직 공무원의 배치가 시급함.	시정요구
건 설 과 도시녹지과	○ **공사설계변경 과다 발생** 건설공사 실시에 있어 건설과 22건, 도시녹지과 13건으로 너무 잦은 설계변경으로 부실공사 우려가 높은 바, 사전 세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요망.	시정요구
	○ **건설공사 추진 미흡** 각종 주요 건설사업이 연도말을 앞두고 마무리 되어야 할 시점이나 건설공사 17건, 도시계획공사 20건이 공정 80% 미만으로써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됨.	처리요구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건 축 과	○ **불법건축물 단속 방법개선** 불법건축물의 행정 대집행시 계고장에 의한 획일적인 실시로 주민의 피해가 많은 바, 충분한 계도 실시로 재산상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단속 방법 개선 요망.	시정요구
민원봉사과	○ **민원처리 소홀** 토지분할측량 신청의 민원처리 건이 토지대장 정리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20일이내 하여야 함에도 처리기간을 초과 처리한 사례가 있어, 차후 같은 사례가 없도록 대책 강구.	시정요구
	○ **토지불부합지역 조속처리** 옥포면 반송리 신인숙 씨의 진정건에 대하여, 유가면 가태리 947-1번지 598㎡에 대하여 토지대장상과 실제 땅면적과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토지불부합건에 대하여 진정인이 행정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였는 바, 군에서 앞으로 조치할 계획과 해당되는 실과별로 협의를 하여 조속 처리요망.	처리요구
보 건 소	○ **위원회 운영 소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건강생활 실천협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 이후 운영실적이 없으므로 위원회를 활용한 보건행정 홍보 요망.	처리요구
	○ **농부병(하우스병)에 대한 예방 대책 미흡** 도농 복합지역인 우리군은 토마토, 참외, 수박 등 하우스 농가가 많아 하우스병에 대한 우려가 높은 반면, 이에 대한 예방대책 미흡.	처리요구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농업기술센타	○ **농업인조직체 기금운용 관리 소홀** 농업인조직체 운용기금을 예치함에 있어 이자 조건이 가장 좋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농촌지도자회 및 생활개선회 7%, 4H후원회 9~11%, 농업인후계자회 9%로 예치이율이 서로 달라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시정요구
종합사회복지관	○ **컴퓨터 기종변경 검토** 새로운 정보문화를 교육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주민전산교육에 사용되는 컴퓨터의 기종이 386급으로 교육의 질과 효과가 뒤지고 있어 신형 펜티엄급으로 교체토록 검토 요망.	처리요구
비슬산자연공원 관리사무소	○ **겨울철 동파에 대비한 공중화장실 설치** 얼음동산 조성 등으로 동절기 입장객 수가 월 35,000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겨울철 동파를 우려 수세식 화장실을 폐쇄, 사용금지하여 이동 화장실(3개소)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입장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군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으므로 겨울철 동파에 대비한 공중 화장실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할 것임.반	처리요구

□ 총 평(2000년도)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첫번째 행정사무감사로써 주민의 여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8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발전적인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평소 의정활동 중 폭 넓게 수렴된 군민의 의견과 현장확인을 토대로 얻은 자료를 활용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고, 세밀한 감사를 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과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처리토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군민복리증진과 더불어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고 평가됨.

특히, 감사의 중점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군민의 민생문제와 직결되는 정책수립이나 건전한 행정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이루어져 보다 차원 높은 지방자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2일간 회의체식 행정사무감사 실시시 각 읍·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번영회장을 방청객으로 초청하여 의회의 역할과 지역의 대표인 의원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서 주민들의 의정참여 기회부여와 지역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도 정립 하였음.

또한,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평소 위원들께서 주민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등을 상호교환하는 등 세밀한 자료검토와 폭넓은 의견 교환을 가짐으로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상세히 감사되어 군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그러나, 감사에 도출된 기본적인 문제는 감사에 제출된 자료 중 일부사항은 작성 시점 착오로 인한 계수의 부정확등 불충분한 부분이 있었으며, 향후 충실하고 성의있게 정확한 자료제출이 요망되며, 또한 실과소장들은 위원들의 폭넓은 질의에 성의있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일부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분명한 점이 있었으며, 앞으로 업무연찬에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할 것임.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은 예산의 운용상 부적정과 각종 시책사업의 불합리성과 행정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사항과 각종 업무 추진상 문제가 도출된 부분으로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구 9건, 건의요구 14건으로 총 37건이 지적되었음.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는 실적과 적발위주의 상부기관 감사와는 차원이 다르게 제도상 문제점 또는 선심성 사업시행이나 예산 낭비적 요소, 지방행정 여건상 불합리한 행정집행으로 인하여 주민불편 초래사항 등이 없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였으나,

7일간의 감사기간으로써는 방대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었으며, 특히 처음 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사실상 주요군정집행을 대부분 하반기 시행이 많은데다 '99년 12월 행정사무감사 이후 6개월의 짧은 기간 경과 후 감사이므로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은 점이 있었음.

앞으로, 위원 모두는 계속해서 전문지식을 넓히고 주민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군정을 확인 감사하는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

대망의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우리군이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화합·단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밝은 미래를 향한 군정이 수행될 수 있다고 평가됨.

□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기획감사실	○ **예산운영 소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96억2천7백7십9만1천원이며, '99년도 이월사업 예산과 금년도 미착공 사업예산을 합하면 697억8천9백만원으로(예산의 54%)이는 예산운용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99년도 총 사업예산 규모가 715억원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너무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사료되는데, 이의 시정을 촉구함.	시정요구
	○ **포괄사업비 집행부적정** 포괄사업비는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하는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 군수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2000년도 상반기에 2억9천6백만원의 포괄사업비가 집행되었으나, 각 읍·면별로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까지 집행되어 형평성을 잃고 있음은 물론 읍·면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이 요구되며, 또한 사업비 집행시 해당 읍·면의 의원과 사전 협의없이 집행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각종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의회 위상 제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청함.	시정요구
	○ **단순공사 발주방법 개선** 각종 공사 수의계약함에 있어 전문공사의 금액 2~3천만원 공사 설계는 군에서 실시하고 발주는 각 읍·면별로 대폭 이양하는 방법으로 개선 요망.	건의요구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문화공보실	○ **비슬산 참꽃제행사 제도개선** 비슬산 참꽃제가 4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나 참꽃 만개 시기를 예측하지 못해 해마다 참꽃 없는 참꽃축제 개최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올해 4월 23일 개최된 제4회 참꽃축제의 경우 당일 3만여명이 넘는 관광객을 포함하여 참꽃 개화기간동안 전국적인 축제의 장으로 정착하였으나 해마다 교통문제가 도출되고 있고, 아울러 전국적인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보다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또한 참꽃제에 참가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수익 증대를 위한 방안 강구	건의요구
	○ **관광안내판 보수** 현풍휴게소 상행선의 대구광역시 관광안내판의 사진 훼손등으로 보수가 요망됨.	처리요구
총 무 과	○ **인력보강 대책수립** 화원읍 명곡지구 4,300세대의 입주가 계속되면서 최근 1개월 사이 주민이 무려 7,000여명이나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각종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공무원 증원이 되지 않아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므로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력보강대책의 수립이 요망됨.	건의요구
	○ **정보통신장비 확보 요망** 정보통신 자체교육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나 대주민홍보가 부족하고, 교육용컴퓨터 보유 대수 역시 부족한 실정이므로 컴퓨터 교육의 확대실시와 이에 따른 장비 확충이 필요함.	건의요구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총 무 과	○ **푸른달성가꾸기사업 관리개선** 푸른달성가꾸기 사업에 가로수와 꽃가꾸기는 수익성 있는 다양한 수종선택과 식재장소별로 적절한 수종의 선택으로 주위경관 및 농작물에 피해가 없어야 하겠음. 또한 꽃가꾸기사업에도 꽃의 숙근성과 번식등을 고려해 한번 파종에서 다년간 손질을 하지 않아도 되는 꽃을 선정하고 또한 가로수의 초기수형을 바로잡아 주기 위하여 정원관리사 배치가 요구됨.	건의요구
세무회계과	○ **지방세 징수실적 미흡** 지방세 징수실적 중 '99년도 주민세의 징수 결정액은 75억2백3십9만2천원이며 수납액은 53억7천1백3십8만6천원으로 징수율이 71.6%로 저조한바 이에 따른 특별 대책 강구	처리요구
	○ **지방세 징수 부적정** 지방세 징수 부분에 있어서 신고오납 및 재산세 이중 수납등으로 민원이 야기되는데 대한 방안강구	시정요구
	○ **수의계약 낙찰률 부적정** 수의계약에 있어 총133건 중 114건(85.7%)이 일률적으로 94%로 계약체결되었는바 이는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원인으로 사료됨. 앞으로 수의계약 낙찰률을 결정할 때 사업성질별, 공종별로 판단하여 적정한율로 계약체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의 시정을 요구함.	시정요구
사회복지과	○ **노인건강진단 소홀** 생활보호대상자 65세 이상 노인건강진단 예산 1,328천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6월 30일까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다소 업무를 소홀히 함. 노인건강진단사업을 조속히 시행토록하고 2001년부터는 가능한한 상반기 중 실시함이 바람직함.	처리요구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사회복지과	○ **저소득 국민주택 보수사업 미시행** 저소득 국민주택 개보수 사업예산 13,500천원이 2000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융자실적이 전혀 없음.	처리요구
	○ **효도형 주택건설 요망**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가 노인 평균 연령이 70세로서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현시점에서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실시 하고, 또한 노령인구의 증가 및 핵가족제도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젊은 세대가 많은바 앞으로, 노부모와 자식간에 함께 생활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듬이 복지국가로 가는 바람직한 첩경이라고 사료되는바, 이에 부모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편리한 노인주택 표준 설계를 구상해서 이를 널리 홍보 권장하도록 건의	건의요구
환경청소과	○ **지하수 폐공 관리소홀** 과거 지하수 개발 이용후 사용하지 않은 폐공처리를 소홀히 하여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실정으로, 은닉된 폐공을 모두 조사하여 원상복구하여 지하수 오염 예방대책 요망.	처리요구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과다** 환경개선 부담금(자동차, 시설물) 부과금 412, 026천원중 징수 325,500천원이며 미징수가 86,526천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데 대한 특별징수 대책 강구	처리요구
지역경제과	○ **중소기업 취업알선 보고철저** 우리군의 중소기업 취업알선 실적이 종합사회복지관, 달성산업단지등에서 서면으로만 정리될 뿐 전산화 입력이 되지 않아 타구에 비하여 실적이 저조한 바, 금후 취업알선 실적을 필히 전산화하여 연계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함.	시정요구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지역경제과	○ **가스판매가격 적정** LPG 가정용 가스판매 고시가격이 15,460원인데, 잔돈이 없다는 이유등으로 관내 업체에서 15,5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대한 조치가 요망됨.	처리요구
지역교통과	○ **버스승강장 설치비 과다책정** 주민의 교통편의 시설인 대중교통버스승강장 설치에 있어 설계서를 검토한 결과 농촌형 승강장 2.6평을 설치 하는데 개소당 550만원, 도시형 승강장 4.5형의 설치비는 개소당 440만원으로 일반 건축비보다 예산 과다 책정되었음.	시정요구
농축산과	○ **영농법인체 안내판 정비** 영농기술면에서는 좋으나 농림사업 안내판의 설치가 미흡하여 농작물의 홍보 효과와 영농법인체 구성원의 작목에 대한 지원액등이 명시된 입간판등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개인 소유인 것 같은 불신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입간판 정비가 요망됨.	처리요구
	○ **농산물판매장 지도 소홀** 현풍휴게소 으뜸농산물판매장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경영기법 지도 및 새로운 상품의 진열이 요구될 뿐 아니라, 계속 수익성이 미진하면 운영권을 회수하여 운영을 원하는 농민 단체에게 운영토록 함이 타당함.	시정요구
	○ **어업 및 어선등록허가 부적정** 낙동강의 어업허가 및 어선등록에 있어서 18명에게 허가를 하였는 바, 이는 개인 영리목적이라 판단되는데 그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요망.	처리요구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건 설 과	○ **농업기반공사 재산권 권리행사 방안** 전 달성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 중앙회 소속으로 이관됨에 따라 본군에서도 수많은 저수지, 유지 및 구거가 농수산부로 등기 이전됨에 따라 조합원 출자로서 조성된 조합의 재산에 대한 재산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건의요구
	○ **중복사업계획 예산낭비** 논공읍 하리 제방공사를 '99. 8. 2 착공하여 '99. 9. 30 준공하였으며 '99. 10. 26 착공한 골재 반출로 개설로 인하여 하리 제방은 제방의 목적을 상실하였음. 같은해 같은 과에서 사업계획시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하리 제방공사비 9천1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함. 향후 사업계획시 주민사업을 연계하여 중복으로 예산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시정요구
	○ **지역안전대책위원회 활성화 방안** 재난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2조에 의거 지역안전 대책위원회와 지역안전대책 실무위원회가 있으나 위원회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군민이 재난발생시 피해가 더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및 지역안전대책 실무위원회를 구성 개최하여 재난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임.	시정요구
도시녹지과	○ **온천이용허가증 발부방법 개선** 약산온천 허가에 있어서 매년 온천이용허가증을 발부하는데 항구적인 허가증을 발부하도록 개선 요망됨.	건의요구
	○ **산불예방활동 강화** 산불예방을 위해 연인원 2만5천명과 6억3천5백만원을 투입하였으나, 13건에 2.8ha의 산림을 소실함으로써 이는 전년대비 3배이상 발생한 것은 형식적 예방활동으로 판단되며, 향후 산불예방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산림 소실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시정요구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도시녹지과	○ **사업 착공전 사용승낙서 징구** 옥포 김홍~유가 양리간 임도개설 사업구간에 도로편입 부지 중 소유자의 사용승락서 미징구로 인해 공사 중단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착공전 사용승락서 등을 선징구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임.	시정요구
	○ **건설기술심의위원회활성화 대책** 도시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달성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주로 건설공사 시행시 심의대상이므로 향후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심의대상 발생시마다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적의 방향으로 건설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시정요구
건 축 과	○ **불법건축물 사전단속 소홀**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공무원의 사전 감시 활동이 소홀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이전에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여 불법건축물 신축 후 적발되어 건축물 철거 또는 대집행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옴.	시정요구
민원봉사과	○ **개별공시지가 결정 부적정** 개별공시지가 조사 담당 공무원이 조사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전반적인 검토검증을 하던 것을 지가공시법 개정으로 1/3에 해당하는 필지만을 검증하고 2/3에 대하여는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조사 결정함으로 조사결정 내용에 대한 공정성이 결여될 것으로 사료됨.	건의요구
보 건 소	○ **공중보건소 한의사 배치** 공중보건소의 한의사 배치에 관한 지침이 '9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바 2년간 채용을 하지 않아 한의부분에 대하여 주민의 수혜가 없으므로 공중보건한의사 배치가 요망됨.	건의요구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보 건 소	○ **방역 실명제 실시** 여름철 방역을 위하여 분무연막등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계획 및 실시과정이 미흡하여 방역 실명제를 도입하여 방역시 로고송 방송등을 통한 주민홍보는 물론, 주민대표자에게 확인 날인하게 함으로써 방역실시 여부에 대한 민원을 해소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건의요구
농업기술센타	○ **보조금사업 집행철저** 작물의 시범포 농가선발과 농업인 건강관리실의 신규선정에 뚜렷한 원칙이 없어, 선발 및 시설과정에서 공정성과 공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바, 앞으로 기준 선정의 지침이나 배심원 제도등을 도입하여 보조금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함.	시정요구
	○ **수출농산물 품목 확대실시** 농업기술센타에서 씨감자 조직배양에 성공하여 시범포 수확에서도 증수가 확인된 바, 씨감자 조직배양에 있어서 대량 생산체제가 요구되고 있으며, 수출 농산물의 품목 다변화를 위하여 가지, 오이, 밤, 호박, 연근등 구근류 등에 대한 수출유통에도 연구지도가 요망됨.	시정요구
비슬산자연공원 관리사무소	○ **휴양림내 통행 불편** 비슬산을 찾는 관광객에 편리한 통행 제공을 위하여 매표소 입구까지 보행구간 약 550m를 차량통행이 가능한 인도 및 차도 확·포장이 요망됨.	건의요구
	○ **입장객 불확실** 5월중 입장료 일일발매 현황을 확인한 결과 5월 15일과 5월 16일 유료입장객 보다 무료 입장객 수가 많아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불충분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무료입장객 수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건의요구

□ 총 평(2001년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써 8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위원별로 감사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평소 폭넓게 수렴된 군민의 의견과 현장확인을 토대로 얻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고, 세밀한 감사를 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과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처리토록 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감사가 된 것으로 평가됨.

특히, 감사의 중점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군정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 내부사항 보다는 주민편의 위주의 현안사항에 중점을 두었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제도적인 모순점을 찾아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예방위주의 감사가 되도록 하였음.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 당초 목적대로 낭비없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된 각종 민원사항과 자료를 근거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에 있어서 경영기법 도입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그러나, 감사에 도출된 기본적인 문제는 감사에 제출된 자료 중 일부사항은 계수의 부정확등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며, 향후 성의있는 정확한 자료제출이 요망되며,

또한 실과소장들은 위원들의 폭넓은 질의에 성의있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일부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분명한 점이 있었음.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은 각종 사업의 불합리성과 행정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과 각종 업무 추진상 문제가 도출된 부분으로 시정요구 15건, 처리요구 3건, 건의요구 16건으로 총 34건이 지적되었음.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는 실적과 적발위주의 상부기관 감사와는 차원이 다르게 제도상 문제점 또는 선심성 사업시행이나 예산 낭비적 요소, 지방행정 여건상 불합리한 행정집행으로 인하여 주민 불편 초래사항 등이 없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였으나,

7일간의 감사기간으로써는 방대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었으며, 특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사실상 주요군정집행을 감사하기에는 기간이 다소 짧은 것이 아쉬웠음.

앞으로, 위원 모두는 계속해서 전문지식을 넓히고 주민과의 끊임없는 현장대화를 통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군정을 확인 감사하는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

대망의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우리군이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밝은 미래를 향한 군정이 수행될 수 있다고 평가됨.

□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기획감사실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시 사전에 관리운영 계획수립 요망** 상반기 투융자 심사 9건중 조건부 추진이 2건이 있으며, 여성문화복지센터의 경우 활용계획수립, 예산확보를 조건으로 승인 받았으며, 현재 추진중인 군립 독서실의 경우에도 관리·운용계획 없이 추진중인 바, 예산확보전 계획단계에서 부터 명확한 관리·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소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건의요구
	○ **예산편성 부적정** 2000년도 세출예산 경상경비 인건비(목)의 수당 4,738만원을 인원 감축사유로 불용처리 하였는바, 수당은 법적 의무적 경비인 급여 성격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연도별 감축인원이 예측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함은 부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됨.	시정요구
문화공보실	○ **청소년 자립기금 지원계획 미수립** 청소년 자립기금이 '95년부터 '99년까지 7,35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바, 조속 지원계획 수립이 요망됨.	시정요구
총 무 과	○ **인터넷 방송 확대실시 요망** 기존의 인터넷 농업방송 시설을 활용하여 관내 산업체의 회사소개, 생산공정, 생산품목 등을 동영상으로 방영하여 홍보한다면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건의요구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총 무 과	○ **성과상여금 지급의 문제점** 성과상여금은 공직사회 내부에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지급대상자를 4단계로 차등 분류하고 하위 30%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 내부에 불신과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바 대책마련이 시급함.	건의요구
세 무 과	○ **과오납 반납금액 최소화 방안 강구** 2000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중, 과오납 반납금액이 8,883만7,690원으로서 '99년도 과오납 반납금액에 비하여 46%가 줄어 세정업무가 개선은 되어가고 있으나, 과오납 반납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과오납 반환방법도 주민편의도모를 위한 개선방안이 요구됨.	건의요구
	○ **수납대행 금융기관 확인 감독 철저** 수납대행 금융기관이 자진 납부하는 납세자 중 납부기한 보다 미리 납부하는 점을 이용하여 납세자에게는 실제 수납일자와 일치한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통보 영수증은 납부기한 시점에 수납인을 날인하여 군 금고에 지연 납입하는 방법으로 세금 유용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대하여 확인 감독이 요구됨.	건의요구
	○ **지방세 부과징수 소홀** 2000년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2000. 12. 31 현재 당해년도 시세 미수납액 45억원은 과년도 미수납액 20억원에 비해 당해년도분 미수납액이 200%이상 늘어났음. 이는 당해년도 부과징수에 소홀한 것으로 판단됨.	시정요구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세 무 과	○ **체납세 효율적 징수방안 강구** 금년 12월로 예정된 읍면기능전환에 따라 세정업무가 군으로 이관될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체납세 징수 등 효율적 세정업무의 추진 방안 요망.	건의요구
회 계 과	○ **달성군청사 미래지향적 안목으로 건립 요망** 달성군 청사이전은 상징성과 공공성,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완벽한 청사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계획수립과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특히, 주민들이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 주민들의 휴식공간활용이 가능한 방안 요망.	건의요구
	○ **구농업기술센터 및 현풍보건지소 매각추진 미흡** 구농업기술센터 및 현풍보건지소 매각추진이 미흡하므로 컨설팅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 실수요자를 찾아 조속매각 추진이 요망됨.	건의요구
	○ **군유지 관리 철저** 군소유 재산 중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407번지 부지 4.211㎡를 '97년부터 대구광역시가 달성소방서를 신축 사용하고 있는바, 법에 의거 대부료를 징수하던지 대구광역시로 매각추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건의요구
복지위생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철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말로는 생산적 복지구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나 기존 생활보호법에 의해 정부의 지원을 받다가 현재는 혜택을 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들의 불만이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기준 및 지급방법을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바람.	건의요구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환경청소과	○ **환경보전기금 조성 및 관리 미흡** 본군 환경보전기금이 현재 3억3,500만원이 조성되었으나 아직까지 활용하지 않고 있음은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	시정요구
지역경제과	○ **공공근로 인력관리 및 배치 소홀** 국토공원화 사업, 방역사업, 푸른달성가꾸기사업 등 공공근로 인력배치가 읍면별로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은 읍면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이 요구됨.	시정요구
	○ **가스충전소 안전관리 소홀** 관내 56개 가스업체 중 2001년도 업소점검을 하면서 41개소는 2회 점검을 실시하고, 15개업소는 1회만 점검하였으며, 가스안전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교육보상금 38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아직 미집행한 것은 가스안전관리계도 업무추진에 소홀하였음.	시정요구
	○ **소비자 물가관리 소홀** 물가 상승의 억제와 효율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달성군물가대책 위원회를 2000. 7. 1~2001. 6. 30까지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물가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시정요구
지역교통과	○ **택시요금 미터제 실시 요구** 현풍 달성공단 지역에 택시요금 미터제가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조속히 시행하여야 함에도 조치 미흡.	건의요구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농축산과	○ **예산편성 부적정** 2001 벼병충해 항공방제(2,740ha)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예산에 헬기임차료와 농약대를 편성하여야 하나, 헬기 임차료(6,850천원)만 편성하고 농약대(6,028만원)를 누락 추경에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에 소홀	시정요구
	○ **축산물 유통단속 소홀** 축산물 유통업체는 식육판매업 160개소, 우유판매업 17개소 등 200여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단속실적은 2건 밖에 없는바, 단속실적이 적은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 판단됨.	시정요구
건 설 과	○ **재해위험지구 조치 소홀** 논공읍 남리 용호천 수해복구공사를 4억1,500만원에 도급공사를 시행하면서 제방공사에 편입되는 57필지 중 3필지를 지주가 사용 승인 하지 않음으로써 일부구간이 수해를 막을 수 없는 관계로 재해위험이 우려됨.	시정요구
	○ **치수사업특별회계 교부금 독려 요망** 하천골재판매 대금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전액 시로 입금시켰다가 50%를 징수교부 받아 세입 계상함에 있어 2000년 11월부터 2001년 6월까지의 금액을 아직까지 교부 받지 못하고 있는바, 대구광역시에 강력히 촉구하여 조속히 교부 받도록 조치 요망.	건의요구
	○ **버스승강장 설치** 30번 국도(대구~성주간 도로) 동곡초등학교 앞 버스승강장과 노견확보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예산으로 설치토록 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조치하지 않고 있는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조속한 설치 촉구 요망.	건의요구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도 시 과	○ **간이상수도 관리 소홀** 간이상수도를 관리함에 있어 크롤칼키 소독시 자동소독기가 부착되어야 함에도 자동소독기 부착 현황 미파악 및 업무 소홀	시정요구
공원녹지과	○ **수종갱신사업 조속 추진 요망** 군민운동장 주변 완충녹지 지역에 수종갱신 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한 것은 인근 주민들이 봄철 꽃가루와 태풍시 재해예방 등을 사유로 민원 예방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임에도 대구광역시 수종갱신협의 결과 불가를 이유로 사업자체를 보류하는 것은 자치행정 및 주민봉사행정에 반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요망됨.	처리요구
	○ **임도 사후관리 철저** 임도사업은 산지의 이용과 산불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관내 48㎞에 달하는 임도중 6㎞가 포장이 된 상태이고 개설후 장마 등으로 유실 및 잡초가 무성하여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상설 유지 보수인력을 투입 관리가 요망됨.	건의요구
건 축 과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진** 일반지역 불법건축물과 관련 2000년도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에 따르면 부과 건수 70건에 9,699만원이며, 징수가 54건에 5,619원이고, 미수납액이 16건에 4,080만원 인바, 미수납액이 42%로 이행강제금 징수가 부진함.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특별대책 강구가 요망됨.	시정요구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건 축 과	○ **건축허가 민원처리 부적정** 건축허가 민원처리에 있어 가창면 오리 223번지상에 건축허가 신청을 보면, 2001. 5. 9접수 5. 16일 취하하고, 당일 재접수하여 5. 19일 다시 취하하였고 5. 30일 또다시 접수하여 5. 31일 허가하는 등 이와 유사한 사례가 30여건이나 되는바, 이는 민원서류 처리기간 중 보완요구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적절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시정요구
	○ **위천공업단지 지정 예정지 건축허가 요구** 위천공업단지 지정 예정지에 행위제한이 해제됨에도 건축허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대지는 허가되고, 자연녹지는 건축허가를 억제함에 따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바, 도시계획지역지구에 적합하고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농지라도 적극적인 건축허가가 요구됨.	시정요구
민원봉사과	○ **예산불용액 과다** 2000년 지적관리비 예산 3억2,486만4,000원중 2억6,489만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5,996만7,000원으로 예산의 18%인바, 이는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거나 집행을 소홀히 한 것임.	시정요구
보 건 소	○ **예방접종 철저** 홍역예방접종 후 이상반응(부작용)이 전국에서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철저한 백신관리와 홍역 예방접종이 요구됨.	건의요구

실과소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농업기술센터	○ **소득작목개발 미흡** 개방화 시대를 맞아 13억 인구의 거대한 중국이 WTO 가입과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등이 눈앞에 있어 모든 농업인들이 농가소득 감소와 농산물 가격하락에 큰 우려와 불안을 가지고 있는바, 농업기술센터가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여야 함에도 대책이 미흡함.	시정요구
	○ **사업예산 조속 집행 촉구**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사업예산중 농기계 공작실 시설보수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사 사무실 3층 증축 사업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이는 농기계수리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26%가 증가하는 등 서비스행정을 위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설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판단됨.	처리요구
비슬산자연공원 관리사무소	○ **휴양림 전산발매기 위치 부적정** 휴양림 입구 전산발매기에서 입장권을 받은후 반대편 검표소에서 입장권 검표를 받는 과정에 통행차량과 맞물려 혼잡과 교통사고가 우려되므로 전산발매기 위치 이동이 요구됨.	처리요구

제4장 세입 · 세출 결산검사

제 1 절 1997 회계년도 세입 · 세출결산검사의견서

제 2 절 1998 회계년도 세입 · 세출결산검사의견서

제 3 절 1999 회계년도 세입 · 세출결산검사의견서

제 4 절 2000 회계년도 세입 · 세출결산검사의견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견 서

(1997 회계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목 차

□ 결산검사의견서

Ⅰ.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Ⅱ. 일반회계의 결산

1. 세입의 결산
2. 세출의 결산
3. 이월사업비의 결산
4. 채권 및 채무의 결산
5. 재산의 결산
6. 기금의 결산
7. 금고의 결산
8. 지적 및 개선사항

Ⅲ. 특별회계의 결산

1. 세입의 결산
2. 세출의 결산

결산검사의견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1998년 8월 20일

우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1998년 7월 28일부터 1998년 8월 16일 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하였음.

우리의 의견으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제출한 1997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안)는 본 의견서에 표시된 지적 및 개선사항을 제외하고 세입, 세출, 이월사업비, 채권 및 채무, 재산, 기금 및 금고의 변동 내용과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김 판 조

위 원 최 상 호

김 원 구

이 영 기

Ⅰ.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결산서(안)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

본 결산검사는 상기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안)가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결산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자 하는 것임.

우리는 결산검사를 위하여 세입·세출 등에 관련된 제 장부의 열람, 증빙자료의 대조, 잔고증명 등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절차를 적용하였음.

Ⅱ. 일반회계의 결산

1. 세입의 결산

(1) 세입결산 총괄

가.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96	'97	'96	'97	'96	'97	'96	'97
지 방 세	24,761	26,096	98,923	30,330	26,626	27,388	2297	2942
세외수입	28,926	29,169	44,520	58,008	43,839	56,491	681	1517
지방교부세	16,982	15,165	16,982	15,165	16,982	15,165	0	0
지방양여금	4,908	6,153	4,908	5,482	4,908	5,482	0	0
보 조 금	32,212	53,533	32,205	43,811	32,205	43,811	0	0
특별회계	16,949	15,723	17,304	16,374	17,298	16,369	6	5
합 계	124,738	145,839	144,842	169,170	141,858	164,706	2984	4464

나. 세입결산 총괄검사 의견

1) '97세입금 수납액 164,706백만원은 예산액의 112%로 18,848백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 290억원을 당초 세입예산에 미편성함에 기인됨.

2) 세계 잉여금 중 당초예산 미편성된 이월사업비 290억원은 해마다 발생하는 세외수입 사항이므로 예상액을 계상하여 예산편성해야 함에도

- 예산액 및 수납액에 정확한 수치를 계상치 않음으로 수납실적분석이 정확치 못함.
- 세입예산 편성 누락분 이월사업비를 제외할때 수납실적은 92%로 극히 저조함.
  · 지방세 세수는 전년대비 102%증가했으나 '96년 115%증가 대비 부진함으로 적극적인 세원개발과 징수노력이 필요함.
  · 수납실적 저조의 원인은 시보조금이 △97억 감액 결정했음에 기인함.

3)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이며 미수납액은 4,464백만원으로 지방세 체납과 일반부담금 및 과태료 미수납액임.

(2) 세입부문별 검사의견

가. 지방세 부과부분

1)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해당(취득세 실가신고)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신고가액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실가를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하나 전액 신고가액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신고 접수후 관리자가 매일 결재과정에서 부속서류 미비, 실가확인 미비 등 사실이 발견되는 신고분에 대해서는 즉시 수정보완 조치하고 미이행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하나 미이행하고 있음.

- 종합건설도급계약서 미확인 1건 및 가스충전시설가액 미확인 1건지적

2) '97년 농지전용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가 9건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으며 신규 세원발굴을 위한 각종 과세자료 수집(특별소비세과세

유흥장소, 고급주택 신축자료등)및 사실조사 실적이 미흡함.

3) 결산서상 수납액과 금고 출납계산서상 수납액과의 104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타 설계용역비 104백만원을 사고이월하는 과정에서 '97. 3. 10 미반환되어 차액이 발생하였음이 '96결산검사시 지적되어 결산서상 표시됨.

나.지방세 징수부분

1) 과오납금 처리

① '97 과오납 반환금액이 183백만원 발생하였으며 이중 대부분이 이중수납되었는바 고지서 이중발부로 인한 수납은 민원야기 사항이므로 고지 발부시 특히 유의해야 함.

② 과오납금 반환시 통장사본만 받아 무통장 입금하고 있으나

- 10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사실상의 과오납반환권리자에게 반환해야 부당반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

2) 체납액 정리업무에 있어

① 영수원부를 출장직원이 사용하지 않음을 '96결산검사시 지적했으나 '97년 사용실적도 극히 미미(다사50건, 하빈, 논공, 화원 각1건)함으로 농번기 및 원거리 주민의 납부편의를 위해 영수원부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며 징수포상금 지급시도 개인별 징수실적 확인 증빙이 되므로 필요함('97 징수포상금 지급 8,500천원임)

② 과년도 체납액 443백만원중 징수권 소멸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한것이 21%인 95백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92년이후 5년간 납부독촉, 재산조사, 압류, 수색 결손처분 등 제반 체납처분 절차를 해태하고 시효소멸까지 기다린 결과임.

③ 또한 일부 읍면에서는 세목별로 '97년도 1건의 결손처분도 한 실적이 없는 관서(주민세→논공, 가창, 자동차세→가창, 옥포, 유가, 구지면)가 있으며 이는 관리자의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독려가 미흡한 결과임.

④ '93이전 부도폐업한 사업자에 대해 '96년 이후까지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고지 결정하였는바 사업실적이 없거나, 폐업여부를 확인하여 부과결정을 즉시 취소해야 함에도 자체조사없이 세무서 폐업신고여부 확인을 이유로 계속 부당고지 결정한 후 부과결정 취소해야 할 것을 무재산 결손처분하고 있음.

다. 세외 수입부분

1)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96	'97	'96	'97	'96	'97	'96	'97
금 액	28,925	29,168	44,520	58,008	43,839	56,491	681	1,511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26% 증가 되었으나 이는 순세계 잉여금중이월 사업비의 수납액 포함에 기인하므로 예산상 불균형이 시정되도록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미수액이 전년대비 222%로 대폭증가하고 있으므로 징수활동 강화로 미수납액을 축소해야 할 것임.

2) 과태료 증가 및 미 징수액 대폭증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 결정액		징 수 액		미징수액		비 고
	'96	'97	'96	'97	'96	'97	
건 수	9,664	12,226	6,160	8,075	3,504	4,151	
금 액	886	1,288	601	668	285	620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나 건축법 및 식품위생법등의 생활환경법 위반 과태료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증가로 징수 결정액 145%증가됨

-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가 '96년 112백만원→'97년 529백만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으며 이는 일괄 전산결정함으로 인해 징수결정액은 증가했으나 미징수액이 70% 이상이므로 채권확보 및 징수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임.

3) 농지전용 조성비 및 부담금 미납

- '96년 결산검사시 농지부담금 미납자가 22건 303백만원에 달했으나 '97년말 전용 부담금 미수납이 2건 13백만원에 불과함은 전반적인 건설경기 부진에 의한 허가건수 감소에 기인함

2. 세출의 결산

(1) 요약

(단위 : 천원)

구 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금	예비비사용액	전용증감액
1997년	134,887,000	28,539,943	171,617	229,578
1996년	107,789,000	15,757,138	0	5,000

이용등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0	163,426,943	107,666,766	38,598,101	17,162,076
0	123,546,138	85,712,257	28,539,943	9,293,938

(2) 세출예산의 설명

1) 일반회계 예산현액 163,426,943천원 대비 지출액은 107,666,766천원(65.9%), 이월액은 38,598,101천원 (23.6%) (이중 명시이월이 27,910,653천원, 사고이월이 10,687,448천원 임), 불용처리된 금액은 17,162,076천원(10.5%)임.

2) 불용처리된 금액 17,162,076천원은 그내용이 계획변경취소가 88,124천원(0.5%), 예산절감이 604,801천원 (3.5%), 예산집행잔액이 13,616,733천원(79.3%), 보조금집행 잔액이 422,428천원 (2.5%), 예비비 2,429,990천원(14.2%)임

3. 이월사업비의 결산

(1) 요약

(단위 : 천원)

종 류	건 수	금 액	비 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43 건 48 건 0 건	27,910,653 10,687,448 0	
계	91 건	38,598,101	

(2) 설명

1) 명시이월은 익년도의 당초예산 편성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적절히 이월하였음.

2) 사고이월은 전년대비 건수상 25건 증가, 금액상 10,058,158천원 증가했으나 대부분 급작스러운 경제환경의 악화로 인한 합리적인 이월로써 지방재정법 제 40조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였음.

4. 채권 및 채무의 결산

(1) 채권

해 당 사 항 없 음

(2) 채무

(단위 : 백만원)

종 류	전년도말현재액			채무행위액			당해년도상환액			당해년도말현재액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차입금	1,115	981	134	6,882	4,741	2,141	365	299	66	7,632	5,423	2,209

5. 재산의 결산

(1)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총괄

지방재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현황과 '97년도중 증감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공유재산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용도		1996년말 현재액	1997년중 증감액		1997년말 현재액
			증	감	
합계		123,281,630	20,507,907	2,586,781	141,202,756
행정재산	공공용재산	45,515,041	15,912,143	7,067	61,420,117
	공용재산	39,145,879	856,434	527,643	39,474,670
	기업용재산				
	계	84,660,920	16,768,577	534,710	100,894,787
보존재산					
잡종재산		38,620,710	3,739,330	2,052,071	40,307,969

(상기 재산에 대한 실지조사는 하지 않았음)

(2)물 품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행정자치부의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물품중 정수물품의 1996년말 현황과 1997년중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음.

정수물품증감현황

(단위 : 개, 천원)

구분		수량	금액
1997년말 보유현황		768	2,290,193
취득	구매	212	709,206
	관리전환등	12	8,364
	소계	224	717,570
처분	매각	115	107,864
	관리전환등	16	22,662
	소계	131	130,526
1997년말 보유현황		861	2,877,237

(상기 재산에 대한 실지조사는 하지 않았음)

6. 기금의 결산

기금은 결산서상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영세민생활보호기금 및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지난해 이월액은 175,983,690원이고 당해년도의 수납액은 44,887,677원이며, 당해년도 지출액은 5,000,000원이고 차인잔액은 215,871,367원임.

7. 금고의 결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일반회계 수입 및 지출의 금고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음.

수 입	지 출	잔 액
153,024,029,951	107,562,710,770	45,461,319,181

8. 지적 및 개선사항

(1) 세입예산 편성의 불균형 시정 및 수납실적 제고방안 모색

〈현 황〉

세입예산편성시 포함되는 항목 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 잉여금을 예산편성하면서 '96말 순세계 잉여금 9,738백만원만 예산에 편성하고 매년 반복예상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비를 당초예산 편성에서 누락

〈문 제 점〉

이월사업비를 당초예산 편성에서 누락함으로써 '97년 이월사업비 290억이 수납실적에만 반영되어 사실상 이월사업비 290억을 제외시 예산대비 수납실적은 92%에 불과하나 결산서상 예산대비 수납실적이 112% 초과 달성 되었다고 분석 결산됨.

〈개 선 안〉

매년 발생되는 이월사업비가 170억에 달함으로 예상되는 이월 사업비를 추산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정확한 수납실적분석이 가능하며, 또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양여금, 국·시비보조금, 지방채, 특별회계등 항목별로 예산대 수납실적 및 부진사유에 대한 진도 분석을 매분기 실시함으로써 수납실적을 제고하는 심사분석 제도 도입이 필요함.

(2) 과오납금 반환업무에 대한 검토

〈현 황〉

달성군 회계규칙 제43조에 과오납 반환청구를 받아 환급토록 함으로써 과오납 반환금이 발생시 읍면 담당자가 본인에게 연락하여 과오납금 반환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통장사본을 제시받아 과오납금 반환결의를 하고 무통장 입금하고 있음.

〈문 제 점〉

신청하지 않아 미환급한 금액이 '97년말 19건 2,572천원이며 이중수납, 과오납등 당연히 반환해야할 금액이 적기에 반환되지 않음으로 주요 민원야기 사항의 하나이며 또한 반환기일이 지체되어 과오납금 환급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함으로 인해 환급이자 비용만 추가로 부담하고 있음('97년 과오납금 환급이자 10,586천원지급)

〈개 선 안〉

① 과오납 반환업무에 있어

달성군 재무회계규칙 제 43조를 개정하여

- 사전결정분은 수납소인후 소인자가 직권으로 즉시 일괄환급결의 해야하며
- 사후결정분은 부과담당자가 사후결정결의 후 과오납을 확인 일괄환급 결의하여 직권으로 즉시 과오납금을 반환해야함.
- 최단기일내 과오납금을 반환함으로써 환급금이자 지급액을 줄일수 있으며

② 신청전 즉시 과오납금을 반환해야 미반환하는 사례 및 민원도 방지할 수 있음.

(3) 지출업무의 전산화

〈현 황〉

우리군은 현재 전산화된 예산자료 프로그램에 연간의 지출총액을 입력하여 결산서를 작성하는 정도까지의 전산화는 이루어져 있지만 연중의 지출에 대해서는 아직 수작업으로 원인행위부와 지출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으며 9개 읍면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종합사회복지관 등 12개의 외부기관은 별도

의 수작업 지출장부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1년에 한번 결산시에 집계액을 본청으로 송부하고 있음.

〈문 제 점〉

현재와 같은 수작업 장부체계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지출부 기록의 오류와 누락이 자주 발생하고 수정되지 않은채로 결산마감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장부기록에 대한 승인의 절차가 없어서 담당자가 자유롭게 기록된 내용을 지우고 새로 작성하여 장부의 신뢰도가 떨어짐.
- 본청 지출부외에 상기의 12개 외부조직의 장부는 1년에 한번 결산시 합계액을 통보해오므로 지출기록에 대한 검증, 분석, 통제의 기회가 없음.
- 연중에 특정 사업에 대한 항목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도 각각 다른 부서가 다른 계정분류로 기록하고 있어서 합산이 용이하지 않고 자료활용이 어려움.
- 익년 2월말에 회기가 마감되고 경리계에서 야간작업 등 최선을 다해도 결산서 작성에 3개월이상 소요되어 군정에 활용할 즉시성 있는 정보의 제공이 어려움

〈개 선 안〉

'96년도 결산검사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도별로 단계적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전산화가 이루어져서 경리처리의 자의성을 줄이고 연중 자료이용의 즉시성을 높이며, 신속하고 정확한 결산을 도모해야함. 만약 전반적인 세출회계의 전산화가 예산상의 문제나 중앙정부의 요구사항과 부합하지 않아서 불가능하다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할 일부 계정과 일부사업에 대해서만이라도 전산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계정처리의 투명성 제고

〈현 황〉

우리군은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모든 기초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자치 단체 예산과목구분 및 해소" 책자에 의거하여 지출회계의 계정처리를 하고 있으나 지침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지출자의 자의적 회계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소지가 있음

〈문 제 점〉

이러한 연유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출이 부서에 따라, 시기에 따라 전혀 다른계정으로 처리되고, 예산의 소진정도에 따라 처리하는 계정과목을 달리하고 있음. 이로써 예산의 설정과 승인을 통한 집행부 통제라는 의회의 기능도 상실되고 군 결산의 투명성이 하락되어 대외 신뢰도를 잃게 됨.

〈개 선 안〉

현재 사용중인 계정과목 중 유사한 내용은 과감히 통폐합하여 하나의 계정만 쓰도록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자의성을 줄이고, 모호한 계정과목을 이용한 예산의 은닉을 방지하고 계정과목의 명칭이 실제와 부합되는 계정과목 명칭을 사용하도록 해야함.

(5) 급여성 경비의 통폐합과 명확화

〈현 황〉

상기 계정과목 처리의 투명성과 연결된 내용으로, 우리군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성 경비가 각종 활동비, 추진비, 포상금, 보상금, 여비, 재료비등 지나치게 종류가 많고, 대외적으로는 급여성 경비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없이 모호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그 배분도 명확한 규정없이 부서장이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임.

〈문 제 점〉

급여총액에 대한 파악과 통제가 용이하지 않고 배분의 형평성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음.

〈개 선 안〉

급여와 수당외의 각종 급여성 경비는 통합하고, 예산편성시부터 명확히 하여 급여의 총액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예산이 은닉되어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함.

(6) 경비 집행시의 절감노력 미흡

〈현 황〉

'97년 지출액 중에는 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다는 이유로 실제 사용목적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고급기능 또는 다기능을 가진 고가장비를 경비절감을 위한 신중한 검토없이 구입하고, 구입한 연도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아직 쓸 수 있는 기기도 교체하고, 호화 행사를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경비도 재검토없이 집행하는 등, 경비 절감의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과도한 경비의 지출을 행한 경우가 많음.

〈문 제 점〉

예산의 범위내이지만 충분히 더 경비절감을 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각 부서간의 협의에 의한 절감 노력없이 지출집행을 하여 군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음.

〈개 선 안〉

비록 예산이 편성된 집행이라도 각 부서장은 집행당시 다시한번 절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자금집행의 향후 효용성에 대한 분석도 해야할 것이며, 예산편성 당시와 여러가지 이유에서 상황이 변한 경우는 과감하게 집행을 중단해야 함.

(7) 외부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재검토

〈현 황〉

우리군은 여러 외부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별다른 검토없이 예년의 경우에 준거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지급액의 효용가치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미흡함.

〈문 제 점〉

'97년도 외부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중에는 해당기관이 실행하는 사업이 효용성을 납득하기 어렵거나 목적이 애매한 경우가 많으며, 또한 실행한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조금이 지급되고도 보조금지급 사업의 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가 미흡하며 정산의 절차가 치밀하지 않음.

〈개 선 안〉

비록 보조금의 지급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도 군 재정의 절감과 투자효율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건전성, 효율성을 반드시 다시 검토하고,

사후 지급한 보조금이 제대로 유용하게 쓰였는지에 대한 평가 분석이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정산시 제출받는 증빙의 진실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증과 증빙대사 작업이 있어야 하겠음.

(8) 비슬산 자연휴양림 사업 검토

〈현 황〉

'97년중에 자연휴양림에 대한 수입은 약1억2천만원임, '97년까지 휴양림건설을 위한 총 지출액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수십억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얼마나 더 투자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수립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막대한 자금의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여러 부서가 상호 조정없이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음.

〈문 제 점〉

휴양림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통합된 계획과 통제가 없이 각 부서가 각기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성 없는 투자와 관리가 수행되고 있음.

〈개 선 안〉

자연 휴양림의 투자와 관리에 대한 전면적이고 각 관련부서의 통합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공원관리와 관련한 투자액 대비 효용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9) 예산편성 검토의 강화

〈현 황〉

집행부는 매년 11월에 다음년도 예산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익년도에 2,3회의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하여 예산현액을 조정하고 있음.

〈문 제 점〉

의회의 예산심의가 보다 철저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방만한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부는 예산의 범위내라는 이유로 불요불급한 지출이 재차 검토됨이 없이 집행되고 있으며 매년 막대한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다른 긴요한 사업에 쓰여지지도 못하고 중요한 예산자원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함.

〈개 선 안〉

의회는 예산 승인의 과정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예산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고 집행부서가 작성한 예산중 절감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절감하여 건전한 군 재정을 유지하도록 해야함.

(10) 주요건설사업 추진실적 부진

〈현 황〉

구 분	지 구 수				사업비(백만원)			극히부진 (30%이하)	비고
	계	완료	미완료	실적	계	집행	미집행		
'97주요건설사업	33	13	20(취소1)	39%	57,207	24,502	32,705	9	

"단위사업별 조서 : 4/4분기 심사분석 결과자료"

〈문 제 점〉

① 주요건설 사업은 당해년도 사업계획의 철저한 사전조사 및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착수함으로써 당초계획에 대한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97완료 실적이 (39%)극히 부진함은 전체적으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차질이 예상되었다고 판단됨.

② 실적 부진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보상금 지급지연, 계획노선변경, 설계지연 상부기관 예산보조 지연 등 다양한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대부분 사전예상이 가능한 성격으로 보이며 또한 매년 반복성임.

미집행된 예산은 '97회계년도말에 대부분 명시이월(또는 사고이월)로 조치되었음.

〈개 선 안〉

향후 주요건설 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전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대처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됨.

부진지구조서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비 (백만원)	진 도 (%)	비 고
계	9지구	11,541		
'97 주요 건설사업	자연휴양림부대시설설치	2,100	30	
	가창우회도로 개설	3,400	10	취소(대구시 예산삭감)
	응암 진입로 확포장	500	30	
	노이도로 확포장	500	30	
	성하-오산간도로 확포장	959	10	
	양리- 쌍계간도로확포장	300	·	
	고봉교 가설	482	30	
	매곡도시계획도로	2,800	25	
	간경도시계획도로	500	·	

(11) 명시이월액 과다

〈현 황〉

구 분	예 산 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비고
				금 액	%	
60(43건)	49,138,277,000	32,976,789,570	11,551,478,490	27,910,653,260	85	

"'97 세입세출 결산서 자료근거"

○ 이월사유

1) 공사기간 부족 (19) 10,298,299,790(37%)

2) 보상금수령지연 (8) 8,082,034,050(29%)

3) 지방채 승인지연 (22) 3,771,000,000(13%)

4) 특별교부세 내시 (5) 1,092,755,460(4%)

5) 도시계획변경, 기타 (6) 4,666,563,960(17%)

〈문 제 점〉

① 이월내역을 분석해 보면 공사기간 부족 및 보상금 수령지연이 대부분(66%)차지함은 부득이한 이월사유로 보기에는 합당성이 크게 결여된다고 판단됨.

② 특히 자체사업(군비)중 당초 및 1회추경예산 확보후 전액이 이월조치된 종합민원실 개보수공사(1회추경 100백만원), 삼산-우록간 도로확포장공사(당초 150백만원), 양리-쌍계간도로 확포장공사(당초300백만원)은 상당한 공사기간을 두고도 착수하지 못하고 이월조치 하였음.

〈개 선 안〉

예산편성시 부진예상지구 사전파악, 문제점 우선해결과 별도 관리로 이월사업을

예방하고 불가능 판단시 적기에 예산삭감(특히 자체사업)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임.

Ⅲ. 특별회계의 결산

1. 세입의 결산

(1)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96	'97	'96	'97	'96	'97	'96	'97
주택사업	159	156	136	127	136	127	0	0
의료보호기금	2,427	5,585	2,431	5,615	2,426	5,610	6	5
새마을소득	288	189	290	176	290	176	0	0
농공지구	2,056	2,345	2,054	1,582	2,054	1,582	0	0
치수사업	12,019	7,448	12,393	8,874	12,393	8,874	0	0
계	16,949	15,723	17,304	16,374	17,299	16,369	6	5

(2) 검사의견

수납액 16,368백만원은 예산액의 103%로 490백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나 세입액이 전년대비 94%로 하락하였는바 이는 특별회계 주수입원인 치수사업수입 즉 골재판매 수입이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 저조한데 기인한 것임. 또한 농공지구 관리사업에 있어 농공지구조성자금 및 환경오염방지 기금에 대한 융자금에 대해 IMF영향으로 도산업체가 속출함으로 민간융자금회수수입 확보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임.

2. 세출의 결산

(1)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96	'97	'96	'97	'96	'97	'96	'97
주택사업	159	156	33	32	-	-	126	124
의료보호기금	2,427	5,740	2,425	5,609	-	-	2	131
새마을 소득	288	189	216	143	-	-	72	46
농공지구	2,056	2,190	1,640	1,377	-	-	416	813
치수사업	14,237	8,743	11,087	8,291	1,295	237	1,858	215
계	19,167	17,018	15,401	15,452	1,295	237	2,471	1,329

(2) 검사의견

이월액과 불용액은 감소추세에 있어 양호하나 치수사업에 있어 건설경기 부진으로 발주공사가 감소함.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견 서

(1998 회계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목 차

□ 결산검사의견서

Ⅰ. 결산검사개요

Ⅱ. 일반회계의 결산

1. 세입의 결산

2. 세출의 결산

Ⅲ. 특별회계의 결산

1. 세입의 결산

2. 세출의 결산

Ⅳ. 개선을 요하는 사항

결산검사의견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1999년 7월 27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로부터 달성군의 '98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1999년 7월 5일부터 1999년 7월 24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 전반적으로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승인한 예산서대로 성실하게 집행되고 집행내용도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져 있으나,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음년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feed back)될 수 있어야 함에도 체납세 증가와 사고이월사업 과다발생 등 지난해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 일부항목은 금년도 결산검사에서도 동일사안이 반복 지적되고 있어 결산의 의미를 저감시키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복잡성, 다양성, 재정의 취약성 등)으로 쉽게 개선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되나 상부건의 등 꾸준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 세입결산부분은 외환위기의 심화로 부동산 경기위축 등 경제전반에 걸친 불황으로 평균 연10~12%정도 증가세를 보이던 세입결산액이 1998년에는 전년대비 93.6%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며 체납액도 크게 증가되었음.
세원의 급격한 감소와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도 세수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곳곳에 보이나 체납세 정리에 있어 과감한 결손처분등 좀더 적극적인 정리를 하지 않는 아쉬움이 있음.

○ 세출부분은 긴축 편성된 예산이나마 알뜰하게 군 살림을 꾸려나간 실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경상경비에서 집행 잔액을 많이 발생시키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됨.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제반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나 지출의 예외규정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용, 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비 지출 등을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어 결산의 간단명료화를 저해하고 있음.

○ 기타 대구광역시달성군이 제출한 1998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안)는 유첨된 부분별 결산 지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 세출, 기금, 채권, 채무, 재산, 물품의 변동내용과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이 현 근

위 원 최 상 호

노 경 규

추 영 종

Ⅰ.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 근거 : 지방자치법 제 125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결산검사 항목

○ 결산총괄 설명서

○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조서, 계속비집행, 예비비집행, 다음년도이월사업비현황, 채무부담행위)

○ 기금결산보고서

○ 채권현재액보고서

○ 채무결산보고서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 결산검사 범위

○ 계산의 과오여부

○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등 검사

※ 주요시책의 성과, 기타 예산집행실적 보고는 검사대상에서 제외

Ⅱ. 일반회계의 결산

1. 세입의 결산

(1) 세입의 결산총괄

가.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97	'98	'97	'98	'97	'98	'97	'98
지 방 세	26,096	27,467	30,330	32,424	27,388	27,956	2,942	4,468
세외수입	29,169	59,313	58,008	60,160	56,491	57,078	1,517	3,082
지방교부세	15,165	13,975	15,165	13,975	15,165	13,975		
지방양여금	6,153	5,524	5,482	5,181	5,482	5,181		
보 조 금	53,533	33,977	43,811	33,947	43,811	33,947		
지 방 채	4,771	5,260	4,791	5,210	4,791	5,210		
합 계	134,887	144,076	157,587	150,897	153,128	143,347	4,419	7,550

나. 세입결산 총괄 검사의견

1) '98세입금 수납액 143,347백만원은 예산액의 99.3%로 729백만원 과소수납되었으며, 세입을 초과달성하지 못한 부진한 세입 수납실적임.

2) 세수부진의 주요요인을 분석해 볼 때

① 미수납액이 7,55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9% 대폭증가 하였으며

② 징수교부금 수입이 4,512백만원으로 전년 8,956백만원 대비 54%감소가 주요요인이며 이는 IMF를 맞이한 부동산 경기 악화가 주요원인이나

③ 적극적인 세원개발 노력과 납기내 징수실적의 제고 및 부단한 체납액 축소노력에 의한 세입확보 노력이 필요함.

3)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5%이며 미수납액은 7,556백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증가와 일반부담금 및 과태료 미수납액임.

(2) 세입부문별 검사의견

가. 지방세 부과부분

1) 지방세 세무조사실적이 거의 미미한 바 이는 '98년 지적과 같이 사치성 재산, 고급주택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파악 등 각종 과세자료 수집에 의한 신규세원 발굴이 미흡한 결과이므로, 전직원을 활용한 세원정보 자료 수집체계를 마련하여 직원 1인당 매월 또는 분기별 1건이상 세원정보자료(증축 또는 개축정보, 토지지목변경, 법인과점주주지분 변경자료등)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세원정보를 수집하는 전직원 정보요원화가 필요함.

2) 이월금 예산액 45,697,078,710원과 수납액 45,461,319,181원과 차액 235,759,529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하여 1~3차 추경예산에 반영하면서 보조금 예산증액분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조정하지 아니한결과임.

나. 지방세 징수부분

1) 과오납금 처리

① '98년 과오납이 508건 116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부과 및 이중수납이 242건으로 48%를 점함으로 고지서 이중발부 및 소인지연으로 인한 독촉장 발부등으로 인한 이중수납은 민원야기 사항이므로 고지발부 및 독촉시 특히 유의 해야함.

② '98년 지적한 각 읍면별 미환급금액을 전액 과오납 환급조치하였으나 현재의 수납업무는 영수필 통지서에 의해 수납소인후 이중납부 과오납 사실이 즉시 확인되므로 "직권으로 과오납금 환급조치"를 해야할 업무를 "달성군 재무회계규칙"제 43조에 의해 「과오납반환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만 환급해 줌으로 인해 '98년 말 현재 10건 129,240원이 미환급되고 있어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가 요구됨.

③ 과오납 반환시 증빙을 받지않고 통장번호만 구두로 확인하여 무통장 입금처리하고 있으나 무통장 입금 명세서상에는 "성명"만 표시되므로 동명이인에게 입금되는 환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바

- 100만원 이상 환급시는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인감증명서 및 계좌번호를 신청받아 환급처리함이 징수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소액환급은 통장사본을 징취하여 반환해야 부당환급 사례가 발생치 않을 것임.

2) 체납액 정리업무에 있어

① 과년도분 불납결손액 163백만원 중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한 것이 78만원으로 48%를 점하고 있는바 이는 '93년이후 5년간 납부독촉, 재산압류, 수색, 결손처분등 체납처분 절차를 해태하고 시효소멸까지 기다린 결과임.

②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의 도로사용료 및 폐기물 수거 수수료 미수납액 1,898건 6백만원을 5~10년 경과후 시효소멸로 결손처리하였음.

③ 고액체납액 관리에 있어서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 관리카드만으로 체납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납기표시, 총체납액 확인 등 체납액 명세파악이 불가능하며, 체납처분내역을 조사자가 계속 누적기록하고 체계적으로 결재함으로써 결손처분시 관리카드를 첨부함으로써 체납정리내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형식적인 내용만 월1회 기재함으로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함.
- 또한 고액체납자 관리에 있어서 부동산 압류시 우선채권조사서를 작성하여 우선 순위 및 배분가능액을 확인함으로써 지방세 채권확보가능액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는 압류재산은 압류실익이 없음에도 "즉시 무재산 결손처분"해야할 압류물건을 압류하였다하여 「실제 무재산자」를 계속 체납액 관리를 하고 있음.

④ '98년말 현재 체납액 미수납액 7,16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대폭증가 하였으며 이월체납액 축소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 왔으나, 과년도 체납액 체납처분

결과 세목별로 1건의 결손도 하지 않은 관서(재산세－화원읍, 유가면, 자동차세－가창, 옥포, 유가면, 도시계획세-가창면, 사업소세－가창, 옥포면)가 있는바 이는 적극적인 체납액 축소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다. 세외수입 부문

1)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97	'98	'97	'98	'97	'98	'97	'98
금 액	29,168	57,872	58,008	60,160	56,491	57,078	1,511	3,082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01%로 소폭증가 되었으나

①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4,51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4%로 감소하였는바 '98년 시세 징수실적이 15,988백만원('97년 29,549백만원)에 불과함에 기인하며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98년 준공예정이었던 삼주 아파트 등이 부도로 연내 준공되지 못함에 기인함.

② 세외수입 잡수입 발생 671백만원은 '97년 지방양여금이 대구광역시 자금수급 형편상 '98년에 이월송금되어 제3회 추경예산 편성시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편성됨에 기인함.

2) 과태료 감소 및 미징수액 증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 수 액		미징수액		비 고
	'97	'98	'97	'98	'97	'98	
금 액	1,288	1,172	668	545	620	627	

—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차량과태료 등 미징수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미징수액 감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임.

—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자동차 매연관련 정화조 청소분야 과태료는 크게 증가했으나 건축법, 식품위생법 등의 생활관련법 위반 과태료는 감소하였음

2. 세출의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금	예비비사용	예산이용
'98년	105,478	38,598	2,124	0
'97년	134,887	28,540	172	0

예산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18	144,076	100,299	35,259	8,518
230	163,427	107,667	38,598	17,162

○ 세출결산 개요

당초 예산액 99,515백만원에서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으로 최종 예산액은 105,478백만원이며 여기에 전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가 38,598백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44,076백만원임.

그중에서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예산 전용은 18백만원이고 예비비 사용은 전체예산의 2%수준인 2,124백만원임.

예산전용은 읍면 청원경찰 인건비를 예산착오 계상으로 부족분 발생하여 본청 일반직공무원 수당잔액에서 전용한 것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상이 요구됨.

예비비사용은 주로 태풍예니피해 긴급복구비와 정부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에 사용된 것이나 지방자치단체 활동 수행중 예측할 수 없는 지출요소에 대비키 위한 예비비본래의 목적보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구료비 등 중앙관서의 무계획한 사업 시행으로 국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으로 쓰여진 경우가 있어 상부건의를 통한 개선이 요망됨.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에 해당하는 100,299백만원 밖에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주로 명시이월비(26,336백만원)와 사고이월비(8,923백만원)과다발생으로 인한것으로 보다 정확한 사업예측으로 이월사업비를 최대한 줄여나가야 겠음.

불용액 8,518백만원은 예산현액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중에는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전재정 운용분야도 있는 반면 지방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의 이행을 해태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불건전 재정운영 분야도 있었음.

○ 세출결산 기초장부 검사결과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1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완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월말까지는 출납사무가 종결되고 제반 장부가 마감되어야 하나 자금배정원부가 결산검사기간 현재까지 마감이 되어 있지 않았고

· 지출부는(관)일반행정비 (항)예산운영 (세항)경상예산 (세세항)인건비 (목)기타직보수에 읍면 청원경찰 인건비 재배정액 289,999,640원이 기재누락된 상태로 장부마감되어 있었음.

○ 세출예산 집행내용을 검사한 결과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세출의 회계년도 소속구분은 사용료 수수료 등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사용 또는 수수)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구분하게 되어있음에도 '99년 1월분 지방세정 전산망 유지보수비 1,001,000원과 '99년 1월분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122,000원을 지급의 원인이 발생된 99회계년도 세출예산으로 집행하지 않고 '98년도 예산으로 '99. 2. 11 집행 함으로써 유지보수비가 '98년 13개월분('98. 1월~'99년 1월)이 지급되었음.

· 재정경제원 회계예규(2200.04-115-3)정부회계의 수입, 지출보고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10만원 이상의 모든대가 지급시에는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토록되어 있으나 '99.1.27 화원한샘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보상금 79,670,000원(구년도)을 논공읍 노이리 산276-3 최창림에게 지급하면서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지 않고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 통상지급 명령서로 군 금고에서 현금 수령토록 하였음.

금융기관 계좌개설이 되어있지 않은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현금수령을 원할 경우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사항을 검사한 결과

· 예산이체는 직제 또는 기구개편 등 조직과 기구에 변동이 있을 때에 예산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제도이나 '98년 9월 21일 군청 직제개편으로 4개과가 다른과와 통합되고 1개 사업소가 신설되는 등 대폭적인 기구 변동이 있었으나 예산이체 제도를 활용치 않고 직제개편 후 2개월여 지난 98.11.10 제2회 추경으로 예산정리조치하여 2개월여간 통합된 4개과에서는 두 곳의 예산과목을 사용하고 비슬산 관리사무소는 별도의 회계관직(경리관,지출원)이 있음에도 본청 도시녹지과 예산을 사용하는 불합리가 있었음.

○ 이월사업비를 검사한 결과

(단위 : 백만원)

종 류	건 수	금 액	비 고
계	94건	35,259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30 건 64 건 0 건	26,336 8,923 0	

·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모두 94건에 35,259백만원이며 명시이월비가 30건에 26,336백만원 사고이월비가 64건에 8,923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월사유는 연말에 보조금이 교부되어 계약 자체가 늦어졌거나 계약을 미처 체결하지 못한 경우와 계약과 동시에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 및 일부 편입토지 보상금수령지연 등으로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고 있음.

· 특히 '97년도 사업중 '98년도로 명시이월되었다가 다시 '99년으로 사고이월시킨 사업도 15건에 5,111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모두는 편입토지 보상지연에 기인하고 있어 사업시행시 편입토지에 대하여 편입함이 타당하고

또 공인평가기관의 감정으로 적정한 보상이 된다는 충분한 설명과 노력으로 사업추진 하여야 할 것임.

○ 예비비 사용 내용을 검사한 결과

· 예비비 사용결정액 25건 2,124백만원 중 재활용품수거 선별작업 노임 1,688,000원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 및 자녀학비 보조비 27,063,000원, 다사 서재 보성 아파트 하수구복구 6,300,000원은 예비비 본래 사용목적인 예측할 수 없는 지출소요에 사용하였기 보다는 중앙의 계획없는 행정으로 인하여 연도중 갑자기 국비가 보조됨에 따라 군비부담지시액을 부담한 사례로 위 3건에 35,051,000원은 예비비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 예산 불용액 내용을 검사한 결과

(단위 : 백만원)

사유별 / 계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잔액
8,518	4	290	320	6,019	117	1,768

· 예산의 집행은 예산한정성의 원칙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서 내용대로 예산집행하여야 하나, 농산물직판장 시설비 2억원은 제1회추경에 예산계상되어 졌으나 집행부에서 계획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업 시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함으로써 예산 2억원을 사장시킨 사실이 있으며, 차후부터는 사업계획변경분에 대하여는 추경시 삭감 조치하여 동 예산을 타과목으로 편성 활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임.

○ 보조금 집행현황을 검사한 결과

· 시도비 보조사업중 도로건설(세항)사업에 용계잠수교 수해복구공사는 [공사비 35,325천원(시비 14,130, 군비 21,195)] '98.12.24 논공읍 북리 824-4(주)우리건설 이병주와 31,000천원에 공사도급 계약체결하여 '99.1.21. 준공하고 '99.2.11 공사비 지급되었으나, 보조금 집행현황에는 사업비 집행액 없이 시도비 보조금 14,130천원만을 집행잔액으로 결산처리하였으며

· 시도비 보조사업 하천관리(세항)에 명곡소하천 수해복구사업 등 6건의 수해복구공사는 각사업에 예비비가 군비로 예산계상되어 있으나 이를 누락시켜 결산한 결과 집행액과 집행잔액에 오류가 발생케 하였고

· 냉천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공사비 42,000천원(시비 25,053 군비 16,947)] '98.12.29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69-12 평화건설(주)와 계약체결하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99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이나 결산상에는 25,053천원(군비예비비12,922천원 누락)이 연내 집행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결산하였음.

○ 공사집행관계를 검사한 결과

· 비슬산 관리사무소의 자연휴양림 시설물복구공사(야계사방복구공사) 102,137천원은 '98. 제2회 추경('98.11.10)에 수해복구공사로 예산계상 되었으나 즉시 사업 발주않고 있다가 12월에 '98.12.30~'99.2.23 공사기간으로 동절기에 사업지연 발주 하였으며, 공정중에는 시멘트 콘크리트 공종이 있음에도 지대가 높고 음지로 인하여 평지보다 기온이 더 낮은데도 동절기 시공중지명령 없이 동절기 공사로 시공하여 콘크리트 강도 저하로 부실공사 위험을 초래했음.

○ 기금의 결산을 검사한 결과

·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이 기금결산에서 누락되어 있음.

○ 채권, 채무결산을 검사한 결과

· 달성군청 정구부 합숙소 임차보증금 30백만원을 채권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채권현재액 보고는 "해당없음"으로 결산하였음.

○ 보조금 집행현황을 검사한 결과

·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상 물품가액을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당시가격을 현재액으로 관리하고 있어 정확한 자산 현재액을 파악하기 곤란함.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공유재산과 마찬가지로 5년마다 한번씩 물품 재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감가상각이 적용된 물품 현재액이 나타나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Ⅲ. 특별회계의 결산

1. 세입의 결산

(1) 요 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97	'98	'97	'98	'97	'98	'97	'98
주 택 사 업	156	126	127	117	127	117		
의료보호기금	5,585	5,823	5,615	5,828	5,610	5,823	5	5
새 마 을 소 득	189	273	176	275	176	275		
농 공 지 구	2,345	943	1,582	748	1,582	748		
치 수 사 업	7,448	4,272	8,874	4,372	8,874	4,372		
합 계	15,723	11,437	16,374	11,340	16,369	11,325	5	5

(2) 검사의견

가. 수납액 11,335백만원은 예산액의 99%로 102백만원 과소 수납되었으며 세입액이 전년대비 69%에 불과한 바 이는 특별회계 주 수입원인 치수사업 즉 골재판매 수입이 건설경기 부진으로 저조한데 기인하여, 또한 각종 특별회계 사업에 있어서 민간융자금에 대하여 I.M.F이후 전반적인 경기부진으로 조기상환이 미흡함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임.

나.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편성시 예산 943백만원 대비 수납실적은 747백만원으로 부진한 바 이는 순세계 잉여금 예산 400백만원 대비 수납실적 204백만원에 기인하므로 정확한 전년이월 잉여금을 산출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수납실적 제고에 노력해야 함.

2. 세출의 결산

(1) 요 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97	'98	'97	'98	'97	'98	'97	'98
주 택 사 업	156	126	32	31			124	95
의료보호기금	5,740	5,823	5,609	5,822			131	1
새 마 을 소 득	189	273	143	188			46	85
농 공 지 구	2,190	943	1,377	442			813	501
치 수 사 업	8,743	4,272	8,291	3,849	237		215	423
합 계	17,018	11,437	15,452	10,332	237		1,329	1,105

(2) 검사의견

○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감소추세이 있어 양호함.

○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실적이 미진하여 융자하지 않은 대부분의 세출금(전체예산의 72%인 91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다가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순세계 잉여금으로 매년 예산을 이월시키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주택지원사업(융자확대)의 시행이 요구됨.

○ 농공지구 관리 특별회계도 전체예산의 53%인 501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는 세입에서 융자금회수가 저조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된 세출예산 융자금(원금이자) 불입액을 추경에서 미불입분 만큼 예비비로 추가 편성함에 기인함.

Ⅳ. 개선을 요하는 사항

1. 결산서상 미수납액 파악의 정확성 결여

〈현 황〉

세입세출결산시 미수납액의 다음년도 이월액 파악에 있어서 읍면의 징수부상

이월액 조서를 징취하여 다음년도 이월액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 징수부에는 과년도분중 수납과다분을 조정하지 않아 이월액에 감액표시(△)가 표시된 징수부상 미징수 결정액이 있음에도 이를 체납액에서 차감함으로 이월 미수납액이 과소 계상 되었음.

〈문제점〉

○ 징수부상 단순수치만 파악하여 작성함으로 인해 징수부상 이월액조서와 실제 체납이월액과의 차액 1,454건 53,253,050원이 다음년도 미수납액에 과소표시 되었음.

〈개선안〉

○ 미수납액의 다음년도 이월액은 읍면별 실제 총체납액을 파악하여 표시해야 하며 징수부상 수치와 대조하여 정확한 다음년도 이월액을 산출해야 함.

○ 징수부상 과년도분 미수납 이월분에는 감액표시(△)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가산금 등 미징수결정여부, 또는 징수결정연도 착오 등 사유를 규명하여 조정해야 할 것임.

2. 과오납액 반환업무에 대한 검토

〈현 황〉

달성군회계규칙 제43조에 의거 과오납 반환 신청자에게만 환급토록 함.

〈문제점〉

① '98년 지적으로 군수지시에 의해 미신청 환급분에 대한 환급처리를 완료하였다 하나

② 과오납, 이중수납이 확인된 과오납금액을 「송금통지서」에 의해 직권통지 환급하지 않고 과오납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환급함으로 인해 신청 받는날까지 환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과오납 결정일까지 지연함으로 인해 환급이자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세수낭비 요소임.

③ 무통장 입금시도 통장사본 등 본인확인 증빙없이 계좌번호만 확인하여 무통장 입금하고 있으므로 동명이인에게 입금 등 환급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개선안〉

① 과오납 반환업무에 있어서 달성군 재무회계규칙 제43조를 개정하여

○ 사전 결정분은 수납소인후 이중불입액은 직권으로 일괄 환급결의 및 통지해야 하며

○ 사후 결정분은 부과담당자가 사후결정 결의후 과오납액을 확인하여 일괄 환급결의 및 환급금 지급 송금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 즉시 환급결정 송금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환급금이자 발생도 축소될 것임 ('98년 과오납 환급이자 5,248천원 지급됨)

② 무통장 입금시에도 본인여부를 확인할 통장사본을 징취해야 환급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100만원이상 환급시에는 계좌개설 신고서 및 인감증명서를 징취하여야 할 것임.

3. 체납액 증가에 대한 체납액 축소방안 검토

〈현 황〉

지방세 체납액 축소의 문제는 소액 체납을 시효만료 5년간을 방치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하고 있는 것이 과년도 체납액중 48%를 점하고 있는 바 이는 누적 체납건수 증가로 체납처분에 대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체납처분 소홀 상태로 판단됨.

〈문제점〉

소액체납임에도 재산조회 등 고액자에 대한 결손처분시 증빙서류를 비치하여 무재산 결손 처분을 하고 있어 업무 형편상 방치하고 있다가 소멸시효로 결손처분하고 있음은 직무소홀로 볼 수 있음.

〈개선안〉

관리자의 적극적인 체납처분의지로 — 소액체납에 대하여는 1차 독촉, 2차 납부최고, 3차 납부독려, 4차 재산수색 — 무재산으로 판정시 별도의 조사서 없이 체납처분표상 이면에 조사사항을 기재하고 일괄 결손처리하여 체납액을 축소해야함.

① 소액체납은 체납액 축소의지로 소멸시효까지 기다려서는 안되며

② 자동차관련 소액체납도 과감한 무재산 결손으로 건수를 축소해야하며, 자동차 등록원부상 압류사실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결손내용만 누적관리」할 때 언제라도 "결손부활"이 가능하므로 실익없는 소액체납 건수만 과다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함.

○ 우선 총체납액 건수가 축소 되어야만 실제적인 체납업무 집행에 도움이 될 것이며 종사직원의 업무량도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견 서

(1999 회계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목 차

□ 결산검사의견서

Ⅰ. 결산검사개요

Ⅱ. 일반회계의 결산

1. 세입의 결산

2. 세출의 결산

Ⅲ. 특별회계의 결산

1. 세입의 결산

2. 세출의 결산

Ⅳ. 개선을 요하는 사항

결산검사의견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2000년 6월 20일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로부터 199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에 따라 2000년 5월 29일부터 2000년 6월 17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로서 1년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행 · 재정적 실적보고서이기도 하므로, 의회가 승인한 예산서대로 성실하게 집행되고 집행내용도 제반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이루어져 납세자인 동시에 행정 수혜자인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나, 과다한 지방채 차입과 예비비의 방만한 운영, 그리고 예산전용등 예산집행의 예외규정의 폭넓은 활용, 잡다한 특별회계의 설치, 무분별한 기금의 운용등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을 결산서상에 내포하고 있어 가급적 단순, 간결해야 할 결산이 해가 갈수록 복잡 다양해져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결산의 이해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봄.

○ 예산규모로 볼 때 1998년도의 155,513백만원보다 4,195백만원이 줄어든 151,319백만원으로 1997년도 180,445백만원 이후 2년째 계속 예산규모가 줄어들어 I.M.F이전 1997년도 대비 83.8% 수준의 예산 규모로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가 곧바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영수익 사업등 대체수입원 발굴에 노력해야 할 것임.

○ 세입부분의 체납세 누증과 세출부문의 경상비 증가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나, 반면 징수 불능 세입 미수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98년도 결손처분액 381백만원 보다 287% 증가한 1,094백만원의 미수납 체납액을 정리하였고 세출예산의 고질적 문제인 명시, 사고 이월비가 98년도 35,259백만원보다 6,906백만원 줄어든 28,353백만원만 익년도로 이월하였고 세출예산 불용액도 전년보다 1,518백만원 줄어든 8,095백만원으로, 합리적인 지방재정운용에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임.

○ 기타 대구광역시달성군이 제출한 1999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는 유첨된 부분별 결산 지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재산, 물품의 변동내용과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이 선 용

위 원 최 상 호

노 경 규

추 영 종

Ⅰ.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결산검사 항목

- ○ 결산총괄 설명서
- ○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조서, 계속비집행, 예비비 집행, 다음연도이월사업비현황, 채무부담행위)
- ○ 기금결산보고서
- ○ 채권현재액보고서
- ○ 채무결산보고서
-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 ○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 결산검사 범위

- ○ 계산의 과오여부
- ○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 ○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등 검사
  ※ 주요시책의 성과, 기타 예산집행실적 보고는 검사대상에서 제외

Ⅱ. 일반회계의 결산

1. 세입의 결산

(1) 세입의 결산총괄

가.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98	'99	'98	'99	'98	'99	'98	'99
지 방 세	27,467	26,661	32,424	34,992	27,956	27,865	4,468	7,127
세외수입	57,872	56,415	60,160	60,826	57,078	57,103	3,082	3,723
지방교부세	13,975	12,697	13,975	12,704	13,975	12,704		
지방양여금	5,524	5,295	5,181	5,295	5,181	5,295		
보 조 금	33,977	39,017	33,947	39,007	33,947	39,007		
지 방 채	5,260	300	5,210	150	5,210	150		
합 계	144,076	140,385	150,897	152,974	143,347	142,124	7,550	10,850

나. 세입결산 총괄 검사의견

1) '99세입금 수납액142,124백만원은 예산액의 101.2%로 1,739백만원 초과달성이나,

2) 일반회계 수납액중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 감소로 인한 세입수납액 초과달성이므로 농수산물물류센타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6,593백만원 및 '98년대비 지방채 감소액 5,219백만원 등을 제외하고 순수납액을 분석해 볼 때 '99수납액은 102,977백만원으로 '98년 수납액 대비 98.4%에 불과해, 전년도 대비로 볼 때 다소 부진한 세입실적임.

3) '99세입부진의 주요원인을 분석해 볼 때

① 미수납액이 10,85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3% 대폭 증가하였고, 특히 지방세 미수납액의 전년대비 159.6% 증가가 주요 요인임.

② 미수납액이 대폭증가하고 있으므로 고지단계에서부터 체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납기내 징수실적의 재고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부단한 체납액 축소노력에 의한 세입확보가 필요함.

③ 또한,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의 비율도 92.9%로 저조한 바, 이는 주민세

체납액이 1,82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75.3% 대폭 증가한 결과 및 과태료 미수납액의 계속적인 증가에 기인함.

(2) 세입부문별 검사의견

가. 지방세 부과부분

숨은 세원발굴에 의한 '99년 과징실적이 292건 2,099백만원의 추징실적을 거양하였는 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원정보 수집노력으로 적기에 세원을 포착함으로서 조세일실을 방지해야 할 것임.

나. 일반회계 결산서상

수납액은 142,124,338,354원이나, '99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상 일반회계 수입액 합계액은 143,124,338,354원으로 1,000백만원의 차이가 나타남. 이는 '97년도에 대구은행에 적립한 정기예금을 군 금고계좌로 이관시키면서 농협중앙회 일계표에 세입금, 대구은행 일계표에 지출금으로 처리하여 '99년 세입금에 1,000백만원을 중복 계상한 사실이 있음.

다. 지방세 징수부분

1) 과오납금 처리

① 매년 반복 지적함과 같이 신고오납 및 이중수납으로 과오납 반환이 381건 49.4%를 점하고 있으므로 고지서 이중발부등은 민원야기 사항이므로 축소 되도록 특히 유의해야함.

② '98년 이전부터 지적된 연도이월 미환급액에 대하여는 "발견즉시" 직권으로 과오납 환급조치함으로써 '99년 이월분 미환급세액은 없음.

③ 옥포면 본리리 세창산업사 유세창에 대한 중소기업창업감면에 관련한 환급세액 11,360,320원에 대한 환급신청에 대하여 본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제조업의 사업개시일에 대한 사실 판단에 관한 것으로 지방세법이 정한 "불복청구"에 의한 업무절차를 밟아야 할 사항인 것을 담당자 직권으로 판단하여 환급한 것으로, 지방세법이 정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업무 자세로 판단됨.

2) 체납액 정리업무에 있어

① 과년도분 불납결손액 729백만원으로 이는 '98년대비 445.9% 증가한 것으로 적극적인 체납처분 의지가 반영된 체납처분 실적으로 분석되나,

② 고액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체납정리 위원회 심의 등 엄격한 심의절차에 의한 무재산 확인 및 재기불능으로 징수가 불가능함으로 결손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다수인의 심의 판정 절차가 필요하므로

- 지방세법상 체납정리위원회의 설치가 불가능하다 하나,
- 담당자의 조사의견 및 관리자의 최종결재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 재심할 수 있는 과정을 신설하는 등 엄격한 결손처분조사가 필요한 사항임.

③ "붙임 유가면 양리 573-2 대우산업"의 '99년 3월수시분외 2건의 체납액 23,254천원을 2000년 2월28일 결손 처분하면서,

- 상기 주소지에서 영업중이나 부도상태임으로 채권 확보가 불가능하다 하여 결손처분 하였으나,
- 영업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도여부에 관계없이 현금, 상품, 재고자산 등 환가가치있는 재산을 수색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해야 함에도 부도가 나고, 경매가 개시되었다 하여 결손처분하였는 바, 이는 조사미진에 의한 결손처분을 하였다고 판단됨.

④ 반복 지적한 바와 같이 고액체납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액관리카드"를 비치 매월 결재하고 있으나,

- 총 발생체납액, 체납경위, 현재 총체납액, 압류등 체납처분 진행사항, 향후 징수가능 여부를 고액 관리카드에 의하여 관리자가 결재시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재 관리하여야 하나, 쉽게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서식에 형식적으로 기재하여 결재만 받고 있는 사례도 있었음.

⑤ 또한 부동산 압류물건에 대하여는 "우선채권조사서"를 작성하여 우선순위 및 배분가능액을 표시하여 채권확보 가능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제 관리해야 하나, 정확한 우선채권을 파악하여 관리하지 않음.

라. 세외수입 부문

1)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97	'98	'97	'98	'97	'98	'97	'98
금 액	57,872	56,415	60,160	60,826	57,078	57,103	3,082	3,723

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변동이 없으며,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6,04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1%로 증가하였는바 '99년 시세 징수실적이 21,715백만원(98년 16,165백만원) 증가함에 기인하며, 이는 강창하이츠 및 다사보성아파트 준공입주로 증가하였음.

② 임시적 세외수입의 폐기물수수료 미수납액 19,888,470원 전액을 시효소멸로 불납결손처분하였는 바,

- '93년 이월액 3,702,030원 및 '94년 이월액 5,361,580원의 미수액이 있으나 매년 반복하여 일체의 재산조사 및 체납처분 절차없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고 있음.

2) 과태료 감소 및 미징수액 증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 수 액		미징수액		비 고
	'98	'99	'98	'99	'98	'99	
금 액	1,172	1,639	545	632	627	1,007	

- 노래연습장 단속권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에 신규세원 발생하였음.(징수결정액 200백만원, 수납액 40백만원).
-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차량과태료 부과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미수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미징수액 감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임.
- 환경관련 과태료가 '99년 12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68% 대폭 증가함.

2. 세출의 결산

가.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금	예비비사용	예산이용
'99년	105,126	35,259	944	0
'98년	105,478	38,598	2,124	0
'97년	134,887	28,540	172	0

예산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229	140,385	104,971	28,080	7,334
18	144,076	100,299	35,259	8,518
230	163,427	107,667	38,598	17,162

나. 세출결산 총괄 검사의견

당초 예산액 87,870백만원에서 3회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으로 120% 늘어난 최종 예산액은 105,126백만원으로 여기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5,259백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40,385백만원 임.

예기치 못한 지출요소에 대비키 위한 예비비가 예산액의 3.8%를 차지하는 3,987백만원이며, 그중에 944백만원이 수해복구에 사용되었으나,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출예산의 과다 또는 삭감된 예산을 부당하게 예비비로 편성하여 불용액으로 처리함으로써 예산사장한 사실과 예비비 지출결정은 대부분 연도말에 지출결정이 이루어지고 지출결정액중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예비비 본래의 목적인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지출사유에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3회에 걸친 추경예산 편성에 의하여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이월을 전제로 연도말에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짐.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예산전용은 그 본래 취지보다는 공공근로사업에 예산편성 과목구분 착오분을 정정하기 위하여 229백만원이 사용되어져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을 기하여야 하겠음.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에 해당하는 104,971백만원을 집행하여 예산과 결산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명시 및 사고이월로 익년도로 예산이월된 것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비를 줄이기 위하여 연말 국·시비 교부내시나, 수해복구공사등의 연말 발주를 가급적 지양하도록 상부건의 등으로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다. 부문별 결산 의견

○ 지방재정법시행령제5조에 따라 회계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출납사무가 종결되고 제반장부가 마감되어져야 하나, 지출부 전산프로그램의 불안정으로 월계만 집계되고 누계가 출력되지 않아 결산서와 제반 장부와의 검증이 어려웠고 결산서에 오자와 탈자가 일부 발생하여 정확한 결산검사를 저해 하였음.

○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제32조에 의거 세출예산의 회계년도 소속 구분은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구분하게 되어있으나, '99회계연도 출납정리 기간인 2000년1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공공용지 편입토지 보상금등 25건의 군금고의 신,구년도 구분 착오로 타년도 회계에서 지출되어 최종 출납정리일인 2000년2월29일 일괄 군금고에 회계구분 정정요구를 하여 일계표 정리하는 등 군 금고 관리, 감독에 소홀한 점이 있었음.

○ 세출예산의 지급은 지급명령발행부에 의거 통상지급 또는 집합지급, 계좌입금지급명령을 발부하여 군 금고를 통하여 지출하고 있으며 매일 지급명령부와 금고의 일계표를 대사하여 일일결산 하고 익일 지출시에는 전일까지 세입대 세출결산상 잔액 범위내에서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함.

'99년도중 총 지급명령발행건수는 7,275건이며 이중에 지급명령되었다가 군 금고 예금잔고 부족을 이유로 당일 지급명령 취소된 건수가 79건임.

이는 예금이자 수입증대를 위해 군금고 일계표상 잔액중 극히 제한적인 자금만 군금고 보통예금으로 남겨 놓고 나머지 대부분의 잔액은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자금여유율이 낮아 예상치 못한 과오납금의 반환청구나 도로등 공공용지 편입토지 용지보상금의 청구가 있을시에는

자금부족 현상이 발생되어 기 지급 명령되었던 지출건 중 일부가 지급명령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됨.

'99년도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이 2,400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세입부분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자금운영측면에서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보다 정확한 일일 자금 소요액을 판단하여 지급 명령된 지출건이 지급명령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야 하겠음.

○ 예산은 그 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수치로 나타낸 계획서이므로 사전에 행정수요나 자금소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편성하여야 하나,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부서 일반운영비는 경상경비임에도 20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 중 143백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59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도시녹지과 도시개발 부서 일반운영비도 당초예산 154백만원에서 2회 추경시 100백만원을 추가확보하여 합계 254백만원 예산중 197백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77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이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확보를 위하여 의회의 예산 삭감을 염두에 두고 미리 가상의 수치를 예산요구한 결과로 보여짐.

또한 지방채 채무상환을 위한 차입금 이자와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은 정확한 소요액 파악이 가능함에도 각각 40백만원과 80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편성시 소홀하였음이 확인됨.

○ 지방재정은 양입제출의 원칙에 따라 수입의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지방채차입등으로 자치단체가 빚을 내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건전재정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가급적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할것임.

'98년말에 환경부로부터 낙동강수질개선사업비로 3,760백만원 지방공공자금채를 차입하여 현풍시가지 하수구정비공사등 8개 하수구 정비공사로 3,692백만원 예산편성하여 2,812백만원을 연도중 집행하고 잔액 880백만원중 212백만원은 2000년도로 사고이월 시키고 나머지 663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결국 불용잔액 663백만원은 불필요하게 차입한 것으로 원금상환시까지 차입금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는 물론이고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할 지방채 차입을 과다하게 차입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크게 어긋나게 예산운영 하였음.

○ 결산상 잔액은 당해연도 총 수입금액에서 총 지출된 금액을 제한금액으로 결산시점에서 본청 실과소 일상경비 출납원과 사업소 및 읍면 지출원에게 당해 연도에 자금배정 및 자금 재배정된 모든 자금중 미집행된 잔액은 모두 군 금고로 반납되어져 전체 결산상 잔액으로 나타나야 함.

비슬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98년도에 비슬산임도피해복구 공사비 34,940,100원을 '99년도 사고이월시키면서 미집행된 사고이월비를 계속 지출원 통장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99년도에 공사비를 모두 집행하였음.

이 경우에는 '98년 미집행 잔액인 사고이월비는 군금고로 자금반납한 뒤 '99회계연도에 사고이월비로 다시 자금배정 받아 '99회계년도 예산으로 집행되어져야 함.

'98년도 미집행 잔액을 자금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99년도로 2개연도에 걸쳐 자금집행함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남.

○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관계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본예산의결서에 같이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항목임.

'99년도 본 예산 명시이월비 조서에 의하면 모두 31건에 27,845백만원이 '98년도에서 '99년도 명시이월 되었으나, 결산결과 '99년도로 명시이월된 예산은 30건에 26,336백만원으로 1,590백만원이 감소하였음.

특히, 용연사석조계단주변정비공사비 40백만원은 '98년도 출납정리기한 중인 '99년 2월에 예산집행이 되어 '99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아님에도 당초예산이 명시이월비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 등 명시이월 대상사업 선정과 명시이월비 판단에 소홀하였음이 인정되며, 또한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통하여 변경사항을 의결받아야 함에도 변경된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Ⅲ. 특별회계의 결산

1. 세입의 결산

(1) 요 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98	'99	'98	'99	'98	'99	'98	'99
주 택 사 업	126	107	117	105	117	105		
의료보호기금	5,823	6,064	5,828	6,068	5,823	6,065	5	3
새 마 을 소 득	273	447	275	427	275	427		
농 공 지 구	943	484	748	690	748	690		
치 수 사 업	4,272	3,832	4,372	4,164	4,372	4,164		
합 계	11,437	10,934	11,340	11,454	11,325	11,451	5	3

(2) 검사의견

가. 수납액 11,451백만원은 예산액의 104.7%로 102백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특별회계 주수입원인 치수사업 즉 골재매각수입이 당초목표보다 2000㎥초과 판매 및 골재단가 높은 골재판매로 예산액 대비 331백만원 증가함에 기인하며,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경기침체 등으로 감소하고 있음.

나.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 484백만원 대비 수납액은 690백만원이나, '99년중 융자일시금 상환업체는 1개업체 366백만원만 상환했음에도 조기회수에 노력이 부족함.

2. 세출의 결산

(1) 요 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98	'99	'98	'99	'98	'99	'98	'99
합 계	11,437	10,934	10,332	9,900	273	272	1,105	762
주 택 사 업	126	107	31	20			95	87
의료보호기금	5,823	6,064	5,822	6,063			1	1
새 마 을 소 득	273	447	188	347			85	100
농 공 지 구	943	484	442	107			501	377
치 수 사 업	4,272	3,832	3,849	3,363	273	272	423	197

(2) 검사의견

○ 주택사업의 경우 매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별회계 목적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 농공지구는 제3회 추경시 차입금 이자 46,097천원을 잘못 삭감시켰다가 연말에 차입금원금에서 차입금이자쪽으로 다시 36,648천원을 예산전용하여 예산전용을 예산탄력적 운영이 아닌 예산편성 착오분 정정용으로 활용하고 있음.

○ 새마을소득의 경우는 3회에 걸친 추경예산으로 당초 예산액 400백만원에서 최종예산액 447백만원으로 증액시켜 놓고는 연말에 100,000천만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등 새마을소득사업 융자를 축소시행하거나 미미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됨.

Ⅳ. 개선을 요하는 사항

1. 결산서상 미수납액 파악의 정확성 결여(계속지적)

〈현 황〉

세입세출결산시 미수납액의 다음연도 이월액 파악에 있어서 읍면의 징수부상

이월액 조서를 징취하여 다음년도 이월액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 징수부에는 과년도분중 이월액에 감액표시(△)된 다음년도 이월액을 체납액에서 차감함으로써 이월 미수납이 '99년도에도 군세에만 34,222,970원이 다소 계상되었음.

〈개선안〉

○ 미수납액의 다음년도 이월액은 읍면별 실제 총체납액을 파악하여 이월액에 감액표시된 액수는 원인을 파악하여

① 연도구분이 잘못되었으면 연도를 수정하고

② 징수결정이 누락되었으면 수정징수 결정하여야 정확한 결산서상 다음년도 이월액을 계상할 수 있음.

2. 과오납액 반환(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검토

〈현 황〉

옥포면 본리리 2135-1 세창산업사 유세창에 대해 중소기업 창업감면을 적용하여 '99년 4월 수시 과오납액 11,360,320원을 반환함.

〈문제점〉

① 당 업체는 '99.6.21 남대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함(신청서상 개업일을 '99.4.10로 기재함)

② 창업에 관련된 부동산 취득 : '99.4.16 낙찰대금 납부.

③ 사업자는 '99.7월 중소기업창업감면에 해당한다며 과오납 신청.

- 사업자등록(제조 자동차부품)은 '99.6.10에 했으나

- 사업계획의 구상은 '99.1월초부터 했음에도 개업년월일을 '99.4.10로 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신청 교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창업일로 보는 것이 당연함을 주장하였고

④ 처분청에서는 법규해석에 다툼이 있는 것은 지방세법에 정한 불복신청을 받아야 할 것임에도 담당자가 임의로 해석하여 금 11,360,320원을 과오납 반환 처리하였음.

〈개선안〉

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창업의 범위는

-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 설립등기일
-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는 사업개시일이며

②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3조(개업일)는

-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며

③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3-21-2(사업 개시일 정의)는

-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④ 당 사업자는 제조 자동차 부품업을 개업하고자 하여 상기 부동산을 '99.4.16 취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99.6.21하였으며 '99.4.10부터 제조업을 하기위해 개업일로 기재했다 하나,

- 상기와 같이 제조업 사업개시일은 정상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봐야 함으로

-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단순히 자산을 취득하는 날을 제조업의 개시일로 보기에는 다툼이 있으며,

- "붙임"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을 위한 제조시설 준비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사업개시일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 상기 사업자는 자산취득은 '99.4.16에 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99.6.21에야 하면서 '99.4.10로 표시하였다하여 감면신청한 본 건 과오납반환에 대한 다툼이 있다 할 것임.

⑤ 상기와 같이 제조업의 사업개시일 판정에 다툼이 있는 것은 불복청구절차를 밟아 그 당위를 판단할 수 있는 상위기관에서 그 정당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으로 담당자 재량으로 처분한 본건 과오납반환은 취소하여 정당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견 서

(2000 회계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목 차

□ 결산검사의견서

Ⅰ. 결산검사개요

Ⅱ. 일반회계의 결산

1. 세입의 결산

2. 세출의 결산

Ⅲ. 특별회계의 결산

1. 세입의 결산

2. 세출의 결산

Ⅳ. 개선을 요하는 사항

결산검사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로부터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에 따라 2001년 5월 25일부터 2001년 6월 13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로서 1년동안 세입과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의 행 · 재정적 실적보고서이기도 하므로, 의회가 승인한 예산서대로 성실하게 집행되고 집행내용도 제반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이루어져서 납세자인 동시에 행정 수혜자인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서 지방자치 본래적 목적달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과 복지 증진을 기하여야 하겠으나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의존하는 열악한 재정적 현실을 감안하여 자치재원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00회계년도 예산규모로 볼때 1999년도 151,319백만원보다 108%(12,038백만원) 늘어난 163,357백만원으로 이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소폭 증가한 반면,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지방채 등의 증가로 인한 것인만큼 재정여건이 개선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숨은 세원발굴, 경영수익사업개발 등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

○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수납액 153,217백만원은 예산액의 101.5%로 2,259백만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그 중 지방세 수납액은 예산액의 104.0%인 32,584백만원으로 이것은 세입금 부과 · 징수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사료되나 체납세가 10,912백만원으로 과다하여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며, 징수불능 미수납액의 결손처분액이 전년도 대비 60%에 불과한 555백만원으로 그 실적이 부진하며,

○ 세출예산의 고질적 문제인 명시·사고이월비가 99년도 27,536백만원 보다 2,879백만원 줄어든 24,657백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고, 세출예산 불용액은 전년보다 645백만원이 늘어난 8,740백만원으로 예산의 사장이나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임.

○ 기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작성한 2000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는 따로 붙임 검사의견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 기금, 채권, 채무, 재산, 물품의 변동내용과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2001년 6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이 경 식

위 원 최 상 호

노 경 규

배 한 용

Ⅰ. 결산검사개요

□ 근거 : 지방자치법 제 125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결산검사 항목

- ○ 결산총괄 설명서
- ○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조서, 계속비집행, 예비비 집행, 다음연도이월사업비현황, 채무부담행위)
- ○ 기금결산보고서
- ○ 채권현재액보고서
- ○ 채무결산보고서
-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 ○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 결산검사 범위

- ○ 세입·세출의 결산
- ○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 ○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 재산 및 기금의 결산
- ○ 금고의 결산

Ⅱ. 일반회계의 결산

1. 세입의 결산

가. 세입의 결산총괄

○ 요 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99	2000	'99	2000	'99	2000	'99	2000
합 계	140,385	150,958	152,974	164,129	142,124	153,217	10,850	10,912
지 방 세	26,661	31,328	34,992	39,413	27,865	32,584	7,127	6,829
세외수입	56,415	46,519	60,826	50,966	57,103	46,883	3,723	4,083
재정보전금		5,975		6,379		6,379		
지방교부세	12,697	18,820	12,704	18,820	12,704	18,820		
지방양여금	5,295	8,145	5,295	8,145	5,295	8,145		
보 조 금	39,017	37,927	39,007	37,862	39,007	37,862		
지 방 채	300	2,244	150	2,544	150	2,544		

○ 세입결산총괄 검사의견

· 2000년 세입금 수납액 153,217백만원은 예산액의 101.5%로 2,259백만원 초과달성임.

· 일반회계 수납액 중 지방세수입의 수납액은 예산액의 104.0%로 세입액 징수확보에 노력한 결과이며,

- 전년대비 지방세 수납액도 4,719백만원 증가하였는바 이는 부과, 징수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판단되나,

- 시세징수금교부 수입·재정보전금수입의 증가 및 지방양여금과 지방채 증가로인한 순 수납액의 증가로 인한 초과달성임.

· 2000세입 증가의 주요원인을 분석하여 볼 때

- 미수납액이 10,91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0.5%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미수납액의 전년대비 95.8%로(△300백만원) 감소하였는 바 이는 부과, 징수 세입확보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 미수납액이 10,912백만원으로 계속 거액이 이월되고 있으므로 고지단계에서부터 미수납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납기내 징수실적의 제고 등 미수납액을 발생단계부터 억제해야 하며, 부단한 미수납액 축소 노력이 필요함.

나. 세입부문별 검사의견

○ 지방세 부과부분

숨은 세원발굴을 위한 2000년 과징실적이 266건, 3,736백만원의 추징실적('99년대비 185.9%증가)을 거양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원발굴노력에 의한 세수확보에 진력해야 할 것임.

○ 지방세 징수부분

· 과오납금의 처리

- 매년 반복 지적함과 같이 이중부과 및 이중수납으로 인한 과오납반환이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민원야기 사항이므로 특히 유의해야 하는 바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시 익월에 또 체납액고지서를 발부함으로 인한 이중수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고지발부 및 소인 지연으로 이한 체납고지서 발송 축소 등에 노력이 필요함.

· 체납액 정리에 있어서

- 2000년 결손처분액이 555,575천원으로 전년대비 60.0%에 불과한 것은 적극적인 체납처분 노력의 부족으로 보이며,

- 반복지적함과 같이 지방세 결손 중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한 것이 330,241천원으로 결손처분액의 59.4%에 달하고 있음은 시효소멸기간까지 납부독촉, 수색, 재산조사, 체납처분 등 제반 체납액 축소 노력을 해태하고, 징수권 소멸시효를 기다리다가 시효 소멸로 결손처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다. 세외수입 부문

○ 요 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1999	2000	1999	2000	1999	2000	1999	2000
금 액	56,415	46,519 (52,493)	60,826	50,966 (57,345)	57,103	46,883 (53,252)	3,723	4,083 (4,083)

※ ( ) 內 수치는 시세징수교부금 중 재정보전금을 포함한 수치임.

·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이월금액)이 7,145백만원 감소함에 기인하며,

- 시세징수교부금수입 중 전년도 징수교부율 30%였으나,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배정된 재정보전금항목 27%인 6,379백만원을 세외수입수납액에 포함하면 사실상의 시세징수금 실제수입은 전년대비 843백만원이 증가함.

· 재활용품 선별장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 인해 2000년부터 수거판매수입은 없음.

○ 과태료수입 징수결정의 감소사유

(단위 : 백만원)

회계년도	징수결정액	비 고
1999	1,639	
2000	1,448	
증감	△191	

· 종전에는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하여 개별법에 의한 행정처분과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처분을 병행하던것이 청소년보호법개정('99.7.1)으로 식품위생법등 개별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을 시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처분(과징금부과)을 하지 않으므로 감소.

· 건설기계 과태료도 최고조정금액이 하향됨.
(50만원→30만원으로)

· 또한 부동산실명법 관련 과태료 및 약사법 관련 과태료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에 기인함.

2. 세출의 결산

가.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금	예비비사용	예산이용
2000년	122,878	28,080	1,374	0
1999년	105,126	35,259	944	0
1998년	105,478	38,598	2,124	0

예산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39	150,958	107,293	35,931	7,734
229	140,385	104,971	28,080	7,334
18	144,076	100,299	35,259	8,518

나. 세출결산총괄 검사의견

○ 당초예산액 101,531백만원에서 2회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으로 121% 늘어난 최종 예산액은 122,878백만원으로 여기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8,080백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50,958백만원임.

○ 세출예산전용액은 39백만원으로서 토지(임야)대장부책 및 카드 CD-ROM화사업에 따른 수수료 30백만원과 인부임 9백만원을 일반운영비 목에서 연구개발비(전산개발비)와 재료비 목으로 각각 전용하였는 바 이는 예산의 탄력적운용이라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예산편성시 과목구분착오분을 정정하여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됨.

○ 재해대책등 예기치 못한 지출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가 예산액의 4.0%를 차지하는 4,938백만원이며, 그 중에 1,263백만원이 구제역방역 및 수해복구 등에 사용되었으나, 3,556백만원은 불용처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비비예산 과다편성 및 예산의 사장으로 여겨짐.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에 해당하는 107,293백만원을 집행하여 예산과 결산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보수사업 등 53건 18,357백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등 49건 6,183백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농수산물물류센터건립비 11,390백만원 등 총 102건 35,930백만원으로서 명시·사고이월의 주요원인으로는 보상협의 지연과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에 기인함. 불용액은 예산액의 5.1%에 해당되는 7,734백만원이었으며, 불용액발생의 주요사유는 예산집행잔액과 예비비가 85.7%를 차지하고 있음.

다. 부문별 결산검사의견

○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은 한해동안 군정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계획서로서 군민이 낸 세금을 적재적소, 적기에 투입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지역적 특성과 행정수요, 주민요구사항, 자금소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 책임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만큼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하여야 할 것인 바 2000년도 예산현액 대 지출액은 71%로서 '99년도의 74%보다 더 부진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을 보면 자본지출의 집행실적이 61%로 특히 저조하며 그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이 59%로 이는 당해년도에 사업을 끝내지 못한 각종 사업비를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한데 기인한 것이므로 대상사업선정 및 사업지구선정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됨.

특히 명시이월 53건 18,357백만원 중 군민독서실 건립비 등 6건 2,147백만원은 2000.12.20에 승인된 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 회계년도내 사업시행이 불가한 것이 예견됨에도 2001년 당초예산에 계상치 않고, 당해년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명시이월시킨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됨. 또한 1999회계년도 명시이월비가 사고이월비로 재이월된 경우가 3,037백만원으로 이는 재원의 조달가능성 및 사업의 예상소요기간등을 잘못 판단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으로 관광안내판설치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는데 집행하였고, 배정된 예산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가 다소 있었음.

○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서재도시계획도로 수해복구사업비 42백만원과 응암2리 진입로 수해복구사업비 31백만원을 예비비로 시행하면서 2000년 10월 4일에 예비비 지출결정하여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조치한 바 이는 신속한 수해복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사업의 성질에 비추어 사업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여겨짐.

○ 수해복구사업추진에 있어

논공읍 남리 용호천 수해복구공사를 415백만원에 도급공사를 시행하면서 축제공사에 편입되는 57필지중 3필지를 지주로부터 일시사용 승인거부함으로서 일부 축제구간이 홍수위를 막을 수 없는 시공이 되어 수해복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시공이 되었고, 예산 또한 145백만원을 감액 정산처리하여 불용상태에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해 몽리구역이 자연녹지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대로 형질변경을 시행하여 매년 반복되는 수해복구공사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함이 좋을 것으로 봄.

Ⅲ. 특별회계의 결산

1. 세입의 결산

가. 요 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1999	2000	1999	2000	1999	2000	1999	2000
합 계	10,934	12,399	11,454	12,237	11,451	12,235	3	2
주 택 사 업	107	123	105	116	105	116		
의료보호기금	6,064	6,433	6,068	6,437	6,065	6,435	3	2
새 마 을 소 득	447	373	427	373	427	373		
농 공 지 구	484	673	690	633	690	633		
치 수 사 업	3,832	4,797	4,164	4,678	4,164	4,678		

나. 검 사 의 견

○ 수납액 12,235백만원은 예산액의 98.6%로 164백만원 과소수납하였으며, 이는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임시적세외수입중 내부전입금 예산액대비 118백만원 과소수납됨에 기인하는 바, 당초 내부전입금 확정된 수치로 예산편성시 즉 1,2차추경시 예산현액에 반영하여 징수결정액과 순수납액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정확한 세입의 분석이 가능함에도 세입예산현액을 조정하지 않은 결과임.

· 특별회계 주 수입원인 치수사업 즉 골재매각수입은 456백만원 초과 판매하였으며, 이는 양호한 입지선정 및 점차적인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인한 골재수입의 증가로 인함.

2. 세출의 결산

가. 요 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1999	2000	1999	2000	1999	2000	1999	2000
합 계	10,934	12,399	9,900	11,276	272	117	762	1,006
주 택 사 업	107	123	20	28			87	95
의료보호기금	6,064	6,433	6,063	6,432			1	1
새 마 을 소 득	447	373	347	320			100	53
농 공 지 구	484	673	107	244			377	429
치 수 사 업	3,832	4,797	3,363	4,252	272	117	197	428

○ 검사의견

· 주택사업과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각각 64%와 7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매년 반복적인 현상으로 예산편성시 고려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예산, 시설비예산액은 96백만원인데 지출액은 98백만원을 집행함으로써 2백만원을 해당과목의 예산에 계상치 않고 결과적으로 다른 과목의 예산을 무단으로 집행한 사례가 있었음.

Ⅳ. 개선을 요하는 사항

1. 체납고지서 발부에 의한 이중납부분 축소

〈현 황〉

과오납반환금의 40%이상이 이중수납에 의한 것이며, 이 중 대부분이 정기분 고지서와 체납고지서를 이중발부함으로 인해 발생함.

〈문제점〉

국세징수법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만 발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달성군에서는 ①정기분고지서도 납세자가 요구하면 재발급하고 ②체납자에게는 정기분고지서와 동일한 체납고지서를 또 발부함으로 인해 이중납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정기분고지서에 납기후 금액도 표시되어 있음으로 독촉장만 발부하고 동일양식의 체납고지서는 발부하지 않는 업무개선이 필요함.

제 5 장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

제1절 대정부 건의문 등 채택

1. 위천국가산업단지조기지정 및
   구지지방산업단지 개발촉구 건의문
2. 대구지하철1호선 연장건설 건의문
3. 쌍용자동차 구지지방산업단지 조기개발촉구 결의문
4. 대구교도소 이전촉구 건의문

제2절 현안 협의를 위한 관계기관 방문

1. 대구도시계획 정비
2. 위천국가공업단지 조기지정 추진
3. 낙동강, 금호강 연안개발 추진
4. 쌍용자동차 구지산업단지 조성추진
5.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제 1 절 대정부 건의문 등 채택

1. 위천국가산업단지조기지정및구지지방산업단지개발촉구건의문 채택

○ 일　　자 : 1999년 7월 24일(제84회 임시회)

○ 발 의 자 : 이경식 의원 외 4인

○ 제안이유

대구의 경제적 위기극복과 부족한 산업용지 충족을 위한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에 있어, 낙동강 수질오염 등으로 지연되고 있고, 또한 구지지방산업단지가 36%의 공정에서 진척이 없이 방치되고 있으므로, 이를 관계기관에 촉구·건의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함.

【위천국가산업단지조기지정촉구건의문】

대구는 과거 경제개발시기에 지역의 특화된 섬유산업으로 국가경제 부흥을 주도 하였으며 우리나라가 선진경제에 진입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섬유일변도의 산업구조와 대기업의 역외 이전, 국가산업단지의 부재 및 산업용지의 부족으로 지역경제가 급속도로 침체되어 3대 도시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부족한 산업용지 충족을 위해 본 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해인 1995년에 대구시는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경제 구조의 고도화를 계획하였으나 낙동강 수질오염을 우려한 부산 경남 지역민들의 극단적인 반대로 현재까지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지연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과 달성군민은 각종 행위제한 및 건축제한 등의 심각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아왔으며, 정신적 피해의식은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포항산업연구소 및 미국 알곤연구소의 용역조사 등 각종 연구결

과에 의하면 위천산업단지가 낙동강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위천단지가 지정되더라도 공장이 입주하는데에는 최소한 5년이 소요되므로 낙동강 수질개선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고려한다면 국토 중남부의 경제적 핵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하여 위천산업단지는 조속한 시일내에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합리적인 정책이 지역의 불합리한 이기주의에 의해 지연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위천산업단지 지정은 객관적인 경제논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지역간의 감정이나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 및 관계당국은 대구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임을 직시하여, 대구경제 회생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위천산업단지가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를 건의합니다.

1999년 7월 24일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

【구지지방산업단지개발촉구건의문】

대구는 내륙교통의 요충지로 산업입지의 최적의 여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섬유 일변도의 산업구조와 공장용지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최근들어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5년 3월 본 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대구시의 개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산업부지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고, 대구시는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 섬유 중심의 지역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지역내에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달성군 구지면 중심부 약 82만평을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였습니다.

쌍용자동차(주)는 1992년에 구지 지방산업단지를 매입하고 3년 후인 1995년 11월에 공장 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약 36%의 공정이 진행되던 중 경영악화로 쌍용자동차(주)를 1998년 1월에 (주)대우에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주)대우의 자동차산업특화 계획으로 구지공단의 사업재개가 기대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만을 변경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업시행은 되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82만여평의 광활한 토지가 본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로 작용할 수 밖에 없으며, 지역 개발을 기대하고 있었던 인근 주민들과 달성군민의 재산상의 불이익 및 정신적 피해의식은 점차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구지공단의 기반공사가 마무리되고 자동차 관련 사업의 개발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체인 관계당국과 (주)대우는 지역과 국가의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거국적인 시각에서 지역주민의 소득과 고용을 증대시키고 대구시의 산업용지 수요 충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지공단의 사업을 계획대로 빠른 시일내에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건의합니다.

1999년 7월 24일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

2. 대구지하철1호선연장건설건의문 채택

○ 일　　자 : 2000년 2월 28일(제89회 임시회)

○ 제 출 자 : 도기태 의원 외 4인

○ 제안이유 : 달성군의 활발한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대단위 아파트단지조성 등

유입인구의 증가 등으로 심각한 교통문제가 지역현안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건설을 관계기관에 건의함으로써 지역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건설 건의문】

우리 달성군은 역사적으로 대구의 뿌리이자 지금의 대구가 있게 한 모태로서 군민 모두가 충효의 고장인 달성인으로서 높은 자긍심을 바탕으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지역 발전에 동참해 오고 있는 도·농 복합형 도시입니다.

대구시 전체 면적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달성군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앞으로 대구발전의 상징이자 원동력이 될 것이며 활발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 대단위 아파트 조성에 따른 유입인구의 증가와 교통수요의 증가로 교통문제가 지역의 현안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달성군이 대구시에 편입 기대와는 동떨어지게 도리어 지역개발이 늦어지는 소외감만 가중되고 있는 현 실정과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관문 지역인 국도5호선 주변지역은 매일 같이 교통대란을 겪고 있는 현실이며, 이로 인하여 달성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물류비용 증가, 지역농산물 수송의 어려움, 차량정체에 따른 간접비용의 증가 등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경제 활성화를 위해 돌파구로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 구지지방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현풍 신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는 대구시로서는 대구지하철 1호선을 시경계지역인 구지면까지 연장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 시행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특히, 화원 명곡지구 아파트 4,200 세대가 금년 4월경에 입주할 예정이며 화원 본리지구에 1,70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 옥포 본리 지구, 논공 금포1·2 지구, 남리지구, 현풍 부리, 구지 창리지구 등에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각각 시행 및 계획이 되어 있고, 2002년 4월에 화원읍 설화리에 농수산물물류센터 개장 등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교통량 증가로 이 지역의 교통흐름이 마비될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폭발적인 교통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도로망은 국도 5호선 단일노선뿐인점을 감안하고,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와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지하철1호선을 우선 1차적으로 옥포면까지 시급히 연장 건설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차 닥칠 지역의 더 큰 교통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난에 시달리는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2년 2월 28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3. 쌍용자동차구지지방산업단지개발촉구결의문 채택

○ 일　　자 : 2000년 5월 19일(제90회 임시회)

○ 제 출 자 : 이팔호 의원 외 4인

○ 제안이유 : 우리 군의 현안사업인 쌍용자동차 구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부지조성공사 36% 시점에서 중단되어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없이 방치됨으로써, 지역민들의 영농소득 손실은 물론 재산상의 불이익과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쌍용자동차를 (주)대우와 함께 일괄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어, 당초 목적대로 산업단지 개발이 불투명한 실정에 있어 제3자 일괄매각 중지 등 쌍용자동차 구지지방산업단지 조기개발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쌍용자동차 구지지방산업단지 조기개발촉구 결의문】

1995년 3월 우리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될 당시에는 위천산업단지 조성과 쌍용자동차 구지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삼성 상용자동차와 함께 달성산업단지를

연계한 자동차산업벨트 조성을 통한 내륙공업 도시건설과 인구 30만의 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 발표로 지역발전에 대한 군민의 희망과 기대는 극에 달하였으나, 5년이 지난 지금은 좌절과 피해의식으로 배신감 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정부 출범후 6개월 이내에 해결하겠다던 위천국가산업단지지정은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인하여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인하여 대부분 토지는 공원 또는 녹지로 되어 있으며, 더욱이 군전체 면적의 약 46%가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개인의 재산권행사도 못하는 기막힌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인데 그 위에 이러한 현상으로 더욱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돼 군민들의 피해의식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쌍용자동차 구지지방산업단지 개발이 부지 조성공사 공정 약 36%에서 중단되어 개발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실정으로, 이는 오로지 국가시책에 호응하고 지역 발전만을 생각하여 조상대대로 삶의 터전인 농토와 주택, 심지어 조상의 분묘(약2,200기)까지 약 82만평을 흔쾌히 내 놓았던 지역민들로서는 참을 수 없는 실망과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주)대우와 채권단은 이러한 지역민들의 피해와 바램을 도외시하고,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투자계획은 전무한 상태에서 쌍용자동차를 (주)대우와 함께 외국업체에 일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이 당초 계획대로 조기에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회생은 물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군민들은 "쌍용자동차 구지지방 산업단지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에 걸쳐 지역주민들의 뜻을 전달한 바 있으며 우리 군 의회서도 1999년 7월 24일 제84회 임시회에서 "구지지방산업단지 개발촉구건의안"을 채택하여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중앙부처 및 정치권에서는 특정업체 및 지역문제로만

국한하여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당국(업체)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쌍용자동차(주), (주)대우 및 채권단은 쌍용자동차 구지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제3자 일괄 매각 추진을 중지하고 대구광역시에 매각할 것
2. 대구광역시장은 쌍용자동차 구지지방산업단지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시행할 것.
3. 쌍용자동차 구지지방산업단지 매각 협상이 대구광역시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업단지 부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고 원지주에게 환매할 것.
4. 대구광역시장은 구지지방산업단지 조기개발이 안될 경우 지방산업단지지정을 취소할 것.

2000년 5월 19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4. 대구교도소이전촉구건의문 채택

○ 일　　자 : 2001년 7월 24일
○ 발 의 자 : 이경식 의원 외 4인
○ 제안이유 : 화원읍에 소재하는 대구교도소는 화원시내에 위치한 관계로 도시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대구교도소 이전을 촉구건의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함.

【대구교도소 이전 촉구건의문】

선진조국의 실현과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도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선진법치국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경원법무부 장관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달성군의 전 주민들은 시대적 과업인 초인류국가 건설과 국가적 의지에 발맞추고자 법질서 확립과 지역발전에 솔선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역이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대구광역시의 전원 주택지로 또한 지역개발의 근간으로 그 역할을 다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대구교도소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교육상 혐오시설로서 정신피해는 물론 군민의 정서 함양에 많은 지장을 주어 왔던게 사실입니다.

대구교도소 이전은 과거 형무소라는 잔존의식을 떠나서라도 도심속의 교정시설의 교외이전 계획 차원에서 또한 지역민의 이전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으로서 대구교도소 이전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대구교도소는 1965년 우유가공 공장을 건립한다는 명분아래 주민들의 동의로 토지매입이 이루어져 1968년 준공되어 현재까지 현 위치에서 33년간 주민들의 불만을 접어둔채 법무 교정기관의 역할만을 다하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1968년 준공 당시만 해도 화원읍 일대는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인근의 건물 또한 거의가 단층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의 조망권에 큰 피해가 없었으나, 그동안 도시여건과 환경의 변화로 대규모 아파트 및 택지개발이 이루어졌고, 2,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여 시가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한중앙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동국고등학교, 한남미용정보고등학교, 달성중학교, 화원초등학교, 화남초등학교 등 각급 학교와 시장,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해서 위치하고 있으나 도심속의 교도소라는 기형적인 현상 때문에 건전한 도시공간 구조와 도시균형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전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져 있는 현실입니다.

교도소 이전 문제는 혐오시설의 기피나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의 말로는 결코 아니며 또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도 절대 아님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건축물 고도제한은 물론, 오·폐수 방류, 시국사범과 관련한 수 많은 시위들을 감수해 왔습니다만, 법무부의 노후 및 도심지 소재 교정

시설의 교외 이전사업이 조속한 추진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대구교도소 이전은 마땅히 추진되어야 하는 바 우리 달성군의회 의원일동은 대구교도소의 조속한 이전을 간곡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1년 7월 24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일동

제 2절 현안 협의를 위한 관계기관 방문

1. 대구도시계획 정비

□ 정당인 간담회 개최

○ 일　　시 : 1998년 9월 30일 12:00
○ 장　　소 : 옥포 동원식당
○ 참 석 인 : 새정치국민회의 달성군지구당 위원장 엄삼탁, 군의원 8인
○ 건의내용 :
　– 대구도시계획 재정비 관련 주민요구사항 건의

□ 대구도시계획 관련 국회의원과 간담회

○ 일　　시 : 1998년 10월 15일 10:00
○ 장　　소 : 군청 상황실
○ 참 석 인 : 한나라당 달성군지구당 위원장 국회의원 박근혜, 군의원 9인
○ 건의내용 :
　– 대구도시계획 재정비 관련 주민요구사항 건의

□ 대구도시계획 관련 대구광역시장 방문

○ 일　　시 : 1998년 10월 21일 15:00

○ 장　　소 : 대구광역시청 접견실
○ 참 석 인 : 대구광역시장, 의장, 부의장 이경식, 서병호, 이선용 의원
○ 건의내용 :
　— 대구도시계획 재정비 관련하여 주민요구사항 건의

□ 대구도시계획 반대결의 대회 참석

○ 일　　시 : 1998년 11월 5일 13:00/1998년 11월 19일 14:00
○ 장　　소 : 군민체육관 앞 주차장/대구광역시청
○ 참 석 인 : 군의원 전원(9인)
　— 주관 : 대구시 도시계획안 반대투쟁위원회
○ 촉구 및 건의내용 :
　— 대구도시계획 재정비 관련 주민요구사항 수용촉구
　— 그외 12월 2일에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실에서 시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개최

2. 위천국가공업단지 조기지정 촉구

□ 정치인과 지역현안 간담회 참석

○ 일　　시 : 1999년 2월 9일 11:00
○ 장　　소 : 새정치국민회의 대구시지부당사
○ 참 석 인 :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조세형, 박노설의장, 이현근, 이선용의원
○ 건의내용 :
　— 위천국가공단, 비슬산국립공원지정 등 지역현안 협의

3. 낙동강, 금호강 연안개발 추진

□ 부산국토관리청 방문

○ 일　　시 : 1999년 10월 1일 14:30
○ 장　　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면 담 자 : 부산국토관리청장, 하천국장
○ 참 석 인 : 의장 외 6인
○ 주요내용 :
- 낙동강, 금호강 연안개발사업 조속추진 촉구
- 다시 세천제, 옥포 본리제 제방 보강, 구지오설 제방축조, 하빈봉촌 수해 상습지구 보상 등

4. 쌍용자동차 구지산업단지 조성추진

□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방문

○ 일　　시 : 2000년 3월 6일 14:00
○ 장　　소 :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 면 담 자 : 쌍용자동차 대표이사 소진관, 채권단장 노창균
○ 참 석 인 : 박노설의장, 이팔호부의장, 이현근, 이선용의원
- 쌍용자동차구지산업단지 범군민대책위원장 동석

○ 주요내용 :
- 쌍용자동차구지산업단지 부지를 대구광역시에 매각 요구

□ 쌍용자동차 구지산업단지 조기개발 궐기대회

○ 일　　시 : 2000년 5월 2일 09:30
○ 장　　소 : 대구광역시청 광장
○ 면 담 자 : 쌍용자동차 대표이사 소진관, 채권단장 노창균
○ 참 석 인 : 박노설의장외 전의원
- 쌍용자동차구지산업단지 범군민대책위원회

○ 촉구내용 :
- 쌍용자동차구지산업단지 허가를 취소하고 부지를 농지로 환원요구, 채권단 조흥은행에 일괄매각 취소 요구

□ 구지산업단지 관련 한나라당 대구시지부 방문

○ 일　　시 : 2000년 6월 12일 14:00

○ 장　　소 : 한나라당 대구시지부 당사
○ 면 담 자 : 국회의원 이해봉
○ 참 석 인 : 박노설의장외 전의원
○ 건의내용 :
　– 쌍용자동차구지산업단지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

□ 쌍용자동차 관련 대구광역시 방문

○ 일　　시 : 2001년 4월 26일 09:30
○ 장　　소 : 대구광역시 경제산업국
○ 면 담 자 : 경제산업국장
○ 참 석 인 : 서병호 의장외 의원 6명
○ 주요내용 :
　– 쌍용자동차구지산업단지 부지매각의 조속한 해결 촉구

5.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국회 방문

○ 일　　시 : 2001년 9월 11일 12:00
○ 장　　소 : 국회의원 회관
○ 면 담 자 : 국회의원 박근혜, 이해봉, 백승홍, 박상희 의원
○ 참 석 인 : 서병호의장외 전의원
○ 협의내용 :
　– 개발제한구역 해제안 확대·수정 요구(건의)

□ 박근혜 국회의원과 지역현안 협의

○ 일　　시 : 2001년 1월 5일 09:40
○ 장　　소 : 군의회 의장실
○ 면 담 자 : 국회의원 박근혜
○ 참 석 인 : 서병호의장외 전의원
○ 주요내용 :
　– 주요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협의

제 6 장 부 록

제1절 제3대 군의원 선거

1. 인구수 및 선거인수
2. 입후보자 등록상황
3. 당선자 상황

제2절 의장, 부의장 당선인사

제3절 개회사, 축사, 폐원인사

1. 제3대 의회 전반기 개회사(제76회 임시회)
2. 제3대 의회 축사(군수)
3. 제3대 의회 후반기 개회사(제92회 임시회)
4. 제3대 의회 폐원인사(제111회 임시회)

제4절 의회 운영일지

제5절 의정 활동 보도자료

제6절 의사당 및 사무과 직원현황

제7절 일반현황

제1절 제3대 군의원선거

1. 인구수 및 선거인수

○ 인구수

1998. 5. 현재

읍 면	선거구수	투표구수	세 대 수	인 구 수	비 고
합 계	9	53	43,758	137,770	
화 원 읍	1	10	10,562	34,721	
논 공 읍	1	9	8,661	25,822	
다 사 읍	1	8	7,716	25,207	
가 창 면	1	6	3,410	10,383	
하 빈 면	1	3	1,960	5,691	
옥 포 면	1	5	3,300	10,759	
현 풍 면	1	5	4,426	13,969	
유 가 면	1	3	1,698	5,179	
구 지 면	1	4	2,025	6,039	

○ 선거인수

읍 면	선 거 인 수			인구수에대한선거인수비율(%)	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재 자 수			선거인수에대한부재자신고인수비율(%)
	계	남	여		계	남	여	
합 계	94,534	47,526	47,008	68.6	2,312	1,930	382	2.4
화 원 읍	22,761	11,246	11,515	65.6	653	541	112	2.9
논 공 읍	16,945	8,738	8,207	65.6	305	242	63	1.8
다 사 읍	16,499	8,214	8,285	65.5	309	278	31	1.9
가 창 면	7,699	3,817	3,882	74.2	189	141	48	2.5
하 빈 면	4,435	2,329	2,106	77.9	111	94	17	2.5
옥 포 면	7,898	4,048	3,850	73.4	167	160	7	2.1
현 풍 면	9,528	4,741	4,787	68.2	224	201	23	2.4
유 가 면	3,982	1,986	1,996	76.9	134	111	23	3.4
구 지 면	4,787	2,407	2,380	79.3	220	162	58	4.6

2. 후보자 등록 상황

○ 학력별 후보자 등록 상황

후보자수	독학	초졸	중퇴	중졸	고퇴	고졸	전문대졸	대퇴	대졸	대학원 수료	대학원 졸
18		2		1	1	11		1	2		

○ 연령별 · 성별 후보자 등록 상황

후보자수	연령별(세)								성별	
	25~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이상	남	여
18			1	2	1	6	7	1	18	

○ 직업별 후보자 등록 상황

후보자수	농업	상업	공업	축산업	음식업	건설업	출판업	변호사	회사원	전 공무원	서비스	기타
18	4	2		1	2	2	1			3	2	1

3. 당선자 상황

○ 학력별 당선자 상황

후보자수	독학	초졸	중퇴	중졸	고퇴	고졸	전문대졸	대퇴	대졸	대학원 수료	대학원 졸
9				1		5		1	2		

○ 연령별 · 성별 후보자 당선자 상황

후보자수	연령별(세)								성별	
	25~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이상	남	여
9			1	1	1	3	3		9	

○ 직업별 당선자 상황

후보자수	농업	상업	공업	축산업	음식업	건설업	출판업	변호사	회사원	전 공무원	서비스	기타
9	1	1		1	1	1	1				2	1

○ 득표수별 당선자 상황

읍 면	당선 자수	득 표 수 별						
		무투표	1천미만	2천미만	3천미만	4천미만	5천미만	5천이상
합 계	9	3		4			1	1
화원읍	1							1
논공읍	1	1						
다사읍	1							
가창면	1			1			1	
하빈면	1			1				
옥포면	1	1						
현풍면	1	1						
유가면	1			1				
구지면	1			1				

○ 득표율별 당선자 상황

읍 면	당선 자수	득 표 수 별								
		20% 미만	30% 미만	40% 미만	50% 미만	60% 미만	70% 미만	80% 미만	90% 미만	무투표
합 계	9			2	2	2				3
화원읍	1				1					
논공읍	1									1
다사읍	1					1				
가창면	1			1						
하빈면	1					1				
옥포면	1									1
현풍면	1									1
유가면	1				1					
구지면	1			1						

【제3대 군의원선거 후보자 현황】

선거구명	기호	성 별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율)
화원읍	가	이경식	남	43.5.10 (55)	화원읍 설화리 539-7	무	영남고등학교졸업	• 제1대 군의원 • 제2대 군의원 출마	5,042 (40.7)
	나	표명찬	남	44.9.2 (53)	화원읍 성산리 266	농업	대구농업고등학교 졸업	• 제2대 전반기 부의장 • 대구광역시청소년지도위원	3,406 (27.5)
	다	김용주	남	43.6.3 (55)	화원읍 설화리 708	농업	화원초등학교졸업	• 제2대 후반기 부의장	3,621 (29.3)
논공읍	가	김판조	남	59.5.26 (39)	논공읍 남리 578-4	명성볼링 대표	영남대 기계과 졸업	• 대동공업(주)과장 • 군 방위협의회 위원	무투표
다사읍	가	도기태	남	45.10.27 (52)	다사읍 서재리 584	성도콘크리트 대표	대구농업고등학교 졸업	• 다사파출소 방범위원장 • 군 방위협의회 위원	4,074 (50.1)
	나	이근선	남	57.2.8 (41)	다사읍 부곡리 677	무림식당 경영	대구농업고등학교 졸업	• 농업경영인 달성군회장	3,746 (46.1)
가창면	가	이정재	남	39.5.25 (59)	가창면 냉천리 1	음식점	청구대학 교상학과 1년중퇴	• 제2대 군의원 • 가창체육진흥회장	1,745 (35.6)
	나	이성구	남	41.3.5 (57)	가창면 행정리 190	농업	대구농업고등학교 졸업	• 행정2리장 • 행정2리 새마을지도자	1,513 (30.9)
	다	서칠수	남	41.7.15 (56)	가창면 대일리 376	청마상사 대표	대구상업고등학교 중퇴	• 한나라당 달성군 부위원장 • 제1대 군의원	1,527 (31.2)

【제3대 군의원선거 후보자 현황】

선거구명	기호	성 별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율)
하빈면	가	박노설	남	44.6.20 (53)	하빈면 하산리 630	축산업	다사중학교졸업	• 제2대 군의원 • 하빈면 체육회장	1,802 (59.8)
	나	도록수	남	45.6.13 (52)	하빈면 봉촌리 188	대동건설 이사	동곡초등학교졸업	• 예비군중대장 • 하빈농협장 • 봉촌1리장	1,125 (37.3)
옥포면		서병호	남	41.8.30 (56)	옥포면 본리리 820-5	상업	건국대학교경제학과졸업	• 제2대 군의원 • 아세아 종합기계 총무부장 • 군 자연보호협의회장	무투표
현풍면		이현근	남	53.10.12 (44)	현풍면 하리 126	대성인쇄사	대구고등학교졸업	• 달성 JC회장 • 제2대 광역시의원 출마 • 군 재향군인회 이사	무투표
유가면	가	정규봉	남	36.7.28 (61)	유가면 봉리 73	전공무원	대구상고졸업	• 유가면 부면장	1,429 (48.5)
	나	이선용	남	48.10.30 (49)	유가면 유곡리 952	농업	대구중앙상업고등학교졸업	• 유가농협장 • 리장	1,444 (49.0)
구지면	가	이팔호	남	42.3.26 (56)	구지면 응암리 891	성지부동산	협상상업고등학교졸업	• 제1대 군의원 • 제2대 군의원출마 • 공무원	1,238 (36.0)
	나	제갈재봉	남	39.4.20 (59)	구지면 응암리 97	전공무원	현풍고등학교졸업	• 달성경찰서 정보계장 • 제2대 후반기 군의회 의장	934 (27.2)
	다	정재운	남	38.2.14 (60)	구지면 창리 274-3	전공무원	중앙상업고등학교졸업	• 구지면장 • 구지중학교 총동창회장	1,149 (33.4)

【역대 군의원명단】

〈초대〉

출신 지역구	성 명	주 소	비 고
화원읍	이경식	화원읍 설화리 539-7	
화원읍	이철웅	화원읍 천내리 154-46	
논공읍	이수환	논공읍 삼리리 709	
다사읍	윤도현	다사읍 문산리 335	
가창면	서칠수	가창면 대일리 376	
하빈면	송태환	하빈면 동곡리 199	
옥포면	석진후	달서구 본동 그린맨션 311/1203	전. 후반기 의장
현풍면	김수영	현풍면 원교리 43	
유가면	고용덕	유가면 도의리 845	전. 후반기 부의장
구지면	이팔호	구지면 응암리 891	

〈2대〉

화원읍	표명찬	화원읍 성산리 266	전반기 부의장
화원읍	김용주	화원읍 설화리 708	후반기 부의장
논공읍	김영식	논공읍 남리 경일 A 2/106	
다사읍	유진환	다사 매곡리 1258	
가창면	이정재	가창 용계 6-6 혜성빌라 303/301	
하빈면	박노설	하빈면 하산2리 630	
옥포면	서병호	옥포면 본리1리 820-5	
현풍면	정경이	현풍면 부리 277	전반기 의장
유가면	현삼조	유가면 금리 756-1	
구지면	제갈재봉	구지면 응암리 97	후반기 의장

〈3대〉

출 신 지역구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화 원	이 경 식	화원읍 설화리 539-7	631-8841	
논 공	김 판 조	논공읍 남리 578-4	641-7075	
다 사	도 기 태	다사읍 서재리 584	585-5616	
가 창	이 정 재	가창면 용계리 6-6 혜성빌라 303/301	767-2727	후반기 부의장
하 빈	박 노 설	하빈면 하산 2리 630	641-1885	전반기 의 장
옥 포	서 병 호	옥포면 본리1리 820-5	614-4472	후반기 의 장
현 풍	이 현 근	현풍면 하리 126	611-3746	
유 가	이 선 용	유가면 유곡리 952	614-2807	
구 지	이 괄 호	구지면 응암리 891	614-5065	전반기 부의장

제2절 의장 부의장 당선인사

1. 전반기 의장단



박노설 의장

[의장 당선인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달성군의회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중임을 맡겨주신 여러 의원님께 달성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제3대 달성군의회를 성실히 운영하여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당선인사에 갈음합니다.



이팔호 부의장

[부의장 당선인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잘 받들어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의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후반기 의장단


서병호 의장

[의장 당선인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대 의회의 후반기를 원만히 이끌어 달성군의회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간단히 당선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재 부의장

[부의장 당선인사]

여러분!

저를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달성의 발전과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절 개회사, 축사, 폐원인사

1. 제3대 의회 전반기 개회사 (제76회 임시회)

【개 회 사】

존경하는 14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제3대 달성군의회 개원을 축하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님과 귀빈 여러분!

그리고 현지 시의원님, 제1대, 2대 군의원님, 그리고 제3대 동료의원 여러분!

더욱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해주셨던 우리 군의회 초대 군의장을 지내신 석진후 의장님과 제2대 군의회 정경이, 제갈재봉 의장님!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온 국민의 기대와 관심속에 지난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군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어 초대와 2대 의회를 거치는 동안 주민자치의식이 크게 성숙되어 오늘 이와 같이 당당한 모습으로 제3대 달성군의회 개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성실히 봉사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는 자리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제3대 달성군의회 의장의 중책을 맞게 되어 저 개인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이지만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이 앞섭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초대 석진후 의장님, 2대 정경이 의장님과 제갈재봉 의장님의 원만한 의회 운영으로 갈고 닦아온 기틀을 발판으로 진실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개원하는 제3대 의회는 금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열어가야 하는 기로에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로써 지방자치가 그 주역이 될 것입니다.

군민의 여망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기에 초점을 두고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 지역안정과 군민화합에 앞장서는 의회를 만들어 군민으로부터 사랑과 믿음을 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의원 모두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의회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다하는 것만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제대로 반영시키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군민복지의 산실이 되어야만 비로소 그 위상이 서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민의 바램이 무엇인지 발로 뛰면서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주민의 뜻을 존중하고 반영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한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하고 나아가 훌륭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의회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원 각자가 지난날의 고정관념과 틀을 떨쳐버리고 군민이 원하는 바를 소상히 파악하고 항상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로 전문적인 지식함양과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민의 대의의결기관으로서 주민의견에 바탕을 둔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하여 건전한 비판과 참신하고 진취적인 정책 대안제시가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자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안정과 군민 화합입니다. 온 군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같이 걱정하고 이끌고 밀어주면서 함께 참여하여 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선거로 인하여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실직과 부도로 실의에 빠진 이웃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성숙된 주인정신으로 인정과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는데 주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앞으로 4년후에 우리를 선출해 주신 주민들로부터 군의원이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지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한 걸음도 헛디딤없이 매진해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째 단추를 잘 끼워야 끝단추도 맞게 끼워진다는 평범한 논리와 같이 오늘

이순간부터 양어깨에 짊어진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

21세기 지방화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중차대한 이 시기에 중책을 맡은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뜻을 잘 받들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고견과 충고를 주시고 보다 많은 성원과 애정을 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한번더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달성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오늘 뜻깊은 의회 개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는 열정과 지혜를 모아 14만 군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지방화 시대의 주역으로서의 기대에 걸맞게 새 의회상을 창조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기관단체장님과 귀빈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개원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제3대 의회 군수 축사 (제76회 임시회)

【축 사】

존경하는 박노설 의장님! 이팔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대 달성군의회가 개원된 것을 우리 14만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고 등원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박노설 의장님을 정점으로 원구성을 마치고 제3대 군의회가 출범하게 된 것을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저 또한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 제2대 민선군수로 선출되어 집행기관의 책임자로서 민선 2기 지방자치를 이끌어나가게 된 것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는 한편, 제3대 의회 막이 오르는 뜻깊은 개원 단상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 의원님과 기관단체장님 지도자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도 그 뿌리를 깊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란 말 그대로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되며,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주민 본위의 행정을 이루어 냄으로써 행정관청이 더욱 친근해지고 애향심과 지역공동체 의식이 현저히 높아지게 되어 타율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거두는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달성군민들은 책임과 의무가 앞서는 주민의식을 길러나가고 내가 내고장의 주인이라는 자세로 군정에 참여하는 가운데 감사와 비판을 보내야 할 것이며 양보와 타협 화합의 정신으로 더불어 사는 자세를 일깨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지역의 이기주의에 편승하거나 인기위주의 방만한 사업추진,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적 개발에서 오는 역작용에 대하여는 단호히 배척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새로지은 돛을 높이 달고 출범하는 민선 2기 군정과 제3대 의회에 거는 군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 크고 진지하다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고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바탕으로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초대, 2대 의회가 다져놓은 토대위에 보다 한차원 높은 자치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는 보다 긴밀한 대의회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대의회 업무수행 능력도 제고시켜 나갈 각오입니다.

우리는 지금 외환위기 이후 고통스러운 경제 난국을 맞고 있습니다. 환부를 도려내고 어긋난 뼈를 새로이 짜맞추는 구조조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직내부도 거듭 태어나기 위해 구조조정과 능률적이고 효율성이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나간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달성군은 풍부한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의식이 드높은 군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구벌의 주역으로서 면면이

이어져온 뿌리깊은 전통과 긍지가 있습니다. 대구의 개발 중심축이 우리 달성에 실려있음을 확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힘찬 달성, 밝은 미래라는 구호아래 재임기간 동안 추진해 나갈 군정 방침을 경영행정 구현, 사회복지 증진, 지역개발 촉진, 그리고 향토문화 진흥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지역감정과 주민화합의 조정자로서 지역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 지역의 최고 경영자로서 기업가적인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도입시키는 한편 주민참여와 공개행정의 범위를 확대시켜 생활자치의 구현자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정책형성의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지역의 비젼을 제시하고 결실의 열매를 거두는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2대 민선군수로서의 직무와 책임을 다해나갈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제3대 달성군의회를 개원함에 있어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는 감명깊게 지켜 보았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대주민 의결기관으로서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저를 비롯한 칠백여 전 공직자들은 달성의 밝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혼신의 정열을 바쳐 임해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14만 군민 여러분께서도 뜨거운 성원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다함께 매력있는 도시, 꿈이 있는 고장 달성을 가꾸어 나갑시다.

제3대 군의회의 개원을 다시한번 충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심과 더불어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관련 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개원 축하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제3대 의회 후반기 개회사 (제92회 임시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의회 개원 2주년을 맞이함과 동시에 후반기 의장단의 새로운 출범으로

오늘 제93회 정례회를 가지게 된 것을 15만 군민과 더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반기 의회를 원활히 이끌어 오신 박노설 의장님과 이팔호 부의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를 제3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장 추대의 영광과 기쁨에 앞서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군민에게 봉사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민선2기 군정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초대의회가 출범한지 9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우리의회는 그동안 의회 민주주의 발전과 군정의 많은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특히, 3대의회가 개원되고 지난 2년 동안 우리 의회는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 온 것도 사실이지만, 지방재정의 빈약과 의존재원의 비중이 크고 제도적인 걸림돌로 인해 지방자치 본래의 의미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는 앞으로 지방의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남은 제3대의회 후반기에도 우리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지난날의 사고와 고정관념을 떨쳐버리고 진정으로 군민이 원하고,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진정한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역의 당면한 현안사업인 구지지방산업단지조성, 위천국가산업단지지정, 농수산물물류센터건설, 군청 관내이전 등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주민의 결집된 힘과 저력을 바탕으로 한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기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공동체의식을 발휘할 수 있는 넓고 열린 마음으로 냉철한 판단을 하여 지역문제를 다함께 타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협력하고 단합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집행의 잘못이나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의회는 단호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견제기능도 과감히 발휘함으로써 보다 성숙된 의회상 정립과 아울러 밝은 미래를 향한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부터 1·2차로 나누어 시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과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의 시각으로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세입·세출결산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기관의 운용한 결과를 사후 확인하고 심사·분석하여 내년도 예산심의에 많은 자료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에 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이 합법적이며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앞으로의 행정집행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우수한 시책과 실적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셔야겠습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올해도 이젠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IMF관리체제 하에 있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은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진행중인 각종 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하여 군정에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절기 방역과 재해예방 등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안녕과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제3대 후반기 의회출범과 함께 열리게 되는 이번 정례회가 알찬 성

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4. 제3대 의회 폐원인사(제111회 임시회)

【폐 원 인 사】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본 의회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각급 기관단체장님과 집행부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온 군민의 축복과 기대속에 3대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4년이 지나 오늘 폐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실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군 지역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이면서 군민 여러분의 조그마한 바램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니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러 제3대 의회가 오늘로써 막을 내리는 폐원식을 가지게 되어 그 감회가 새로울 따름입니다.

지난 4년의 의정을 돌이켜보면, 달성군청사 관내 이전이라는 큰 역사적 과업을 이루어 명실공히 우리 지역 구심체를 형성하고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초석을 놓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통체계로 운영될 달성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은 군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됩니다.

아울러, 위천국가산업단지 조기지정 및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건설 건의, 쌍용자동차구지지방산업단지 조기개발촉구결의, 대구교도소이전촉구건의 등 많은 사항들을 중앙부처에 건의와 응분의 요구를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건의가 일부 수용될 때 우리 의원 모두는 더없이 큰 보람을 느껴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집권에서 오랫동안 몸에 배었던 관료주의, 법령이나 제도상의 제약, 지방재정의 한계 등으로 군민의 많은 욕구를 충족시키기엔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난관에 봉착하였을 때 우리 의원 모두는 아픔을 같이하고, 이를 조금이

라도 해결하기 위하여 애태우며 노력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3대 군의회는 서른여섯차례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열어 모두 26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기는 법정회기 일수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한달에 한번씩 의회를 소집하여 의회운영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신속한 의안처리로 군정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처리한 의안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조례안이 165건으로 가장 많고 예산 결산안 21건, 결의·건의안 채택 7건, 군정보고 청취 12회, 도시계획안 3건, 행정사무감사 4회, 기타 일반 안건 48건, 군정질문 여섯차례 등 모두 266건을 처리하여 한 회기당 평균 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기 외에 매주 금요일마다 의정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주요업무를 협의하고 의안의 사전검토와 심사, 회기운영사항 협의, 그리고 관련기관과의 사전 의견교환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의 장으로 활용하여 의정간담회를 모두 100차례 개최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기간 중 처리한 중요사항은 무엇보다 예산안 의결일 것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지방재정 여건속에서 행정능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면서, 군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지방재정을 알차게 사용하도록 예산을 심의·의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투자효과를 높이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은 뒤로 미루고 지역간의 불균형이 있는 편중된 사업은 고르게 나눔으로써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복지·사회·문화·산업·환경·건설 등 군정 전분야에 골고루 투자가 되도록 하여 조화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유도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사경비, 일과성 소모경비 등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감 조치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알뜰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하였는지를 사후에 확인하고, 집행의 책임을 묻는 결산승인 과정에서는 세밀한 검사를 통하여 위법·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차후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합리성에 바탕을 둔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의회의 권한 중 예산심의 다음으로 자치입법인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과정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는 평소 폭넓게 수렴한 주민의견을 기초로 하여 군민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가도록 의결을 유보시키거나 수정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는 한편, 군민에게 직접 부담이 되는 조례안의 심의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네차례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냉철하고 투명한 시각으로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을 지적, 이를 시정토록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여러부분에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군정보고를 연초·연중·연말 이렇게 세 번에 걸쳐 청취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는 물론, 행정의 견제·감시라는 의회의 본질적 기능수행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원외 의정활동사항으로는 사업장 현지확인, 주민의견수렴 및 고충처리, 읍면방문, 의원연수, 불우시설 위문, 각종자료 및 정보수집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주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안건심의시에는 반드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주요사업장에 대하여는 착공단계와 완공상태를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제3대 의회는 어려운 제반여건속에서, 의원 모두가 더 공부하고 전문지식을 넓혀 주민을 위한 의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헌신·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일면에 건전한 비판과 진취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과정에 군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행정기구의 역할조정, 대구도시계

획 재정비의 주민의견 반영 촉구,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건의, 그린벨트 해제 확대 촉구 등 지역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국회 및 대정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곧 제4대 의회가 개원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제3대의회가 닦은 기틀을 발판으로 더욱 도약하고 발전하는 달성군의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민선 2기 단체장으로 우리 달성군이 낙동강 시대를 선도하며 패션대구의 중심축으로 우뚝설 수 있도록 탁월한 경영철학과 열정으로 군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제3대 의회가 모범적인 의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박경호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각급 기관 단체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질책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여러분께 다시한번 고객숙여 감사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만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폐원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절 의회 운영일지

1998년도

■ 7. 1 **민선2기 박경호 달성군수 취임식 참석**

민선2기 박경호 달성군수 취임식에 이경식, 김판조, 도기태, 이정재, 박노설, 서병호, 이현근, 이선용, 이팔호 의원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 7. 3 **제1차 의정간담회 개최**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원전 의정간담회를 갖고 의회의 일반현황, 지방

의회 의원의 신분, 의무, 권한 및 의회운영의 기본원리 등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원구성 및 개원식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 7. 10 **제76회 임시회 개회**

달성군의회는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제3대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에 박노설(하빈면) 의원과 부의장에 이팔호(구지면) 의원을 선출하였다.

■ 7. 11 **제3대의회 개원식 개최**

박노설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군내 기관단체장, 역대군의원, 군의원 가족, 주재기자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대의회 개원식을 갖고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였다.

■ 7. 13 **제3대의장단 기관방문**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3대 의장단으로 선출된 박노설 의장, 이팔호 부의장은 관내 기관단체를 방문하여 인사하고, 앞으로 의정운영에 대하여 협조를 당부하였다.

■ 7. 15 **제2차 의정간담회 개최**

집행기관으로부터 예비비 사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선출된 의장단이 달성교육청 등 관내 기관을 방문하여 상견례 및 지역발전에 대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 7. 20 **의원실무연수 실시**

한국산업기술원 부설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의원연수에 의장외 전의원이 참석하여 지방자치관련 법규와 의정활동에 따른 이론과 요령에 대하여 강의를 들었다.

■ 7. 24 **제3차 의정간담회 개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을 비롯한 다섯건의 의제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 7. 28 **1997회계년도 결산검사 실시**

7월28일부터 8월16일까지 20일간 1997회계년도 결산검사에 김판조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1년간의 군 살림살이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

■ 7. 29 **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참석**

성당네거리 분수대에서 실시된 우유시식 및 소비촉진 가두 캠페인에 박노설 의장이 참석하여 출근 시민들에게 홍보하였다.

■ 7. 29 **4H회원 야영교육 참석**

경남 합천 용문정에서 있은 4H회원 야영교육에 박노설 의장과 이정재 의원이 참석하여 행사관련자와 4H회원들을 격려하였다.

■ 7. 30 **민간단체와 간담회 개최**

의장실에서 박노설 의장과, 이팔호 부의장, 이정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농촌지도소와 달성군농촌지도소와의 통폐합에 관하여 농촌지도소 관련 민간단체와 논의하였다.

■ 7. 31 **제4차 의정간담회 개최**

지방조직개편 추진계획, 대구결핵요양원 이전관련 대책, 지방산업단지내 행위제한 해제경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민원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논의하였다.

■ 8. 20 **제5차 의정간담회 개최**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피해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조속히 복구하여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 8. 20 **1998을지연습 참관**

군청 상황실과 4대대, 경찰서를 방문하여 연습상황을 청취하고 70만원 상당의 빵과 우유를 구입 전달하여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 8. 27 **통일안보정세 보고회 참석**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통일안보정세 보고회에 의장 외 전의원이 참석하여 안보관련 정세에 관하여 청취하였다.

■ 8. 27 **제6차 의정간담회 개최**

예비비 현황과 수해피해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장 외 전 의원의 이름으로 대구문화방송에 수재의연금 30만원을 전달하였다.

■ 9. 4 **제7차 의정간담회 개최**

읍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기본계획과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도축세를 감면하는 군세감면조례안, 지역환경보전개선조례명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농작물 수해피해 현황, 달성산업단지 주거지역내 생활하수처리비 조치계획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을 들었다.

■ 9. 11 **제8차 의정간담회 개최**

제3회 군민의 날 행사계획, 달성군여비조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시내버스노선보완 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 9. 15 **대구도시계획재정비(안) 공람공고 참석**

2006년을 목표로 한 대구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군청회의실에서 용역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 9. 22 **제9차 의정간담회 개최**

대구도시계획재정비(안) 공람공고 내역과 도시고속도로 4차 순환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 9. 29 **중추절 위문**

우리민속 고유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가창 신일양로원, 사랑의집, 현풍 달성경찰서 전·의경대, 화원 시립희망원을 방문하여 쌀, 라면, 과일, 비누, 과자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하였다.

■ 9. 30 **도시계획관련 정당인과의 간담회 참석**

대구도시계획재정비와 관련 엄삼탁 새정치국민회의 달성군지구당 위원장과 간담회에서 주민요구사항을 건의하였다.

■ 10. 2 **제10차 의정간담회 개최**

1998 3/4분기 명예퇴직자 수당지급 내역과 태풍 예니 피해현황, 도시계획용도지역 안내, 벼멸구방제 추진현황을 설명듣고, 대구도시계획재정비(안) 이의신청 및 의견검토 내역을 논의하였다.

■ 10. 3 **제11차 의정간담회 개최**

대구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 10. 9 **제3회 달성군민의 날 기념식 참석**

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 군민의 날 기념식에 의장 외 전의원이 참석하여 각 부문별 달성군민상 수상자들을 축하하였다.

■ 10. 15 **대구도시계획 관련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참석**

한나라당 박근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 의장 외 전의원들이 참석하여 도시계획 관련 주민요구사항을 건의하였다.

■ 10. 16 **제12차 의정간담회 개최**

달성군 C·I개발사업 현황, 예비비 현황, 지방채 차입(채무)현황, 행정리 신설 및 재조정 추진계획을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안건을 검토하였다.

■ 10. 19 **농촌일손돕기 실시**

박노설 의장 외 전의원은 현풍면 원교리, 유가면 가태리 소재 논에서 태풍 예니로 쓰러진 벼를 수확하고 농민들을 격려하였다.

■ 10. 21 **대구도시계획재정비 관련 대구시장 면담**

박노설 의장, 이팔호 부의장, 이경식, 서병호, 이선용 의원은 대구시장과의 면담에서 도시계획재정비와 관련한 주민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토록 건의하였다.

■ 10. 23 **제13차 의정간담회 개최**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정간담회를 개최하여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자료 목록을 검토하였다.

■ 10. 30 **대구도시계획심의 위원들과의 간담회 참석**

대구광역시 접견실에서 대구도시계획 심의위원들과 간담회에 의장 외 전의원이 참석하여 주민요구사항을 건의하였다.

■ 10. 31 **달성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참석**

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 재활증진대회에 의장 외 전의원이 참석하여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 11. 15 **대구도시계획 반대결의대회 참석**

대구시도시계획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주최한 결의대회에 의장 외 전의원이 참석하여 도시계획재정비 관련 주민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토록 촉구하였다.

■ 11. 13 **농업경영인 한마당 큰잔치 참석**

달성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주최한 한마당 큰잔치 행사에 박노설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영농기반을 다지는 농업 경영인들을 격려하였다.

■ 11. 16 **평통자문위원 지역연찬회 참석**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지역연찬회에 의회 전의원이 참석하여 평화통일방안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 11. 18 **도시계획재정비(안) 주민의견심의결과 설명회 참석**

군청회의실에서 개최된 설명회에 의장 외 전의원이 참석하여 그동안의 주민건의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담당관으로부터 심의결과를 설명 들었다.

■ 11. 19 **도시계획관련 제2차 주민궐기대회 참석**

대구도시계획재정비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주최한 궐기대회에 이현근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 참석하여 주민요구사항이 충분한 반영되도록 촉구하였다.

■ 11. 19 **독서경진대회 군예선대회 시상식 참석**

달성군새마을문고협의회에서 주최한 시상식에 박노설 의장이 참석

하여 초·중·고·일반부·어머니부 단체시상을 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였다.

■ 11. 21 **실직가정돕기 범국민 캠페인 군선포식 참석**

실직가정돕기 운동본부에서 주관한 범국민 캠페인에 박노설 의장, 이팔호 부의장, 이경식, 도기태, 이정재 의원이 참석하여 실직가정돕기 1차 모금운동에 동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12. 2 **영호남 화합교류추진협의회 만남의 날 참석**

영호남 화합교류추진협의회에서 주최한 만남의 날 행사에 박노설의장이 참석하여 양지역 화합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12. 2 **대구도시계획관련 시의회의원과 간담회 개최**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들과 박노설 의장, 이팔호 부의장, 이현근, 이선용 의원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갖고 주민요구사항이 적극 수용되도록 건의하였다.

■ 12. 26 **달성소방서 청사준공식 참석**

달성소방서 청사준공식에 박노설 의장, 김판조, 이현근, 이선용 의원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 12. 26 **장애인 심신수련대회 참석**

장애인 심신수련대회에 박노설 의장, 이현근 의원이 참석하여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 12. 29 **1988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 참석**

한해동안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대회에 박노설 의장이 참석하여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각읍면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하였다.

1999년

■ 1. 1 **기묘년 신정원단 충혼탑 참배**

새해 첫날 박노설 의장은 충혼탑을 찾아 헌화, 분향하였다.

■ 1. 4 **신년교례회 참석**

달성군 신년교례회에 의장 외 전의원이 참석하여 사회지도층 인사와 신년인사를 하고 발전에 대한 환담을 나누었다.

■ 1. 8 **제14차 의정간담회 개최**

1999년 들어 처음으로 의정간담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의정운영 계획을 협의하였다.

■ 1. 15 **제15차 의정간담회 개최**

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달성농지개량조합장으로부터 화원(옥연지)지구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을 설명 듣고 달성군청 실업정구부 창단 방안과 1999표준지 공시지가 분석내용을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 1. 16 **농업경영인 연합회장 이 · 취임식 참석**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연합회장 이 · 취임식에 박노설 의장, 도기태 의원이 참석하여 축하하고 농업경영인들을 격려하였다.

■ 1. 28 **재향군인회 1999년도 정기총회 참석**

달성군 재향군인회 1999년도 정기총회에 박노설 의장, 이팔호 부의장, 서병호 의원, 이현근 의원, 이선용 의원이 참석하여 축하하고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1. 28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창립총회 참석**

달성군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창립총회에 박노설 의장, 이팔호 부의장, 이정재(위원장) 의원, 서병호 의원, 이현근 의원이 참석하여 각 위원들과 활동계획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1. 29 **제16차 의정간담회 개최**

제16차 의정간담회를 개최하여 달성군장학회설립 계획과 임도개설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논의하였다.

■ 1. 29 **소년소녀가장 장학금전달식 참석**

BBS 달성군지부에서 개최한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전달식에 박노설

의장, 이현근 의원이 참석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들을 축하 격려하였다.

■ 2. 5 **제17차 의정간담회 개최**

설날위문계획과 의원 연수계획을 협의하고 1998년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논의하였다.

■ 2. 9 **국립공원지정관련 간담회 개최**

의회 의장실에서 박노설 의장, 이현근, 이선용 의원과 비슬산국립공원추진위원장 현삼조, 국립공원관리공단 부이사장 성낙오 외 3명이 참석하여 비슬산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2. 9 **정당인과의 간담회 참석**

새정치국민회의 대구시지부 당사에서 조세형 총재권한대행과의 간담회에 박노설 의장, 이현근, 이선용 의원이 참석하여 지역개발에 대하여 건의하였다.

■ 2. 12 **설날위문 실시**

설날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인 가창 신일양로원과 사랑의집, 그리고 달성경찰서 전 의경대를 방문하여 쌀, 과일, 라면, 과자, 생필품 등 1백2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 2. 26 **제18차 의정간담회**

비슬산국립공원 승격 추진경위와 업체부도 관련한 논공 성원임대아파트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2. 27 **제19회 재경달성군향우회 장학금 수여식**

재경달성군향우회에서 관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자리에 의장 외 3명 의원이 참석하여 축하하고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 3. 2 **정월대보름 달맞이 기원제 참석**

기묘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맞이 기원제에 의장을 비롯한 5명 의원이 참석하여 군민의 안녕과 풍년농사를 기원하였다.

■ 3. 5 **제19차 의정간담회**

국립공원 관리실태에 따른 견학과 의원연수 계획을 협의하였다.

■ 3. 9 **비슬산국립공원 지정관련 기관방문**

비슬산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한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전남 월출산과 전북 내장산, 경북 주왕산의 각 군청과 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원구역의 관리방법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민의 생활상들을 살펴보았다.

■ 3. 19 **제20차 의정간담회 개최**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0차 의정간담회를 개최하여 1999년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과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를 검토하였다.

■ 3. 24 **의장협의회 참석**

3월 정례 의장협의회에 박노설 의장, 이팔호 부의장이 참석하여 대구광역시 구의회 의장들과 지역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3. 26 **제21차 의정간담회 개최**

박노설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간담회를 개최하여 1998농작물피해에 따른 지원현황, 비슬산휴양림내 사유지 매입 추진현황과 비슬산 참꽃축제 행사계획을 설명들었다.

■ 3. 27 **달성상공회의소 창립10주년 기념행사 참석**

달성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개최된 창립10주년 기념식에 의장 외 전의원이 참석하여 축하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상공인들을 격려하였다.

■ 3.31 **의원 연수 실시**

한국산업기술원 부설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주관한 의원연수에 의장 외 전의원이 참석하여 서우선 심의관의 의정실무 특강과 엄길청 박사의 경제특강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였다.

■ 4. 6 **구 · 군의원 합동연찬회 참석**

대구광역시 구 · 군의회 의장협의회 주관의 연찬회에 의장 외 전의원

이 참석하여 대구시의 시정방향과 이정희 경북대 교수의 국제정세와 안보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한편 대구지하철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국비지원 확대 결의문도 채택하였다.

■ 4. 7 **비슬산국립공원지정관련 타당성 조사결과 설명회 참석**

의장 외 전의원이 참석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신성식 기획과장, 박경 자연생태계 박사로부터 조사결과를 설명 듣고 군민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 4. 11 **비슬산 참꽃축제 참여**

달성문화원에서 주최한 참꽃축제에 의장 외 전의원이 참석하여 산신제, 참꽃그리기, 서예실기, 군민노래자랑에 주민들과 함께 하였다.

■ 4. 14 **영호남화합추진협의회 만남의 날 참석**

달성군과 자매도시인 담양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영호남화합추진협의회 만남의 날 행사에 박노설 의장이 참석하여 영호남 화합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4. 15 **제22차 의정간담회 개최**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계획, 달성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계획을 집행부로부터 설명 듣고 제82회 임시회 개회 협의를 하였다.

■ 4. 16 **통일정세보고회 참석**

군청회의실에서 개최된 통일정세보고회에 의장 외 7명의원이 참석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 4. 25 **재경달성군향우회 1999년도 정기총회 참석**

서울 산업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 박노설 의장이 참석하여 서울에서 고향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재경달성군향우회 회원들을 격려하였다.

■ 4. 27 **지방의회 부활 8주년기념 의정평가 세미나 참석**

서울 공무원연금공단 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정평가세미나에서 박노설

의장, 이팔호 부의장이 참석하여 지방의회의 정책개발과 자치입법기능, 지방의회 운영과 의원의 의정활동 등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 4. 30 **제23차 의정간담회 개최**

소프트웨어 정품사용(구매)계획, 제7차 대구도시계획(재정비)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국립공원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5. 1 **대통령초청 전국지방의회의장 오찬 참석**

청와대에서 전국지방의회의장과의 오찬에 박노설 의장이 참석하였다.

■ 5. 14 **대통령 대구지역인사초청 오찬 간담회 참석**

대통령 대구방문에 따른 지역인사 초청 간담회에 박노설 의장이 참석하였다.

■ 5. 18 **대구지하철 국비지원확대 촉구를 위한 범시민서명운동 참석**

지하철 중앙로역 광장에서 개최된 범시민서명운동에 의장, 부의장, 이경식, 서병호, 이현근 의원이 참석하여 대구지하철 건설 및 운영비를 타시도와 형평성에 맞게 국비지원 확대를 촉구하였다.

■ 5. 20 **자치단체 최고정책결정자 정보화 시책교육 참석**

행정자치부 주관 정보화 시책교육에 의장, 부의장, 이경식, 도기태, 이정재, 이선용 의원이 참석하여 전자정부의 비전, 국가정보화정책 추진방향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 5. 20 **1999지방세미나 참석**

한국재정학회에서 개최한 지방재정세미나에 김판조, 서병호, 이현근 의원이 참석하여 지방자치단체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합리적 지방재정평가 방안 등에 관한 특강을 들었다.

■ 5. 25 **제1기 지방의회의원 정책연수회 참석**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주관한 정책연수회에 의장 외 전의원이 참석하여 조례입안 및 심사, 지방예산심의 결산, 행정사무감사 조사, 지방자치발전 토론 등에 관해 특강을 들었다.

■ 5. 27 **달성군 청소년 축제 참석**

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 청소년축제에 의장, 부의장, 이현근, 이선용 의원이 참석하여 청소년축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5. 28 **1999화랑훈련 위문**

박노설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들은 군청 상황실에 설치된 화랑훈련 방위지원본부를 방문하여 훈련상황을 보고 받고 위문품을 전달 격려하였다.

■ 5. 28 **제25차 의정간담회 개최**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장 외 전의원이 참석하여 농업기술센터 청사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대구지하철 국비지원 확대 촉구를 위한 범시민서명운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5. 31 **제4회 달성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참석**

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 재활증진대회에 박노설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직접 느끼고자 장애체험을 하고 이들의 재활의지를 북돋우웠다.

■ 6. 4 **제26차 의정간담회 개최**

의정간담회에서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공시지가조사 분석 등에 관해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 6. 6 **현충일 충혼탑 참배**

제44회 현충일을 맞아 의장 외 전의원이 충혼탑을 찾아 헌화 분향하였다.

■ 6. 11 **제27차 의정간담회 개최**

일반경쟁 입찰과정과 수입축산물내 다이옥신 검출관련 등에 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 6. 24 **6.25 제49주년 행사 참석**

달성군재향군인회에서 주최한 6.25행사에 부의장 외 전의원이 참석하여 6.25참전용사들의 고마움을 되새기고 서해교전에 따른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 6. 25 **대구광역시의회 의장과의 간담회 참석**

달서구의회 의원들과 연석간담회에 부의장 외 전의원이 참석하여 지하철대책 범시민서명운동 활성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6. 25 **달성라이온스 창립20주년 행사 참석**

달성라이온스클럽 회장단 이·취임식에 부의장 외 전의원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 6. 26 **제28차 의정간담회 개최**

의장 외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간담회를 개최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체 시행계획,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 개발제한구역내 제한행위, 종합사회복지관 경비대책 등에 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 6. 30 **학술심포지움 참석**

「지방자치 50년의 회고와 21세기 전망」이라는 주제의 학술심포지움에 박노설 의장이 참석하여 지방자치제 실시 50년의 변천과 지방의 역할변화, 새로운 지방의 역할과 21세기 좌표설정 등 주제발표를 들었다.

■ 7. 15 **대구광역시의회 의장과 구·군의회의장단 연석간담회 참석**

대구지하철대책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박노설 의장, 이팔호 부의장이 참석하여 대구지하철 국비지원 확대촉구 범시민 서명운동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하였다.

■ 7. 16 **제30차 의정간담회 개최**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차 조직(정원)조정 결과를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들었다.

■ 7. 26 **제14차 달성충효청소년문화학교 입교식 참석**

달성문화원 주최 청소년문화학교 입교식에 이현근, 이선용 의원이 참석하여 청소년들을 격려하였다.

■ 7. 28 **의장협의회 참석**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7월 정례회에 박노설 의장이 참석하여 대구지하철 관련문제 등 지역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7. 29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대구광역시지부 사무실 개소식에 박노설 의장이 참석하여 축하하고 지방의회에 관심과 홍보를 당부하였다.

■ 7. 30 **자유총연맹 달성군지부장 취임식 참석**

자유총연맹 달성군지부(서보강) 취임식에 박노설 의장, 이팔호 부의장, 이경식, 도기태 의원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 8. 4 **대구지하철 대책회의 참석**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실에서 있은 지하철 대책회의에 박노설 의장이 참석하여 서명록 전달을 위한 중앙기관 방문계획을 논의하였다.

■ 8. 6 **제31차 의정간담회 개최**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정간담회를 개최하여 달성군합창단 운영상황보고, 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립계획, 재해대책 추진상황 등을 보고 받고 각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8. 12 **대구지하철 국비지원 확대 촉구**

대구지하철대책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한 관계기관 방문에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하여 국회 3당대표 면담을 하여 청원서를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에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 8. 18 **제32차 의정간담회 개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계획, 민간위탁사무동의안, 도시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변경결정 및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숲속의집

(사계절용) 신축 추진상황 등을 보고 받고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8. 18 **1999을지연습 참관 및 위문**

국가전시대비 비상훈련인 1999을지연습에 의장 외 전의원이 참석하여 군청상황실, 제4대대, 달성경찰서, 달성소방서를 방문하여 훈련상황을 참관하고 위문품을 전달 격려하였다.

■ 8. 26 **의장협의회 참석**

8월 정례 의장협의회에 박노설 의장이 참석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건의안 및 협의회 의정활동집 책자발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8. 27 **새마을운동 제29주년기념 및 하계수련대회 참석**

전남 장성 새마을남부연수원에서 개최된 하계수련대회에 의장 외 전의원이 참석하여 새마을운동 제29주년을 기념하고 각 읍면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하였다.

■ 9. 3 **제33차 의정간담회 개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문화회관건립부지 관련사항, 달성장학회 설립계획변경, 달성군비지정관광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받고 제85회 임시회 개회를 협의하였다.

■ 9. 10 **제34차 의정간담회 개최**

방천 쓰레기매립장 확장관련 주민집회계획, 추석맞이 종합대책 추진, 종합민원실 환경정비사업, 2000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등을 보고받고 추석맞이 위문계획을 논의하였다.

■ 9. 21 **중추절 위문**

고유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가창 신일양로원, 사랑의 집, 달성경찰서 전의경대를 방문하여 쌀, 라면,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하였다.

■ 9. 27 **제35차 의정간담회 개최 및 수해피해지역 점검**

태풍 '바트'로 인한 수해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받고 논공, 하빈, 옥포, 현풍, 구지를 방문 홍수피해지역 점검 및 피해방지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9. 30 **제36차 의정간담회 개최**

제4회 달성군민의 날 행사계획, 개발제한구역조정에 관한 정부지침, 개정건축법에 따른 위반건축물 규제, 강창 하이츠 민원대책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선용 의원을 추천하였다.

■ 10. 28 **제37차 의정간담회 개최**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김판조 의원을 추천하고 제86회 임시회 개회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 10. 28 **대구 군·구의회의원 합동세미나 참석**

알리앙스 예식장에서 있은 대구광역시 군·구의회의원 합동세미나에 의장 외 전의원이 참석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사 방법에 관하여 강의를 들었다.

■ 11. 11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참석**

달성군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주최한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박노설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농업인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 11. 16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회 참석**

군청상황실에서 개최된 19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회에 이경식, 김판조 의원이 참석하여 '99년에서 2003년까지의 재정운용전망 및 부문별 투자지표 설명, 주요투자사업계획, 회계별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 11. 23 **1회용품사용줄이기 실천결의대회 참석**

새마을운동 달성군지회 주최 1회용품사용줄이기 실천결의대회에 박노설

의장, 이경식 의원이 참석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홍보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11. 30 **역대 의장단과의 간담회 개최**

박노설 의장, 이팔호 부의장은 초대 및 제2대 의장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당면 현안 사항을 논의하였다.

■ 12. 3 **독서경진 군예선대회 시상식 참석**

새마을문고 달성군지부 주최 독서경진 군예선대회 시상식에 박노설 의장이 참석하여 부문별 단체상을 시상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였다.

■ 12. 8 **달성JC회장단 이·취임식 참석**

달성청년회의소 회장단 이·취임식에 의장 외 전의원이 참석하여 축하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청년들의 역할을 당부하였다.

■ 12. 14 **농산물물류센터 기본계획 용역결과**

박노설 의장 외 전의원은 군청 상황실에서 화원읍 설화리에 건립될 농산물물류센터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청취하였다.

■ 12. 15 **대구시민화합을 위한 대합창제 참석**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대합창제에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하여 달성군합창단을 격려하였다.

■ 12. 17 **바른선거시민실천모임 창립총회 참석**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창립총회에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하여 바른선거시민실천모임 창립총회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12. 2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월례회 참석**

평통월례회에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하여 1999년도 달성군협의회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 활동계획을 협의하였다.

■ 12. 22 **1999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 참석**

군청회의실에서 개최된 '99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에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하여 각읍면 새마을운동 유공자들을 격려하였다.

■ 12. 23 **1999생활체육연합회 창단식 참석**

축구, 볼링, 탁구, 배드민턴, 에어로빅, 족구, 게이트볼, 야구 등 생활체육연합회 창단식에 박노설 의장, 김판조 의원이 참석하여 축하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전한 여가활동 및 군민 건강증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00년

■ 1. 4 **신년인사회 참석**

달성상공회의소 주최 2000년도 신년인사회에 박노설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하여 지역주민들과 신년 하례를 나누었다.

■ 1. 5 **공공근로사업추진 심사위원회 참석**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심사위원회에 도기태, 이현근 의원이 참석하여 달성군의 공공근로사업을 심의하였다.

■ 1. 14 **의장협의회 참석**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주최 1월 정례 의장협의회에 박노설 의장이 참석하여 2000년도 의장협의회 활동계획을 협의하였다.

■ 1. 21 **초대, 제2대 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제3대의회 박노설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은 초대, 제2대의원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1. 26 **제38차 의정간담회 개최**

2000년도 첫 간담회인 제38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청이전지 선정을 위한 연구제안 심사를 집행부로부터 설명 듣고 설날 위문계획을 협의하였다.

■ 1. 2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년인사회 참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성군협의회 신년인사회에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협의회 운영계획을 협의하였다.

■ 1. 28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수탁개관식 참석**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2000년 1월 1일부터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을 맡은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에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하여 축하하고, 질 좋은 복지문화 정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 1 **설날위문**

달성군의회에서는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신일양로원, 사랑의 집, 경찰서 전의경대 등을 방문 쌀, 과자, 라면, 음료 등 1,200,000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훈훈한 명절이 되길 당부하였다.

■ 2. 1 **농수산물물류센터 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용역 최종보고회에 의장 외 전의원이 참석하여 농수산물물류센터 용역결과를 청취하였다.

■ 2. 11 **제39차 의정간담회 개최**

소회의실에서 의정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청이전 학술용역 수행계획을 영남대 최외출 박사 외 3명으로부터 보고 받고,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은 뒤 제89회 임시회 개회 협의를 하였다.

■ 2. 18 **제40차 의정간담회 개최**

제40차 의정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수산물물류센터 부지 추가 매입 계획과 시설채소단지 객토사업 추진계획을 설명듣고,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제·개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2. 18 **(재)달성장학회 발기인총회 참석**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재)달성장학회발기인총회에 의장 등 전의원이 참석하여 달성장학회 명칭 및 정관을 확정하였다.

■ 2. 19 **정월대보름 달맞이 기원제 참석**

군민운동장에서 개최된 달맞이 기원제에 박노설 의장, 이팔호 부의장, 김판조, 이선용 의원이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군민 안녕을 기원하였다.

■ 2. 28 **민주의거 40주년 기념식 참석**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2.28 민주의거 40주년 기념식에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하여 2.28 민주의거의 정신을 되새겼다.

■ 3. 6 **구지공단 문제해결을 위한 쌍용자동차 방문**

구지쌍용자동차공장 부지 문제해결을 위하여 박노설 의장, 이팔호 부의장, 이현근, 이선용 의원은 구지공단 대책위원 및 대구시 관계자들과 함께 쌍용자동차 공장을 방문하여 쌍용자동차 사장 및 쌍용자동차 채권단장과 면담을 갖고 공단부지 매각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하였다.

■ 4. 28 **제45차 의정간담회 개최**

의정간담회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와 용연사 램프도로 이용대책,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 4. 28 **평통 월례회 참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성군협의회 주최 4월 월례회에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하여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역할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5. 2 **쌍용자동차 구지지방산업단지 조기개발촉구 궐기대회 참석**

대구시청 광장에서 실시한 궐기대회에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하여 대구광역시에 쌍용자동차 구지공단 허가를 취소하고 농지로 환원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채권단 조흥은행에는 일괄매각취소를 요구하였다.

■ 5. 4 **제46차 의정간담회 개최**

의정간담회에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과 향토문화유적지 순례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 5. 10 **제5회 달성장애인 화합 재활증진대회 참석**

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에서 주관한 장애인 화합 재활증진대회에 박노설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하여 장애인들에게 재활의지를 고취시켜 주었다.

■ 5. 12 **제47차 의정간담회 개최**

의정간담회에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받고, 쌍용자동차구지공단 조기개발촉구 결의안 및 결산검사위원 선정을 협의하였다.

■ 5. 19 **제48차 의정간담회 개최**

의정간담회에서 제1회 달성군합창단 정기연주회 계획과 여성지도자 아카데미과정 교육계획에 대하여 보고받고, 시승격관련 언론보도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나누었다.

■ 5. 24 제1차 정례회대비 특별연수 실시

한국산업기술원 부설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주관한 특별연수교육에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하여 행정사무감사기법, 감사 체험사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원 품위유지를 위한 이미지 관리 등을 교육받았다.

■ 5. 28 **재경향우회 2000년 정기총회 참석**

재경달성군향우회 주최 2000년도 정기총회에 이팔호 부의장, 이경식, 도기태, 서병호, 이현근 의원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 5. 29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

군청 회의실에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이선용 의원)으로부터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

■ 5. 31 **달성군합창단 제1회 합창제 참석**

대덕문화전당에서 개최된 합창제에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하여 합창단의 공연을 감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6. 1 **달성군청 이전적합지 선정연구 1차보고안 발표회 참석**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1차보고안 발표회에 의장 외 전의원이 참석하여 영남대 최외출 교수로부터 1차 보고안을 청취하였다.

■ 6. 6 **제45회 현충일 추념행사 참석**

달성군 충혼탑에서 개최된 현충일 추념행사에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하여 충혼탑에서 헌화 분향하고, 보훈가족들을 격려하였다.

■ 6. 9 **제49차 의정간담회 개최**

의정간담회에서 공무원 해외파견근무와 국토이용 및 계획체계 개편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정간담회 시간조정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 6. 12 **역대의장초청 간담회 개최**

의회 의장실에서 박노설 의장은 초대의장, 2대 의장을 초청하여 지역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6. 12 **한나라당 대구광역시지부장 면담**

쌍용자동차 구지지방산업단지 관련 문제해결을 위하여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한나라당 대구시지부장과 면담을 갖고 지역정치권에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였다.

■ 6. 12 **의원 정보화교육 참석**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은 윈도우 기초과정과 인터넷을 통한 의정활동 정보검색에 관하여 교육을 받았다.

■ 6. 16 **제50차 의정간담회 개최**

의정간담회에서 가뭄대책 추진계획과 영농추진현황, 달성군 인터넷 농업방송국시스템 개발계획,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공동주택 부도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6. 23 **6.25 기념식 및 평화통일 결의대회 참석**

달성군 재향군인회에서 주최한 6.25 자유수호전쟁 제50주년 기념식에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하여 6.25 참전전우를 격려하고 자유수호 의지를 다졌다.

■ 6. 27 **(재)달성장학회 이사회 참석**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재)달성장학회 이사회에 박노설 의장이 참석하여 정관 세칙 수정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6. 28 **의장협의회 참석**

의장협의회 6월 정례회에 박노설 의장이 참석하여 전국의장회 발족에 관하여 논의 하였다.

■ 6. 29 **달성라온스클럽 창립기념식 참석**

대구달성라이온스클럽 창립 21주년기념 및 신구회장단 이·취임식에 이팔호 부의장, 김판조 의원, 이현근 의원, 이선용 의원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 7. 13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식)에서는 행정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으로 주민불편 초래사항 등이 없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구 9건, 건의요구 14건을 지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였다.

■ 7. 14 **달성군인터넷농업방송 개통식 참석**

농수산물물류센터와 연계하여 배송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되도록 하여 운영하는 달성군 인터넷 농업방송 개통식에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인터넷 농업방송 시연을 관람하고 농업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7. 25 **2003 하계U 대구유치에 따른 간담회 참석**

하계U대회 유치위원회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서병호 의장, 이정재 부의장이 참석하여 하계U대회 대구유치에 따른 각기관단체별 협조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7. 26 **4-H회원 야영교육 참석**

달성군 4-H연합회 주최 야영교육에 서병호 의장, 이정재 부의장이 참석하여 4-H회원들을 격려하였다.

■ 7. 26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제3대 전현직 의장 모임 참석**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전현직 의장 모임에 서병호 의장, 박노설 전의장이 참석하여 상견례를 나누고 지역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7. 27 **달성포돌이 창간기념식 참석**

달성경찰서 소식지(달성포돌이) 창간기념식에 서병호 의장이 참석하여 경찰행정을 군민들에게 알리는 포돌이지 창간을 축하하였다.

■ 7. 31 **청소년 충효학교 입교식 참석**

유림회관에서 개최된 현풍향교 청소년 충효학교 입교식에 서병호 의장이 참석하여 지역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예를 갖출 줄 아는 청소년이 되어주길 당부하였다.

■ 8. 4 **제52차 의정간담회 개최**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정간담회를 개최하여 수해복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각종 위원회 위원을 추천(도시계획위원회 : 김판조 의원, 이현근 의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서병호 의장, 박노설 의원, 제2건국추진위원회 : 이경식 의원)하였다.

■ 8. 5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 내방접견**

서병호 의장은 이의국 본부장의 본의회 방문을 접견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대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 8. 11 **제53차 의정간담회 개최**

제53차 의정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청이전학술용역 추진현황과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 8. 16 **전국시군구의회의장회 세미나 참석**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서병호 의장이 참석하여 지방의회 발전방안에 대하여 강의를 듣고 후반기 의회 운영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 8. 18 **제54차 의정간담회 개최**

제54차 의정간담회를 개최하여 2000년 을지연습 개요,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관련사항, 공공근로사업비 지원, 위생처리장 위탁추진 등에 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 8. 18 **영호남 생활문화탐방 참석**

달성군과 담양군 생활개선회에서 주관한 영호남 생활문화탐방에 서병호 의장이 참석하여 담양군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환영하고 민간차원의 영호남 교류활성화를 강조하였다.

■ 8. 25 **제55차 의정간담회 개최**

군정홍보물 제작계획과 의식개혁을 위한 달성교양강좌 개설 계획, 낙동강수질조기개선사업 기채 계획,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의정간담회에서 논의하였다.

■ 8. 26 **평통월례회 참석**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성군협의회 월례회에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 8. 26 **군청이전 학술용역 2차 보고회 참석**

군청이전 학술용역 2차 보고회에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2차 보고내용과 군청사 이전 후보지 공모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 8. 29 **새마을운동 30주년기념 하계수련대회 참석**

새마을운동 달성군지부 주최 하계수련대회에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각 읍면 새마을 지도자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하였다.

■ 8. 31 **의식개혁을 위한 달성교양강좌 참석**

달성교양강좌에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군민과 공직자의 변화와 의식개혁을 통한 인재개발에 대하여 김홍석 장성군수로 부터 특강을 들었다.

■ 9. 5 **달성군체육회 임원회의 참석**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임원회의에 서병호 의장, 박노설의원, 이선용 의원이 참석하여 2000년도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9. 8 **중추절 위문**

달성군의회에서는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신일양로원, 사랑의 집, 경찰서 전경대 등을 방문 쌀, 과자, 라면, 음료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훈훈한 명절이 되길 당부하였다.

■ 9. 15 **제56차 의정간담회 개최**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간담회를 개최하여 2000년 달구벌축제 참가계획 및 제5회 달성군민의 날 행사계획, 농수산물물류센터 건설사업, 재해대책 추진상황과 집중호우 피해복구 계획을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9. 20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제9기 대구지역회의 참석**

대구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대구지역회의에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지역협의회 활동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 9. 22 **민방위대 창설 15주년 기념식 참석**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민방위대 창설 기념식에 의장 외 전의원이 참석하여 지역민방위대 유공자 및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9. 25 **지체장애인협회 군지회장 이·취임식 참석**

지체장애인협회 군지회장 이·취임식에 서병호 의장, 박노설 의원이 참석하여 이·취임식을 축하하고 장애인들을 격려하였다.

■ 9. 25 **대구미술광장 개관식 참석**

가창면 정대리 구 정대분교에 대구미술광장이 개관되어 서병호 의장, 이정재 부의장이 참석하여 개관을 축하하고 전시작품을 관람하였다.

■ 9. 27 **2001년도 주요투자사업 심사위원회 참석**

주요투자사업 심사위원회에 이경식 의원, 김판조 의원이 참석하여 2001년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다.

■ 9. 29 **제57차 의정간담회 개최**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인 복지기금운영 심의위원에 도기태 의원을 추천하였다.

■ 9. 29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장식 참석**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 주최한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장식에 의장 외 전 의원이 참석하여 관내 참가농협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우리 농산물 애용을 홍보하였다.

■ 9. 29 **의식개혁을 위한 달성교양강좌 참석**

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 교양강좌에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한영환 중앙대 교수로부터 "새천년대를 향한 우리체제의 대혁신"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청취하였다.

■ 9. 30 **건군 제5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

제8251부대 7대대에서 개최한 국군의날 기념식에 서병호 의장이 참석하여 부대장병들을 격려하였다.

■ 10. 1 **달구벌축제 시민화합 줄다리기대회 참석**

군·구대항 줄다리기 대회에 서병호 의장, 이정재 부의장, 김판조 의원, 박노설 의원, 이선용 의원, 이현근 의원이 참석하여 줄당기기 선수들을 격려하고 시민화합을 다졌다.

■ 10. 6 **제58차 의정간담회 개최**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정간담회를 개최하여 군 경영행정 추진사례집

발간계획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조사결과, 2000년도 추곡수매 추진계획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제95회 임시회 개회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10. 7 **제5회 달성충효예술제 참석**

달성문화원에서 주관한 충효예술제에서 서병호 의장, 이경식 의원, 김판조 의원, 이현근 의원, 이선용 의원이 참석하여 예술제 전시작품을 관람하고 출품자들을 격려하였다.

■ 10. 8 **사직제 참석**

사신(社神一國土之神)과 곡신(穀神一五穀之長)에게 지내는 사직제에 서병호 의장(아헌관), 이경식 의원, 김판조 의원, 이현근 의원, 이팔호 의원이 참석하여 군민의 안녕과 풍년농사를 기원하였다.

■ 10. 8 **군민위안 노래자랑대회 참석**

달성문화원 주관 노래자랑대회에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축하하고 노래자랑 각 읍·면 출연자들을 격려하였다.

■ 10. 9 **제5회 군민의 날 군민체육대회 참석**

군민체육대회에서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군민의 날 기념 군민상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각읍·면 체육대회출전선수 및 임원들을 격려하였다.

■ 10. 13 **유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 주관의 선진지 견학에 의장을 비롯한 7명 의원이 참석하여 경북 상주군 외서농협의 배 수출 선과장 및 산지유통센터를 견학하였다.

■ 10. 16 **군청이전 후보지 공모 현지 답사**

군청이전 적지선정을 위한 연구용역팀에서 주관한 후보지 현지답사에 의장을 비롯한 7명 의원이 참석하여 화원읍 설화리, 논공읍, 금포리,

현풍면 중리, 유가면 금리 등 각 읍면별 유치위원회가 제출한 공모지를 현지 답사하였다.

■ 10. 17 **제7회 음식인의 날 기념체육대회 참석**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개최된 음식인 체육대회에 이정재 부의장, 이경식 의원, 이팔호 의원, 김판조 의원, 도기태 의원이 참석하여 관내 음식업회 회원들을 격려하였다.

■ 10. 18 **자연보호헌장 선포 제22주년기념 참석**

하빈면 하산리 낙동강변에서 개최된 기념식에 이정재 부의장, 이경식 의원, 김판조 의원, 박노설 의원, 이선용 의원, 이팔호 의원이 참석하여 낙동강변에 있는 오물들을 수거하고 자연보호 의식을 고취하였다.

■ 11. 10 **달성교양강좌 참석**

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 교양강좌에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황필호 강남대 교수로부터 "철학이 있는 삶은 아름답다"라는 주제의 특강을 청취하였다.

■ 11. 11 **가사문학관 개관 기념식 참석**

달성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전남 담양군의 정철선생 가사문학관 개관 기념식에 서병호 의장이 참석하여 축하하고 영호남 화합의 날을 보냈다.

■ 11. 13 **삼성자동차 퇴출에 따른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장 간담회 참석**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실에서 개최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장 간담회에 이정재 부의장이 참석하여 삼성상용차 퇴출에 따른 의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였다.

■ 11. 14 **하반기 통일안보정세보고회 참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성군협의회에서 주관한 통일안보정세 보고회에 서병호 의장, 이현근 의원, 이팔호 의원이 참석하여 최세돈 원장의 "남북화해 협력시대의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특강을 들었다.

■ 11. 14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이경식 의원, 김판조 의원이 참석하여 2001년도 달성군의 재정계획과 내년도 투자사업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다.

■ 11. 17 **제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참석**

달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풍년농사를 축하하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11. 22 **(재)달성장학회 이사회 참석**

재단법인 달성장학회 이사회에 서병호 의장이 참석하여 장학금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 11. 23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 군예선대회 시상식참석**

달성군 새마을문고회에서 주관한 군예선대회 시상식에 서병호 의장이 참석하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어머니부, 일반부 단체에 대하여 시상하고 독서의 생활화를 강조하였다.

■ 11. 24 **달성교양강좌 참석**

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 교양강좌에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허신행 농산물유통공사 사장으로부터 "지식사회는 가고 정각(正覺)사회는 온다"라는 특강을 들었다.

■ 12. 4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참석**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서병호 의장이 참석하여 지역현안 사항과 제2차 정례회 운영방안에 관한여 논의하였다.

■ 12. 7 **(재)달성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참여**

재단법인 달성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에 서병호 의장이 참석하여 장학금 수상학생들을 축하하고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12. 8 **달성교양강좌 참석**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교양강좌에 서병호 의장, 이경식

의원, 이팔호 의원이 참석하여 김진익 글로벌문화개발원장으로 부터 "고품격 인간관계와 감동을 주는 커뮤니케이션"에 관하여 특강을 들었다.

■ 12. 21 **2000새마을운동종합평가대회 참석**

새마을운동중앙회 달성군지회 2000년 종합평가대회에 서병호 의장, 이정재 부의장, 이경식 의원, 김판조 의원, 박노설 의원이 참석하여 종합평가 우수 새마을지도자를 격려하였다.

■ 12. 22 **달성교양강좌 참석**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교양강좌에 서병호 의장, 이경식 의원이 참석하여 김안제 서울대 교수로부터 "지역개발과 자치행정"에 관하여 특강을 들었다.

■ 12. 27 **금맥장학회 장학금수여식 참석**

장학금 수여식에 서병호 의장, 이정재 의원, 이경식 의원, 김판조 의원, 박노설 의원이 참석하여 장학금 수상 학생들을 축하, 격려하였다.

■ 12. 31 **제야의 종 타종식 참석**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개최된 제야의 종 타종식에 서병호 의장이 참석하여 시민들과 함께 제야의 종을 타종하고 2000년을 마무리 하였다.

2001년도

■ 1. 1 **신년 충혼탑 참배**

2001년 새해를 맞아 서병호 의장은 군내 기관단체장과 함께 충혼탑을 찾아 조국을 위해 몸을 바치신 그분들의 넋을 기렸다.

■ 1. 3 **2001년도 신년인사회 참석**

달성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개최된 신년인사회에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지역인사들과 덕담을 나누고, 지역개발 및 의정활동에 관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 1. 13 **농업경영인연합회장 이·취임식 참석**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개최된 이·취임식에 서병호 의장이 참석하여 전임 및 신임회장의 이·취임을 축하하였다.

■ 1. 18 **설날 위문**

달성군의회에서는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신일양로원, 사랑의 집, 경찰서 전경대, 대구가톨릭 치매센터 등을 방문 쌀, 라면,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훈훈한 명절이 되길 당부하였다.

■ 2. 6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참석**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서병호 의장이 참석하여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합동연수회 개최 및 전국시·군·구의회의장회 정기총회 참석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2. 7 **제3회 정월대보름 달맞이 기원제 참석**

현풍천변에서 개최된 달맞이 기원제에 서병호 의장, 김판조 의원, 도기태 의원, 이현근 의원, 이선용 의원, 이팔호 의원이 참석하여 군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였다.

■ 2. 8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 김판조 의원, 이현근 의원이 참석하여 중로1류 242호선 외 2건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 2. 14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참석**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정보화추진협의회에 김판조 의원, 이선용 의원이 참석하여 달성군 지역정보화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2. 23 **한국델파이 노조원과의 간담회 참석**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달성산업단지 소재 한국델파이 노조원과의 간담회에 서병호 의장이 참석하여 달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우자동차 부품사의 회생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2. 24 **재경달성군 향우회 장학금수여식 참석**

재경달성군향우회 주관 장학금 수여식에 서병호 의장, 이정재 부의장,

이경식 의원, 김판조 의원, 박노설 의원, 이팔호 의원이 참석하여 장학금 수상 학생들을 축하하였다.

■ 2. 26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실시설계 최종보고회 참석**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최종보고회에 서병호 의장, 이정재 부의장, 이경식 의원, 김판조 의원, 박노설 의원, 이선용 의원, 이팔호 의원이 참석하여 종합유통센터 실시설계 전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 2. 28 **달성문화원 정기총회 참석**

문화원 제16차 정기총회에 서병호 의장, 김판조 의원, 이현근 의원이 참석하여 문화원회원들을 격려하고 지역문화 진흥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3. 6 **의원합동세미나 참석**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합동세미나에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21세기 대구의 미래와 경제활성화 방안」 및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에 대하여 문희갑 대구광역시장과 정세욱 명지대 교수로부터 강의를 청취하였다.

■ 3. 21 **노인회 정기총회 참석**

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 정기총회에 서병호 의장이 참석하여 평소지역의 발전과 봉사활동에 애써오신 어른신들을 격려하고, 축사를 통해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켜 동방예의지국의 위상을 펼쳐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 3. 25 **평통월례회 참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성군협의회 월례회에 서병호 의장, 이경식 의원, 박노설 의원이 참석하여 2001년 중·고생 통일교육 계획 및 기타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 3. 28 **달성상공회의소 창립 12주년기념 참석**

달성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개최된 창립 기념식에 서병호 의장과

김판조 의원이 참석하여 축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공인들이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4. 6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회 월례회 참석**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회에 서병호 의장, 이정재 부의장이 참석하여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4. 12 **달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참석**

달성소방서 의용소방연합대가 주최한 체육대회에 서병호 의장, 이경식 의원이 참석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하였다.

■ 4. 14 **평통총회 및 선진지 견학참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성군협의회주관 선진지 견학에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2001년도 달성군협의회 운영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 경상남도 거제시 일원을 둘러보았다.

■ 4. 26 **대구광역시 산업경제국장 면담**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은 대구광역시 산업경제국장과 면담을 갖고 쌍용자동차 구지산업단지 매각과 관련한 추진상황을 설명듣고, 구지공단의 조속한 매각 계약체결을 대구광역시에 촉구하였다.

■ 4. 29 **제5회 비슬산 참꽃제 참석**

비슬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된 참꽃제에 의장 외 전 의원이 참석하여 산신제 및 경축행사를 참관하여 이 곳을 찾은 많은 관광객과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5. 17 **제6회 달성장애인 화합재활증진대회 참석**

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에서 주관한 장애인 화합재활증진대회에 이정재 부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장애인협회 창립10주년을 축하하고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고취시켜 주었다.

■ 5. 21 **대구농협여성한마음대회 참석**

대구종합경기장에서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여성

한마음대회에 서병호 의장이 참석하여 참가 읍·면농협 여성회원들을 격려하였다.

■ 5. 29 **상반기 투자사업심의회 참석**

달성군의 2001년도 상반기 투자사업심의회에 이경식 의원, 김판조 의원이 참석하여 달성문화원 건립 등 6건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 6. 7 **평통월례회 및 2001년도 안보정세 보고회 참석**

화원읍민회관에서 개최된 안보정세보고회에 의원 모두가 참석하여 배한동 경북대 교수로부터 "남북 평화협력시대와 우리의 역할"에 관하여 강의를 들었다.

■ 6. 8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회 월례회 참석**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회에 서병호 의장이 참석하여 제63차 전국의장회 회의 및 상반기 세미나 개최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 6. 10 **재경달성군향우회 2001년도 정기총회 참석**

서울산업대학교에서 개최된 향우회 정기총회에 서병호 의장, 이정재 부의장, 이경식 의원, 도기태 의원, 이현근 의원, 이팔호 의원이 참석하여 재경향우회 한마당잔치를 축하하고 향우회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 6. 13 **제2회 달성군합창단 연주회 참석**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합창단 연주회에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합창단 연주회를 감상하였다.

■ 6. 23 **제2회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에 김판조 의원, 이현근 의원이 참석하여 약산온천 개발계획 승인지구내 도로 등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 6. 26 **달성라이온스클럽 창립22주년 기념행사 참석**

달성라이온스클럽 창립기념행사에 김판조 의원, 이현근 의원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 6. 28 **제77차 의정간담회 개최**

2001년 하곡(보리)수매 현황 및 농작물 침수피해 현황에 대하여 농축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 6. 29 **2001년 바르게살기위원 정신교육 및 제27회 달성교양강좌 참석**

바르게살기운동달성군협의회 주최 교양강좌에 이정재 부의장, 이경식 의원, 도기태 의원, 이팔호 의원이 참석하여 최승훈 한국조직연구소장으로부터 "앞서가려면 변화를 주도하라"의 주제강의를 들었다.

■ 7. 4 **달성축산업협동조합 이·취임식 참석**

그랑프리 예식장에서 개최된 달성축산업협동조합장 이·취임식에 박노설 의원, 이팔호 의원이 참석하여 조합장 이·취임을 축하하였다.

■ 7. 5 **달성대대 창설17주년 기념행사 참석**

육군 제8251부대7대대 창설 17주년 기념행사에 김판조 의원, 도기태 의원이 참석하여 부대창설 기념일을 축하하고 안보사격을 실시하고 대대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 7. 6 **제78차 의정간담회 개최**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정간담회를 개최하여 제6회 달성군민상 선정계획과 제2단계 읍·면 기능전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과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7. 6 **제28회 의식개혁을 위한 달성교양강좌 참석**

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 교양강좌에 도기태 의원, 이팔호 의원이 최윤희 카파라이터로부터 "마음만 바꾸면 나도 백만장자"라는 주제강의를 들었다.

■ 7. 7 **구지공단 대구광역시 매입기념 경축대회 참석**

쌍용자동차 구지지방산업단지 범군민대책위원회에서 개최한 경축대회

에 이현근 의원, 이선용 의원, 이팔호 의원이 참석하여 쌍용자동차로부터 구지공단 매입을 축하하고 범군민대책위원회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 7. 12 **달성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기공식 참석**

화원읍 설화리 555번지에 건립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기공식에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기공식을 축하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공사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 7. 20 **제79차 의정간담회 개최**

수박종자 피해 발생에 따른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축산과장으로부터 피해현황을 설명 듣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 8. 10 **제80차 의정간담회 개최**

묘지 및 납골시설 설치기준에 대하여 복지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을지연습 참관계획과 2001 지방재정세미나 참석의원을 추천하였다.

■ 8. 10 **비슬산 자연생태계조사 학술연구용역 보고회 참석**

군청상황실에서 개최된 보고회에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비슬산 자연생태계조사 학술연구 결과를 청취하였다.

■ 8. 16 **제8251부대7대대장 취임식 참석**

육군 제8251부대7대대장 취임식에 서병호 의장이 참석하여 축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 8. 17 **제81차 의정간담회 개최**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추진 현황과 2001 을지연습 개요에 대하여 복지위생과장,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 8. 17 **제34회 의식개혁을 위한 달성교양강좌 참석**

화원여고 강당에서 개최된 교양강좌에 서병호 의장, 이경식 의원, 도기태 의원, 이팔호 의원이 참석하여 정진호(스위스 IMD 파트너) 강사로부터 "디지털세상 이렇게 바뀌고 있다"의 주제강의를 청취하였다.

■ 8. 22 **2001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참관**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은 달성군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군작전 태세와 행정지원 상황을 보고받고 을지연습 관계자를 위문하였다.

■ 8. 22 **제81차 의정간담회 개최**

2001년 제2차 지방의회의원 정책연수 희망자 파악 및 민주평통통일연구회 제8차 정책포럼 행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8. 22 **달성캐릭터 개발 소재선정 보고회 참석**

달성캐릭터 개발을 위한 소재선정 보고회에 의장 외 전 의원이 참석하여 달성을 상징하는 각 소재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다.

■ 8. 24 **민주평통 통일연구회 제8차 정책포럼 참석**

민주평통 동아시아 국제정치학회에서 주최한 정책포럼에 서병호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동아시아 국제환경 변화와 남북관계의 방향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학술토론을 청취하였다.

■ 8. 28 **새마을운동 31주년 및 하계수련대회 참석**

새마을운동 달성군지회에서 주최한 하계수련대회에 의원 모두가 참석하여 각읍면 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특히 서병호 의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으로 이어갈 것을 강조하였다.

■ 8. 30 **2001 지방재정 세미나 참석**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지방재정 세미나에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방안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하여 토론을 나누었다.

■ 9. 6 **21세기 지방자치발전 대토론회 참석**

전국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협의회 주최 대토론회에 서병호 의장이 참석하여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 정책 방안,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확충 방안, 광역 행정을 통한 지역이기주의 극복 방안 등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 9. 6 **민주평통 제10기 전체회의 참석**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민주평통 회의에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민주평통 10기 출범을 축하하였다.

■ 9. 7 **제83차 의정간담회 개최**

제83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달구벌축제 섬유패션 줄다리기 대회, 농업소득세, 개발제한구역 정리(해제)확정에 따른 보고, 시비 보조사업 신청 조서,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매각 입찰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

■ 9. 11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정책 협의**

군 전체 면적의 45%를 차지하는 광범한 개발제한구역(3읍 3면 56개리 194㎢)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장 외 전 의원은 국회의원 회관을 찾아 박근혜, 이해봉, 백승홍, 박상희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안 확대 수정을 건의하였다.

■ 9. 12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의회 의장실에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9월 월례회를 개최하여 제65차 전국의장회 회의개최 결과와 2001년도 구·군의회의원 합동세미나 개최 계획을 협의하였다.

■ 9. 14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계획 설명회 참석**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설명회에 의장 외 전 의원이 참석하여 화원읍 설화리 일대에 건립될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계획을 청취하였다.

■ 9. 14 **제38회 의식개혁을 위한 달성교양강좌 참석**

화원읍민회관에서 개최된 교양강좌에 의장 외 전 의원이 참석하여 김준호, 손심심 국악인으로부터 "우리 소리를 우습게 보지 말라"주제 강의를 들었다.

■ 9. 15 **제84차 의정간담회 개최**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정간담회를 개최하여 제6회 달성군민의날 기념행사 추진계획, 쌀 수급동향 및 향후대책, 화원유원지 조성 기본계획 결정(달성습지 생태공원)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 9. 15 **달성문화원 수련대회 참석**

달성문화원 수련대회에 서병호 의장, 이현근 의원이 참석하여 문화원 가족들을 격려하였다.

■ 9. 19 **(재)달성장학회 이사회 참석**

달성장학회 이사회에 서병호 의장이 참석하여 기본재산 증액, 정산 및 운영세칙 개정, 2001년도 장학금 지급 대상자 확정 등 안건을 처리하였다.

■ 9. 21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 세미나 참석**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 주관 세미나에 서병호 의장이 참석하여 21세기의 지방의회 발전과제와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강의를 들었다.

■ 9. 22 **민방위 창설26주년 기념행사 참석**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기념행사에 이경식 의원, 김판조 의원, 이현근 의원이 참석하여 지역 민방위대원들을 격려하였다.

■ 9. 22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김판조 의원이 참석하여 논공읍 금포리 1310번지 일대 5만㎡ 공공청사 부지 시설 결정을 하였다.

■ 9. 23 **달구벌축제 섬유패션 줄다리기 대회 참석**

두류축구장에서 개최된 줄다리기 대회에 의장 외 전 의원(장군—이경식 의원, 김판조 의원, 도기태 의원, 박노설 의원)이 참석하여 달성군 선수단을 격려하였다.

■ 9. 25 **추석 위문 실시**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서병호 의장, 이정재 부의장, 김판조 의원, 이현근 의원은 신일양로원, 사랑의집, 경찰서 전경대, 가톨릭치매센터 등을 방문하여 햅쌀, 라면, 화장지, 기저귀 등 생필품을 전달·위문하였다.

■ 9. 26 **제85차 의정간담회 개최**

부의장 외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간담회를 개최하여 제105회 임시회 개회 안건을 협의하였다.

■ 9. 26 **달성캐릭터개발 기본형 보고회 참석**

달성 캐릭터개발 보고회에 의장 외 전 의원이 참석하여 캐릭터개발 기본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였다.

■ 9. 26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박노설 의원이 참석하여 2001년도 재산등록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 9. 26 **제6회 달성군민상 심사위원회 참석**

군민상 심사위원회에 이팔호 의원이 참석하여 군민상 수상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 9. 26 **달성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참석**

(재)달성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에 서병호 의장, 도기태 의원이 참석하여 장학금 수상 학생을 축하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 9. 26 **제86차 의정간담회 개최**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정간담회를 개최하여 제6회 군민상 수상자 선정 결과, 도시계획세(종합토지세부), 2001년 추곡수매(산물) 추진계획 등을 문화공보실장, 세무과장, 농축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 10. 6 **제6회 달성군민의 날 기념 충효예술제 참석**

달성문화원에서 개최한 충효예술제에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출품 작품을 관람하고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10. 8 **제6회 달성군민의 날 기념 사직제 참석**

사직단에서 개최된 사직제에 서병호 의장(아헌관), 김판조 의원, 이현근 의원, 이선용 의원, 이팔호 의원이 참석하여 사신(국토지주)과 직신(곡신지장)께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 10. 8 **군민위안 경축공연 참석**

제6회 군민의 날 기념 경축공연에 의장 외 전 의원이 참석하여 위안공연을 관람하고 읍·면 노래자랑 출연자들을 격려하였다.

■ 10. 9 **제6회 달성군민의 날 기념 군민체육대회 참석**

군민운동장에서 개최된 군민체육대회에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각 읍면 선수단을 격려하고, 주민과 화합하는 하루를 보냈다.

■ 10. 11 **하반기 투자사업심의회 참석**

투자사업심의회에 이경식 의원, 김판조 의원이 참석하여 군민독서실 건립 등 5건의 투자사업을 심의하였다.

■ 10. 18 **지방의회 의원연수**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주관 의원연수에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의정활동기법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의 자료요구 및 제출자료 활용방안,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개발한 의회의 주요기법 등에 대하여 강의를 받았다.

■ 10. 25 **2001 화랑훈련 위문**

군청 합동상황실에 설치된 화랑훈련 본부를 방문하여 훈련상황을 보고 받고 군청 직원과 제8251부대7대대 장병들을 위문하였다.

■ 10. 25 **제87차 의정간담회 개최**

의정간담회에서 환경미화원 환경청소 결의대회 개최 계획과 LP가스

안전대책 전국확대 시행계획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 및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 10. 26 **제44회 의식개혁을 위한 달성교양강좌 참석**

가창면사무소에서 개최된 교양강좌에 이정재 부의장이 참석하여 이규태 조선일보 논설고문으로부터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주제 강의를 들었다.

■ 11. 1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이선용 의원이 참석하여 2001년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2002년 사업계획을 심의하였다.

■ 11. 1 **제5회 달성충효 여성문화학교 입교식 참석**

달성문화원에서 주관한 여성문화학교 입교식에 이현근 의원이 참석하여 입교식을 축하하고 문화원 가족을 격려하였다.

■ 11. 2 **제88차 의정간담회 개최**

2001년 추곡수매(산물) 추진계획에 대하여 농축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 11. 2 **달성캐릭터 기본형 확정보고회 참석**

군청 대회의실에서 달성캐릭터 기본형 확정보고회에 의장 외 전 의원이 참석하여 캐릭터 기본형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

■ 11. 2 **제45회 의식개혁을 위한 달성교양강좌 참석**

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 교양강좌에 서병호 의장, 이정재 부의장, 이팔호 의원이 참석하여 임용근 미 오리건주 상원의원으로부터 "도전하는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주제 강의를 들었다.

■ 11. 3 **자연보호헌장선포 제23주년 기념식 참석**

화원 성산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식에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낙동강변 쓰레기 줍기 등 자연정화 활동을 하고 겨울철새 먹이주기도 하였다.

■ 11. 8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

농업기술센터 광장에서 개최된 농업인의 날 행사에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풍년농사 자축 한마당 잔치를 축하하고 농민들을 격려하였다.

■ 11. 9 **제89차 의정간담회 개최**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간담회를 개최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안)를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제106회 임시회 일정을 협의하였다.

■ 11. 12 **기초생활개선 10대과제 실천다짐대회 참석**

2002 월드컵 대비 기초생활개선 10대과제 실천 다짐대회에 김판조 의원이 참석하여 월드컵 성공개최를 다짐하였다.

■ 11. 15 **재정계획심의회 참석**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재정계획심의회에 이경식 의원, 김판조 의원이 참석하여 2001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였다.

■ 11. 17 **제90차 의정간담회 개최**

제90차 의정간담회를 개최하여 기부행위 제한관련 사항에 대하여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제106회 임시회 안건을 협의하였다.

■ 11. 17 **제10기 민주평통 제2차 정례회의 참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성군협의회 정례회의에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제10기 행사추진계획을 토의하여 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하였다.

■ 11. 26 **신청사 이전관련 타 지방자치단체 견학**

군청이전에 따른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을 방문하여 청사 신축과정을 설명듣고 시설을 견학하였다.

■ 11. 28 **달성캐릭터 개발 최종보고회 참석**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최종보고회에 의장 외 전 의원이 참석하여 달성군 캐릭터(비슬이)를 최종 확정하였다.

■ 11. 28 **제21회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 군예선대회 시상식 참석**

새마을문고 달성군지부에서 주관한 시상식에 서병호 의장(단체부 우수상 시상), 이현근 의원이 참석하여 수상자들을 축하하였다.

■ 11. 30 **제49회 의식개혁을 위한 달성교양강좌 참석**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개최된 교양강좌에 서병호 의장이 참석하여 이유아 한국교육연구원장으로부터 "현명한 부모의 성공하는 자녀교육법"이라는 주제 강의를 들었다.

■ 12. 5 **군청사 기본계획수립 및 입찰안내서 용역에 따른 중간보고회 참석**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중간보고회에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군청사 설계 기본계획을 청취하였다.

■ 12. 10 **제6회 달성장애인 심신수련대회 및 재활자립장 개소식 참석**

(사)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에서 주관한 장애인 심신수련대회 및 재활자립 작업장 개소식에 서병호 의장, 이현근 의원이 참석하여 재활자립 작업장 개소를 축하하고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었다.

■ 12. 10 **달성 J.C 2001년도 전역식 및 회장단 이·취임식 참석**

달성청년회의소 회장 이·취임식에 서병호 의장, 이경식 의원, 김판조 의원, 이현근 의원, 이팔호 의원이 참석하여 회장단 이·취임을 축하하고 회원들을 격려하였다.

■ 12. 10 **달성로타리클럽 창립9주년 기념식 참석**

달성로타리클럽 창립기념식에 서병호 의장, 이경식 의원, 김판조 의원, 이현근 의원, 이팔호 의원이 참석하여 회장단 이·취임을 축하하고 회원들을 격려하였다.

■ 12. 11 **2001년 바르게살기운동 군 대회 참석**

바르게살기운동 군 대회에 서병호 의장, 이현근 의원이 참석하여 유공 위원 및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12. 12 **2001새마을운동종합평가대회 참석**

새마을운동중앙회 달성군지회 2001년 종합평가대회에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종합평가 우수 단체 및 우수 지도자들을 격려하였다.

■ 12. 13 **인터넷 산업방송 개통식 참석**

달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 제조과정을 영상 편집하여 방송하는 달성군 인터넷 산업방송 개통식에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산업방송을 시청하고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12. 19 **2002 공명선거 및 월드컵 성공기원을 위한 공명이상 제막식 참석**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 제막식에 의장 외 전 의원이 참석하여 비슬산휴양림 입구에 세워지는 공명이상 제막을 축하하였다.

■ 12. 26 **생활체육인의밤 행사 참석**

달성군생활체육협의회 주관 행사에 서병호 의장, 김판조 의원, 이현근 의원이 참석하여 생활체육협의회 회원들을 격려하였다.

■ 12. 28 **화원공설시장 준공 및 개장식 참석**

화원공설시장 개장식에 이경식 의원이 참석하여 시장 개장을 축하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2002년

■ 1. 1 **신년 충혼탑 참배**

2001년 새해를 맞아 서병호 의장은 군내 기관단체장과 함께 충혼탑을 찾아 조국을 위해 몸을 바치신 그분들의 넋을 기렸다.

■ 1. 3 **2002년도 신년 인사회 참석**

달성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개최된 신년인사회에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하여 지역인사들과 덕담을 나누고, 지역개발 및 의정활동에 관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 1. 5 **박근혜 국회의원 래방 접견**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은 박근혜 국회의원의 의회 방문을 접견, 환담을 나누고, 위천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하여 건의하였다.

■ 1. 11 **제55회 달성교양강좌 참석**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개최된 교양강좌에 도기태 의원이 참석하여 김태현 정신문화연구원장으로부터 "건강하게 사는 지혜" 주제강의를 청취하였다.

■ 1. 16 **평통 신년인사회 참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성군협의회 신년인사회에 의장 외 전의원이 참석하여 2002년도 협의회 운영방안을 협의하였다.

■ 1. 16 **군청사 이전 신축 최종용역보고회 참석**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용역 보고회에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하여 군청사 이전 신축에 따른 용역보고를 청취하였다.

■ 1. 22 **의장회 월례회 참석**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회 월례회에 서병호 의장이 참석하여 2002년도 운영방안 및 지역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1. 23 **제91차 의정간담회 개최**

2002년 첫 의정간담회를 개최하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입장료 관련 검사 결과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현안사항을 논의하였다.

■ 1. 24 **달성군재향군인회 제43차 정기총회 참석**

달성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 서병호 의장, 박노설, 이현근 의원이 참석하여 정기총회를 축하하고 향군회원들을 격려하였다.

■ 1. 25 **자유총연맹 달성군지부 신년인사회 참석**

옥포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신년인사회에 서병호 의장이 참석하여 회원들을 격려하고 여만철 귀순용사의 안보특강을 청취하였다.

■ 2. 1 **제92차 의정간담회 개최**

2월 첫째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조례안과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계획, 경북과학대학 식품연구소 건축허가 등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농축산과장,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 2. 5 **국민연금공단 달성지사 1일명예지사장 근무**

달성군의회 서병호 의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달성지사 1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되어 업무보고를 받고, 민원인들과 상담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업무와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홍보하였다.

■ 2. 6 **제19회 달성교육상 시상식 참석**

달성교육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 서병호 의장이 참석하여 달성교육상 수상자를 축하하고 행사관계자를 격려하였다.

■ 2. 6 **설날위문**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신일양로원, 대구 가톨릭 치매센타 등 사회복지시설과 교통·치안에 노고가 많은 달성경찰서 전·의경대를 방문하여 쌀, 라면, 화장지,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훈훈한 명절이 되도록 격려하였다.

■ 2. 8 **경북직업전문학교 수료식 참석**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직업전문학교 수료식에 서병호 의장, 김판조, 이현근 의원이 참석하여 수료생들을 축하하였다.

■ 2. 15 **제93차 의정간담회 개최**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정간담회를 개최하여 달성군의회 10년사 발간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 2. 18 **의장회 월례회 참석**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회 월례회에 서병호 의장이 참석하여 지역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2. 20 **2002년도 통합방위 대구지방회의 참석**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주관 지방회의에 서병호 의장이 참석하여 지역통합방위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지역통합방위 계획을 협의하였다.

■ 2. 22 **제94차 의정간담회 개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 대구시 종합감사,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 환급안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달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과 2002년도 회기운영계획을 협의하였다.

또한 2002월드컵, 2003하계U대회 대비 꽃길조성을 위한 동전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 2. 25 **재경달성군향우회 장학금 전달식 참석**

재경달성군향우회에서 주관한 장학금 전달식에 서병호 의장, 이정재 부의장, 이경식, 이팔호 의원이 참석하여 장학금 수상 학생들을 축하하고 향우회원들을 격려하였다.

■ 2. 26 **정월대보름 달맞이 기원제 참석**

현풍천에서 개최된 정월대보름 달맞이 기원제에 서병호 의장, 김판조, 도기태, 이팔호 의원이 참석하여 군민의 안녕과 풍년농사를 기원하였다.

■ 2. 28 **달성문화원 정기총회 참석**

달성문화원 2002 정기총회에 서병호 의장, 이현근 의원이 참석하여 정기총회를 축하하고 문화원 가족들을 격려하였다.

■ 3. 2 **제95차 의정간담회 개최**

의회 소회의실에서 3월 첫 간담회를 개최하여 독일 뒤셀도르프시 자매결연 담당관 달성군 방문,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 2002년도 곡물건조기 구입 및 2002년도 영농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농축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달성군의회 10년사 발간 계획 및 제10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3. 8 **제96차 의정간담회 개최**

의회 소회의실에서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법률 주요내용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제109회 임시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3. 13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상징물 선정보고회 참석**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보고회에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하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에 설치할 조형 상징물을 선정하였다.

■ 3. 14 **2002 대구국제 섬유박람회 참관**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섬유박람회(Preview In Daegu)에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하여 신소재를 개발하여 전시하는 세계적인 섬유전문 전시회를 관람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애쓰는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 3. 15 **독일 뒤셀도르프시 자매결연단 달성군방문 접견 참석**

독일 뒤셀도르프시 자매결연단의 달성군 방문 접견 자리에 서병호 의장이 참석하여 자매결연단과 환담을 나누었다.

■ 3. 20 **의장회 월례회 참석**

수성구의회에서 개최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회 3월 월례회에 서병호 의장이 참석하여 지역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3. 22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 김판조, 이현근 의원이 참석하여 신설 주거지역내 소로망 결정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 3. 22 **제97차 의정간담회 개최**

의정간담회에서 2002 독수리 훈련 개요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훈련에 따른 위문계획을 협의하였다.

■ 3. 27 **의원 연수 교육**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현대지방의정연구원에서 주관한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6명 의원이 참석하여 선거법 주요내용과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다.

■ 4. 4 **제98차 의정간담회 개최**

2002 제1회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중부내륙고속도로(현풍~김천간) 사업추진현황, 국도26호선(성산~논공간) 확포장공사 추진현황, 농업기반공사 관장사무 영역에 관하여 도시과장,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달성군의회 10년사 발간 추진현황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 4. 9 **2002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군청상황실에서 개최된 2002 통합방위협의회에 서병호 의장이 참석하여 방위협의회 운영방향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 4. 12 **제99차 의정간담회 개최**

건설공사 조기발주 현황, 교부세 감액제 운영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2002년도 의회운영 계획과 읍면방문 및 주요사업장 점검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4. 12 **비슬산 참꽃 문화행사 참관**

비슬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된 참꽃 문화행사에 서병호 의장, 김판조,

이현근, 이선용 의원이 참석하여 문화원 가족들을 격려하고 이 곳을 찾은 등산객들에게 의정활동에 대하여 홍보하였다.

■ 4. 18 **의장회 월례회 참석**

달서구의회에서 주관한 구군의회 의장회에 서병호 의장이 참석하여 월드컵 등 국제행사 대비 환경정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4. 20 **한국대 코스타리카 축구평가전 관람**

대구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축구 평가전에 서병호 의장이 참석하여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였다.

■ 4. 25 **제7회 달성 장애인 화합재활증진대회 참석**

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에서 주최한 장애인 화합재활증진대회에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하여 장애인들에게 재활의지를 고취시켜주고 행사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였다.

■ 4. 26 **읍면방문 및 주요사업장 점검 실시**

군의회에서는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토, 일 제외) 읍면 방문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읍면의 현안사항과 공사 추진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개발촉진 및 군민복리증진에 기여하였다.

■ 4. 27 **기초질서 및 교통안전실천 다짐대회 참석**

군민체육관 광장에서 개최된 기초질서 및 교통안전실천 다짐대회에 의장 외 전의원이 참석하여 월드컵대회를 홍보하고 질서의식을 고취시켰다,

■ 4. 30 **제11회 근로자 노래자랑 및 위안공연 참석**

한국노총달성지역지부에서 주최한 근로자 노래자랑대회에 김판조, 이현근, 이선용 의원이 참석하여 노래자랑 출연 근로자와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5. 3 **제23회 담양군민의날 기념행사 참석**

우리군과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전라남도 담양군 죽향축제에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하여 축하하고 영호남의 화합을 다졌다.

■ 5. 10 **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 개통식 참석**

대구지하철건설본부에서 주최한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진천~대곡) 개통식에 이경식 의원이 참석하여 연장구간 개통을 축하하고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5. 11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

군청 상황실에서 5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이팔호 의원)으로부터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

■ 5. 14 **구군의회 의장회 참석**

구군의회 의장회 5월 월례회에 서병호 의장이 참석하여 4대지방선거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5. 16 **제100차 의정간담회 개최**

제100차 의정간담회에 전의원이 참석하여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방역대책, 개발제한구역 조정(해제) 안에 대하여 농축산과장,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회 10년사』 배부 계획 및 『의정백서』 발간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5. 20 **『의회 10년사』 발간**

달성군의회에서는 1991년 4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의 의정활동 내용을 1권의 책으로 출판하여 역대 군의원, 관내기관단체 및 대구광역시 구의회 등 유관기관에 배부하였다.

『의회 10년사』의 주요내용은 달성군의회 개요. 제1대 · 제2대 · 제3대 달성군의회 의정활동, 달성군의 지역발전과 군의회의 활동 등 총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 5. 21 **평통 월례회 참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성군협의회 5월 월례회에 서병호 의장, 이정재 부의장, 이경식. 이현근. 이팔호 의원이 참석하여 중고등학생 통일교육 실시계획 및 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5. 24 **제101차 의정간담회**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정간담회를 개최하여 6.13 지방선거 일정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 5. 24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 기공식 참석**

화원읍 설화리 553-41번지에 들어설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 기공식에 서병호 의장, 이경식, 이선용 의원이 참석하여, 관내 여성단체 회원들과 함께 기공식을 축하하고 부실공사 없는 완벽한 시공을 당부하였다.

■ 5. 27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 김판조, 이현근 의원이 참석하여 논공초등학교 및 북동중학교 학교시설 결정 외 3건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 6. 7 **현충일 추념행사 참석**

제47회 현충일을 맞아 서병호 의장, 김판조, 도기태, 이현근. 이팔호 의원은 충혼탑을 찾아 헌화·분향하고 보훈가족을 위문하였다.

■ 6. 27 **제3대 의회 폐원**

제11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6.25부터 6.27까지 3일간 개회하여 달성군지방의회의원 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을 의결하고 제3대 달성군의회 폐원식을 의회 본회의장에서 가졌다.

제5절 의정활동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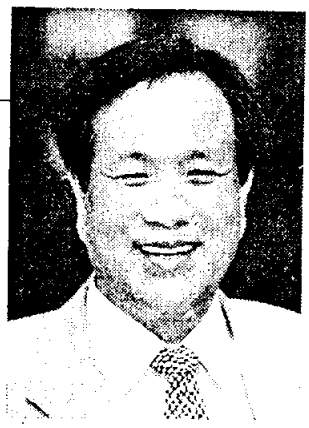
서울신문 | 1998. 8. 11

근교농업 적극 지원

인터뷰

朴 魯 高

대구 달성군 의회의장



朴魯高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은 "주민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봉사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항상 연구하고 토론하며 다양한 의견을 한 곳에 모아 훌륭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작정이다.

-의회 운영방향에 대한 관심이 큰데.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특히 건전한 비판과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하는 의회상을 심어 나가겠다.

-군청사 조기이전에 대한 의회의 입장은.

▲청사가 여러곳에 흩어져 있어 주민이 민원에 불편을 겪고 있는게 사실이다. 특히 군청이 대구 남구에 있어 관내 이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군청사 이전은 지역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다. 무조건 빨리 옮기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대구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 우리 군의 개발여건 등이 제시되면 이전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은.

▲우리 군은 250만이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을 갖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고부가 가치의 지역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면 농업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미나리, 연근, 참외, 오이, 양파, 약초 등 일부 품목은 그동안 집중적인 지원으로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고소득 작물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의회는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위천공단 조기지정 문제는.

▲최근 낙동강 수질이 2급수로 개선됐고 '상수도 수질개선 특별법' 제정문제가 조만간 여·야 정책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 질 것으로 보여 조기지정의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14만 군민과 함께 위천공단 조기지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대구=黃曙根 기자 kkhwang@seoul.co.kr〉

지역특성 맞는 고소득 작물 집중 개발
도시계획 재정비등 통해 郡청사 이전

영남일보 | 1998. 7. 11

달성군의회의장·부의장 박노설·이팔호의원 선출





【달성】 대구시 달성군의회는 10일 오전 제76회 임시회를 열어 의장에 박노설의원(54·하빈면·왼쪽), 부의장에 이팔호의원(56·구지면)을 각각 선출했다.

영남일보 | 1998. 8. 10

달성군의회 오늘 임시회

【달성】 대구시 달성군의회는 10일 오전 군의회 본회의실에서 회기 8일간의 제77회 임시회 개회식을 가졌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군정 질의도 벌일 예정이다.

서울신문 | 1998. 10. 19

발언대



朴魯卨
〈대구 달성군의회의장〉

"개발여력 있는 농경지 공원지역 지정 재고를"

지난 95년 3월 대구시에 편입된 달성군은 전체 면적의 45.5%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는 대구전체 개발제한 구역의 36.2%에 이른다.

대구시로 편입될 때만 해도 군민들은 희망에 부풀었다. 도시계획이 재정비돼 개발이 가속화되면 대도시 일원으로서 각종 혜택을 누릴 것이란 희망으로 살아왔다. 이런 기대로 지난 3년간 '건축행위 제한'이라는 규제 속에서도 군민들은 묵묵히 피해를 감수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대구시가 내놓은 제7차 대구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보면 이같은 군민들의 기대감을 송두리째 저버려 허탈감 마저 든다. 우선 녹지지역 면적이 군전체 면적의 93.7%나 된다. 비슬산 대니산 주변의 경사도가 완만하고 개발여력이 있는 농경지도 모두 자연공원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기존 대구시는 20층이상 아파트를 허용하면서 달성군내 주거지역은 5층이하, 자연녹지는 3층이하로 고도를 제한, 토지이용도 제고와 개발여력을 차단시키고 있다.

또 2016년 기본계획상 장미빛 청사진으로 기대를 모았던 현풍신시가지, 하빈 하산지구, 화원 심화·구라지구, 옥포 반송지구, 하빈 봉촌지구 등 개발예정지를 거의 백지화 했다. 지난 91년부터 공업지역으로의 개발이 제한된 위천공단예정지도 개발자체를 계속 유보시켰다.

이는 대구시 편입이후 온갖 불편을 감수해 온 군민들의 개발욕구를 완전히 짓밟은 것이며 생존권과 재산권을 박탈한 것이다. 대구시는 조속히 달성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것이다.

대구일보 | 1998. 10. 26

임시회 추경예산안 심의



△박노설 달성군의회의장은 오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제79회 임시회를 열고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

대구일보 | 1999. 1. 20



△박노설 달성군의회의장은 21일부터 27일까지 제81기 임시회를 열어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올해 군정업무 추진계획과 군정질문을 실시할 예정.

영남일보 | 2000. 2. 28

지하철 옥포까지 연장 건의

달성군의회

대구 달성군의회는 28일 대구지하철 1호선을 달성군 옥포면까지 연장 건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 건의안에서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해 달성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물류비용 증가, 지역 농산물 수송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대구시 지하철 1호선을 시경계 지역인 구지면까지 연장 건설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특히 "4월 화원 명곡지구아파트 4천200가구, 화원 본리지구에 1천700가구의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조성계획중인 아파트 단지와 택지개발사업이 많은데다 갈수록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우선 지하철 1호선을 옥포면까지라도 연장 건설해 줄 것"을 대구시에 건의했다.

이에 앞서 달성군도 지하철 1호선을 대곡역에서 화원읍 설화리 구마고속도로IC 진입로까지 2.7㎞를 연장 건설해 줄 것을 대구시에 건의했다.

/김기억기자 kknews@yeongnam.com

대구일보 | 2000. 2. 1

동정



△박노설 달성군의회 의장은 1일 신일양로원 사랑의 집 입소자 달성경찰서 전의경 등을 방문 12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

영남일보 | 2000. 7. 3

의장 서병호·부의장 이정재

달성군의회 의장단 선출



서병호 의장



이정재 부의장

달성군의회는 지난 1일 오전 11시 제92회 임시회를 열어 제3대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서병호 의원(59·옥포면)과 이정재 의원(61·가창면)이 전체 의원 9명 전원으로부터 지지를 얻어 각각 의장, 부의장에 뽑혔다.

재선의원인 서 신임의장은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대구일보	2000. 7. 3

새얼굴

군민 뜻 받들어 복리증진 앞장



서병호 달성군의회 의장

달성군의회 제3대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서병호(59 · 사진) 의원은 "부족한 사람을 의장으로 선출해 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군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피력했다.

그는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의원간 다소 갈등과 반목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장단이 만장일치로 선출된 것은 의회의 화합과 단결을 보여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또 "의회운영은 화합과 단합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군정에 건전한 견제기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의장은 옥포초등, 영남중, 대륜고, 건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재선의원으로 현재 달성군자연보호협의회장과 달성산업 대표를 맡고 있다.

가족으로는 부인 권계선씨(59)와 1남을 두고 있으며 취미는 등산. 달성=윤용태기자 yyt@tgnews.co.kr

매일신문	2000. 10. 26

달성군의회 임시회

달성군의회 제95회 임시회가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리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달성군 이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군·면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군 종자피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 한다.

매일신문	2000. 10. 30

달성군청 이전지 논공읍 금포리 선정

1만8천평 내년 본격 추진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일대 1만8천여평이 달성군청 이전 예정지로 선정됐다.

군청 이전 용역을 맡은 영남대 연구팀은 30일 달성군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군청 이전 공모에 응한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적합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교통·인구중심성과 행정 연계성, 지역 환경성 등에서 우위를 보인 논공읍 금포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달성군은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군청 논공읍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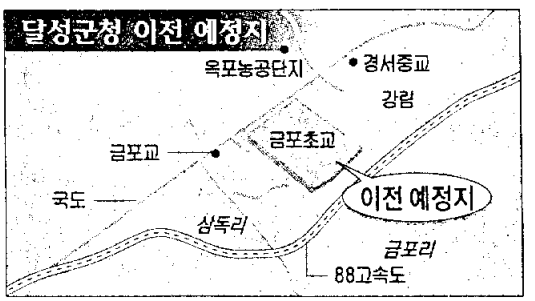
논공읍 군청유치위원회는 공모신청을 하면서 금포리 1만8천여평 부지중 1만1천평을 무상 기부채납하기로 결정, 다른 3개 공모지와 차별화를 보였다.

이전 예정지는 금포초교 인근의 임야로, 지주 10명이 기부채납 결정에 동의했다.

달성군과 군의회는 지역간 갈등 등 군청 이전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 하기위해 이전 적지 1곳만을 선정해 주도록 용역팀에 요청했으며, 군의원 9명 전원은 용역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현풍·유가·구지면으로 구성된 남부지역 군청유치위는 용역결과에 불만을 나타내며 강력 반발해 실제 군청 이전이 추진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영남일보 | 2000. 10. 30

달성군 청사 이전지 논공읍 금포리 추천

영남대 학술용역팀

달성군민들의 숙원인 달성군청사 이전 적지로 논공읍 금포리 일대가 선정됐다.

영남대 달성군청사 이전 적지 선정 학술용역팀(팀장 최외출 교수)은 30일 오전 달성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달성군청 이전 적지선정 연구(안) 공청회 및 최종보고회'에서 "논공읍 금포리가 후보지 공모에 응모한 4개 후보지 중 주민편의성, 지역중심성 등 15개항목 중 8개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점수를 받아 후보지로 추천했다"고 발표했다.

달성군청사 이전 적지 선정에는 △주민편의성 △지역발전성 △행정연계성 △지역상징성 △지역환경성 △이전경제성 등이 주요 평가기준으로 작용했다. 현행 자치행정구역을 전제로, 2020년을 목표연도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지난달 29일 실시된 달성군청사 및 유관기관 이전 후보지 공모에는 논공읍 금포리를 포함해 화원읍 설화리, 현풍면 중리, 유가면 금리 등이 응모했다.

논공읍 금포리는 국도5호선과 구마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어 접근성, 지역중심성 등에서 다른 응모지역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 지역 주민들이 1만여평의 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군청 이전 적지로 결정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기억기자 kknews@yeongnam.com

달성군청 이전지는 대구시의 협의와 달성군의회의 조례개정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달성군은 이날 달성군청사 이전 적지가 선정됨에 따라 군의회 의결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내년도 본예산에 군청사 부지매입비, 기본설계비 등으로 50여억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군청사 이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달성군청사는 1969년 이후 현재의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위치, 달성군내 9개 읍·면을 관할하는 데에 큰 불편을 겪어왔으며,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달성군청사 이전지에서 제외된 다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어 달성군청사가 이전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우려되고 있다.

대구일보	2000. 12. 4

달성군의회 제97회 정례회

달성군의회는 오는 20일까지 20일간의 회기로 제97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등에 대해 심의 · 의결한다.

한편 군은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일반회계 1천137억2천만원, 특별회계 140억8천만원 등 모두 1천278억원을 의회에 상정했다.

달 성 = 윤 용 태 기 자 yyt@tgnews.co.kr

영남일보	2000. 12. 6

「군청사 이전」 탈락 반발 드센데…

달성군의회 "앞으로 골치야"

조례개정안 등 처리 진통 예상
일부의원 주민 「압력」에 "난감"

달성군의회가 개원이후 최대 격랑을 맞고 있다.

최근 달성군이 군청사 이전 세부 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달성군청사 이전사업과 관련된 예산안과 조례 개정안 등이 달성군의회에 상정되거나 상정을 앞두고 있어 군청사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부의 공(功)이 달성군의회로 넘어왔기 때문.

지난 10월말 달성군청사 이전 적지로 논공읍 금포리 일대가 선정되자 현풍·유가·구지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이 군청 이전 용역 결과에 반발하며 그 책임 상당 부분을 지역 출신 군의원들에게 돌리고 있어 군청사 이전 관련 사안을 결정해야하는 군의원들을 더욱 부담스럽게 하고 있다. 용역 결과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군의회에서 군청사 이전 관련 예산이나 의안의 처리를 유보나 폐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반면 나머지 주민들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현재 개회중인 정기회에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군청사 이전 관련 예산 10억4천900만원(기본·실시설계비 9억6천900만원,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 5천만원) 처리가 첫번째 난관. 통상 군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관행처럼 돼 왔으나, 지금은 사정이 크게 다르다.

전체 9명의 군의원 중 군청사 이전 용역 결과에 반대하는 지역 출신 군의원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예산 통과 저지를 요구받고 있고, 반대로 나머지 의원들은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 입장이다. 결국 군청사 이전 관련 예산이나 의안 의결은 사사건건 표결로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2월에는 군청사 이전에 아주 중요한 군청소재지 변경 조례 개정안이 기다리고 있고, 부지 매입비, 공사비 등 군청사 이전 관련 예산 등이 군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달성군의회 한 의원은 "왜 군청사 이전 사업에 동의해 주었는지 모르겠다. 요즘은 군청사 이전 관련 이야기만 나오면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기분"이라며 "그러나 어차피 이전을 결정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매듭짓는 것이 지역 발전과 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억기자 kknews@yeongnam.com

매일신문

2000. 12. 16

'용역결과 승복' 동의한 뒤 뒤늦게 반발

달성군의회 '소지역주의' 군청이전 예산부결 파문

주민들 "이랬다 저랬다 군민 우롱"

달성군의회 의원들이 군청 이전 용역결과에 전원(9명) 승복하기로 서명동의를 해놓고 막상 이전지가 논공으로 결정나고 탈락 지역의 반발이 있자 군청이전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는 쪽으로 돌아서 파문이 일고있다. ●관계기사 21면

군의회는 1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군청이전 기본설계비 9억원에 대한 무기명 표결투표를 실시, 5대4로 부결시켰다.

이는 군의회가 「군청이전 적지 1곳만을 선정해주면 수용하겠다」던 그동안의 서명동의(2차례)와 협의과정(5차례)을 번복한 것이다.

예산 부결 직후 논공읍 출신 김판조 군의원과 군청 유치위관계자들은 「사기극」이라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김 의원은 회의장 의장석 집기를 집어던지고, 의장실에서 서병호 의장을 향해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며 탁자를 뒤집는 등 10여분동안 극한 행동을 하며 예산 부결의 부당성을 외쳤다.

논공읍 유치위 관계자들도 『의원전원이 서명동의해 군청 이전용역과 공모가 추진된 것 아니냐. 그것도 군민 상당수가 용역결과를 수용하고 있는데 주민대표기관인 의회가 이전예산을 부결시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의 행동에 가세했다. 일부 주민들은 『군민을 우롱하며 명분없는 결정을 한 저질 달성군의회는 즉각 해산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번 표결에서 이전 반대표는 논공읍 군청적지 선정결과에 반발해 온 현풍·유가·구지면 등 남부지역 군의원 3명이 주도하며, 탈락지역 의원 등 2명을 포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성군은 예산 부결과 관계없이 군청 소재지를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을 내년 1월 군의회에 상정, 관철시키기로 했다. 군은 『이전예산은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만 이뤄지면 군청이전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영남일보

2000. 12. 16

달성군청사 이전 "출발부터 난항"

郡의회 10억예산 전액 삭감案 가결

달성군의회가 15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달성군청사 이전 관련 예산 10억여원 전액을 삭감, 군청사 이전 사업이 시작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5면에 관련기사

군의회는 이날 기본·실시설계비 9억6천950만원, 공용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5천만원 등 군청사 이전 관련 예산 10억1천950만원의 반영 여부를 놓고 예산안 의결 직전까지 군의원들 간의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자, 군청사 관련 예산이 반영된 김판조 의원(논공읍) 외 2명이 제안한 예산안 수정안과 군청사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현근 의원(현풍면) 외 2명이 내놓은 수정안을 놓고 전체 9명의 군의원들이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 이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5대 4로 가결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던 군청사 이전 관련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군의회가 군청사 이전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방청석에 자리했던 논공읍 군청 유치추진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20여명의 주민들은 "군의원들이 극단적인 지역 이기주의와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 대다수 군민의 최대 숙원인 군청사 이전 사업을 막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군의원 전원 사퇴와 군청사 이전 관련 예산 삭감에 동의한 군의원들의 소명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김판조 군의원도 동료 군의원들의 명분없는 군청사 관련 예산 삭감을 비난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달성군 관계자는 "군청사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군청사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 중인 달성군청 소재지를 남구 대명동에서 논공읍 금포리로 변경하는 달성군청사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을 내년 1·2월쯤 군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억기자 kknews@yeongnam.com

매일신문 | 2000. 12. 16

달성군청 이전 차질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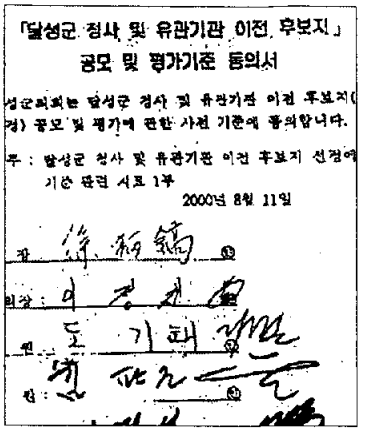
현풍면 등 반발 거세자 뒤늦게 예산 볼모 '반란' 조례 개정안처리 관심

달성군청 이전이 소지역 이기주의에 발목잡힌 군의회의 반대로 빨간불이 켜졌다.

후보지 공모를 실시할 때까지 「용역결과를 수용하겠다」고 공언하던 군의회는 이전지가 발표된 뒤 태도를 돌변해 15일 군예산을 심의하면서 군청이전 기본설계비를 삭감해버렸다.

지난 10월 논공읍 금포리로 이전지가 결정된 뒤 현풍면 등 남부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남부권 군의원 3명은 용역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팽개치고 군청이전 유보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객관적 평가로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일부 군의원들도 흔들리며 선정 결과의 꼬투리잡기로 돌아섰다.

14일 예산심의때 의원들은 무


「달성군 청사 및 유관기관 이전 후보지」
공모 및 평가기준 동의서

성군의회는 달성군 청사 및 유관기관 이전 후보지(
정) 공모 및 평가에 관한 사전 기준에 동의합니다.

두 : 달성군 청사 및 유관기관 이전 후보지 선정에
기준 관련 서로 1부

2000년 8월 11일

달성군의회 의원들이 달성군청 이전 후보지 공모 및 평가기준에 동의한다고 서명한 서류.

러 3시간 30분동안 이전예산 통과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인 뒤 표결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서병호 군의회 의장은 『용역결과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논공읍 군청유치위로부터 군청이전 예산안 처리가 부결로 나온데 대한 집중 추궁을 당하고도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일부 군의원들은 표결결과에도 책임회피로 일관, 기초의회 의원으로서의 자질론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소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예산안에 부표를 던져 놓고도 책임추궁을 피하려 찬성표를 던졌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예산안 표결처리 결과 군청이전을 줄곧 반대해온 남부권 군의원 3명외에 「다른지역」의 2명이 가세한 것으로 나타나자 「다른지역」출신 군의원들은 한결같이 『이전에 찬성했다』고 발뺌하고 있는 것.

달성군청 이전 문제는 또 한고비를 남겨두고 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군청 소재지변경 조례개정안 통과여부다. 집행부는 『예산은 추경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군청이전은 어려워진다』고 밝히고 있다. 달성군의회가 다시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매일신문 | 2001. 3. 14

달성군청 이전 확정

군의회 '논공 금포리' 통과

진통을 거듭하던 달성군청 이전이 14일 최종 확정됐다.

달성군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군청소재지(현 남구 대명11동)를 논공읍 금포리 일대로 변경하는 조례안과 군청 기본설계비 예산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 6대3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군청이전을 반대하며 군의회를 압박키위해 달성군청을 찾은 현풍면 등 남부지역 주민 300여명은 조례안이 통과되자 투표결과에 강력 반발했다. 강병서기자

경북일보 | 2001. 3. 15



대구 달성군청사 및 유관기관 이전문제로 14일 군의원들이 투표를 실시해 군청사를 논공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김우수기자
woosoo@kyongbukilbo.co.kr

달성군청 이전 계획대로 추진

군의회, 조례·예산안 통과… 2003년 완료 방침

'유치실패' 남부지역 의원 3명 사퇴서 제출

군민들간 대립으로 4개월 동안 진통을 겪던 달성군청 이전부지가 14일 최종 확정돼 군청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되게 됐다.

달성군의회는 제99회 임시회에 상정된 달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이전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무기명투표를 벌인 결과 가결 6표 부결 3표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달성군은 지난해 10월 논공읍 금포리로 청사이전을 상정한 뒤 4개여월 동안의 진통끝에 청사 이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오는 8월까지 청사 이전 기본설계를 마치고 하반기 중에 부지 매입과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거쳐 2002년 상반기에 착공해 빠르면 2003년 6월까지 청사 이전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임시회가 열린 군의회는 청사이전지로 선정된 논공읍민들과 이전을 반대해온 현풍면민 등 500여명이 몰려들었으나 충돌사태는 빚어지지 않았다.

의회의 의결이 있은 후 이전 반대운동을 벌여 온 현풍·유가·구지 등 남부 3개면주민 100여명은 청사 앞 주차장에 앉아 1시간 여동안 군수와 군의원 면담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풍 등 남부지역 군청유치위원회는 "남부 주민들의 뜻이 청사 이전과정에서 철저히 무시된 만큼 앞으로 지방세 납부 거부운동 등을 펼치고 일체의 군정에 협조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창림 논공읍 군청유치위원회장은 "의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그동안 보여온 갈등을 접고 군민 모두가 달성군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청유치에 실패한 남부지역 현풍·구지·유가면 소속 이형근, 이선용, 이팔오의원이 이날 오후 사퇴서를 제출했다.

김종엽기자

중앙일보 | 2001. 3. 15

달성군청 이전 군의회 통과

남부지역 유치위 반발… "지방세납부 거부할 터"

대구시 달성군 청사 이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군의회에서 통과돼 청사 이전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본지 3월 14일자 23면 보도>

달성군의회는 14일 오전 임시회에서 군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관련 예산안을 6대 3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의회 주변에는 군청이전 반대와 조속한 추진으로 의견이 갈린 주민들이 대거 몰려와 따로 집회를 열었으나 우려했던 주민들간 충돌은 없었다.

논공읍으로의 군청이전을 반대해온 현풍면 등 남부지역 주민들은 의회 의결후 의회 앞에서 군수·군의원 면담을 요구하며 1시간여동안 시위를 벌였다.

남부지역군청유치위원회는 이날 "주민들의 뜻이 무시된 만큼 앞으로 지방세 납부를 거부하는 등 군정에 협조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달성군은 올해 안으로 기본설계와 이전예정지 매입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중 예정지로 선정된 논공읍 금포리 일대에서 공사를 시작해 2003년 6월께 새로운 군청사를 완공할 계획이다.

정기환 기자

<einbaum@joongang.co.kr>

매일신문 | 2001. 3. 15



환호-농성 '두 모습' = 달성군청 이전이 14일 달성군의회에서 논공읍 금포리로 최종 확정되자 논공읍 추진위 주민들은 환호〈사진 위〉를 보낸 반면 현풍면 등 남부지역주민들은 군청 마당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 이채근기자

지역분열 봉합·재원마련 과제

군의원·이장 집단사퇴…남부 거센 반발

달성군청 이전 확정

달성군의회가 14일 군청이전 조례를 통과시켜 군청이전이 확정됐다. 그러나 △남부 지역 반발 △재원 마련 △부지 무상제공과 협의보상 문제 등 적잖은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우선 현풍면 등 남부지역의 거센 반발을 무마해야 한다. 이날 달성군청에 집결한 주민 300여명은 집행부와 군의회를 비난하며 강력대응을 선언했다. 현풍면 이장 28명이 15일 긴급회의를 갖고 집단사표 제출을 검토하고 있고 남부지역 군의원 3명도 군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446억원에 달하는 군청이전 사업비 확보도 난제다. 달성군은 시비 40억원, 군비 334억원, 지방채 발행 72억원 등으로 군청이전 재원을 마련키로 했으나 군비확보가 쉽지 않다. 군비중 148억원을 현 청사와 구 농업기술센터 매각대금으로 잡고 있으나 건설경기 부진으로 기술센터는 3년째 팔리지 않고 있으며 청사매각 역시 쉽지않을 전망이다.

이전부지 1만5천평중 1만평은 소유자 기부채납 형태로 무상제공받기로 했으나 5천평은 보상매입키로 해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기부채납 토지 소유자 12명은 1만평을 이전지 인근의 금포택지개발지구 3천700여평과 맞바꾸는 데 동의, 인감과 동의서를 제출하고 공증절차까지 마쳐 무상제공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는 상태. 그러나 5천평을 소유한 18가구가 평당 30만~40만원씩 보상받으면 땅을 무상제공하는 금포택지개발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달성군 관계자는 『재원조달은 해결될 사안이나 지역간 분열이 가장 큰 난제』라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영남일보 | 2001. 4. 27

대구시에 구지공단 매각 촉구



서병호 달성군의회 의장은 26일 오전 군의원 7명과 함께 대구시를 방문, 쌍용자동차 구지공단 매각과 관련한 추진 상황 설명을 듣고 구지공단의 조속한 매각 계약 체결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대구신문 | 2001. 7. 12

'골재 판매' 市교부금 "늑장" 달성군 예산운용 어려움

郡의회 제도개선 요구

대구시가 골재 판매에 따른 교부금을 제때 내려보내지 않아 달성군이 공사가 끝난 하천 개·보수사업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예산 운용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행 대구시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는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군에 함께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50%를 해당 구·군에 교부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골재 채취사업을 하고 있는 달성군은 골재원석 판매 대금 전액을 대구시에 매달 불입하고, 그 금액의 50%를 다시 교부받아 치수사업특별 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예산은 하천 개·보수 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군은 지난해 9억3천여만원, 올해 지난달 말 현재까지 7억5천500여만원의 원석 판매 대금을 대구시에 꼬박꼬박 불입했다. 그러나 시는 현재까지 예산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원석 판매대금 중 교부금 4천여만원, 올해분 교부금 3억7천800여만원 등 4억여원을 아직까지 내려 보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원석판매 대금 교부가 늦어지면서 달성군이 올해 초 조기 발주해 이미 공사가 마무리 된 하천개·보수 사업 공사비 3억여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업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등 당장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달성군의회는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자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대구시를 강하게 질타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선용 군의원(유가면)은 "대구시가 빠른 시일내에 원석 판매대금 교부금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앞으로 군이 원석 판매 대금을 대구시에 납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군의회 결의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부 받을 원석 판매 대금의 50%를 군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50%를 대구시에 납입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달성군 관계자는 "원석 대금 교부 방법 개선을 지속적으로 대구시에 건의하고 있으며, 대구시로부터 8월중에 교부되고 있지 않은 원석 판매 교부금을 내려 보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기억기자 kknews@yeongnam.com

영남일보 | 2001. 7. 19

달성군의회 정례회

【달성】 달성군의회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03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주요안건으로는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7건이 의안상정된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가 7일에 걸쳐 실시되며 군정전반에 대한 잘못된 분야를 지적, 시정요구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올바른 군정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강원태·신동술 기자
〈kwt·sds@kyib.co.kr〉

"도시환경 변화 장애물 대구교소도 이전 촉구"

달성군의회 건의문 전달

매일신문 | 2001. 7. 24

달성군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위치한 대구교도소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1968년 교도소 준공당시에는 화원 주민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주변 건물도 단층에 불과했으나 33년이 지난 현재 도시환경 변화로 교도소는 대규모 아파트, 각급 학교, 시장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라면서 『도시균형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이전은 마땅히 추진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영남일보 | 2001. 7. 24

대구교도소 이전 촉구

달성군의회 건의문 채택

달성군의회는 24일 오전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대구교도소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구교도소는 혐오시설로서 정신적 피해는 물론 군민의 정서 함양에 많은 지장을 주었다"며 "대구교도소 이전은 과거 형무소라는 잔존 의식을 떠나서라도 도심속 교정시설의 교외 이전 계획 차원에서 뿐 아니라 지역민의 간절한 소망인 만큼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억기자

영남일보 | 2001. 7. 30

툭하면 설계변경 예산 날린다

달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당초보다 공사비 크게 늘어 매년 10억원 추가 부담

달성군이 잦은 공사설계 변경으로 매년 10억원이상의 예산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달성군의회가 실시한 달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달성군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295건의 공사를 발주했고, 이 가운데 1천만~5천만원미만 공사 20건, 5천만원이상 공사 45건을 설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설계변경을 할 경우 대부분 당초 계약금액보다 공사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공사는 공사비의 3배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다. 화원 기남지 용수로 정비공사는 당초 공사비가 1천930만원이었으나 공법변경 등을 이유로 설계가 변경돼 공사비가 5천5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고, 달성산업단지 오수관로 개체공사도 당초 3억4천200여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줄어드는 것은 극히 드물고 줄어들더라도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에 그치고 있다. 화원천내 아파트집단지구 인도 개체공사의 경우 당초 공사비 5천90만원에서 설계변경으로 41만원이 줄어들었다.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은 추가시공, 연장 시공, 공법 변경 등으로 분석됐다.

결국 잦은 설계 변경이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칫 공사업자가 공사 입찰시 사후 설계변경을 염두에 두고 저가로 응찰해 낙찰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김기억기자 kknews@yeongnam.com

매일신문 | 2001. 9. 10

"그린벨트 해제 지역 형평성 잃어"

달성군의회 반발

대구시 달성군의 박경호 군수와 서병호 의장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 9명은 『정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방침은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 오는 11일 국회로 한나라당 대구·경북출신 의원들을 방문해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달성군은 지역 의원들에게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임야가 많은 지역도 환경평가 기준에 의거, 일괄 적용하는 것은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한 것이며 해제기준 역시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호이상 취락지구로 정함으로써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달성군은 『달성군의 그린벨트가 대구시 전체의 46%나 되는데도 해제된 것은 2%에 불과하다』며 △전체 그린벨트 면적 중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이상인 경우 임야를 제외한 전체면적을 해제시키거나(1안)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대지로 돼 있는 토지는 전면 해제시켜야 한다는 것(2안)등의 대안을 제시, 최소한 10%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영남일보 | 2001. 9. 10

그린벨트 해제 완화 건의키로

달성군·의회

달성군과 달성군의회가 최근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조성안이 지역특성을 무시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경호 달성군수와 서병호 군의회 의장을 포함한 군의원 9명은 11일 국회로 박근혜 부총재 등 대구출신 의원 7명을 방문해 이의 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달성군과 군의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집단취락지를 일률적으로 20호 이상으로 정하고 주거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경계지점에 있는 10호 미만 취락지는 제외시켜 해당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이번 조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달성군내 개발제한구역은 농촌지역이어서 20호미만 취락이 많이 산재해 있다.

해제예상면적 역시 달성군은 전체 면적의 2%(3.80㎢)에 그쳐 대구시 전체 평균 6.75%(28.23㎢)와 동구 17.4%(17.82㎢), 수성구 10%(4.33㎢), 달서구 8%(0.89㎢)에 훨씬 못 미쳐 지역간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박 군수와 군의원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중 임야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70%이상 되는 지역은 임야를 제외한 전체면적을 해제하고, 개발제한구역 조정이후 도로 등 공공시설 건설 등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주거지가 잠식된 경우에는 이 면적만큼 인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줄 것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기억기자 kknews@yeongnam.com

경북매일 | 2001. 9. 12

개발제한구역 해제 확대 건의

달성군수등 국회 방문지역의원과 면담

박경호 달성군수와 서병호 군의장을 비롯 군의회 의원 9명 등은 11일 오전 국회를 방문, 박근혜 의원등 대구.경북출신국회의원 5명과 면담을 갖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확대를 건의했다.

이날 박 군수 등은 "정부의 해제방침은 대구시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의 46.4%를 차지하고 있는 달성군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지역별형평성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들은 ▲임야가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70% 이상 되는 지역은 임야를 제외한 전체 면적을 해제할 것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대지로 돼 있는 토지는전면 해제할 것 ▲고속도로 등으로 주거지역이 잠식된 곳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거기능을 회복토록 지침을 완화할 것 등을 건의했다.

달성/하종회기자

경북일보 | 2001. 11. 28

사이버민원실 해킹 대책 있나

달성군의회 군정질의

대구 달성군의회는 제 106회 임시회에 박경호 군수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군정질의를 벌였다.

▲이현근의원(현풍면) =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남에 따라 업무공백이 우려된다. 이로인해 군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향후 대책은 있는지.

또 화원읍사무소내 중대본부 사무실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전면 실시를 앞두고 많은 업무가 군청으로 이관되는 것을 충분히 검토된 사항인지.

▲김판조의원(논공읍) =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전자우편 ID보급 등 인터넷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전에 개인정보 노출 및 군정 자료유출, 해킹 등에 대한 안전대책은 수립됐는지.

또한 홈페이지 운영상 주민의 알권리를 확충하고 정보공유를 위해 주요 투자사업 현황의 인터넷 게시와 시책발굴 코너를 개설할 의향은 있는지.

▲이경식의원(화원읍) =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청결유지조치 미이행 과태료는 도농복합 지역 실정에 맞지않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군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김종엽기자
kimjy@kyongbukilbo.co.kr

경북일보 | 2001. 11. 15

달성군의회, 22일부터 임시회

대구 달성군 의회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제10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달성군 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공무원 복무규정 중 개정 조례안과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등 4가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김종엽기자
kimjy@kyongbukilbo.co.kr

대구신문 | 2001. 11. 30

달성군의회 임시회 개최

【달성】달성군의회는 22~28일까지 7일간 제106회 임시회를 열어 주요사업장 점검 10개소 및 달성군의회포상규정, 군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4건의 조례안과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원안 가결하고, 2001년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았다.

특히 주요사업장점검은 시행중인 주요사업장과 농공단지 유망중소기업체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해 추진상 문제점 파악과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역개발촉진 및 군민복리증진에 기여했다.

신동술 기자
〈sds@idaegu. co. kr〉

경북일보
2001. 12. 13

"농업경영인회관 꼭 지어야 하나"

달성군의회 군정질의

대구시 달성군의회는 12일 제107회 정기회 10차 본의회를 열고 각 실 ·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예산안에 대한 군정질의를 실시했다.

▲이경식의원(화원읍)=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달성교양강좌는 영농철엔 참여율이 아주 낮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개최횟수를 늘린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라.

▲도기태의원(다사읍)= 관내 옥포 · 구지 논공단지 입주업체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총 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융자금 원금 및 이자 미회수금 현황과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은 수립됐는지.

▲이정재의원(가창면)= 농업인들간 화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내 사무공간을 활용해도 되는데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업경영인 회관을 꼭 건립해야 되나.

▲박노설의원(하빈면)= 군청사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청 인도블럭 교체 및 통신선로 개체, 사무용 집기 구입 등에 4천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김종엽기자
kimjy@kyongbukilbo.co.kr

경북일보 2001. 12. 20

쓰레기 발생량 감소대책 따져

달성군의회 조례개정안 심사

대구 달성군의회는 19일 제 107회 정례회 제16차 본회의를 열고 제증명 수수료 징수 등 4개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김판조의원(논공읍)=쓰레기봉투 수입금이 당초 예산보다 1억6천만원이 증가한 9억702만원으로 상정된 것은 세입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겠지만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향후 쓰레기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또 자연휴양림 입장료 예상 수입액이 당초 1억7천만원보다 4천1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주요 원인은.

▲이팔호의원(구지면)=약산온천 개발계획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을 추가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이유는.

▲박노설의원(하빈면)=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774건의 단위사무 중 49.6%에 달하는 384건이 군으로 이관됨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업무이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은 있는지. 김종엽기자
kimjy@kyongbukilbo.co.kr

약산온천 설계용역비 전액 삭감 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작용 대책 밝혀라

경북일보 2001. 12. 21

달성군의회 추경예산안 의결

대구 달성군의회는 20일 제107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2002년도 예산안과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4건을 심의 · 의결했다.

이날 달성군의회는 2002년 예산안 1천333억7천만원을 수정 가결하는 한편 2001년 제 4회 추가경정 예산안 43억2천여만원도 원안 가결했다.

또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사무위임 등 4건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김종엽기자
kimjy@kyongbukilbo.co.kr

대구신문	2002. 2. 5

달성군의회 전·의경 위문품 전달

【달성】 달성군의회는 민속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군관내에 있는 가창 신일양로원과 논공 대구가톨릭 치매센터등 사회복지시설 2개소와 명절에도 집에 가지 못하고 교통정리 및 민생치안에 노고가 많은 경찰서 전·의경등에게 라면, 화장지 등 생필품 200만원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훈훈하고 뜻깊은 명절이 되기를 당부했다.

경북일보	2001. 12. 26

농업 대체산업 유치 주력

우리 구정 의원 문제

서병호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



"농업정책이 정부의 관심밖 산업으로 밀려나고 있는 가운데 도농복합지역인 달성군민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달성군의회 서병호(60)의장은 최근 농산물값 하락에다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수입시장 개방 예고 등으로 농촌환경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대체 산업을 유치하는데 주력을 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따라서 근 10년째 늦잡치고 있는 위천공단 지정 문제와 달성지역 골프장 유치를 위해 군민들의 여론을 결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위천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단지 지정 여부가 정치적으로 비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건축제한 등 장기 도시계획미집행에 따른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낙동강 등 3대강 특별법 종합관리로 공단 지정을 할 수 없다면 이에 걸맞는 대안제시가 대구시 차원에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따라서 국가산업단지 미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풍면 신도시 축소조정 또는 대체 산업유치 등을 대구시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서 의장은 강조했다.

서 의장은 특히 점점 위축되고 있는 도농복합지역 회생 발판 마련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및 절대농지를 제외한 농지활용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최근들어 구체적인 개발 방안이 마련된 달성 골프장 유치를 위해 군민들의 역량을 군의회 차원에서 모아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일부 군민들의 반대 움직임도 있지만 골프장이 들어서는 초곡리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있는 만큼 지방세수 증대 및 지역민 취업률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유치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구지공단과 관련, "쌍용자동차로 부터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부지를 매입한 만큼 지방산업단지로의 조기개발을 위해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엽기자
kimjy@kyongbukilbo.co.kr

경북일보	2002. 1. 16

위천공단 지정·골프장 유치 군민역량 모아야

구지공단 조기 개발 사업추진 적극 협조키로

달성군행정기구설치 개정조례안 의결

【달성】 달성군의회는 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15일 의결했다.

이로써 달성군은 본청에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등 3개국이 신설되면서 서기관이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고, 기획감사담당관(사무관), 문화공보담당관(사무관)으로 각각 개편된다.

또한 수도법 개정에 따른 상수도 업무일부가 이관되면서 정원이 3명 늘어나 이번 조례안 의결에 따른 직원수가 총 6명이 늘어남으로써 정원이 588명에서 594명으로 증원된다.

신동술 기자
〈sds@idaegu.co.kr〉

경북매일 | 2002. 3. 2

지방의회 결산(10)

달성군의회

군청사 이전 확정에 주민들 호평

농수산물 유통센터 유치등 지역개발 · 소득증대에 노력

'위천단지' 조성에 박차도

제3대 달성군의회는 지난 98년 7월 10일 개원후 군민의 최대 숙원인 군청사 관내이전을 확정해 대의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군민들의 칭송을 받고있다.

군의회는 또 새로운 선진물류유통센터를 유치한 것을 비롯 달성문화원과 군민독서실을 건립 전원문화도시의 기틀을 마련해 대구광역시의 위성도시로 발돋움하고 대구시의 산업구조 개편에 있어서도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있다.

제3대 달성군의회 전반기엔 의장 박노설 의원, 부의장 이팔호 의원이, 후반기 의장단에는 의장 서병호 의원, 부의장 이정재 의원이 선출돼 의원 9명 모두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개원이래 6회의 정례회와, 26회의 임시회등 총 32회 303일간의 회기를 효율적으로 운영, 군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환경정책 지역개발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했다. 이기간동안 조례안 155건, 예산결의안 20건, 동의안 5건, 건의안 4건, 기타 65건등 총 249건의 안건을 처리 군민의 삶의 질향상에 기여해 왔다.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속에서도 집행부의 행정능률을 저해하지 않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정, 투자효과를 높이고 지역간 균형개발과 알뜰 재정편성을 유도 했고, 장애인 작업장 건립,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지원등 복지군정이 추진 되도록 뒷받침했다. 지역의 극심한 산업용지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구지지방산업단지의 조속추진, 고부가 첨단산업 유치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기하기 위한 위천국가산업단지의 지정촉구,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대구교도소 이전 촉구 건의 등을 각계를 상대로 펼치는등 지역개발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해왔다.

군의회는 또한 6회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총 538건의 자료를 감사한 결과 불합리한 사항 60건을 지적, 과감히 시정조치토록 했고 49건은 건의촉구 하는등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사기능을 성실히 수행했으며 제도적인 모순점 등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 예방위주로 감사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면에 계속〉

달성/하종회기자

이밖에 7회에 걸쳐 93개 주요사업장을 현장점검 미비점 등을 시정토록 독려하고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등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집행부와 의회의 효율적인 관계와 의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매주 금요일 간단회를 개최, 군정현안에 대해 보고 받고 토론하는 등 주민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 지역주민이 바라는 모범군의회상을 정립했다는 평가도 받고있다.

또 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운영기법,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향등에 관한 연수를 연 2회실시, 한단계 높은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앞으로 달성군의회는 중남부권 지하철1호선 연장, 대구 부도심권인 현풍 신도시 개발, 구지지방산업단지조성, 위천국가산업단지정, 서북권의 전원도시 육성, 동부권의 관광위락도시로서의 균형개발을 추진과제로 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21세기의 지식과 정보, 전통문화와 인간중시의 새로운 가치관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고 지역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간다는 의정방침을 수립, 추진에 가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달성군의회 의원명단:의장 서병호, 부의장 이정재, 의원 이경식, 의원 김판조, 의원 도기태, 의원 박노설, 의원 이현근, 의원 이선용, 의원 이팔호

매일신문	2002. 3. 4

화원·다사읍 군의원 1명 늘어

인구 3만 이상 선거구 분할

행자부 관련법 개정

인구 3만명이 넘는 시·군의 읍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출 기초의원이 1명씩 더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의원 정원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구 3만명이 넘는 읍의 기초의원을 1명 증원하고, 해당 지역의 선거구 분할 기초작업을 실시토록 일선 지자체에 지시했다. 선거구 분할에는 지난달 28일 기준인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달성군의 경우 화원읍과 다사읍은 종전에 각각 1명이던 군의원이 2명으로 늘어나며 논공읍은 읍 인구가 3만명이 되지 않아 제외됐다.

달성군 관계자는 『선거구는 지역 분할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대구신문	2002. 3. 14

달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달성】 달성군의회는 12~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0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주요안건으로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외 6건의 조례안은 물론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의결하고 군정전반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올바른 군정방향을 제시하게된다.

제 6절 의사당 및 사무과 직원현황

1. 군의회 의사당

○ 위　　치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1동 1583번지 내

○ 건물규모 : 지하1층 지상 3층

○ 층별 사무실 현황

- 지하 : 문서고
- 2층 : 의장실(14.5평), 부의장실(11평), 의원실(34평)
  의회사무과(18평)
- 3층 : 본회의장(57평), 소회의실(26.6평)

2. 사무과 직원현황

직 위	성 명	재 직 기 간	비 고
사무과장	정 만 호	1995. 8. 25~1999. 1. 5	
〃	이 덕 휘	1999. 6. 1~1999. 8. 20	
〃	최 재 희	1998. 8. 21~2002. 1. 17	
〃	류 승 구	2002. 1. 18~현재	
전문위원	최 종 열	1997. 7. 1~1999. 1. 5	
〃	김 태 운	1999. 6. 1~2000. 1. 14	
〃	문 을 희	2002. 1. 18~현재	
의사담당	이 봉 용	1995. 6. 8~1998. 9. 20	
〃	김 종 현	1998. 9. 21~2001. 3. 18	
〃	조 병 로	2001. 3. 19~현재	
직원	곽 국 일	1995. 3. 9~1999. 12. 31	
〃	박 금 상	2000. 1. 1~2001. 3. 18	
〃	정 동 규	2001. 4. 1~현재	
〃	김 재 성	1997. 2. 21~현재	
〃	오 종 식	1991. 10. 11~현재	
〃	이 칠 암	1991. 7. 1~현재	
〃	석 대 영	1992. 7. 15~현재	
〃	배 진 영	1994. 11. 14~현재	
〃	이 홍 련	1993. 2. 18~1999. 12. 31	
〃	성 경 희	1995. 9. 21~현재	

제7절 달성군 일반현황

1. 기본현황

구 분		계	화원읍	논공읍	다사읍	가창면	하빈면	옥포면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면적(㎢)		427.28	27.67	43.84	36.65	111.27	36.72	48.95	24.65	57.70	39.76
세대수		52,617	15,467	10,064	9,641	3,440	1,919	4,011	4,389	1,619	2,067
인구(명)		159,351	50,128	27,244	31,661	9,959	5,322	12,109	13,140	4,433	5,355
성별	남	81,686	25,326	14,289	16,211	5,013	2,831	6,309	6,678	2,258	2,771
	여	77,665	24,802	12,289	15,450	4,946	2,491	5,800	6,462	2,175	2,584
인구밀도		373.6	1811.6	621.4	863.9	89.5	144.9	247.4	533.1	76.8	134.7
외국인수		2,135	182	1,437	117	10	76	131	74	12	96
법정리수		95	6	9	11	12	9	9	11	13	15
행정리수		227	42	25	28	24	19	16	25	20	28
반수		1,378	369	171	262	117	62	126	127	63	81
주택수(호)		44,606	13,830	7,119	9,397	2,767	1,505	3,339	9,729	1,349	1,571
산림면적(헥타)		26,173	1,685	2,075	1,996	9,470	1,814	2,710	809	4,041	1,573
가축사육(가구/마리)		1,362/9,219	56/176	86/726	37/130	104/737	59/1,111	179/1,884	124/551	245/996	472/2,905

2. 주요통계지표

구 분	단 위	수 치	내 용
위 치	동단(가창면 상원리 128° 42′) 서단(구지면 도동리 128° 21′) 남단(구지면 대암리 35° 36′) 북단(하빈면 대평리 35° 56′)		
공 무 원	인	607	행정공무원1인당 주민수 264명
예 산	백만원	152,296	2002.3.18 제1회추경예산
일반회계	백만원	145,326	〃
특별회계	백만원	6,970	〃
지방세부담	1인당	347,840원	가구당 1,028,910원/2001년예산기준
주택보급율	%	91	
도로포장율	%	92	미포장 시군도 36km
상수도보급율	%	89.6	
자 동 차	대	52,940	인구3인당 1대
전화보급율	%	120	
학 교	개교	37	초등 18, 중등10, 고등9
학 생	인	27,077	
취업인구	인	49,367	관내기업체 종사자수
제조업체수	업체	2,737	
일반폐기물관리구역	km^2	427	군내 전역 1일당/109톤
연평균기온	℃	14.9	1월평균 1.1℃, 8월평균 26.1℃
강 수 량	mm	1,318.3	
경지정리율	%	88	
의 료 기 관	1개당	1,719명	의료인력 1인당 380명

주) 2001년동 통계연보 기준/ 공무원수, 예산, 자동차는 2002년4월말기준

3. 예산규모 변동추이

(단위:백만원, %)

구 분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계		155,513	151,319	163,357	172,063	152,296
	일반회계	144,076	140,385	150,958	152,257	145,326
	특별회계	11,437	10,934	12,399	19,806	6,970
증 감 율		-	△ 4,194	증 12,038	증 8,706	△ 19,767
재정자립도		53.8	56.2	50.5	46.2	39.9

주) 2002년도는 제1회추경예산임.

4. 국 · 공유재산 현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필지수 내역
계	2,726	1,264,260	
국유재산	1,495	882,618	전359, 답355, 대지279, 임야98 하천110, 묘지72, 도로137, 잡종지17, 유지9, 수도용지5, 구거17, 제방30, 공장용지4, 종교용지2, 과수원1
시유재산	50	22,670	전19, 답19, 대지5, 임야2, 공장용지3, 공원1, 유원지1
군유재산	1,181	358,972	화원28, 논공293, 다사6, 가창81, 하빈43, 옥포17, 현풍43, 유가66, 구지604

주) 2001년도는 국,공유재산관리대장 참고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 지방세

(단위 :백만원)

구분 / 세목별		2002년도 목표액	2001년도 목표	2001년도 징수	전년도 목표액 대비 (%)
계		67,321	53,467		126
시세	소계	34,028	22,476	53,915	151
	취득세	10,082	7,876	20,697	128
	등록세	13,852	12,425	7,737	111
	면허세	90	50	11,148	180
	레저세	7,400	-	80	-
	공동시설세	1,151	1,153	-	100
	지역개발세	14	15	1,133	93
	과년도수입	1,439	957	9	150
군세	소계	33,293	30,991	590	107
	주민세	6,812	5,610	33,128	121
	재산세	2,300	2,268	6,655	101
	자동차세	6,903	7,134	1,510	97
	주행세	1,980	1,354	2	146
	농업소득세	30	2	7,284	1500
	담배소득세	6,775	6,635	3,323	102
	종합소득세	3,493	3,404	2,640	103
	도시계획세	2,536	2,206	1,930	115
	사업소세	1,974	1,738	1,048	114
	과년도수입	490	640		77

○ 세외수입

(단위 :백만원)

구분 / 세목별		2002년도	2001년도		전년도 목표액 대비 (%)
			목 표	징 수	
합 계		13,303	23,941	24,016	54
경상적 세외수입	소 계	6,427	7,521	7,596	85
	재산임대수입	128	123	123	104
	사용료수입	505	459	616	110
	수수료수입	1,427	1,793	1,793	82
	사업장생산수입	2	2	2	100
	징수교부금	1,795	1,664	1,582	108
	이자수입	2,525	3,480	3,480	73
임시적 세외수입	소 계	6,603	16,420	16,420	40
	재산매각수입	70	5,072	5,072	1
	순세계잉여금	5,600	8,997	98,997	62
	이월금 (국시비잔액)	1	996	996	-
	융자금원금수입	5	20	20	25
	부담금	30	20	20	150
	잡수입	770	949	949	81
	과년도 수입	127	366	366	35

6. 자동차 등록 및 주차장 현황

○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대)

계	승 용 차	승 합 차	화 물 차	특 수 차
52,940	34,145	4,810	13,814	171

주) 2002년 5월20일 현재기준

○ 주차장 현황

구분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유료	무료	유료	무료	공영	민영
개소	1,428		23	4	14	27	1,360
면수	16,692		2,188	428	1,256	421	12,399
면적(m^2)	202,971		25,162	4,922	14,444	5,262	153,181

주) 2002년 4월30일 현재기준

7. 학교 및 유치원 현황

구 분	학교수	학급수	학 생 수			교직원수	
			계	남	여	교원수	직원수
계	60	677	27,077	14,288	12,789	1,119	231
유 치 원	24	51	1,536	786	750	71	14
초 등 학 교	18	398	16,000	8,803	7,197	524	116
중 학 교(국, 공립)	7	79	3,298	1,555	1,743	185	23
중 학 교(사립)	3	18	665	557	108	40	12
일반계고교(국,공립)	3	48	1,980	245	1,735	108	32
일반계고교(사립)	3	60	1,427	1,544	883	127	14
실업계고교(국,공립)	1	7	255	119	136	19	7
실업계고교(사립)	1	15	592	592	0	33	11
산업체 특별학급	1	1	324	87	237	12	2

8. 문화재 현황

구 분		수량	중요문화재 내역
총 계		26	
국가지정문화재	계	6	
	보 물	4	道東書院詞堂附 檣桓, 龍淵寺石造械檀 太古亭, 玄風石冰庫
	중요민속자료	2	妙洞朴燁氏 家屋, 達城 趙吉芳家屋
지방지정문화재	계	14	
	유형문화재	11	陶谷齊, 孝宗御前喜雨詩會 人物圖, 南地藏寺靑蓮庵, 龍鳳洞石佛立像, 霞騖亭, 銘心寶鑑版本, 李鐵堅神道碑, 忘憂堂先生文集册板. 附倡義錄册板, 存齋先生實紀册板, 龍淵寺極樂殿, 大見寺址3層石塔
	기 념 물	1	禮淵書院
	민 속 자 료	1	南平文氏本里世居地
	무형문화재	1	河香酒
문화재자료		6	玄風鄕校大成殿, 龍淵寺3層石塔, 玄風郭氏12旌閭閣, 二老亭, 小溪亭, 尼陽書院

9. 법정동 및 행정동

읍 면	법 정 리	행 정 리
계	95리	227리
화원읍	川內, 九羅, 城山, 舌化, 檜谷, 本里	川內(1~15), 九羅(1~7), 城山(1~8), 舌化(1~2), 檜谷(1~6), 本里(1~4)
논공읍	蘆耳, 今圃, 三狸, 渭川 上, 下, 南, 北, 本里	蘆耳(1~2), 今圃(1~3), 三狸(1~2), 渭川, 上, 下, 南(1~8), 北(1~7)
다사읍	伊川, 達川, 朴谷, 坊川 鋤齋, 世川, 竹谷, 梅谷 釜谷, 汶陽, 汶山	伊川, 達川, 朴谷, 坊川, 鋤齋(1~6), 世川, 竹谷(1~5), 梅谷(1~8), 釜谷, 汶陽(1~2), 汶山
가창면	龍溪, 梧, 亭垈, 冷泉, 杏亭, 上院, 丹山, 大逸 蛛, 玉粉, 三山, 友鹿	龍溪(1~5), 梧(1~2), 亭垈(1~2), 冷泉(1~2), 杏亭(1~2), 上院(1~2), 丹山, 大逸(1~2), 蛛(1~2), 玉粉, 三山, 友鹿(1~2)
하빈면	霞山, 妙, 基谷, 大平, 武等, 縣內, 甘文, 桐谷, 鳳村	霞山(1~2), 妙(1~2), 基谷(1~2), 大平(1~2), 武等(1~2), 縣內(1~3), 甘文(1~2), 桐谷(1~2), 鳳村(1~2)
옥포면	本里, 新塘, 橋項, 江林, 松村, 干京, 奇世, 盤松, 金興	本里(1~2), 新塘, 橋項(1~3), 江林(1~2), 松村, 干京, 奇世, 盤松(1~2), 金興(1~3)
현풍면	上, 中, 下, 釜, 城下, 院橋, 自慕, 午山, 池, 大, 新基	上(1~2), 中(1~4), 下, 釜(1~4), 城下(1~3), 院橋(1~3), 自慕, 午山(1~2), 池(1~2), 大(1~2), 新基
유가면	陰, 陽, 雙溪, 草谷, 龍, 鳳, 上, 琴, 油谷, 道義 佳泰, 寒亭, 本末	陰, 陽, 雙溪(1~2), 草谷, 龍鳳(1~2), 上, 琴(1~2), 油谷(1~2), 道義(1~2), 佳泰(1~2), 寒亭(1~2), 本末
구지면	倉, 鷹岩, 高峰, 坪村, 加川, 禮峴, 柳山, 牧丹, 臺岩, 內, 花山, 修, 징, 烏舌, 道東	倉(1~4), 鷹岩(1~3), 高峰, 坪村(1~2), 加川, 禮峴, 柳山, 牧丹(1~2), 臺岩(1~2), 內(1~2), 花山(1~2), 修(1~3), 징, 烏舌, 道東(1~2),

주) 2002년 6월30일 현재

10. 기업체 현황

○ 업종별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 종사자수

구 분	계		규모별				조직형태별			
			5명 미만	5-19명	20-299명	300명 이상	개인 사업체	회사 법인	기타 법인	비법인 단체
합 계	사업체수	9,400	7,769	1,309	311	11	8,521	380	280	219
	종사자수	49,367	14,912	10,759	15,728	7,968	24,495	18,991	5,188	693
농업,임업, 수렵업	사업체수	2	-	2	-	-	-	-	1	1
	종사자수	25	-	25	-	-	-	-	8	17
어업	사업체수	-	-	-	-	-	-	-	-	-
	종사자수	-	-	-	-	-	-	-	-	-
광업	사업체수	4	-	4	-	-	-	4	-	-
	종사자수	40	-	40	-	-	-	40	-	-
제조업	사업체수	2,737	1,758	771	200	8	2,501	235	1	-
	종사자수	28,282	4,646	6,433	10,647	6,556	11,941	16,359	9	-
전기, 가스, 수도업	사업체수	8	1	4	3	-	-	1	7	-
	종사자수	178	3	30	145	-	-	11	167	-
건설업	사업체수	158	94	47	15	2	119	33	6	-
	종사자수	2,547	224	367	975	981	483	1,130	934	-
도매및 소매업	사업체수	2,022	1,848	152	6	-	1,943	45	25	9
	종사자수	4,509	3,185	1,156	168	-	3,995	379	119	16
숙박및 음식점	사업체수	1,608	1,562	44	2	-	1,604	3	-	1
	종사자수	3,561	3,141	298	122	-	3,538	20	-	3
운수업	사업체수	838	798	27	13	-	816	19	3	-
	종사자수	1,671	845	247	579	-	1,205	446	20	-
통신업	사업체수	18	11	5	2	-	6	-	12	-
	종사자수	154	32	35	87	-	26	-	128	-
금융및 보험업	사업체수	78	25	43	10	-	15	21	41	1
	종사자수	804	57	407	340	-	38	331	432	3
부동산업및 임대업	사업체수	232	189	40	3	-	188	2	6	36
	종사자수	699	268	360	71	-	324	29	32	314
사업서비스업	사업체수	56	46	9	1	-	49	5	1	1
	종사자수	186	88	66	32	-	122	29	32	3
공공행정및사회보장행정	사업체수	33	2	15	15	1	-	-	33	-
	종사자수	1,241	3	176	631	431	-	-	1,241	-
교육서비스업	사업체수	265	174	59	32	-	205	6	564	-
	종사자수	2,214	371	484	1,359	-	717	138	1,359	-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사업체수	165	121	38	6	-	131	-	32	2
	종사자수	1,062	350	249	463	-	542	-	515	5
오락문화및운동관련사업	사업체수	295	285	10	-	-	289	2	4	-
	종사자수	546	455	91	-	-	492	18	36	-
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업	사업체수	881	839	39	3	-	655	4	54	168
	종사자수	1,648	1,244	295	109	-	1,099	61	156	332

○ 읍면별 산업대분류

구 분	계	화원	논공	다사	가창	하빈	옥포	현풍	유가	구지
합계	9,400 49,367		7,769 14,912	1,309 10,728	311 15,728	11 7,968	8,521 24,495	380 18,991	280 5,188	219 693
	2 25	1 8	- -	- -	- -	- -	1 17	- -	- -	- -
어업	- -	- -	- -	- -	- -	- -	- -	- -	- -	- -
광업	4 40	1 7	- -	- -	1 16	- -	1 7	- -	- -	- -
제조업	2,737 28,282	898 3,745	484 15,613	599 2,594	38 872	203 1,104	311 1,793	104 772	55 1,052	45 737
전기, 가스, 수도업	8 178	2 102	3 24	1 43	1 6	- -	- -	- -	- -	1 3
건설업	158 2,547	52 573	23 111	18 1,317	5 53	16 132	8 119	25 88	4 12	7 142
도매및 소매업	2,022 4,509	671 1,593	363 730	313 837	72 176	46 86	120 223	344 716	28 59	65 89
숙박및 음식점	1,608 3,561	385 838	342 659	211 540	155 332	52 107	127 268	246 605	41 98	49 114
운수업	838 1,671	289 503	112 258	190 259	36 133	30 37	73 148	64 167	10 12	34 154
통신업	18 154	3 17	4 14	3 10	1 9	1 7	1 36	3 88	1 3	1 3
금융및 보험업	78 804	22 226	18 150	6 53	2 24	4 34	9 73	13 193	2 21	2 30
부동산업 및 임대업	232 699	64 218	52 160	45 206	13 33	5 6	17 20	31 48	1 12	7 7
사업서비스업	56 186	21 64	8 17	8 21	1 1	- -	4 51	11 29	2 2	1 1
공공행정및사 회보장행정	33 1,241	6 586	6 99	4 67	2 45	2 36	3 42	6 293	2 37	2 36
교육서비스업	265 2,214	82 663	51 451	52 389	11 124	7 89	15 103	38 282	3 41	6 72
보건및사회 복지사업	165 1,062	53 390	24 299	25 93	8 34	5 9	8 21	30 186	3 5	9 25
오락문화및 운동관련사업	295 546	99 180	72 112	34 79	10 33	58 7	14 20	54 92	1 16	6 7
공공수리및 개인서비스업	881 1,648	232 440	179 303	126 281	69 127	38 68	53 109	129 211	18 45	37 64

달성군의 상징



로고 [Symbol Mark]

비슬산과 낙동강을 주제로 평화롭고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함축하여 안정속에 발전하는 달성의 의지를 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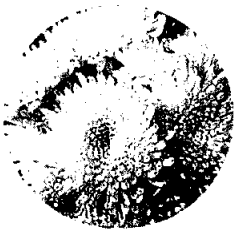
캐릭터/비슬이 [Biseuli]

참꽃의 친근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와 비슬산의 청정함을 형상화하여 자연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참꽃제의 고장 달성군을 상징



군나무 - 은행나무 [CountyTree/Ginkgo]

군내 사적지 및 마을어귀에 자리하고 있는 장수목으로 토양 조건에 관계없이 잘자라 강인한 군민정신을 상징



군꽃 - 국화 [CountyFlower Chrysanthemum]

군내 각가정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활착이 잘되고 번식력이 강하여 우리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상징



군새 - 비둘기 [County Bird/Pigeon]

군전역 마을 주변과 야산등지에 서식하며 온순하고 사람과 친하며 평화를 상징함